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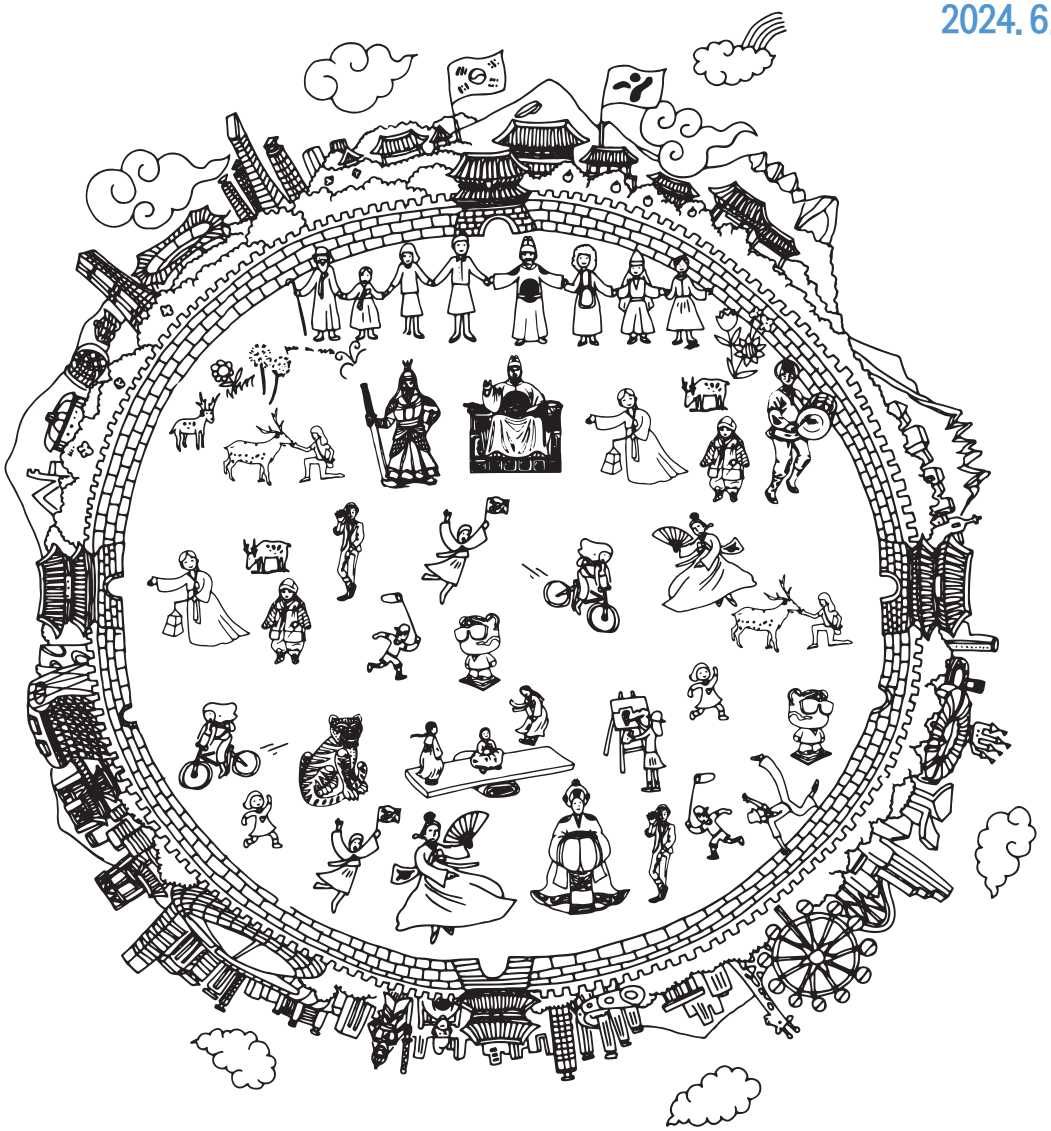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84호

2024. 6. 7.(금)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예 규]

제169호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 5

[입법예고]

제2024-1662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
제2024-1670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제2024-1674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7
제2024-1689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1
제2024-1693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0
제2024-1695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6
제2024-169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3
제2024-169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9
제2024-169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5
제2024-170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3
제2024-1704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8
제2024-1709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3
제2024-1712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55
제2024-1721호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32

◈ 고 시

제2024-271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35
제2024-27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제정 고시 ····· 250

제2024-275호 도시관리계획(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51
제2024-27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58
제2024-277호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260
제2024-27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261
제2024-280호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263
제2024-281호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274
제2024-282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76
제2024-283호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 302

◈ 공 고

제2024-1664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313
제2024-1665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314
제2024-1672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317
제2024-167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331
제2024-1679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목동혁신허브(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333
제2024-168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삼성홈이엔씨(주)] ····· 335
제2024-1706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344
제2024-1707호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 345
제2024-1708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348
제2024-1713호 측량업 등록 공고 ····· 349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08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350

◈ 구 고 시

제2024-66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종로구) ····· 360
제2024-70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마포구) ····· 362
제2024-105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로구) ····· 364
제2024-1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경관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고시(서초구) ····· 366

◈ 구 공 고

제2024-5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중구) ····· 371
제2024-645호 광장동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광진구) ····· 373
제2024-80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안)(중랑구) ····· 381
제2024-89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열람 공고(성북구) ····· 382
제2024-91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성북구) ····· 383
제2024-1051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영등포구) ····· 395
제2024-1107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동작구) ····· 404

◈ 사업소고시

제2024-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6
제2024-1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7
제2024-1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7
제2024-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8
제2024-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8
제2024-1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59

◈ 사업소공고

제2024-16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460
제2024-16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482

◈ 기 타

제2023-20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85
제2024-2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86

◈ 정 정

제919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정정) ····· 487

자치법규 등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69호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인
2024년 6월 7일

1. 폐지이유
   ○ ‘서울의회(홍보소식지)’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홍보물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19.9.26.) · 시행중에 있음
   ○ 이에 필요성이 상실된 기존 예규를 폐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62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안 제3조)
나. 타당성조사 결과 검증 대상과 제외 대상 규정 (안 제14조)
다. 규칙 내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용어 정비,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담당관(전화: 02-2133-68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정담당관
2) 이메일: existwin@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치구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심사 후”를 “투자심사 후”로,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심사”를 “투자심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5조 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20퍼센트”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제1항제5호”를 “영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가능한지 여부”를 “가능한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사업의 명칭·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제8조제1항제1호 중 “적정 : 사업”을 “적정 :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건부추진 : 사업”을 “조건부 추진 :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검토 : 사업”을 “재검토 :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정 : 사업”을 “부적정 :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업의 타당성”을 “사업의 타당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재정”을 “시재정”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기관)”을 “(타당성조사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한 타당성조사는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 절차)”를 “(타당성조사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의2”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를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로,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타당성조사 의뢰서”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를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타당성 조사는”을 “타당성조사는”으로, “타당성 조사과제”를 “타당성조사 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의2”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

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을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으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타당성조사”를 “타당성조사”로,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2. 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타당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2.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를 “영 제64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9조 중 “매년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과 같은 법 시행령---- ---------- ---------- ---------- ---------- ---------- ---------- -- 필요한 ---------- ----------.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 --------- ---------- ----- 각 호와 같다. 1. 시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

현 행	개 정 안
	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치구의 이전재원 포함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2. 자치구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

현 행	개 정 안
	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둘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둘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6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삭 제>
4. 시·자치구의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 및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삭 제>
5. 자치구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삭 제>
6. 삭 제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조제2항에서 정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제4조(재심사 대상) ---------- ---------- ---------- ---------- ----------.
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1. 투자심사 후 -- 100분의 30 ---------- ---------- ---------- ---------- ----------. ---------- ----------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제6조(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 100분의 20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사의 요청) ①·② (생략)	제7조(심사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1. 단위사업계획서	1. 투자사업의 명칭·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치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4. 영 제41조제2항제2호라목---------- 경우 ---------- 가능한지----------
5.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 및 자치구의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의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8조(심사의 실시) ① ----------

현 행	개 정 안
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1. 적정 : 사업----------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4. 부적정 : 사업----------
② 시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 ----------.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1. ---------- ---- 사업의 타당성------

현 행	개 정 안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심사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서울연구원 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 제8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4. ----- 시 재정 ---
제3장 타당성 조사	제3장 타당성조사
제11조(타당성 조사기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제11조(타당성조사 기관)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예비타당성조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한 타당성 조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한 타당성조사는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에서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타당성조사----------.
제12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에게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심사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조사 절차) ① 법 제37조의2-------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 -- 타당성조사 의뢰서------ ----------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센터의 타당성 조사과제 선정회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 타당성조사는 -------- 타당성조사 과제 ----------.

현 행	개 정 안
③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
제13조(타당성 재조사)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타당성 재조사) ------ 법 제37조의2------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
제14조(타당성 검증)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센터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타당성 검증) ① ------ 타당성조사----------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타당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2.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제1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자치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영 제64조제1항제8호----------.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하는 투자심사매뉴얼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70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31일로 연장함(안 제4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7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공공자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자산담당관(전화: 02-2133-94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공자산담당관
2) 이메일: volumeup84@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포함)및”을 “포함)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도시공간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도시계획과장
3. 기금출납원: 도시공간본부 기금담당사무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한”을 “관한 다음 각 호의”로, “의거”를 “따라”로,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공공자산담당관”을 “도시계획과장”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관으로 한다”를 “사무관이 맡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의는 정기회의”를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9년 12월 31일----------. ---------- ---------- ----------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 ---------- ---------- -- 포함) 및 ---------- ---------- ---------- ---------- ---------- ---------- ---------- ---------- -------.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1. 기금운용관: 도시공간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공공자산담당관	2. 분임기금운용관: 도시계획과장
3. 기금출납원 : 기획조정실 기금담당사무관	3. 기금출납원: 도시공간본부 기금담당사무관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관한 다음 각 호의 ---------- 따라 ----------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공자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도시공간본부장---------- 도시계획과장---------- 사람 중----------.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 ----------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	③ ---------- ---------- ----------

현 행	개 정 안
당 사무관으로 한다.	-------- 사무관이 맡는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 한 차례만 연임---- ----------.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개의하고, ------ --.
⑤·⑥ (생 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현 행	개 정 안
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74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한옥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등록 신청 시 구청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
나. 별지 제4호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한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옥정책과(전화 : 2133-5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한옥정책과
2) 팩 스: 02-2133-0828
3) 이메일: moo123@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한옥등록 신청서

대지위치						
건축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사용승인일	
향후 수선 등 계획	공사 예정일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내 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 신 축	□ 개 축(□ 전체 □ 부분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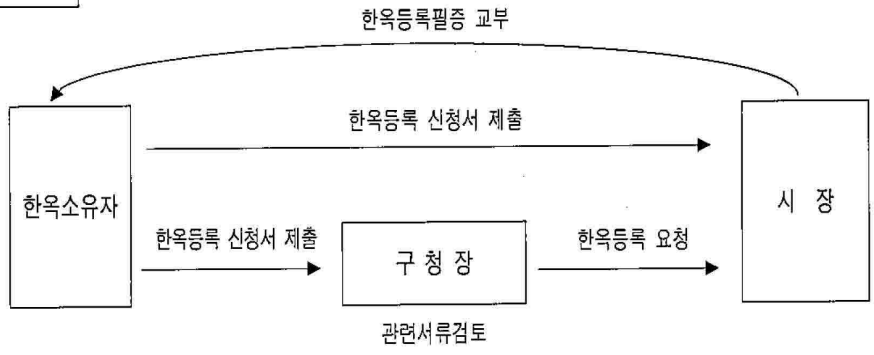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	건축물대장	수수료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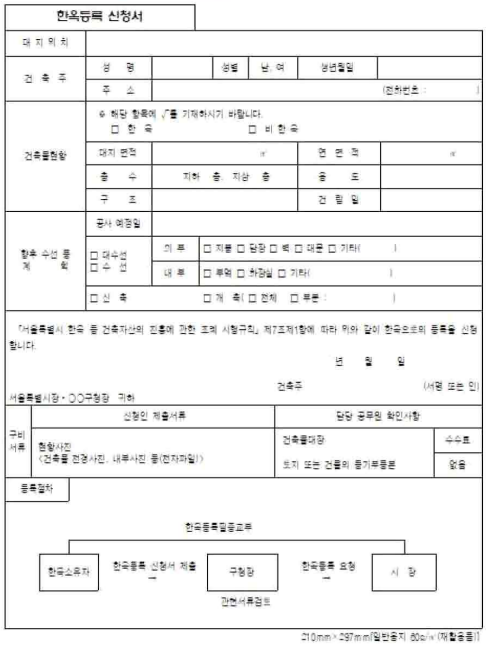
등록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한옥등록)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한옥등록) ① ---------- ---------- ---------- ---------- - 시장 또는 구청장---------.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 ---------- ----------.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한옥등록 신청서

대지위치

건축주 — 성명 / 성별 / 남·여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 — ※ 해당 항목에 √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옥 □ 비한옥
대지 면적 ㎡ / 연면적 ㎡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용도
구조 / 건립 일
공사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획 — □ 대수선 □ 수선 / 외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내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 신축 □ 개축(□ 전체 □ 부분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	건축물대장		수수료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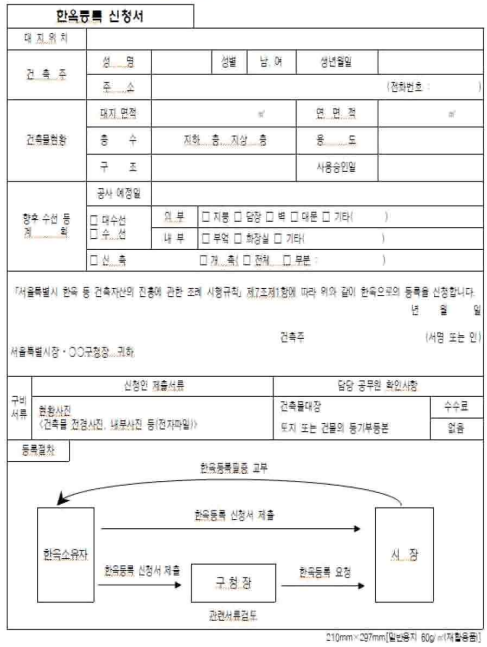
등록절차

한옥등록필증 교부

한옥소유자 —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 → 구청장 — 한옥등록 요청 → 시 장

관련서류검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한옥등록 신청서

대지위치

건축주 — 성명 / 성별 / 남·여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 — 대지 면적 ㎡ / 연면적 ㎡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용도
구조 / 사용승인일
공사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획 — □ 대수선 □ 수선 / 외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내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 신축 □ 개축(□ 전체 □ 부분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	건축물대장		수수료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없음

등록절차

한옥등록필증 교부

한옥소유자 —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 → 구청장 — 한옥등록 요청 → 시 장

관련서류검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89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일괄 개정함
   나. 조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연간 전수계획서에 맞는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점검 규정을 추가하고 서식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함
   나. 전수교육 실시 여부 수시 점검 사항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다. 월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정책과(전화: 2133-2617, FAX: 2133-1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재정책과
      (2) 이메일: aek0415@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서울특별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를 “(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한다.

제4조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 또는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를”을 “시무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등”을 “시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를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등”을 “시무형유산등”으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로, “무형문화재에 관한”을 “무형유산에 관한”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을 “무형유산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무형문화재등”을 “시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을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등”을 “시무형유산등”으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무형문화재등”을 “시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등”을 각각 “시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대장)”을 “(무형유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등”을 “시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하는”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를 “(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로 한다.

제17조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연도에 추진 중인 전수교육에 대한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월별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2항 중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을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무형유산 명 칭	
개 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구 의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구 분	[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종 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 사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추천받는 사람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기능·예능	(이수 기능·예능:)	
경 력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		
	기능·예능 공개실적	○ 보유자·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국내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8. 18.>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OOO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266mm×380mm[백상지(150g/㎡)]

■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2. 8. 18.>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성 명: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OOO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266㎜×380㎜[백상지(150g/㎡)]

■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2. 8. 18.>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OOO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266㎜×380㎜[백상지(150g/㎡)]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8. 18.>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보유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인 정 일 자:

귀 단체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OOO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266mm×380mm[백상지(150g/㎡)]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앞쪽)

<table>
<tr><td colspan="2">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구 분</td><td rowspan="4">[ ] 보유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td><td>성 명
(보유단체명)</td><td>생년월일</td></tr>
<tr><td>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td><td>대표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td></tr>
<tr><td colspan="2">주 소
(전화번호:)</td></tr>
<tr><td colspan="2">재교부 사유</td><td colspan="2">[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td></tr>
<tr><td colspan="2">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그 밖의 사항</td><td colspan="2"></td></tr>
</table>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사진(3.5㎝×4.5㎝)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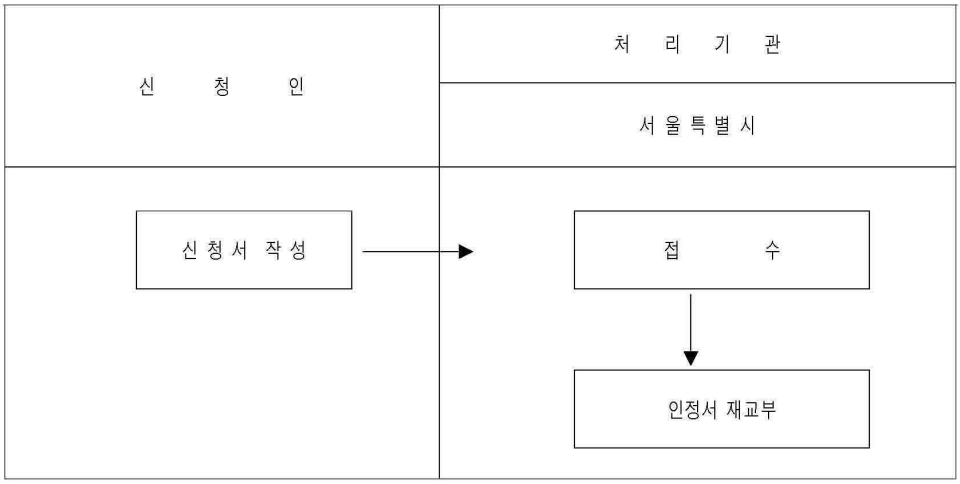
※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하십시오.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8. 18.>

[ ] 보유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 ] 명예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 ] 전승교육사

교부 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제 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교 부 구 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제 호)	보유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주 소	교부 구분	교부 연월일	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18.>

(앞쪽)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

지정 기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 중 선택)							구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개인	단체

무형유산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관리번호
개 요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서울특별시(긴급보호) 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

전승자 구분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기능 · 예능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보유자 · 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앞쪽)

<table>
<tr><td>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 칭</td><td colspan="2">제 호 (명칭)</td><td>지정 연월일</td></tr>
<tr><td>보유자성명
(보유단체명)</td><td></td><td>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td><td>인정 연월일</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연 락 처</td></tr>
<tr><td>보유자</td><td>전승교육사</td><td>이수자</td><td>전수생</td></tr>
<tr><td>명</td><td>명</td><td>명</td><td>명</td></tr>
<tr><td rowspan="7">조사 결과</td><td colspan="3">기능 · 예능</td></tr>
<tr><td colspan="3">전수교육</td></tr>
<tr><td colspan="3">전승자</td></tr>
<tr><td colspan="3">전수교육 경비</td></tr>
<tr><td colspan="3">전승활동</td></tr>
<tr><td colspan="3">전수교육 시설
현황</td></tr>
<tr><td colspan="3">특기사항</td></tr>
<tr><td>종합의견</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able>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210㎜×297㎜[백상지(15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기능·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수교육 경 비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조사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서울특별시

60㎜×90㎜[백상지(150g/㎡)]

(뒤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수신처 : 서울특별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8. 18.>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

신 고 인 (본 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 칭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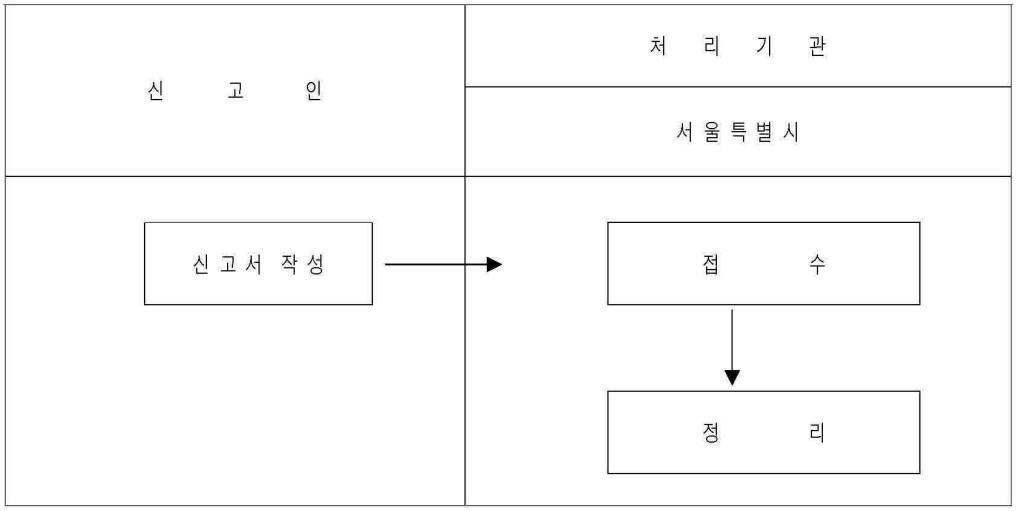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수교육 증빙자료 (사진 등)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3호의2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월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월 전수교육 세부실적	1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2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3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4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전수교육 증빙자료 (사진 등)	1주 차	2주 차	3주 차	4주 차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월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추천서

추천 대상자	사진 (3.5×4.5)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수이력	전수교육 주체	
	이수증 발급일	
실적	전수교육 참여	
	전승활동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의 우수 이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1매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작성방법

"실적"란에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8. 18.>

제 호

이 수 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 (이수 기능·예능:)

성 명:

생 년 월 일:

전수교육 주체:

발 급 일:

위 사람은 위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150g/㎡)]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8. 18.>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6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제 호(명칭)	전수교육 주체	이수 기능예능	이수자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발 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			
전수교육 주체		심사대상자	
심사 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 의견		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o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table>
<tr><td rowspan="3">추천받는 사람</td><td>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 칭</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경 력</td><td rowspan="2">시무형유산 전수 경력</td><td>보유자 성명</td><td></td><td rowspan="2">전수 기간</td><td rowspan="2">개월</td></tr>
<tr><td>보유단체명</td><td></td></tr>
<tr><td>무형유산 관계 분야 전수 경력</td><td>기능·예능자명</td><td></td><td>전수 기간</td><td>개월</td></tr>
</table>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 ---------- ---------- 국가유산청장----------.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 서울특별시 누리집----------.
제3조(시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	제3조(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자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고) ----------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 무형유산이 ---------- ------.
제4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전승교육사의 추천) ---------- 시무형유산 ---------- ----------.
제5조(지정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 또는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무형문화재등의 명칭 2. (생 략)	제5조(지정의 고시) ---------- 시무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을 ---------- --. 1. 시무형유산등------- 2. (현행과 같음)
제6조(인정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6조(인정의 고시) ----------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시무형유산------ ---------- ---------- ---------- ---------- ----------.
1.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1. 시무형유산----------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 ④ (생 략)	제7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보유자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조례 제33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제8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 ----- 시무형유산등------- ---------- ---------- ---------- ------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 ----------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무형유산에 관한 ---------- ---------- ---------- 무형유산에 대한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 ---------- ---------- ---------- ---------- -- 시무형유산등---------- ---------- ----------.
제9조(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생 략)	제9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현행과 같음)
제10조(시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조례 제33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 ---------- 시무형유산등---------- ---------- ---------- ---------- ---------- 무형유산에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5조에 따른 시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 ---------- ---------- ---------- 시무형유산등----------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시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해제의 고시) ---------- 시무형유산등---------- ----------.
1. 시무형문화재등의 명칭	1. 시무형유산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유자등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인정 해제의 고시) ---------- ---------- ---------- ----------.
1.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1. 시무형유산----------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무형문화재 대장)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등의 대장 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무형유산 대장) ------- ---------- 시무형유산등---------- ----------.
제15조(정기조사의 결과기록) 시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조사의 결과기록) -- ---------- ---------- 실시하는 ----- ---------- ---------- ----------.
제16조(시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 ①·② (생 략)	제16조(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변경신고서) 조례 제31조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대표자를 포함한다),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변경신고서) --------- ------ 시무형유산-------- ---------- ---------- ---------- ---------- ----------.
제18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	제18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 ---- 시무형유산---------- ---------- ---------- ----------

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시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연도에 추진 중인 전수교육에 대한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월별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 ① (생 략)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우수 이수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13호의3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시무형유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제22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형유산----------

--------.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무형문화재 명 칭	
개 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구 의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무형유산 명 칭	
개 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구 의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1호의2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구 분	[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종 목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신청사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1호의2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구 분	[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종 목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신청사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조의2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추천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명칭		
추천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능 · 예능	(이수 기능 · 예능:)
경 력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기능 · 예능 공개실적	○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국내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명칭		
추천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능 · 예능	(이수 기능 · 예능:)
경 력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기능 · 예능 공개실적	○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국내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 × 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OOO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 × 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OOO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OOO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OOO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별지 제3호의3서식]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OOO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별지 제3호의3서식]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OOO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보유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인 정 일 자:

귀 단체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OOO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사 진
3.5㎝×4.5㎝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보유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인 정 일 자:

귀 단체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OOO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칭			
구분	[ ]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 ] 보유단체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주소 (전화번호:)	
재교부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서명 또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사진(3.5㎝×4.5㎝) 1장

※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하시오.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신청서 작성	접수
	인정서 재교부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구분	[ ]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 ] 보유단체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 ] 명예보유자		
	[ ] 전승교육사	주소 (전화번호:)	
재교부 사유		[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서명 또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사진(3.5㎝×4.5㎝) 1장

※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하시오.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신청서 작성	접수
	인정서 재교부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8. 18.>

[ ] 보유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 ] 명예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 ] 전승교육사

교부번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칭(제 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교부구분	교부연월일	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8. 18.>

[ ] 보유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 ] 명예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 ] 전승교육사

교부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제 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교부구분	교부연월일	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번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명칭(제 호)	보유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주 소	교부구분	교부연월일	교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번호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제 호)	보유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주 소	교부구분	교부연월일	교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18.>

(앞쪽)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

지정 기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 중 선택)							구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개인	단체

무형문화재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관리번호
개 요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뒤쪽)

서울특별시(긴급보호) 무형문화재 명칭 :

전 승 자 목 록

전승자 구분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기능 ·예능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18.>

(앞쪽)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

지정 기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 중 선택)							구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개인	단체

무형유산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관리번호
개 요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뒤쪽)

서울특별시(긴급보호) 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

전승자 구분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기능 ·예능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 8. 18.>

(앞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보유자 · 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명 칭	제 호 (명칭)		지정 연월일
보유자성명 (보유단체명)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
명	명	명	명

조사 결과	기능 · 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전수교육 경비
	전승활동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뒤

세부 점검 내용

기능 · 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수교육 경 비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 8. 18.>

(앞

서울특별시무형유산(보유자 · 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 칭	제 호 (명칭)		지정 연월일
보유자성명 (보유단체명)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
명	명	명	명

조사 결과	기능 · 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전수교육 경비
	전승활동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뒤

세부 점검 내용

기능 · 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수교육 경 비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조사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서울특별시

60mm×90mm[백상지(150g/㎡)]

(뒤쪽)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수신처 : 서울특별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조사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서울특별시

60mm×90mm[백상지(150g/㎡)]

(뒤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수신처 : 서울특별시)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

신 고 인 (본 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명 칭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 재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

신 고 인 (본 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 칭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서울특별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 재

[별지 제1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수교육 증빙자료 (사진 등)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수교육 증빙자료 (사진 등)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신설>

[별지 제13호의2서식]

■ [별지 제13호의2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월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월 전수교육 세부실적	1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2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3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4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전수교육 증빙자료 (사진 등)	1주 차	2주 차	3주 차	4주 차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월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의2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추천서

추천 대상자	사진 (3.5×4.5)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수이력	전수교육 주체		
	이수증 발급일		
실적	전수교육 참여		
	전승활동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의 우수 이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1매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작성방법

"실적"란에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13호의3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추천서

추천 대상자	사진 (3.5×4.5)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수이력	전수교육 주체		
	이수증 발급일		
실적	전수교육 참여		
	전승활동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의 우수 이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1매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작성방법

"실적"란에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 (이수 기능·예능:)

성 명:
생 년 월 일:
전수교육 주체:
발 급 일:

위 사람은 위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를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 (이수 기능·예능:)

성 명:
생 년 월 일:
전수교육 주체:
발 급 일:

위 사람은 위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별지 제15호서식]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 그 밖의 사유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전수교육 주체	이수 기능예능	이수자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발 급 연월일	자 인

[별지 제16호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제 호 (명칭)	전수교육 주체	이수 기능예능	이수자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발 급 연월일	자 인

[별지 제17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명칭			
전수교육 주체		심사대상자	
심사 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 의견		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년 월

심사자 (서명 또는

첨부서류
○ 심사 장면 사진 1부

[별지 제17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			
전수교육 주체		심사대상자	
심사 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 의견		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년 월

심사자 (서명 또는

첨부서류
○ 심사 장면 사진 1부

[별지 제18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시무형문화재 전수 경력	보유자 성명		전수 기간	개월	
		보유단체명				
	무형문화재 관계 분야 전수 경력	기능·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별지 제18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시무형유산 전수 경력	보유자 성명		전수 기간	개월	
		보유단체명				
	무형유산 관계 분야 전수 경력	기능·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93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나.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 기준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02-2133-5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2) 팩 스 : 02-2133-0777
(3) 이메일 : yoonkh96@seoul.go.kr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4에 따라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1. 자치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1항 중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청장이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때,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치구가”를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로,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조정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를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치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자치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자치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4에 따라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1. 자치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제13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 자치구청장이 일반조정교부금---------- ---------- ----------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 - ---------- ---------- ---------- ---------- ------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조정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치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

	적 절차상 하자 등 자치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자치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95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류 대발생(녹조)” 재난유형 신설, “해외재난” 재난유형 및 “원전안전(방사능)” 재난유형 폐지(안 별표 2)
나. 재난수습 주무부서 4급 부서단위 재정비(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난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정책과(전화 02)2133-80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02)2133-0762
(2) E-mail: cappine95@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난안전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무부서(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 · 본부 · 국(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재난	풍수해(태풍 · 호우)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		지진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3		대형화산폭발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4		가뭄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5		산사태 · 급경사지	정원도시국	산지방재과
6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7		한파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8		폭염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9		풍수해(대설)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10		대규모 황사 발생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1		조류 대발생(녹조)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2	사회재난	산불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13		화학물질 유출사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4		대규모 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5		공동구 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16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17		도시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8		고속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9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1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22		가축질병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23		감염병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4		정보통신 사고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25		전력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6		원유수급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7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 · 본부 · 국(통제관)	과(담당관)
28		식 · 용수 사고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29		육상화물운송 마비	교통실	물류정책과
30		공연 · 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31	사회재난	초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2		도로터널 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33		도시가스 수급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4		한강수난사고	미래한강본부	한강여가사업부
35		위험물 사고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36		농수산물 유통마비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37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실	산업입지과
38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39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0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마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2		버스 총파업	교통실	버스정책과
43		택시 총파업	교통실	택시정책과
44		지하철 파업	교통실	도시철도과
45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시설국)
46		지하철 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국)
47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48		지반침하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49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50		한강교량 대형사고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51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52		대형 상수도 누수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53		상수도공사장 붕괴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54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5		정전 승강기 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6		정보서비스 마비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센터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 · 본부 · 국(통제관)	과(담당관)
57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실	주거정비과
58		시청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
59		열공급 중단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60		다중운집 인파사고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 소방재난본부가 수습주무부서인 재난의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해당 재난 발생 시설 등과 관련된 실 · 본부 · 국에서 통제관, 담당관(상황총괄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 가능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2] 재난수습 주무부서(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재난	풍수해(태풍·호우)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		지진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3		대형화산폭발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4		(생략)	(생략)	(생략)
5		산사태·급경사지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6		(생략)	(생략)	(생략)
7		한파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8		폭염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9		풍수해(대설)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10		(생략)	(생략)	(생략)
11	사회재난	산불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12~13		(생략)	(생략)	(생략)
14		공동구 사고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15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16		도시철도 대형사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17		고속철도 대형사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18~19		(생략)	(생략)	(생략)
2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21		가축질병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2		감염병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3		정보통신 사고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4		원전안전(방사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5~27		(생략)	(생략)	(생략)
28		식·용수 사고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29		육상화물운송 마비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30		(생략)	(생략)	(생략)
31	사회재난	초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2		도로터널 사고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33		(생략)	(생략)	(생략)

개 정 안

[별표 2] 재난수습 주무부서(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재난	풍수해(태풍·호우)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		지진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3		대형화산폭발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4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5		산사태·급경사지	정원도시국	산지방재과
6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7		한파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8		폭염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9		풍수해(대설)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10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11		조류 대발생(녹조)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2	사회재난	산불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13~14		(생략) (현행 12~13)	(생략) (현행 12~13)	(생략) (현행 12~13)
15		공동구 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16		(생략) (현행 15)	(생략) (현행 15)	(생략) (현행 15)
17		도시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8		고속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9~20		(생략) (현행 18~19)	(생략) (현행 18~19)	(생략) (현행 18~19)
21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22		기축질병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23		(생략) (현행 22)	(생략) (현행 22)	(생략) (현행 22)
24		정보통신 사고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25~27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28		식·용수 사고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29		육상화물운송 마비	교통실	물류정책과
30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31	사회재난	초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2		도로터널 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33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34		한강수난사고	미래한강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리과
35		(생략)	(생략)	(생략)
36		농수산물 유통마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37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38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39		해외재난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40~42		(생략)	(생략)	(생략)
43		버스 총파업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44		택시 총파업	교통실	택시정책과
45		지하철 파업	교통실	도시철도과
46~48		(생략)	(생략)	(생략)
49		지반침하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50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51		한강교량 대형사고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52		(생략)	(생략)	(생략)
53		대형 상수도 누수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누수대응과
54		상수도공사장 붕괴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55~56		(생략)	(생략)	(생략)
57		정보서비스 마비	디지털정책관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58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59~60		(생략)	(생략)	(생략)
61		다중운집 인파사고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예방과

※ 소방재난본부가 수습주무부서인 재난의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해당 재난 발생 시설 등과 관련된 실 · 본부 · 국에서 통제관, 담당관(상황총괄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 가능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34		한강수난사고	미래한강본부	한강여가사업부
35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36		농수산물 유통마비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
37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실	산업입지과
38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39~41		(생략) (현행 40~42)	(생략) (현행 18~19)	(생략) (현행 18~19)
42		버스 총파업	교통실	버스정책과
43		택시 총파업	교통실	택시정책과
44		지하철 파업	교통실	도시철도과
45~47		(생략) (현행 46~48)	(생략) (현행 46~48)	(생략) (현행 46~48)
48		지반침하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49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50		한강교량 대형사고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51		(생략) (현행 52)	(생략) (현행 52)	(생략) (현행 52)
52		대형 상수도 누수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53		상수도공사장 붕괴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54~55		(생략) (현행 55~56)	(생략) (현행 55~56)	(생략) (현행 55~56)
56		정보서비스 마비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센터
57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실	주거정비과
58~59		(생략) (현행 59~60)	(생략) (현행 59~60)	(생략) (현행 59~60)
60		다중운집 인파사고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 소방재난본부가 수습주무부서인 재난의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해당 재난 발생 시설 등과 관련된 실 · 본부 · 국에서 통제관, 담당관(상황총괄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 가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9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른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
   ○ 이에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안 제3~5조 삭제)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개정 규칙 시행일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2024. 11. 9.)로 함(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이 메 일: shinysoo@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보”를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보”로,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거쳐 보상금을”을 “거쳐”로, “지급한다”를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삭 제>

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 차별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③ 시장은 기관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계전문가 등의 조사참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재	<삭 제>

정적 지원) ①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경우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보---------- ----------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 거쳐 ---------- ----------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98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
   ○ 이에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지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관련 규정(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 등) 삭제(안 제12조제3항~제11항)
   다.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개정 조례 시행일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2024. 11. 9.)로 함(안 부칙 제1조)
   마.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사항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이 메 일: shinysoo@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제2항 중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①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제12조(심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교수 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4.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5. 법조인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 등) ① (생략) ② 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상금의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13조(보상금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장애인복지위원회----------.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9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자치구 위임
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 환수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 정비
-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대중골프장 병설에 대한 사무 삭제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마.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2133-6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 02-2133-0821
2) 이메일 : yesorno@seoul.go.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표 주관부서란 중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하고,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한다.

별표의 ▢ 기획조정실 표 주관부서란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 경제정책실 표 주관부서란 중 “전략산업기반과”를 “산업입지과”로 한다.

별표의 ▢ 도시교통실 표 중 주차계획과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3.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별표의 ▢ 도시교통실 표 중 교통지도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중 기후환경정책과대기정책과자원순환과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녹색에너지과 다음으로 이동한다.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순환안전국)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중 대기정책과 제5호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대기정책과란 다음에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란 및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1.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ㅇ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1.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업, 재활용업에 한함)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검사 등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과태료 부과·징수	 ㅇ 「폐기물관리법」 제25조 ㅇ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ㅇ 「폐기물관리법」 제37조 ㅇ 「폐기물관리법」 제39조 ㅇ 「폐기물관리법」 제33조 ㅇ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구청장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자원순환과 제1호가목의 사무명란 중 “변경시고”를 “변경신고”로 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중 자원순환과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중 생활환경과 제2호란을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ㅇ「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ㅇ「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별표의 ▢ 문화본부 표 중 문화예술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관광체육국 표 중 체육정책과 제1호나목란을 삭제하고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별표의 ▢ 시민건강국 표 보건의료정책과 제1호가목의 사무명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사무명란 중 “병원”을 “종합병원·병원”으로 한다.

별표의 ▢ 시민건강국 표 보건의료정책과 제6호다목의 근거법령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의 ▢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란 중 “스마트건강과”를 “건강관리과”로 한다.

별표의 ▢ 행정국 표 다음에 ▢ 건설기술정책관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설기술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혁신담당관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규등록 등	ㅇ「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ㅇ「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다. 등록의 경정	ㅇ「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라. 등록의 말소 등	ㅇ「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ㅇ「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ㅇ「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부터 제6조	
	사. 등록증의 재교부	ㅇ「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ㅇ「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ㅇ「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ㅇ「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ㅇ「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ㅇ「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발급	ㅇ「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나. 검사의 명령	ㅇ「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ㅇ「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라. 기간연장	ㅇ「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별표의 ▢ 재난안전관리실 표 중 건설혁신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재난안전관리실 표 주관부서란 중 “도로관리과”를 “보행환경개선과”로 한다.

별표의 ▢ 주택정책실 표 주택정책과 제1호란을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의 ▢ 주택정책실 표 공공주택과란 다음에 임대주택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주택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별표의 ▢ 주택정책실 표 중 건축기획과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구청장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수리·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ㅇ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27조	
	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ㅇ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ㅇ 「건축사법」 제29조	
	라. 보고 및 검사	ㅇ 「건축사법」 제30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ㅇ 「건축사법」 제41조	
	바. 처분내용의 통지	ㅇ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별표의 ▢ 푸른도시여가국 표 주관부서란 중 자연생태과 제3호란 다음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 감독 사무		구청장
	가. 변경신고 수리	o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제1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	o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제2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 (생략)		구청장
농수산유통담당관	1. (생략)	○ (생략)	구청장

☐ 민생노동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수산유통과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창의행정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생략)	(생략)

☐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전략산업기반과	1. (생략)		(생략)

☐ 경제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업입지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차계획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	○「도로교통법」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 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차계획과	2.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도로교통법」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3.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제2호,「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생략)
대기정책과	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제36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소음·진동관리법」제38조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순환안전국)	1. (현행과 같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1.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1.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업, 재활용업에 한함)		구청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라. 보고·검사 등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원순환과	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생략)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 처리 금지 명령	○ (생략)	
	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구청장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생활환경과	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		구청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폐기물관리법」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다. 휴업·폐업 및 재개	○「폐기물관리법」제37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 처리 금지 명령	○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검사 등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 (생략)	○ (생략)	(생략)
	4. (생략)		
	가. (생략)	○ (생략)	
	나. (생략)	○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 제4호와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문화 예술과	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 정기간행물법 제17조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 정기간행물법 제18조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	○ 정기간행물법 제21조	

□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류제출		
	마. 영업의 승계신고	○ 정기간행물법 제22조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3조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 정지 명령 등	○ 정기간행물법 제24조	
	아. 직권취소	○ 정기간행물법 제25조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정기간행물법 제26조	
	차. 청문의 실시	○ 정기간행물법 제27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정기간행물법 제33조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관광체육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체육 정책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생략)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 (생략)	
	다. (생략)	○ (생략)	
	라. (생략)	○ (생략)	
	마. (생략)	○ (생략)	
	바. (생략)	○ (생략)	
	사. (생략)	○ (생략)	
	아. (생략)	○ (생략)	
	자. (생략)	○ (생략)	

□ 관광체육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나. (현행 다목과 같음)	○ (현행 다목과 같음)	
	다. (현행 라목과 같음)	○ (현행 라목과 같음)	
	라. (현행 마목과 같음)	○ (현행 마목과 같음)	
	마. (현행 바목과 같음)	○ (현행 바목과 같음)	
	바. (현행 사목과 같음)	○ (현행 사목과 같음)	
	사. (현행 아목과 같음)	○ (현행 아목과 같음)	
	아. (현행 자목과 같음)	○ (현행 자목과 같음)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생략)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 (생략)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 (현행과 같음)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 (생략)	
	6. (생략)		(생략)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스마트건강과	1.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	○ (생략)	(생략)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종합병원·병원 등의 변경 허가	○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	
건강관리과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신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건설기술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혁신담당관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규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다. 등록의 경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라. 등록의 말소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부터 제6조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나. 검사의 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 재난안전관리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재난안전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혁신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규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다. 등록의 갱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라. 등록의 말소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나. 검사의 최고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도로 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 앞 광장 제외)		(생략)
	가. 도로의 점용허가	○(생략)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생략)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생략)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생략)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보행 환경 개선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택정책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택 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2. (생략)	○ (생략)	(생략)
	3. (생략)	○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주택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 (현행 제2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임대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건축 기획과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생략)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건축사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	
	라. (생략)	○「건축사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마. (생략)	○「건축사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	
	바. (생략)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택과	공익사업자 지정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수리·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27조	
	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건축사법」 제29조	
	라. (현행과 같음)	○「건축사법」 제30조	
	마. (현행과 같음)	○「건축사법」 제41조	
	바. (현행과 같음)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신설)

□ 정원도시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 감독 사무		구청장
	가. 변경신고 수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제1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0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규칙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재위임 종료 사무 정비
- 마약류에 관한 사무,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사무 삭제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다.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2133-6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 02-2133-0821
2) 이메일 : yesorno@seoul.go.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자원순환과 제1호란 및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6호의3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나.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별표의 ❑ 문화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문화예술과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별표의 ▢ 시민건강국 표를 삭제한다.

별표의 ▢ 행정국 표 주관부서란 중 “남북협력과”를 “평화기반조성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생략)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생략)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나.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6호의3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나. (현행과 같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현행과 같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구청장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 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나. 승인 결과 서울시로 통보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제4항	
	2.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구청장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행 정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남북협력과	1~2. (생략)	○ (생략)	(생략)

❑ 행 정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평화기반조성과	1~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04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소외되는 계층 없이 폭넓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함.
   나. 활동비, 마일리지, 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자의 학습 의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건강장애학생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을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에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8호~제11호)
   나.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의 참여 실적·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교육지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정책과(전화: 02-2133-9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2) 팩 스: 02-2133-1011
      3) 이메일: susiesuh@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민”을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 “시장” ”을 “ “시장”이라 한다”로, “서울시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학교밖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11.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

제10조제2항 중 “경품을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참여자의 참여실적·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학습 도구 등 경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장"이라 한다-------- 시민----------.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

	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	4. ---------- ---------- 학교 밖 청소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신 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신 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신 설>	11.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

8. (생 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생 략)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 ----------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신 설>	1. 참여자의 참여실적·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신 설>	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학습 도구 등 경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09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따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상환 조건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상환조건(7년) 근거 마련
(안 제9조 제1항 제6호 신설)
나. 인용 조례 현행화,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담당관(전화 02)2133-5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소상공인담당관
2) 이메일: osbosb@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요되는 자금”을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다음날 (공휴일”을 “다음날(공휴일”로, “대여 받은”을 “대여받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제10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때에는 10일”을 “때에는 10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의”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폐업중인 자”를 “폐업 중인 자”로, “서울특별시”를 “시”로, “폐업중인 자는”을 “폐업 중인 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이내”를 “기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경영안정자금 :”을 “경영안정자금: 3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숙박사업 :”을 “숙박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중소기업공동사업 :”을 “중소기업공동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시장재개발사업 : 3년.”을 “시장재개발사업: 3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후단 중 “임시시장설치사업”을 “임시시장 설치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사업 :”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제16조의 대출대상자”를 “때에는 제16조의 대출대상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정한 제”를 “정한”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해중소기업”을 “재해중소기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받고자”를 “연장받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으로, “신청기업에게”를 “신청기업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출목적범위”를 “대출목적 범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받아”를 “지원받아”로, “현황을 연2회”를 “현황을 연 2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 9. (생 략)	제2조(정의) ----------. 1. ---------- 소요되는 자금--------. 2. ~ 9.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대하) ① 시장은 대하금리를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조(기금의 대하) ① -------- 범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대출시행) ① (생 략) ② 대출기관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이 경과한 다음날(공휴일인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영업이 개시되는 날)까지 대여받은 기금의 원금과 그 이자(대여 받은 날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에 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를 대여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대출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날(공휴일----------대여받은----------.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융자조건) 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자금은 10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융자조건) ①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융자신청) ① (생 략)	제10조(융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② ---------- ---------- --. ---------- --- 고려하여 ---------- ---------- ----------.
제11조(융자결정) ① (생 략)	제11조(융자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융자신청자, 대여기관 및 대출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현 행	개 정 안
다만, 제3항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0일이 경과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 ---------- ---------- 때에는 10일-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융자결정을 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융자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① ----------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융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융자의 제한)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다만, 기존 재래시장·공장·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숙박시설 등을 재개발, 재건축,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기 위하	3. ------- 폐업 중인 자----- ---------- ---------- ---------- 시------- ---------- ---------- ---------- ----------

현 행	개 정 안
여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는 제외한다)	---------- 폐업 중인 자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대출절차) ① 대출기관은 제16조의 대출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 중 건축관련 사업인 경우에는 건축착공신고서 제출 후에 제11조에 따른 융자결정금액의 40퍼센트를 선급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기성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대출절차) ① ---------- ---------- ---------- 없으면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대출기한) ① 제16조 규정의 대출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대출(융자금을 분할하여 대출받는 경우에는 첫 번째 분할 대출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대출기한) ① ---------- ---------- ---------- 기간 이내---------- ---------- ---------- ---------- -----.
1. 경영안정자금 : 3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2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1. 경영안정자금: 3월. ------ ---------- 대해서는---------- ---------.

현 행	개 정 안
2. 시설자금	2. ------
가.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설치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사업, 호텔사업 및 숙박사업 : 2년	가. ---------- ---------- ---------- ---------- ---------- ---------- ---------- ------- 숙박사업: ---
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과 중소기업공동사업 : 2년	나. ---------- ---------- 중소기업공동사업: --
다. 시장재개발사업 : 3년. 다만 임시시장설치사업은 6월.	다. 시장재개발사업: 3년. -- 임시시장 설치사업----.
라. 그 밖의 사업 : 6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4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 사업: ----. ---- ---------- - 대해서는---------- ----------.
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제16조의 대출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 ---------- 때에는 제16조의 대출대상자 ---------- ----------.
제19조(원리금 상환) ①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 또는 매	제19조(원리금 상환) ① ------- ----------

현 행	개 정 안
분기 말일(4/4분기는 12월20일)에 균등분할 상환하되, 균등하게 분할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최초 상환금에 편입하여 상환한다.	---------- ---------- ---------- -- 대해서는----------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자금의 기한전 회수) 시장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자금의 기한전 회수)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령, 조례, 이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	2. ---------- -------- 정한 ---------- -------
제20조의2(상환유예 및 거치기간 등의 연장) ① 시장은 재해중소기업 대하여 기금의 가용 재원 범위에서 재해 중소기업이 재해 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유예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2(상환유예 및 거치기간 등의 연장) ① ---- 재해중소기업에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유예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 유예, 기간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연장받고자 ----------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기간연장 등 결정된 사항을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 신청기업에 ------- ----------.
제22조(변경신고 및 승인) ① 제16조의 대출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대출결정이 취소되거나 대출금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변경신고 및 승인) ①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3. ---------- ---------- ---------- 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출대상자는 대출목적범위에서 대출금으로 설비하는 시설의 수량·규격·소요금액 또는 제작업체의 변경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대출기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 대출목적 범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 ① (생 략)	제26조(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자금의 용도는 지원시설물의 구입, 건축, 임차와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한한다.	② ---------- 한정한다.
③ 설치자금을 지원 받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자금을 포함한 운영자산 현황을 연2회(1월, 7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지원받아------ 현황을 연 2회 ----.
제27조(지원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자금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	제27조(지원자금의 회수) ① ----

현 행	개 정 안
검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 목적 외---------- ----------
제31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업무의 대행) ① -------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12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등이 시행(’ 24. 5. 17.)되어 문화재가 국가유산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고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 관련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함
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정책과(전화: 2133-2613, FAX: 2133-1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 4층
(2) 이메일: cjy408408@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시행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국가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자연유산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3항과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유산 보존의 기반조성

제3조(국가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위,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국가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기초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은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국가유산의 조사·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국가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국가유산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국가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내용을 시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①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지정유산 중 목조건축물
2. 시지정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예방 활동
2. 화재 발생 시 신고요령
3. 회재 발생 시 국가유산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제4장 국가유산의 지정

제6조(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지정유산의 지정절차) ①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제3자가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가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 중 해당 분야의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국가유산이 시지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하되,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인위적·지연적 조건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① 시지정유산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
3. 시지정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11조(지정에 관한 자료) 시지정유산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지정유산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지정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시지정유산의 작자·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시지정유산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7. 시지정유산의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8. 시지정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정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해제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7조를 준용한다.

1.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지정 해제
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범위의 조정

제14조(임시지정) 시장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기념물·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또는 자연유산으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유산의 관리와 보호

제15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지정유산에 대하여 자치구나 해당 시지정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해당 시지정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시지정유산의 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지정유산의 대장에는 지정번호별 찾아보기와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른 임시지정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허가신청) ① 조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해당 시지정유산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9조제1호에 따른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8호서식
2. 조례 제19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9호서식
3. 조례 제19조제3호에 따른 시지정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별지 제10호서식
4. 조례 제19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을 따르고, 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을 따른다.

제18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조례 제19조제3호 단서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
2. 벽화가 없는 벽체의 탈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일부 탈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3. 창호지를 바르거나 일부 파손된 문짝을 보수하는 행위
4.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천장에 흙을 바르는 행위
5. 마루판의 부분적인 파손을 보수하는 행위
6.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보수하는 행위
7. 누수방지를 위하여 이완된 기와를 바로잡는 행위
8. 화장실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9.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10. 광장의 유실부분을 보수하는 행위
11.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12. 석축부분의 흙을 고르는 행위
13. 기존 진입도로를 유지보수하는 행위
14.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15. 성곽 및 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6.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7.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8. 보호책을 보수하는 행위
1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행위

제19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시지정유산에 관하여 조례 제2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3조제1호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 별지 제12호서식
2. 조례 제23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변경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
3. 조례 제2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시지정유산의 소재지, 보관 장소의 변경 신고 : 별지 제14호서식
4.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 : 별지 제15호서식
5. 조례 제23조제7호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재반입 신고 : 별지 제16호서식
6. 조례 제23조제8호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 : 별지 제17호서식

② 시지정유산에 관하여 조례 제23조제9호에 따른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반출의 경우 반출예정일 1개월 이전에, 재반입의 경우 재반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의 시외반출 신고 : 별지 제18호서식
2. 시지정유산의 재반입 신고 : 별지 제19호서식

제20조(수리 등의 시행통지) 시장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 부담으로 조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시지정유산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 내용·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지정유산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지정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제6장 국가유산의 공개

제22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지정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시지정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시지정유산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지정유산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지정유산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지정유산의 보호·보존을 목적으로 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시지정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지정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시 소유 국가유산 운영

제24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휴무일) ① 시 소유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관련시설(이하 “시 소유 국가유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주 하루를 휴무일로 한다.

② 휴무일은 시 소유 국가유산별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5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람 또는 사용시간) 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람 또는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람 또는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제26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람 또는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 소유 국가유산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경우
2. 정치집회 또는 종교행사
3.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제27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촬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촬영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촬영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경우에는 허가 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촬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3조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경우에는 허가 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소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촬영 허가 또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사용일 이후에는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시 소유 국가유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 발굴, 보존 및 전승을 위한 행사나 촬영
2. 국정, 시정의 홍보와 전통문화 교육목적을 위한 행사나 촬영
3. 정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전시 등의 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글짓기, 그림 그리기, 서예 등의 행사 및 공익목적의 행사
5. 해당 시 소유 국가유산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28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제27조에 따라 시 소유 국가유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국가유산 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설치·철거 및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2. 물품 및 장비의 반·출입 및 행사용 차량의 출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국가유산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국가유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내용과 허가조건 또는 준수사항을 변경·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4.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전 협의에 의하여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9조(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0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 신청)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운영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기간의 연장 등) 수탁자가 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실적 등을 첨부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운영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규정) 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국가유산위원회

제33조(분과위원회) ① 국가유산을 분야별로 분장하여 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건축유산분과위원회
2. 동산유산분과위원회
3. 기념물·자연유산분과위원회
4. 표석분과위원회

② 건축유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7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7조제2호의 기념물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7조제3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 및 조례 제8조의 문화유산자료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7조제4호의 자연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5. 설비·전기·기계 등 기술에 관한 사항

③ 동산유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7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7조제3호의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8조의 문화유산자료 중 전적, 서적, 문서, 회화, 조각 및 공예품 등에 관한 사항

④ 기념물·자연유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7조제2호의 기념물(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의 문화유산자료(건조물, 전적, 서적, 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44조제1항의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의 경우, 지표조사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명령 심의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7조제4호의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⑤ 표석분과위원회는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별 정원 및 위원의 배치는 시장이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합동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은 그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소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위원회 등에서 조사·심의 등의 대상이 된 안건(이하 “대상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대상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상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대상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대상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상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전문가) ①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국가유산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입안을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별

로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계전문가는 시장이 부여한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9장 시등록문화유산

제40조(등록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59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시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 소유 국가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제41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국가유산이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1조(등록의 신청)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해당 국가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국가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국가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대상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국가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등록 사항 등) 시장과 관할 구청장 및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기술 지도) ① 조례 제60조제3항에서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시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조례 제61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1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2. 조례 제61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조례 제6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4. 조례 제61조제6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5. 조례 제61조제7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조례 제61조제8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반입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제45조(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③ 조례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조례 제6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시장은 조례 제64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8조(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신고)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를 따른다.

제50조(국가유산수리의 평가 등) 조례 제58조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51조(보조금)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관리·보호·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② 시장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지정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조사원의 신분증)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위임사무 처리결과 등 제출) 구청장은 조례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행정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가”를 “지정국가유산이”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상물 촬영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연유산·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 자연유산법·문화유산법”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법과 문화유산법에 따른 자연유산·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자연유산법·문화유산법”으로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제6조 및 제8조 관련)

국가유산의 종별	지 정 기 준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1. 건조물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 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문서 가. 전적류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계통적 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 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 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국가유산의 종별	지 정 기 준
2. 서울특별시 기념물	1.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적·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그 밖의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그 밖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고도(옛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그 밖의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5. 교육·사회산업에 관한 유적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그 밖의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6. 분묘·비 등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3. 서울특별시 자연유산	1.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2.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3.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 등 4. 저명한 해안·하안·도서·그 밖의 경승지 5.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6.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7. 동물 가.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 · 번식지 나. 석회암지대 · 사구 · 동굴 · 건조지 · 습지 · 하천 · 폭포 · 온천 · 하구 · 도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 · 번식지 또는 도래지 다. 생활 · 민속 · 의식주 · 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 · 번식지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과 그 산지 마.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바.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 8. 식물 가. 한국 자생 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 · 늪 · 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 · 식물군 · 식물군락 또는 숲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마.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노거수·기형목 바.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 식물 또는 생육지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9. 지질·광물 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나.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 다.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지질 라. 지충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마.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바. 온천 및 냉광천 10. 천연보호구역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11. 자연현상 관광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국가유산의 종별	지 정 기 준
3.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유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표 2>

서울특별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의 보호구역	1.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사찰건조물인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구역 2.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미터부터 25미터 이내의 구역 3. 석비·부도·석종·석불(건물 내의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4.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5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5. 석빙고는 벽면상부 지면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6.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 7.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8. 당간지주·석등·노주 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9.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10. 그 밖의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은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서울특별시 기념물의 보호구역	1. 성곽 등은 성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성·산성·성내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 4.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미터부터 1천미터 이내의 구역 5.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6.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그 밖의 시설물 등은 유형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7. 그 밖의 기념물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서울특별시 자연유산의 보호구역	1.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3. 그 밖의 자연유산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보 호 물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그 밖의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3. 그 밖의 국가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5.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그 밖의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별표 3>

촬영요금 및 장소사용료(제27조 관련)

1. 촬영요금

구 분 : 극영화·광고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
기본요금 : 2시간 이내 200,000원
초과요금 : 1시간당 50,000원

구 분 : 문화영화·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기본요금 : 2시간 이내 100,000원
초과요금 : 1시간당 30,000원

구 분 :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기본요금 : 1시간 및 모델 1명 이내 20,000원
초과요금 : 1시간당 10,000원
모델 1명당 10,000원

2. 장소사용료

구 분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장 소 사 용 면 적 및 요 금	◦ 1,650㎡ 미만 360,000원 ◦ 1,650㎡ 이상부터 3,300㎡ 미만 720,000원 ◦ 3,300㎡ 이상 1,08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 야간은 상기 규정에 의한 요금(초과요금을 포함한다)에 100%를 가산하되 가산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주야간 구분 : 주간시간은 06:00 ~ 18:00, 야간시간은 18:00 ~ 다음날 06:00로 한다.
※ 다만,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정원의 1시간당 요금은 1㎡당 20원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요금의 30%를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유산(유형 부문) 지정신청서

명 칭		수 량 (면 적)	
크 기		규 모	
재 질		구조·형식	
연 대		작 가 (건축가)	
소 유 자 성 명	(인)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국가유산 소재지(보관장소)	
내 력			
보수내역			
국가유산 현상(現狀)			
신청구분	□ 시 지정 □ 국가 지정		

위 대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 국가유산 사진, 유물취득경위서, 국가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

사 진

취득경위서

□ 명　　칭 :

□ 보관장소 :

□ 소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국가유산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국가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 명 칭 :

□ 수 량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위 국가유산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국가유산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자 연 유 산

서울특별시 ( ) 지정서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명 칭
수 량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자 연 유 산
위 국가유산을 서울특별시 ( ) (으)로 지정합니다.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 록 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자 연 유 산
서울특별시 ( ) 지정서 부록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 / 자연유산 / 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자료)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명칭	③ 종별	④ 지정 번호	⑤ 지정 연월일	⑥ 수량	⑦ 발급 구분	⑧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⑫ 부록 여부	⑬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⑭ 발급자
								⑨주소	⑩ 생년월일 ⑪ 성 명			

268mm×190mm[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시지정유산	지정종류				
	명칭				
	지정수량				
	지정일				
지정받는 자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위 단체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번호	관리단체				대상문화재					⑪ 관리기간	⑫ 지정일	⑬ 발급자 / ⑭ 발급일
	② 단체명	③ 주소	대표자		⑥ 종별 및 지정번호	⑦ 명칭	⑧ 소재지 (보관장소)	⑨ 수량/면적 (㎡)	⑩ 소유자			
			④ 성명	⑤ 생년월일								

※ 작성요령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서울시보에 게재된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갑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 / 자연유산 / 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자료) 대장

시지정유산종별			지정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을지)

시지정유산명 : 제 호 (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날 짜	내 용

(별지)

시지정유산명 : 제 호 ( )

지정/보호 구역

구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정지)

시지정유산명 : 제 호 ( )

보 호 물

명 칭	수량(면적)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무지)

시지정유산명 : 제 호 ( )

부 속 물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기지)

시지정유산명 : 제 호 (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별지 제8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
30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① 성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 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3">대 상
시지정유산</td><td>④ 명칭</td><td colspan="4"></td></tr>
<tr><td>⑤ 종별</td><td></td><td>⑥ 지정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⑦ 도래지·생산지</td><td colspan="3"></td></tr>
<tr><td>⑧ 포획(채취·반출) 사유</td><td colspan="5"></td></tr>
<tr><td>⑨ 포획(채취·반출) 부분</td><td colspan="2"></td><td>⑩ 수 량</td><td colspan="2"></td></tr>
<tr><td>⑪ 포획(채취·반출) 예정 연월일</td><td colspan="5"></td></tr>
<tr><td>⑫ 포획(채취·반출) 방법</td><td colspan="2"></td><td>⑬ 반출지</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기 술 담 당 자</td><td>⑭ 성명</td><td></td><td>⑮ 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⑯ 주소</td><td colspan="4"></td></tr>
<tr><td>⑰ 재 반 입 여 부</td><td colspan="5"></td></tr>
<tr><td>⑱ 그 밖 의 사 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사업(연구) 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자료</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인쇄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
5 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① 성 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3">대 상
시지정유산</td><td>④ 명 칭</td><td colspan="5"></td></tr>
<tr><td>⑤ 종 별</td><td></td><td>⑥ 지정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⑦ 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⑧ 신 청 사 유</td><td colspan="6"></td></tr>
<tr><td>⑨ 신 청 구 분</td><td colspan="3"></td><td>⑩수 량</td><td colspan="2"></td></tr>
<tr><td>⑪ 작업예정기간</td><td colspan="3">. . .부터
. . .까지 (일간)</td><td>⑫작업방법</td><td colspan="2"></td></tr>
<tr><td>작업을 하려는 자</td><td>⑬ 성 명</td><td></td><td>⑭ 주 소</td><td colspan="2"></td></tr>
<tr><td>기 술 담 당 자</td><td>⑮ 성 명</td><td></td><td>⑯ 주 소</td><td colspan="2"></td></tr>
<tr><td>⑰ 소 요 경 비</td><td colspan="2"></td><td>⑱ 재 원</td><td colspan="2"></td></tr>
<tr><td>⑲ 그 밖의 사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사업(연구) 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자료</td><td>수 수 료</td><td>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인쇄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상 유산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			

시지정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 ] 포획·채취·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방사·위치추적기부착·혈액 등 채취·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	[ ] 건축물·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 ]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조례 제6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 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시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 동산에 속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뒤쪽)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 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 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 료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호·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서울특별시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유산	명칭		
	종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 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table>
<tr><td colspan="7">서울특별시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관리자(선임 · 해임)신고서</td><td>처리기간
2 일</td></tr>
<tr><td rowspan="2">신 고 인</td><td>① 성 명</td><td colspan="2"></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남 □ 여 □)</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2"></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④ 유 산 의 명 칭</td><td></td><td>⑤ 종별</td><td></td><td>⑥ 지정(등록) 번호</td><td></td><td>⑦ 수량</td></tr>
<tr><td>⑧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td><td colspan="6">(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4">관 리 자</td><td rowspan="2">신</td><td>⑨ 성 명</td><td colspan="2"></td><td>⑩ 생년월일</td><td colspan="2">(남 □ 여 □)</td></tr>
<tr><td>⑪ 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구</td><td>⑫ 성 명</td><td colspan="2"></td><td>⑬ 생년월일</td><td colspan="2">(남 □ 여 □)</td></tr>
<tr><td>⑭ 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⑮ 사 유</td><td colspan="2"></td><td>⑯(선임·해임) 연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⑰그 밖의 사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호 · 제6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 제44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7"></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table>
<tr><td colspan="8">서울특별시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 변경신고서</td><td>처리기간
2 일</td></tr>
<tr><td colspan="2">① 유 산 의 명 칭</td><td></td><td>② 종별</td><td></td><td>③ 지정(등록) 번호</td><td></td><td>④ 수량</td><td></td></tr>
<tr><td colspan="2">⑤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⑥ 보 호 물·보 호 구 역</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소 유 자</td><td rowspan="2">변경 후</td><td>⑦ 성 명</td><td></td><td>⑧ 생년월일</td><td>(남 □ 여 □)</td><td>⑨ 직업</td><td colspan="2"></td></tr>
<tr><td>⑩ 주 소</td><td colspan="6">(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2">변경 전</td><td>⑪ 성 명</td><td></td><td>⑫ 생년월일</td><td>(남 □ 여 □)</td><td>⑬ 직업</td><td colspan="2"></td></tr>
<tr><td>⑭ 주 소</td><td colspan="6">(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⑮ 변 경 사 유</td><td colspan="3"></td><td>⑯ 변경연월일</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⑰ 그 밖의 사항</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9">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호·제61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제44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변경 후) (서명 또는 인)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8">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table>
<tr><td colspan="8">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 ) 변경신고서
소재지· 보관장소</td><td>처리기간
2 일</td></tr>
<tr><td rowspan="2">신 고 인</td><td>① 성 명</td><td colspan="2"></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3">(남 □ 여 □)</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6">(전화번호 :)</td></tr>
<tr><td>④ 유 산 의 명 칭</td><td colspan="2"></td><td>⑤ 종별</td><td></td><td>⑥ 지정(등록) 번호</td><td></td><td>⑦ 수량</td><td></td></tr>
<tr><td>⑧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td><td colspan="9"></td></tr>
<tr><td>⑨ 보 호 구 역</td><td colspan="2"></td><td>⑩ 지목</td><td></td><td colspan="2">⑪ 지적</td><td colspan="2"></td></tr>
<tr><td>⑫ 변 경 사 유</td><td colspan="3"></td><td>⑬ 변경연월일</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변 경 내 용</td><td>⑭ 변경 후</td><td colspan="8"></td></tr>
<tr><td>⑮ 변경 전</td><td colspan="8"></td></tr>
<tr><td>⑯ 그 밖의 사항</td><td colspan="9"></td></tr>
<tr><td colspan="10">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제44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9">구비서류 : 관련 사진</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서울특별시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td><td>처리기간</td></tr>
<tr><td colspan="5"></td><td>2 일</td></tr>
<tr><td rowspan="2">신 고 인</td><td>① 성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남 □ 여 □)</td></tr>
<tr><td>③ 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④ 유산의 명 칭</td><td></td><td>⑤ 지정(등록)종별 및 번호</td><td colspan="2">제 호</td></tr>
<tr><td colspan="2">⑥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td><td></td><td>⑦ 수 량</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⑧ 보호물 명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신고내용</td><td>⑨ 사고연월일</td><td colspan="4"></td></tr>
<tr><td>⑩ 사고내용</td><td colspan="4"></td></tr>
<tr><td>⑪ 사고경위</td><td colspan="4"></td></tr>
<tr><td>⑫ 조치내용</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6호·제61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제44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 관련 사진</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table>
<tr><td colspan="8">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 재반입 신고서</td><td>처리기간
즉시</td></tr>
<tr><td rowspan="2">신 고 인</td><td>① 성명</td><td colspan="2"></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③ 주소</td><td colspan="6">(전화번호 :)</td></tr>
<tr><td>④ 시지정유산의 명 칭</td><td></td><td>⑤ 종별</td><td></td><td>⑥ 지정번호</td><td></td><td>⑦ 수량</td><td></td></tr>
<tr><td rowspan="2">반출허가내용</td><td>⑧ 문서번호</td><td colspan="2"></td><td>⑨ 허가연월일</td><td colspan="3"></td></tr>
<tr><td>⑩ 허가조건</td><td colspan="6"></td></tr>
<tr><td>⑪ 반출·입 연월일</td><td>반 출</td><td colspan="2"></td><td>반 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반출입담당자</td><td>⑫ 성 명</td><td colspan="2"></td><td>⑬ 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⑭ 주 소</td><td colspan="6">(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2">보 관 장 소</td><td>⑮ 반 출 전</td><td colspan="6"></td></tr>
<tr><td>⑯ 반 입 후</td><td colspan="6"></td></tr>
<tr><td>⑰ 시지정유산 현 황</td><td colspan="7"></td></tr>
<tr><td>⑱ 그 밖의 사항</td><td colspan="7"></td></tr>
</table>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table>
<tr><td></td><td>수 수 료</td></tr>
<tr><td></td><td>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서울특별시 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 완료) 신고서</td><td>처 리 기 간
2 일</td></tr>
<tr><td rowspan="2">신 고 인</td><td>① 성 명</td><td></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남 □ 여 □)</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2">대 상 유 산</td><td>④ 명 칭</td><td></td><td>⑤ 종별</td><td>⑥지정
(등록)번호</td><td></td></tr>
<tr><td>⑦ 소재지
(보관장소)</td><td colspan="4"></td></tr>
<tr><td>⑧ 보호물·보호구역</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⑨ 공 사 내 용</td><td>⑩ 명 칭</td><td colspan="4"></td></tr>
<tr><td>⑪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⑫ 착 공 연 월 일</td><td colspan="2">. . .</td><td>⑬ 준공(예정)연월일</td><td colspan="2">. . .</td></tr>
<tr><td>⑭ 허가·명령연월일</td><td colspan="2"></td><td>⑮ 허가·명령의 내용</td><td colspan="2"></td></tr>
<tr><td>⑯ 공 사 담 당 자</td><td colspan="2"></td><td>⑰ 공 사 금 액</td><td colspan="2">원</td></tr>
<tr><td>⑱ 그 밖의 사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8호·제6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6호·제4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 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 시외반출 신고서								처리기간 30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시지정유산의 명칭		⑤ 종별		⑥ 지정번호		⑦ 수 량		
⑧ 규 격				⑨ 보관장소				
⑩ 반 출 목 적								
⑪ 반출대상 시·도				⑫ 보험 방법				
⑬ 반입예정 연월일				⑭ 반입예정 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반출증 보호방법								
⑱ 반출에 관한 협 약 내 용								
⑲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소유자 동의서 1부 2. 시외반출 신고 목록 1부 3. 그 밖의 서류(보험가입증서, 전시계획서, 반출협약서 등 각 1부)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갑지)

<table>
<tr><td colspan="7">서울특별시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반입 신고서</td><td>처리기간
즉시</td></tr>
<tr><td rowspan="2">신 고 인</td><td>① 성 명</td><td colspan="2"></td><td>② 생년월일</td><td colspan="2">(남 □ 여 □)</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④ 유산의 명 칭</td><td></td><td>⑤ 종류</td><td></td><td>⑥지정(등록)번호</td><td></td><td>⑦수량</td><td></td></tr>
<tr><td rowspan="2">반출허가내용</td><td>⑧ 문서번호</td><td colspan="2"></td><td>⑨ 허가연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⑩ 허가조건</td><td colspan="5">(전화 :)</td></tr>
<tr><td>⑪ 반출·반입 연 월 일</td><td>반 출</td><td colspan="2"></td><td>반 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반출입 담당자</td><td>⑫ 성 명</td><td colspan="2"></td><td>⑬ 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⑭ 주 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 rowspan="2">보관장소</td><td>⑮반 출 전</td><td colspan="6"></td></tr>
<tr><td>⑯반 입 후</td><td colspan="6"></td></tr>
<tr><td>⑰ 유산 현황</td><td colspan="7"></td></tr>
<tr><td>⑱ 그 밖의 사항</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9호·제61조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제44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7"></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지정(등록)유산 시외반출 신고 목록		
① 지 정(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유산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유산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유산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유산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유산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유산의 사진
명 칭		
수 량		
④규 격		
⑤ 보 관 장 소		

[별지 제20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
20 일</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①성 명</td><td></td><td>②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③주 소</td><td colspan="4"></td></tr>
<tr><td>④전화번호</td><td></td><td>⑤전자우편
(e-mail)주소</td><td colspan="2"></td></tr>
<tr><td>대 상
시지정유산</td><td>⑥명 칭</td><td></td><td>⑦지정종별
및 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⑧소 재 지</td><td colspan="5">(전화번호)</td></tr>
<tr><td rowspan="3">공개제한
사 항</td><td>⑨제한사유</td><td colspan="4"></td></tr>
<tr><td>⑩제한기간</td><td colspan="4"></td></tr>
<tr><td>⑪제한지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출입허가
신 청</td><td>⑫출입목적</td><td colspan="4"></td></tr>
<tr><td>⑬출입기간</td><td></td><td>⑭출 입 자</td><td colspan="2"></td></tr>
<tr><td>⑮출입지역</td><td colspan="4"></td></tr>
<tr><td>⑯그 밖의
사 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colspan="5">※ 구비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td><td>수 수 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 촬영 허가 신청서</td><td>처리기간
4일</td></tr>
<tr><td rowspan="5">인적사항</td><td>신 청 인</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td><td rowspan="4">(
(</td><td rowspan="4">)
)</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휴대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팩 스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전자우편(e-mail)주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국가유산
시 설 명</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촬 영 용 도</td><td colspan="2"></td><td>촬 영 일 시</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촬 영 인 원
(모델 포함)</td><td colspan="2"></td><td>촬 영 장 비
(소품 포함)</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그 밖의 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을 촬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table>
<tr><td>첨부
서류</td><td>1. 해당 촬영 시나리오 및 촬영계획서 각 1부
2. 촬영 국가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대책 1부
3. 국가유산 보존 준수 서약서 1부
4. 신청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 촬영 허가서

허가내용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촬영일시			촬영시간	
	국가유산 시 설 명			촬영인원	
	촬영내용			촬영장비	
	사 용 료	일금 (₩)			
허가조건 (제한내용)	1. 국가유산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허가받은 차량을 제외하고,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우마차마필 또는 그 밖의 동물 반입을 금함 5. 인공강우·인공강설·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의 반입을 금함 6. 그 밖의 국가유산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7.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함 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지 또는 허가취소될 수 있음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table>
<tr><td colspan="7">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td><td>처리기간
20일</td></tr>
<tr><td rowspan="4">신 청 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td><td colspan="5">( )
( )</td></tr>
<tr><td>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td><td></td><td>팩스번호</td><td></td><td>전자우편
(e-mail)주소</td><td></td></tr>
<tr><td>행사장소
(사용면적, ㎡)</td><td colspan="6"></td></tr>
<tr><td>행사목적 및
필요성</td><td colspan="6"></td></tr>
<tr><td>행사내용</td><td colspan="6"></td></tr>
<tr><td>행사일시/준비일
/철수일시</td><td colspan="6">/ /</td></tr>
<tr><td>진행 및 참가자
인원</td><td colspan="6"></td></tr>
<tr><td>행사도구 및
장비(소품포함)</td><td colspan="6"></td></tr>
<tr><td>기타</td><td colspan="6"></td></tr>
</table>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용장소의 도면 1부 2. 행사추진 계획서 1부 3.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 (국가유산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 1부 4.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5. 그 밖의 참고서류 1부 6.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 1부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 장소사용 허가서

신청인 성명		행사명		
허가내용	행사일시		행사장소 (사용면적)	
	행사내용			
	진행 및 참여인원		진행장비 (소품포함)	
	행사시간		사용료	
허가조건 (제한사항)	1. 국가유산을 훼손하거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화기·취사도구 반입금지 및 화기·취사 행위는 절대 금함 3. 관람객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국가유산 및 관리시설의 훼손 및 손상행위를 금함 5. 행사질서 및 행사장소 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함 6. 허가받은 차량 및 장비, 도구 이외의 반입을 금함 7.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문화유적지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국가유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이 중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⑫기 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table>
<tr><td colspan="4">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 운영위탁신청서</td><td>처리기간
180일</td></tr>
<tr><td colspan="2">법인 또는 단체명</td><td colspan="3">(전화번호 : -)</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신 청 인</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희 망 시 설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그 밖의 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rowspan="2">구비서류</td><td>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td><td colspan="2">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td><td></td></tr>
<tr><td>1.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대표자 증빙서류(단체인 경우)
2. 운영사업계획서 1부</td><td>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단체인 경우)</td><td>수수료
없 음</td></tr>
<tr><td colspan="5">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 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td><td>처리기간
180일</td></tr>
<tr><td colspan="2">법인 또는 단체명</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소 재 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신 청 인</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기 간</td><td>변경 전</td><td></td><td>변경 후</td><td></td></tr>
<tr><td colspan="2">사 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시 설 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그 밖의 사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기간을「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연장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td></tr>
<tr><td rowspan="2">구비서류</td><td colspan="2">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td><td colspan="2">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td><td></td></tr>
<tr><td colspan="2">1.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대표자 증빙서류(단체인 경우)
2. 운영사업계획서 1부</td><td colspan="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단체인 경우)</td><td>수수료
없 음</td></tr>
<tr><td colspan="6">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NO.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조사원증

사진
3㎝×4㎝
(반명함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의 사람은 국가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1.5cm ↓

↑

3.0 cm

↓

↑ 1.5cm ↓

←0.5cm→ ← 2.5cm → ←0.5cm→ ← 4.5cm → ←0.5cm→

86mm×60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8호서식]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소 (전화번호:)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 도	수 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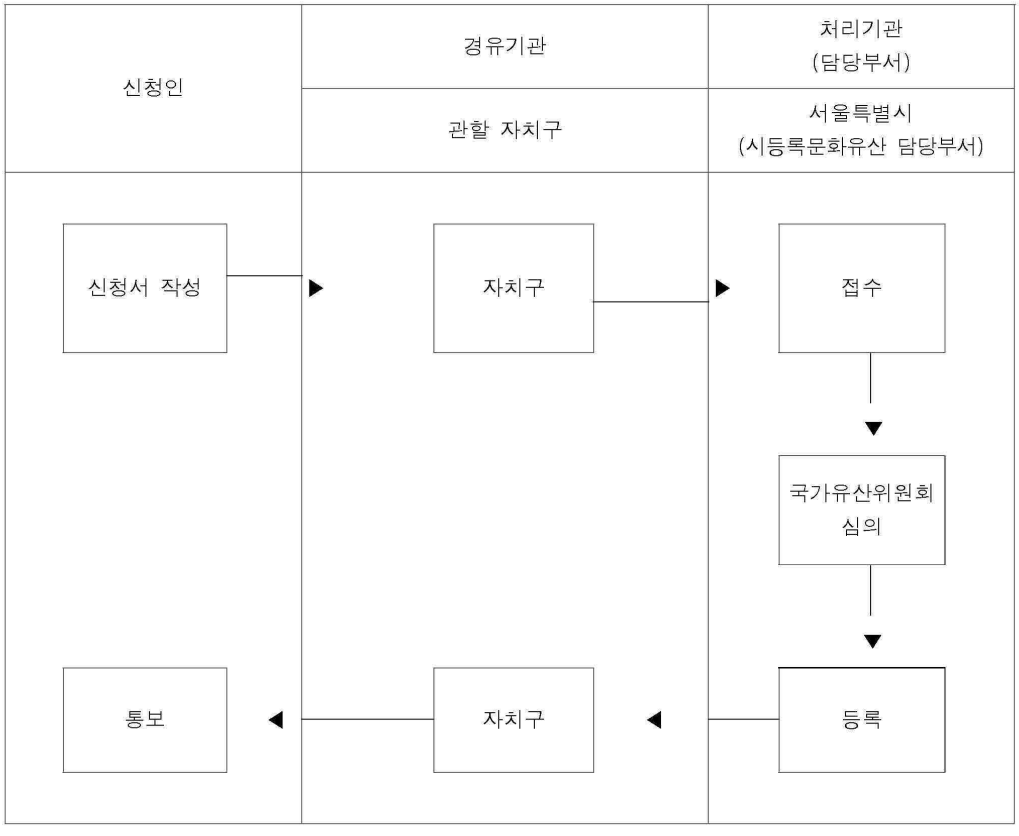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국가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대상 국가유산의 사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대상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국가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록대상물명			사용용도	원) 현)
소 재 지			용도지역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유산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	보존상태			
	관리인력			
	보수관리 실 적		(시기, 사업비, 내용 등)	
	기 타			
활용계획	목 적 · 필 요 성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재원 부담주체 :)	
자 치 구 검토의견	계획적정성			
	유사사례			
	종합의견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관할 자치구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0호서식]

서울특별시 시등록문화유산 대장

(5쪽 중 제1쪽)

등록번호			
명칭	한글		한자
	영문		
분야			재료
등록일			말소일
구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보관장소			
보호물			
부속(시설)물			
소유자	주소		
	성명	(남 □ 여 □)	전화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남 □ 여 □)	전화번호
관리단체	주소		
	단체명		전화번호
점유자	주소		
	성명	(남 □ 여 □)	전화번호
사유			
내용(연혁, 유래, 전설)			
현황			

210mm×297mm [백상지(80g/㎡)]

시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 · 정비 등)

날 짜	내 용

(5쪽 중 제3쪽)

시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등 록 현 황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면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남□여□)	

(5쪽 중 제4쪽)

시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 · 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구 분	날 짜	내 용	비고

(5쪽 중 제5쪽)

시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별지 제31호서식]

서울특별시 시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자치구 경유 2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시등록문화유산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재용도		
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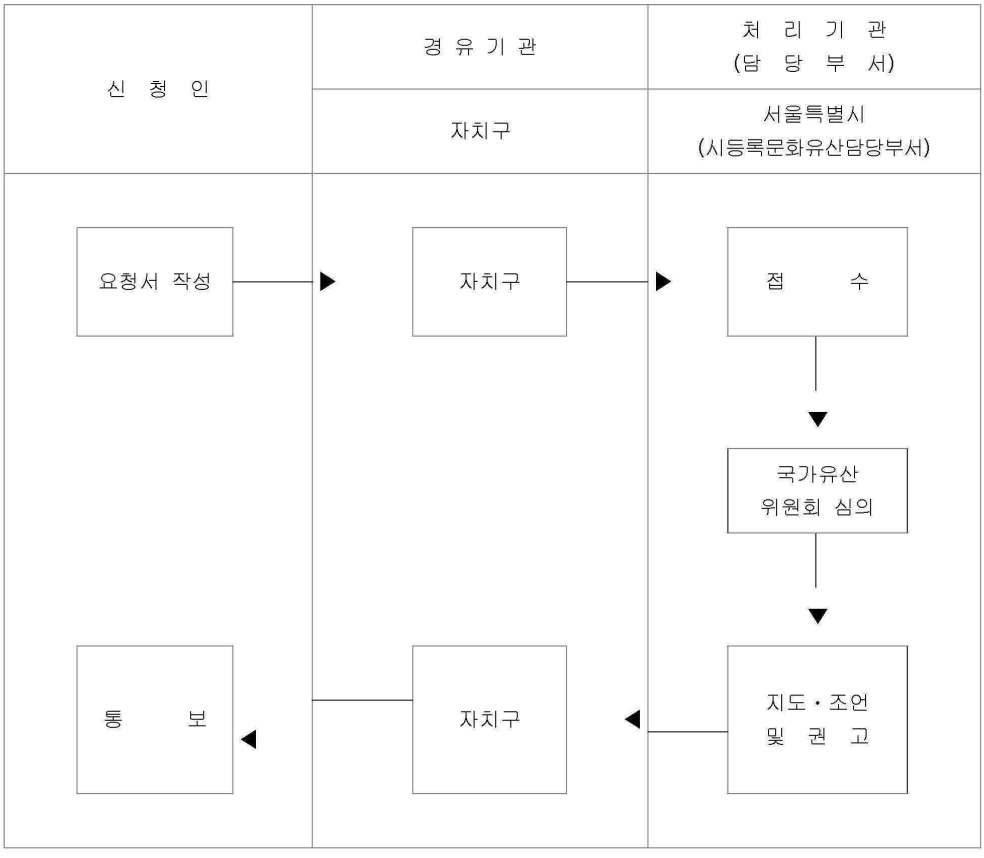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시등록문화유산 수리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서울특별시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자치구 경유 2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시등록문화유산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시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시 행 자	업체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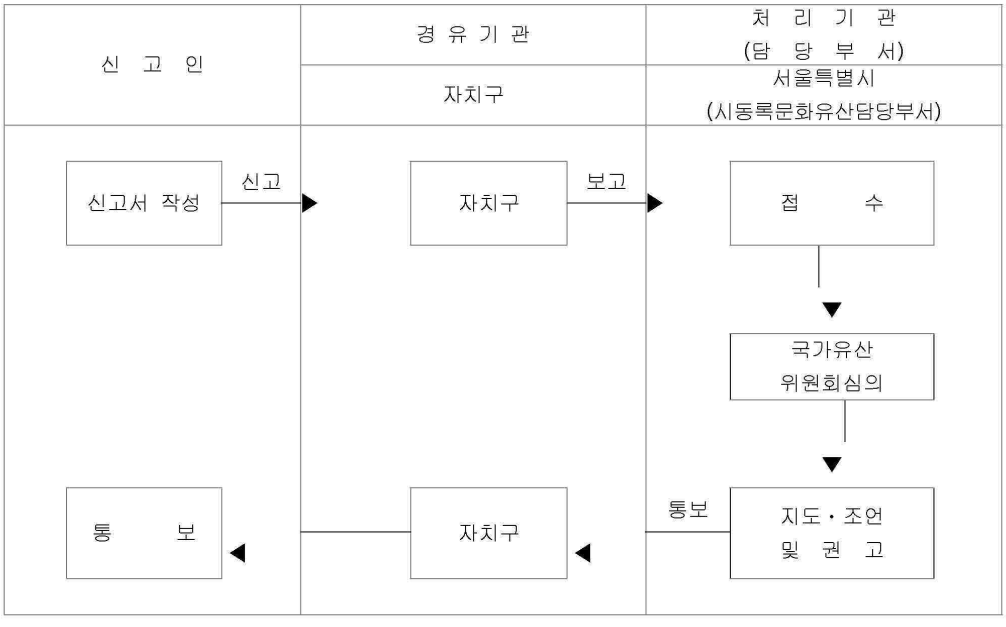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국가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서울특별시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남 □ 여 □)
	주 소		
대상 유산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62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조례)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62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61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서울특별시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남 □ 여 □)
	주 소	
대상유산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 명 칭
	소재지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62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 제62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61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 시등록문화유산 제 호

서울특별시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9조에 따라 위 국가유산을 서울특별시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직인

210㎜×297㎜ [백상지(15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1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서울특별시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명칭	종류	등록 번호	등 록 연월일	수량	발급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발 급 연월일	발급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여□)		

297㎜×210㎜[백상지(80g/㎡)]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21호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운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으로 '세운초록띠광장' 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운초록띠광장' 을 '세운광장' 으로 현행화하여 정비함(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전화: 02-2133-8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2청사 10층 도시정비과
2) 이메일 : mcl88@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해야”를 “사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음향은 허가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2조(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1. ---------- 사용하여야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6. 음향은 허가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1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0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6호(2014.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03.0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9호(2016.09.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5호(2017.0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6호(2017.07.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8호(2018.1.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4호(2018.3.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1호(2018.1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43호(2019.0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12.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34호(2021.12.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7호(2023.02.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5호(2023.05.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409,010.9	-	409,010.9	강동구 천호동일대 기성시가지 재정비 및 활성화, 집창촌과 노후 재래시장 정비 등을 통해 신 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함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9,010.9	-	409,010.9	100.0
획지	소 계	282,893.5	-	282,893.5	69.2
	공동주택용지	45,689.6	-	45,689.6	11.2
	근린생활시설용지	33,468.8	-	33,468.8	8.2
	주상복합용지	27,510.0	-	27,510.0	6.7
	종교용지	453.0	-	453.0	0.1
	존 치	175,772.1	-	175,772.1	43.0
정비기반시설	소 계	126,117.4	-	126,117.4	30.8
	유 수 지	10,626.6	-	10,626.6	2.6
	공공청사	1,406.2	-	1,406.2	0.3
	공 원	35,407.7	-	35,407.7	8.7
	도 로	78,676.9	-	78,676.9	19.2

나. 인구 · 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주 택 수(호)			인 구 수(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488	-	8,488	20,105	-	20,105	-
촉진구역	소 계	1,722	-	1,722	4,306	-	4,306	세대당 약2.5인
	40㎡ 이하	0	-	0	-	-	-	
	40㎡~60㎡	772	-	772	1,930	-	1,930	
	60㎡~85㎡	787	-	787	1,968	-	1,968	
	85㎡ 초과	163	-	163	408	-	408	
존치관리구역		6,766	-	6,766	15,799	-	15,799	현황인구 및 세대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라.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마. 교통계획 : 변경없음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아.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변경없음

자. 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 변경없음

차.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 분		합 계	분 양				임 대				
			소계	60㎡ 이하	60~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기정	1,722	1,528	572	796	160	194	-	144	50	-
	변경	1,722	1,528	578	787	163	194	-	144	50	-
천호1촉진구역	기정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변경	999	882	358	375	149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88	156	22	124	10	32	-	-	32	-
천호3촉진구역		535	490	198	288	4	45	-	45	-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 오기 정정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하.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거. 폐기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너. 방재계획 : 변경없음
더. 정보화계획 : 변경없음
러. 에너지순환계획 : 변경없음
머. 특성화계획 : 변경없음
버. 기타계획 : 변경없음
서.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구역별 정비계획 개요 :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건폐율(%)		용적률(%)			층수				
									평균			최고높이	
				기준	계획	법적상한	완화	계획	기준	완화	계획	기준	계획
재정비 촉진 구역	천호1	기정	38,509.2	50이하	50이하	519이하	519.00	516.20	-	-	-	-	40층(135m)이하
		변경	38,509.2	50이하	50이하	519이하	519.00	516.57	-	-	-	-	40층(135m)이하
	천호2		9,900.9	30이하	30이하	300이하	260.13	298.48	-	-	-	-	23층(70m)이하
	천호3		23,083.7	30이하	30이하	250이하	226.79	248.56	-	-	-	-	25층(78m)이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계획용적률 변경(516.20%→516.57%)	•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사항 반영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 변경

구 분		합 계	분 양				임 대				
			소계	60㎡ 이하	60~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기정	1,722	1,528	572	796	160	194	-	144	50	-
	변경	1,722	1,528	578	787	163	194	-	144	50	-
천호1촉진구역	기정	999	882	352	384	146	117	-	99	18	-
	변경	999	882	358	375	149	117	-	99	18	-
천호2촉진구역		188	156	22	124	10	32	-	-	32	-
천호3촉진구역		535	490	198	288	4	45	-	45	-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 오기정정

3) 정비계획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③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계	38,509.2	-	27,510.0	-	229,188.05	-	50 이하	519 이하	40층이하 135m
	천호1 재정비 촉진구역		획지 1	27,510.0	천호동 423-200번지일원	229,188.05	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50 이하	519 이하	지하5층~지상40층 135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 임대주택 건립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x(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 · 60㎡ 이하 : 469세대(임대주택 117세대) · 60㎡ 초과 ~ 85㎡이하 : 384세대 · 85㎡ 초과 : 146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등)선변 : 3m							
	기타사항		- 획지1과 주차장(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조성							
변경	계	38,509.2	-	27,510.0	-	229,188.05	-	50 이하	519 이하	40층이하 135m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천호1 재정비 촉진구역		획지 1	27,510.0	천호동 423-200번지일원	229,188.05	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519 이하	지하5층~지상40층 135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 임대주택 건립 : (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17%)x(당해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 · 60㎡ 이하 : 475세대(임대주택 117세대) · 60㎡ 초과 ~ 85㎡이하 : 375세대 · 85㎡ 초과 : 149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1(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등)선변 : 3m							

주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되는 관련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심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 2) 획지1은 성인전용시설(성인PC방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을 불허함.
주 3) 보행로와 접한 판매시설 저층부는 3m이상 폭원의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공공보행로를 확보함.
주 4) 필로티부분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의 도입을 권장함.
※ 건축선 후퇴부 전면공지는 보도형으로 조성(단, 소로3-8호선변 공지 중 폭1~2m는 차도로 조성 후 도로관리청(강동구)이 지상권 설정)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 추가 • 획지1과 주차장(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삭제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용도 추가 • 사업시행변경인가사항을 반영 • 오기정정

④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⑤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⑦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38,509.2	-	38,509.2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 신설

①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총 계		38,509.2	-
주거지역	소 계	31,925.2	-
	제3종일반주거지역	4,521.2	-
	준주거지역	27,405.0	-
상업지역	소 계	6,583.0	-
	일반상업지역	6,583.0	-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신설

①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1	406	20~23	보조간선도로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도로	-	01. 6. 2.	-
신설	중로	3	7	12~15	집산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도로	-	69. 1.18.	-
신설	중로	2	1	15	집산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도로	-	69. 1.18.	-

②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47-1	-	소공원	422-1번지 일원	3,115.0 (5,421.0)	-	3,115.0 (5,421.0)	-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 ( ) 천호3구역 소공원 중복결정 합산면적임

③ 주차장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주차장	천호동 422-1	4,521.2 (6,827.2)	-	4,521.2 (6,827.2)	-	공공청사 및 소공원(천호1, 천호3) 중복결정

※ ( ) 천호3구역 소공원 중복결정 합산면적임

④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공공청사	-	천호동422-1	1,406.2	-	1,406.2	09.11.26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⑤ 체육시설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체육시설	수영장	천호동422-1	4,521.2 (6,827.2)	-	4,521.2 (6,827.2)	21.12.2	공공청사 및 소공원(천호1,천호3) 중복결정 (지하1층~지하3층 일부)

※ ( ) 천호3구역 소공원 중복결정 합산면적임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신설

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	면 적(㎡)	비율	비 고
획지	소계	27,510.0	100.0	
	획지1	27,510.0	100.0	-

②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내 용
허용용도	·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상 주된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 성인전용시설(성인PC방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

③ 건축물의 개발밀도 결정조서

Ⓐ 건폐율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계획

구 분	기준	허용	상한	비 고
용적률	350% 이하	-	519% 이하	

Ⓒ 높이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높이	최고층수 40층 이하, 최고높이 135m 이하	

③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결정도면 참고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보도형전면공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결정도면 참고
공개공지		· 도로의 결절점 등 주민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위치지정(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제외) - 공개공지1 : 400㎡ 이상 확보 - 공개공지2 : 1,290㎡ 이상 확보	
통로	공공보행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공공보행통로 1 : 폭원=10m, 연장=110m(획지1구간) - 공공보행통로 2 : 폭원=10m, 연장=95m (소공원 및 공공청사 부지내 천호3구역과 구간과 공동조성)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내에서는 차량출입을 허용하지 않음	결정도면 참고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도시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도시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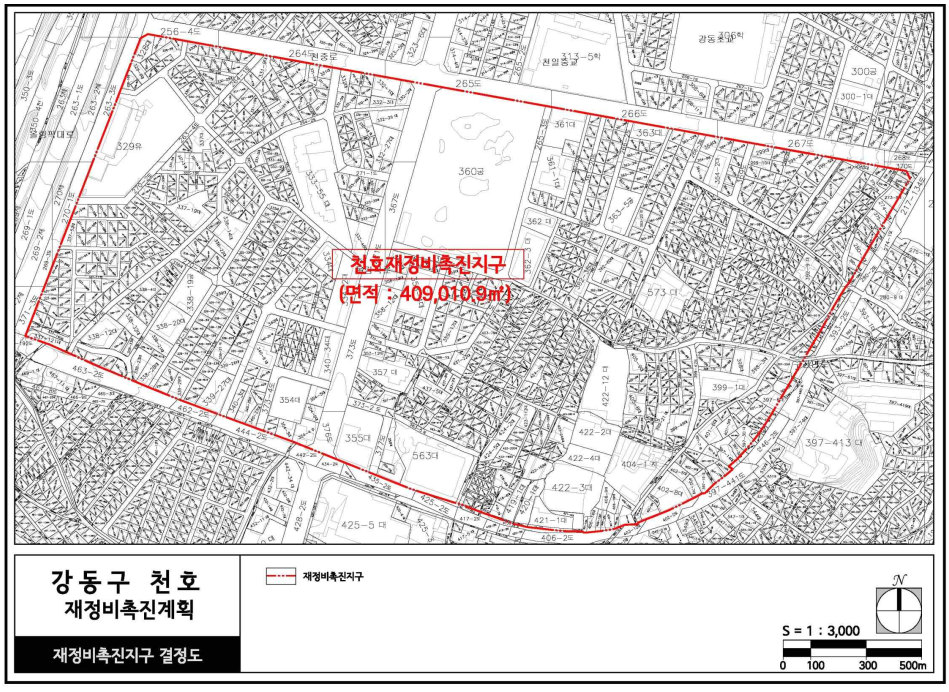
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①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②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①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②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①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② 체육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① 유수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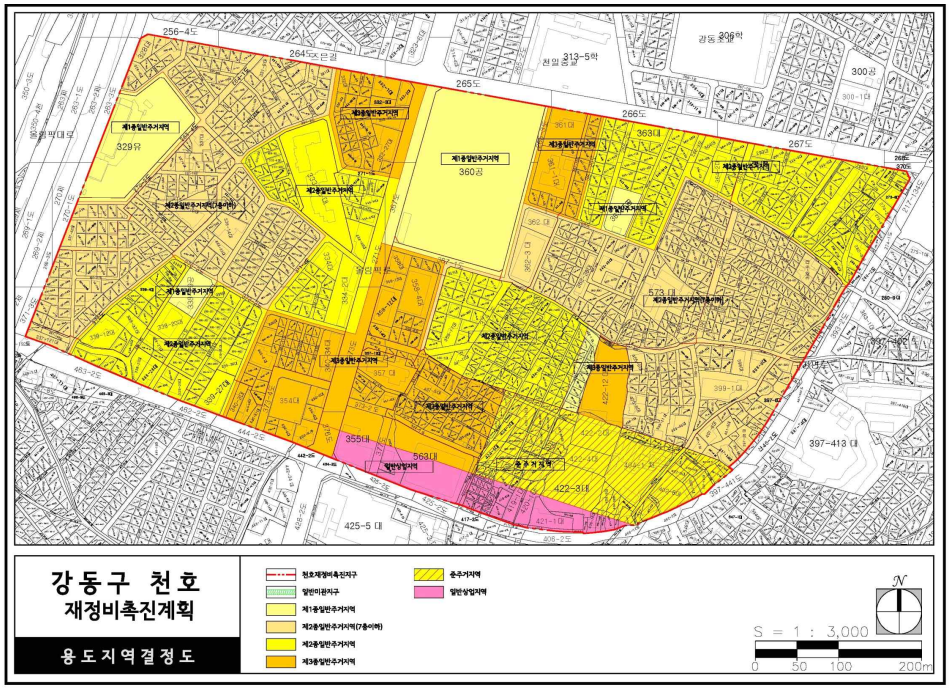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6)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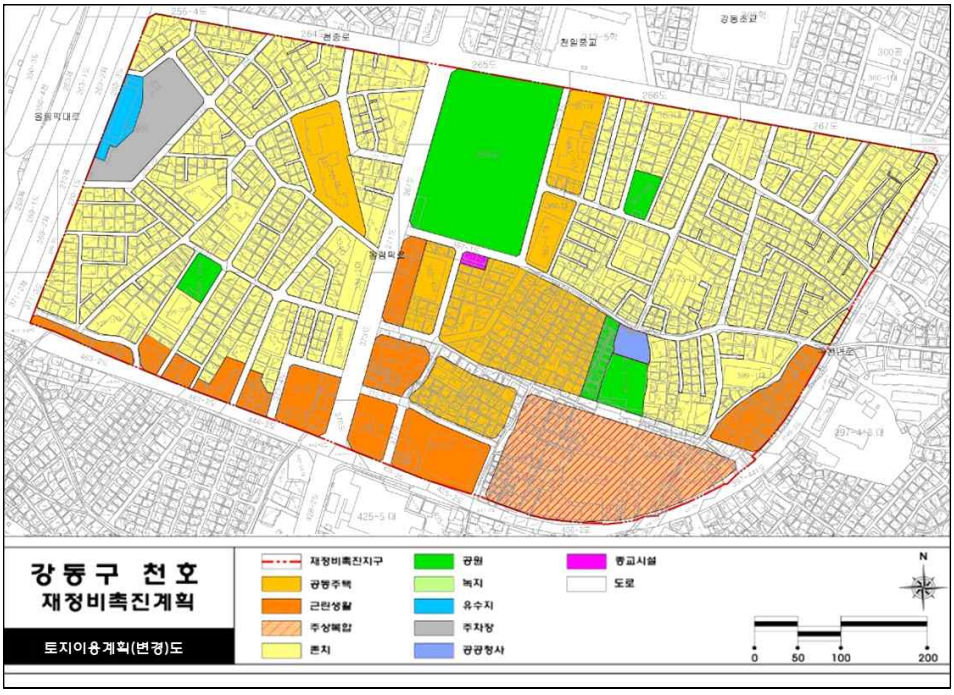
[천호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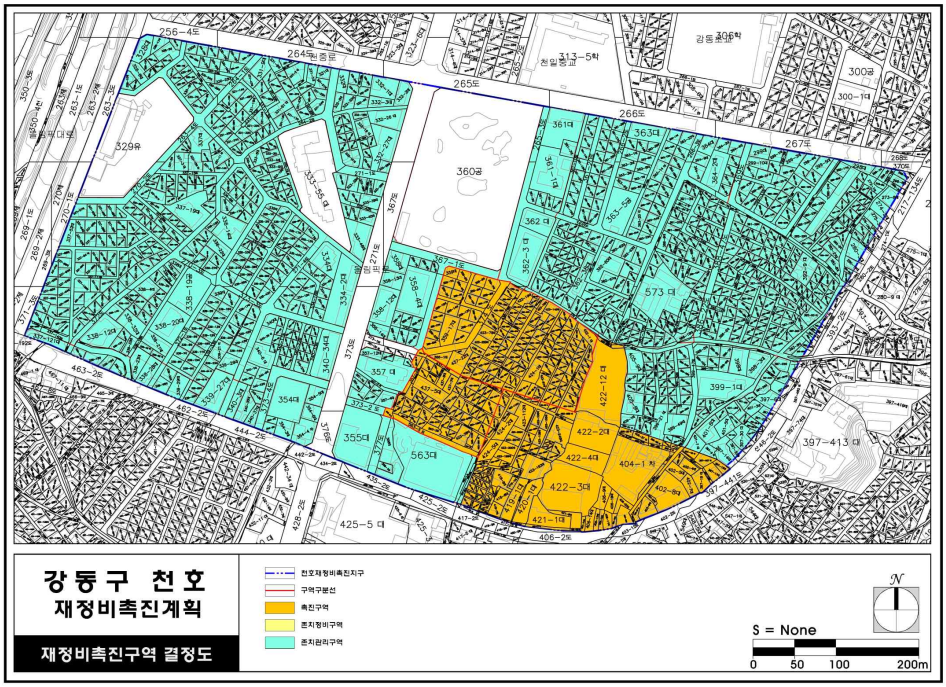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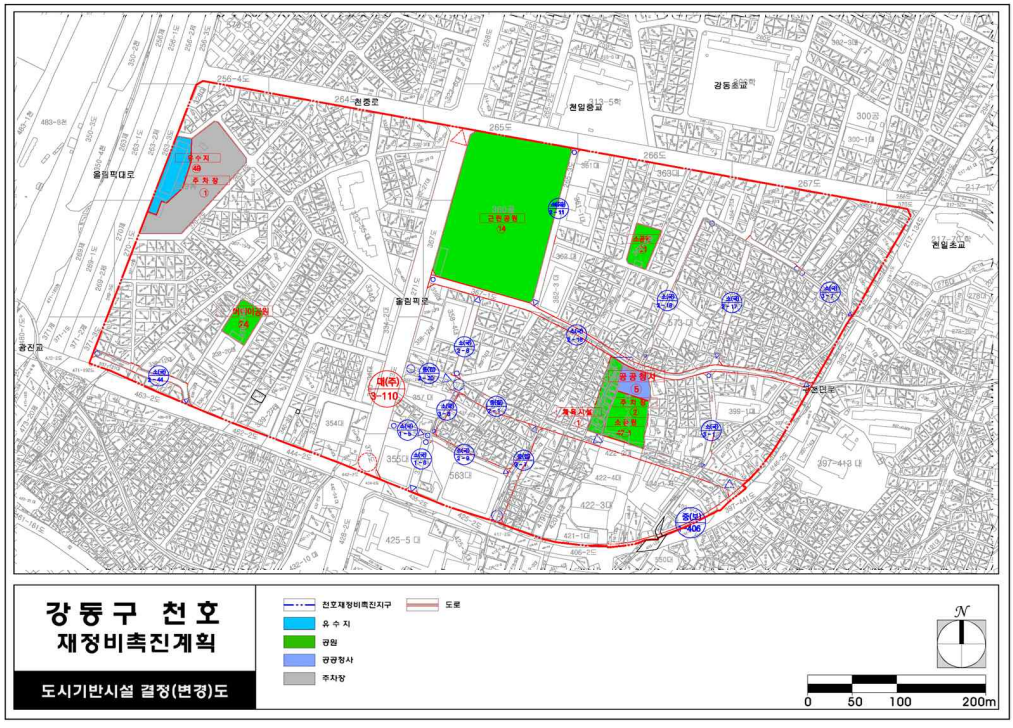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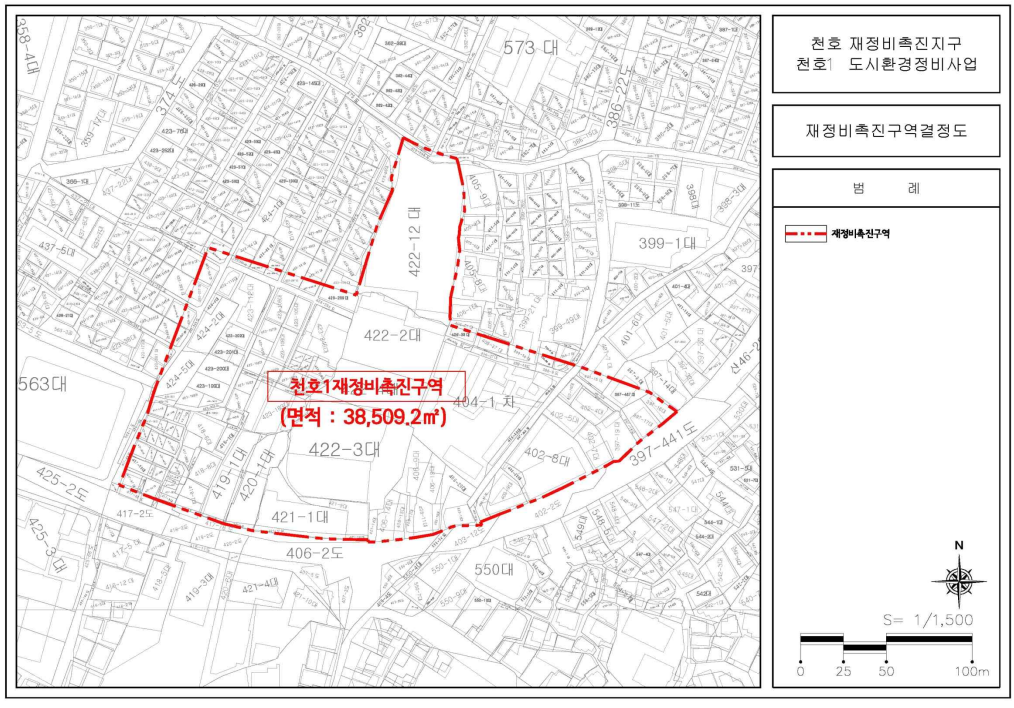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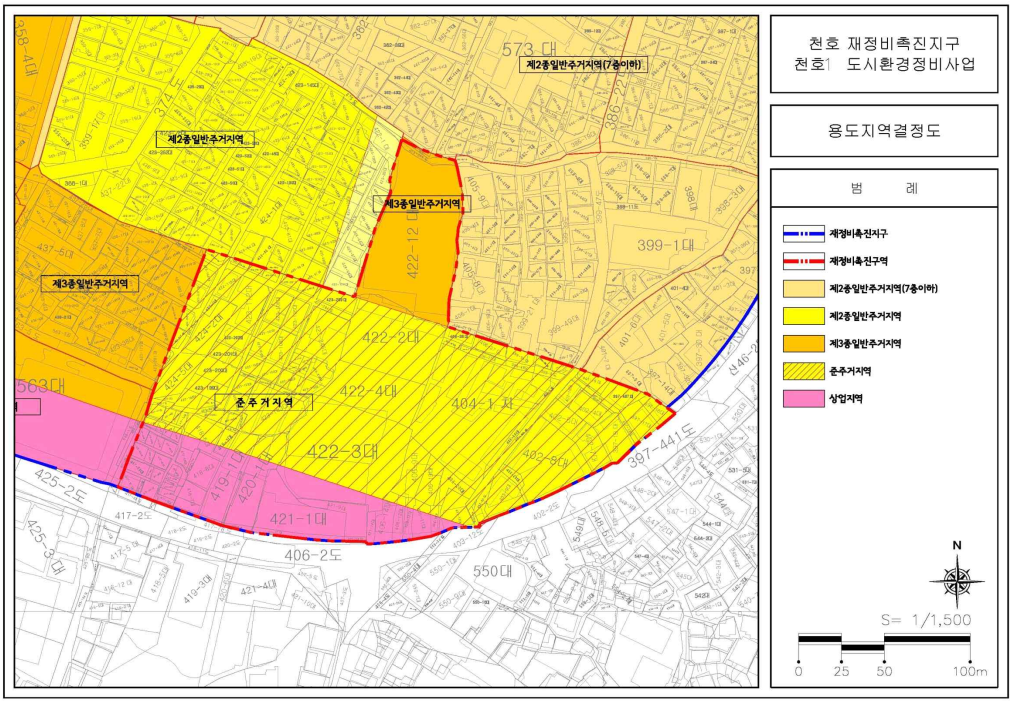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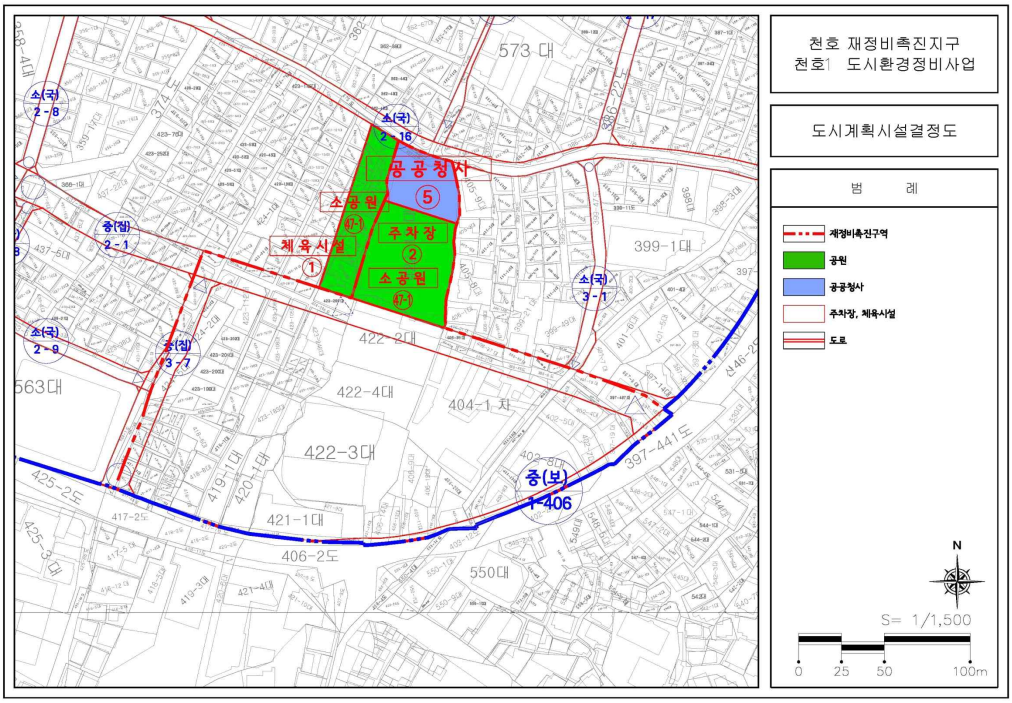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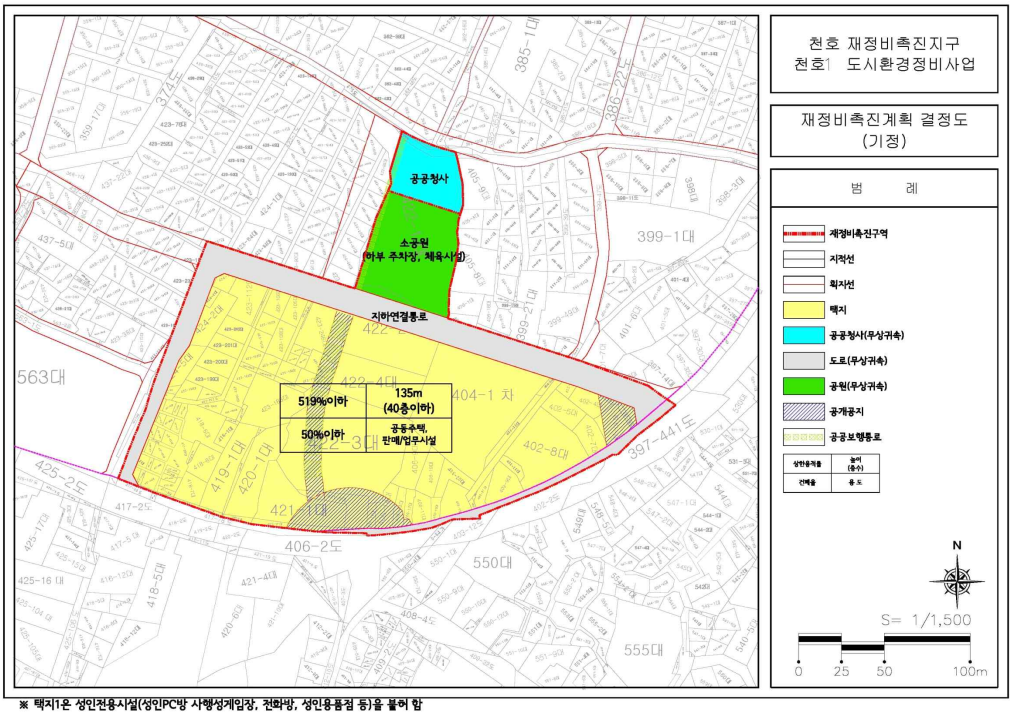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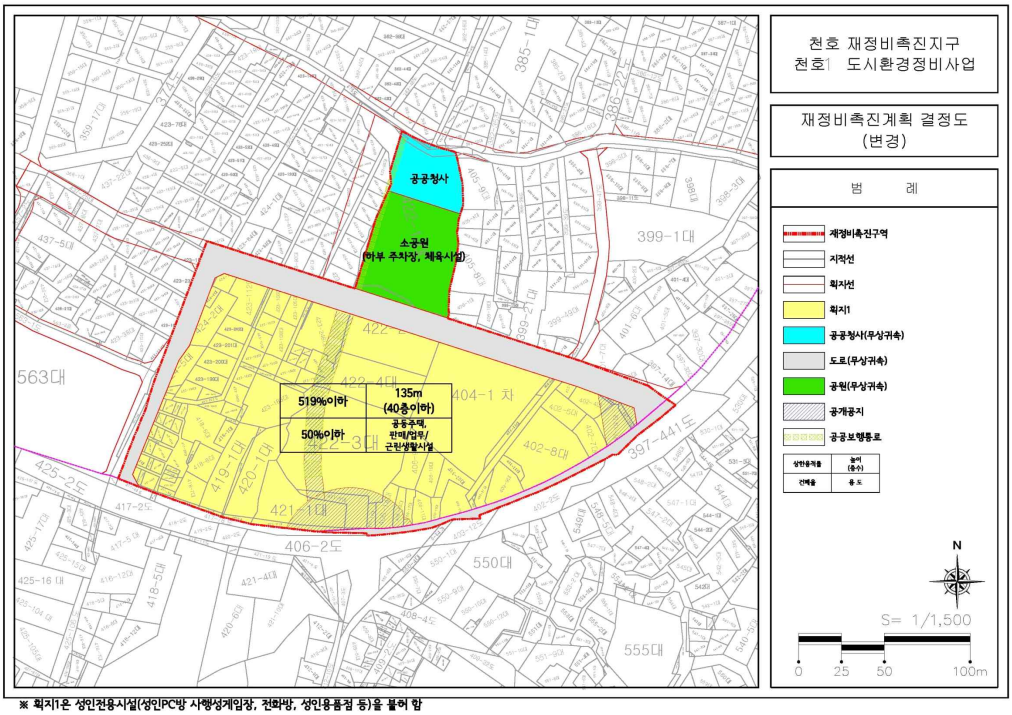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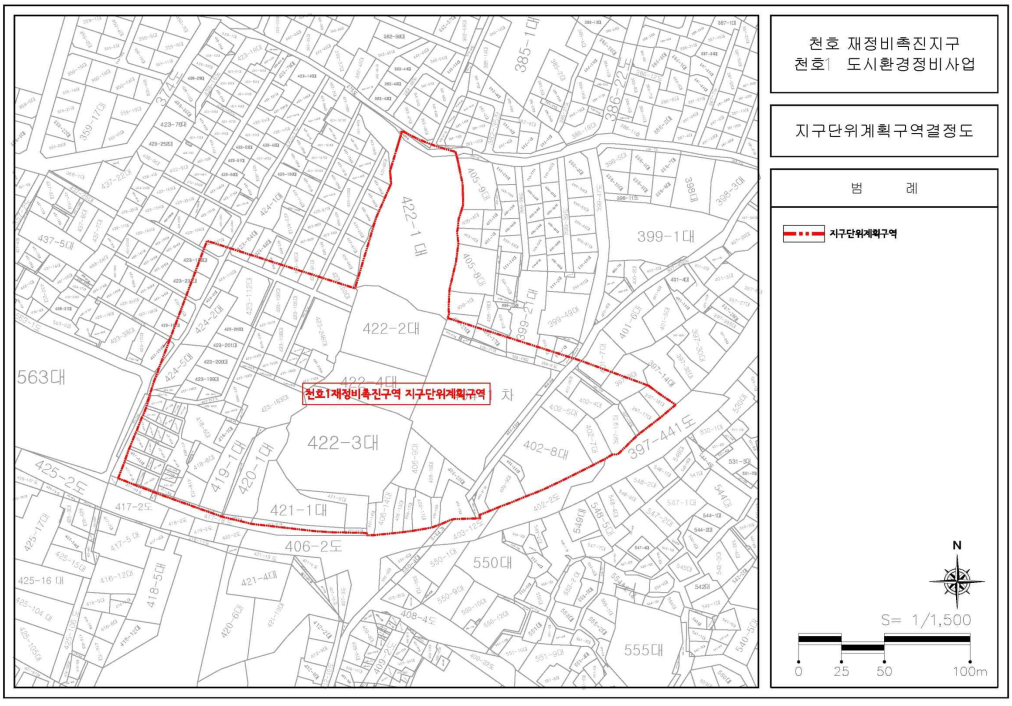
※ 택지1은 성인전용시설(성인PC방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을 불허 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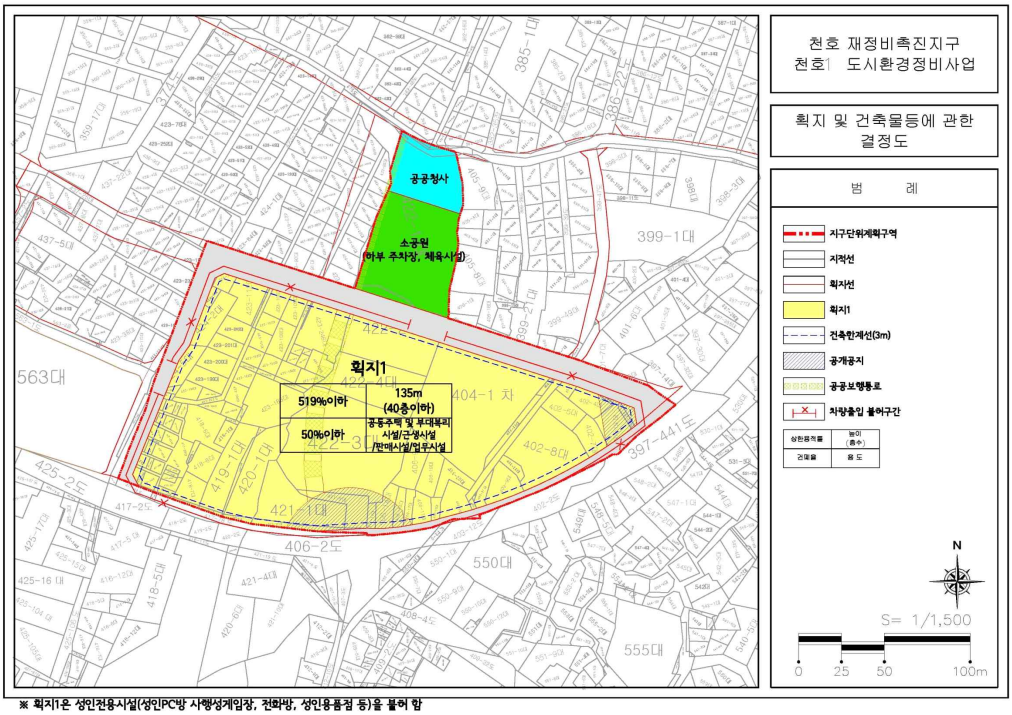


※ 획지1은 성인전용시설(성인PC방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을 불허 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획지1은 성인전용시설(성인PC방 사행성게임장,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을 불허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등 관내 공원에 대하여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그 명칭을 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원명칭 제정 내역

연번	구분	공원세분	위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
1	제정	역사공원	중구 삼각동 118일대	397.5	청계천한빛공원	
2	제정	소공원	중구 신당동 856-6	292.9	난계로공원	
3	제정	소공원	중구 인현동2가 240-2	1,316.4	인현공원	
4	제정	소공원	성북구 보문동1가 228-2	953.0	보문공원	
5	제정	소공원	동대문구 용두동 47-41일대	497.2	다은공원	
6	제정	소공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53-43	142.0	중산공원	
7	제정	소공원	영등포구 당산동4가 99-1	396.0	영신공원	
8	제정	소공원	영등포구 문래동4가 67-1	1,194.6	해무리공원	
9	제정	소공원	영등포구 문래동4가 68-1	1,007.8	달무리공원	
10	제정	소공원	영등포구 신길동 4950-1	1,024.2	화담공원	
11	제정	소공원	영등포구 대림동 1124-3	395.0	원두막공원	
12	제정	소공원	서초구 방배동 3278-1	1,417.8	새봄공원	
13	제정	소공원	강동구 상일동 519-1	1,091.8	알콩이공원	
14	제정	소공원	강동구 상일동 520-1	1,252.6	달콩이공원	
15	제정	소공원	강동구 고덕동 691-3	527.0	까치소식공원	
16	제정	소공원	강동구 암사동 674	1,228.0	암사별빛공원	
17	제정	소공원	강동구 길동 478	732.0	해돋이공원	
18	제정	수변공원	강동구 상일동 511	1,171.7	게내수변공원 3호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02-2133-2036) 및 중구 공원녹지과(☎02-3396-5854), 성북구 공원녹지과(☎02-2241-3682), 동대문구 정원도시과(☎02-2127-4775), 영등포구 푸른도시과(☎02-2670-3757), 서초구 공원녹지과(☎02-2155-6864), 강동구 푸른도시과(☎02-3425-8823)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5호

도시관리계획(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2024.03.29.)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24-886호(2024.05.02.)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강서구 발산역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	증) 2,718.2	2,718.2		-

▢ 변경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2,718.2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2)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718.2	-	2,718.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718.2	감) 2,718.2	-		
	준주거지역	-	-	2,718.2	100.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2,718.2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 기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획지1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2,718.2	

▢ 변경사유서

구분	획지		변경사유
	위치	면적(㎡)	
신설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2,718.2	•단일 소유 필지인 대상지 전체를 단일 획지로 지정

나)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용도	비고
불허용도 (A)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숙박시설, 종교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연순환관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내발산동 652-4번지에 한함
지정용도 (가)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제외)는 전체용적률의 10%이상)	

※ 공동주택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을 위한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신설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을 위한 불허용도, 지정용도 신설

다)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밀도계획	비 고
건폐율	•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적용
용적률	•기준용적률 : 180% •허용용적률 : 200% •상한용적률 : 400% 이하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높 이	•50m 이하	•건축물 높이제한은 수평표면 해발 61m 이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최고높이 설정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을 위한 밀도계획 결정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을 위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결정

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관한 결정조서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용적률) 기준</th><th>적용</th><th>비고</th></tr>
<tr><td>우수디자인</td><td>15%</td><td>5%</td><td rowspan="3">모든 항목 충족시 20% 적용</td></tr>
<tr><td>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td><td>
<table>
<tr><th>구분</th><th>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th><th>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th></tr>
<tr><td>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td><td>9%</td><td>6%</td></tr>
<tr><td>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td><td>6%</td><td>3%</td></tr>
</table>
</td><td>6%</td></tr>
<tr><td>지능형 건축물</td><td>
<table>
<tr><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r>
<tr><td>15%</td><td>12%</td><td>9%</td><td>6%</td></tr>
</table>
</td><td>9%</td></tr>
</table>

※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결정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건립을 위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결정

4)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대지내 공지	•기존 보행로와 개발 후 역세권 보행환경 고려 역으로의 보행편의 위한 적정 위치 및 폭원 확보 권장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보도형 전면공지 : 도로변 2m	지침도 참조
건축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가로경관 입면계획 및 형태 · 입면계획 적용	•입면분절 및 입체적 디자인 적용을 등을 통해 리듬감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삭막하고 위압적인 이미지 완화 유도 •건축물 내 열린 공간 형성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형성 •필로티 조성을 통하여 보행자 시점에서 쾌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나)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내용	공공기여계획	비고
공공임대 주택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25.00% 이상 (679.55㎡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492.59㎡ (18.12%)	완화된 용적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의 ½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공공기여 시설			공공기여시설 부속토지	203.43㎡ (7.48%)	
			용도	지역주거복지센타	
			위치	지상 1층 일부 ~ 지상 2층	
합 계	-	-	공공기여 부속토지	696.02㎡ (25.60%)	

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임대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에 한함

※ 공공기여계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2023.2.1.)를 적용하여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은 서울시로 무상귀속 됨

※ 2024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의견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
· 차량진출입 램프 구간은 회전반경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검토
· 우수디자인 인센티브(5%)는 입면 등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
· 근린생활시설은 가로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 조정 검토
· 주거시설을 위한 1층 로비공간 조성 및 자전거보관소 위치 조정 검토
· 공공시설 이용 효용성 제고 방안과 연계하여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위치 조정 검토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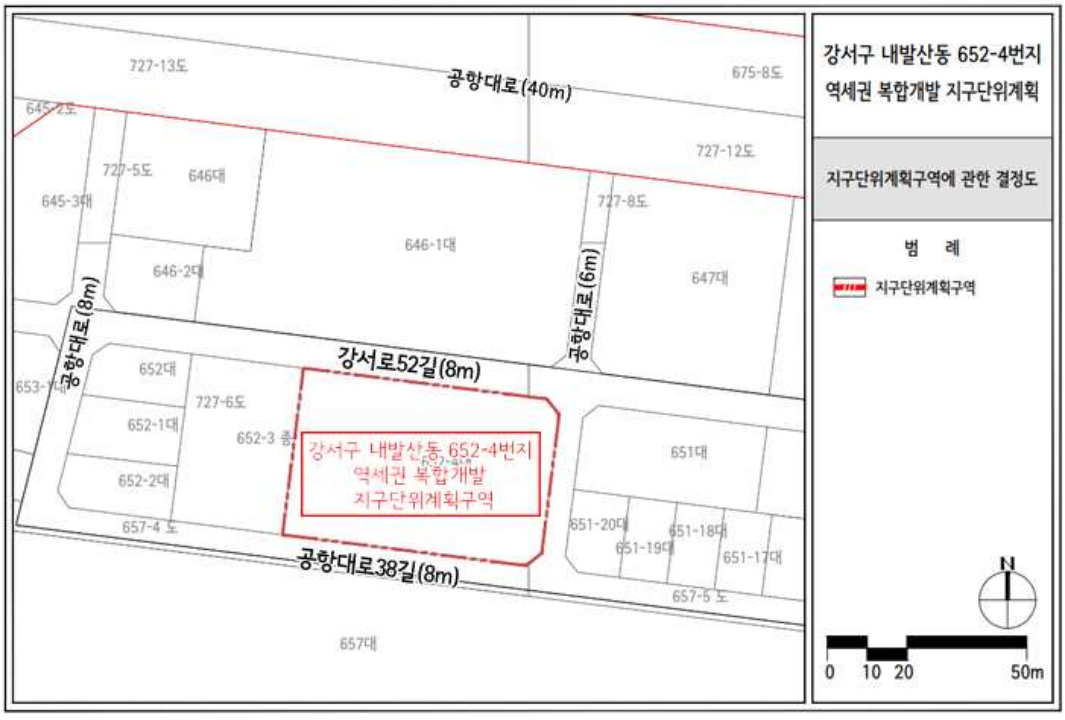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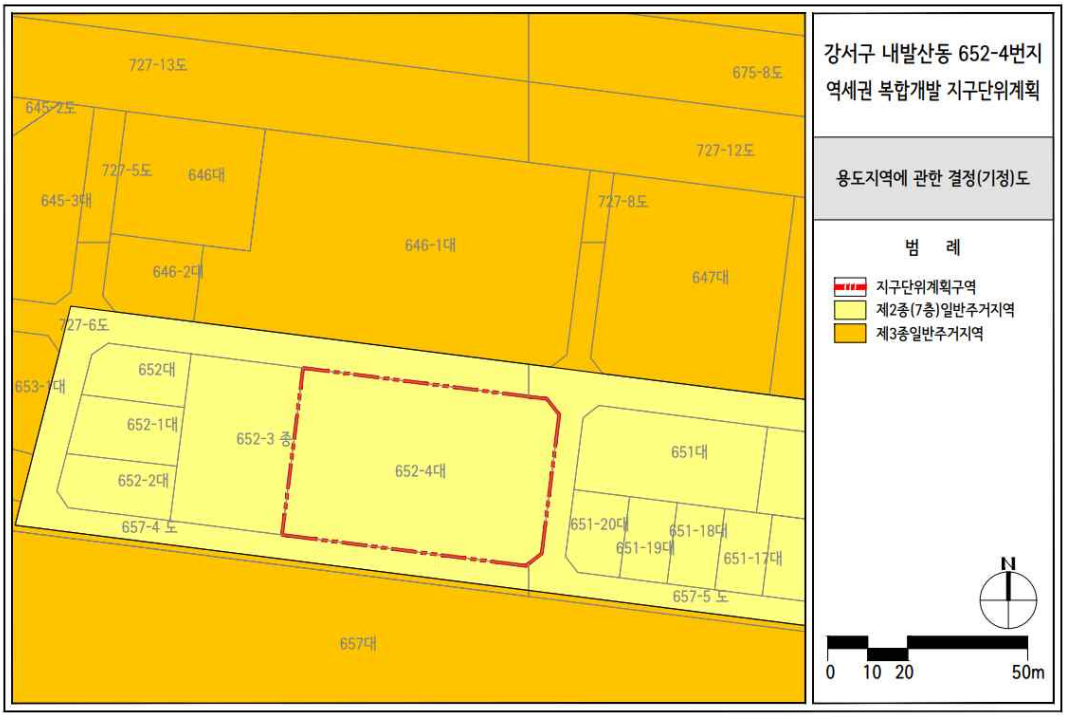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02-2133-8384) 및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84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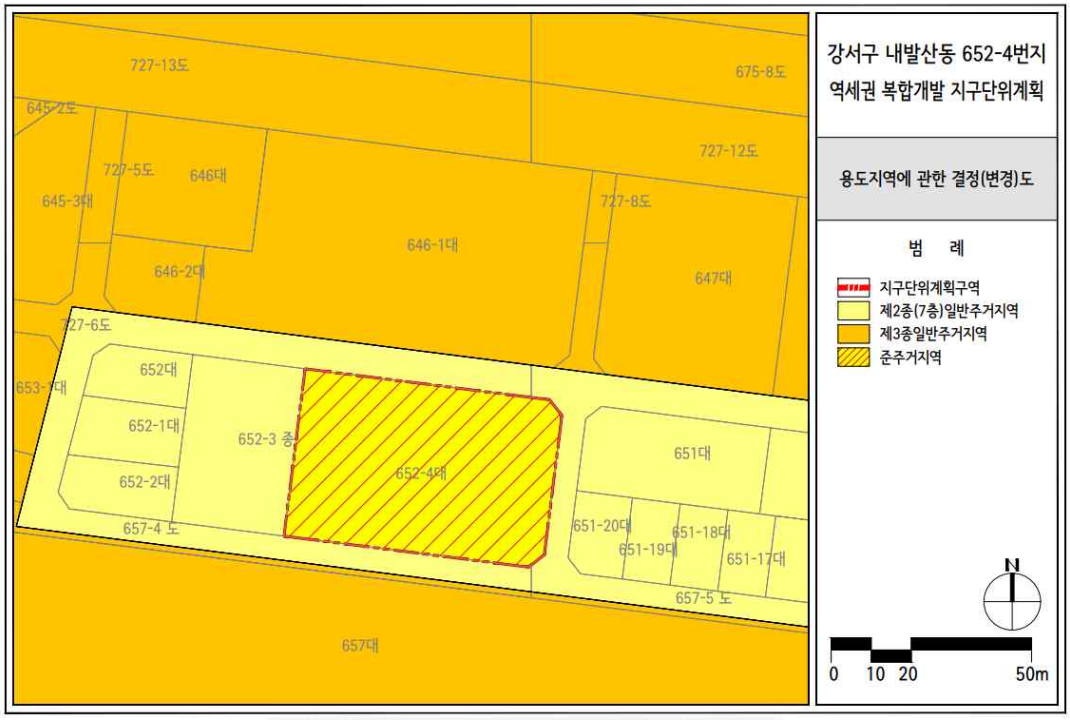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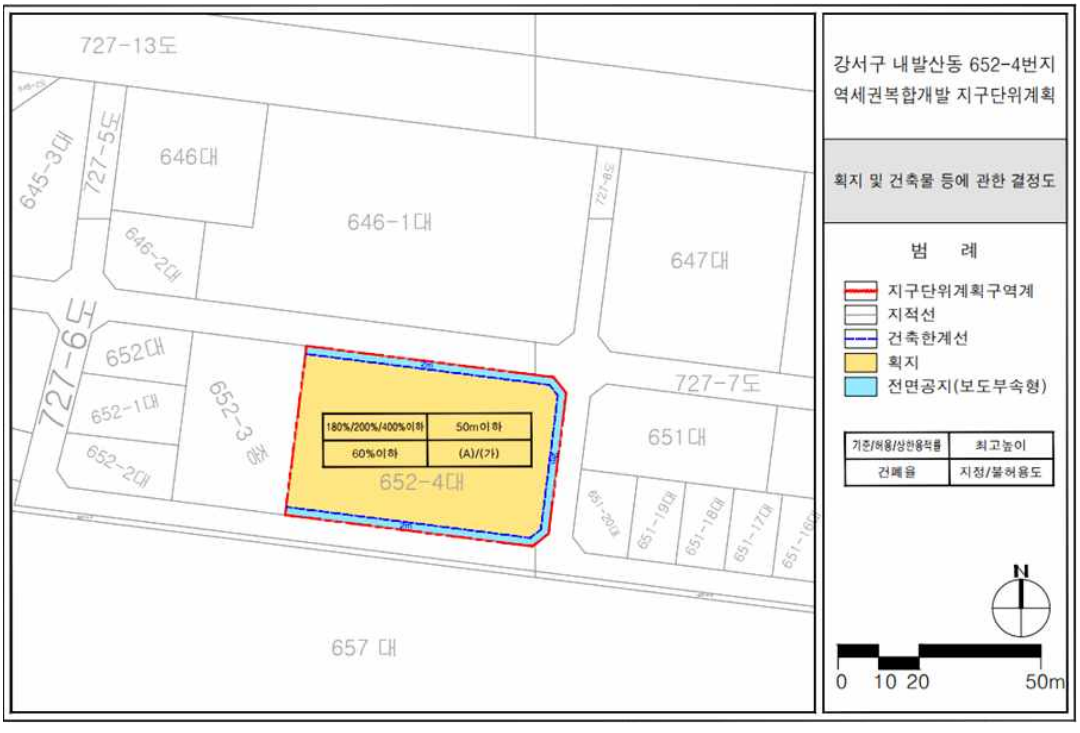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강서구 고시 제132호(2005.11.24.)로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궁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궁산	근린공원	강서구 가양동 산8-1일대	135.002.7	감) 34	134,968.7	1977.7.9 (건고시 138호)	

○ 공원변경 사유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궁산 근린공원	공원 면적 변경 (감34㎡) 135,002.7㎡→134.,968.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입안 거부처분에 대한 권익위 시정권고, 행정심판 재결 등에 따른 공원 일부 해제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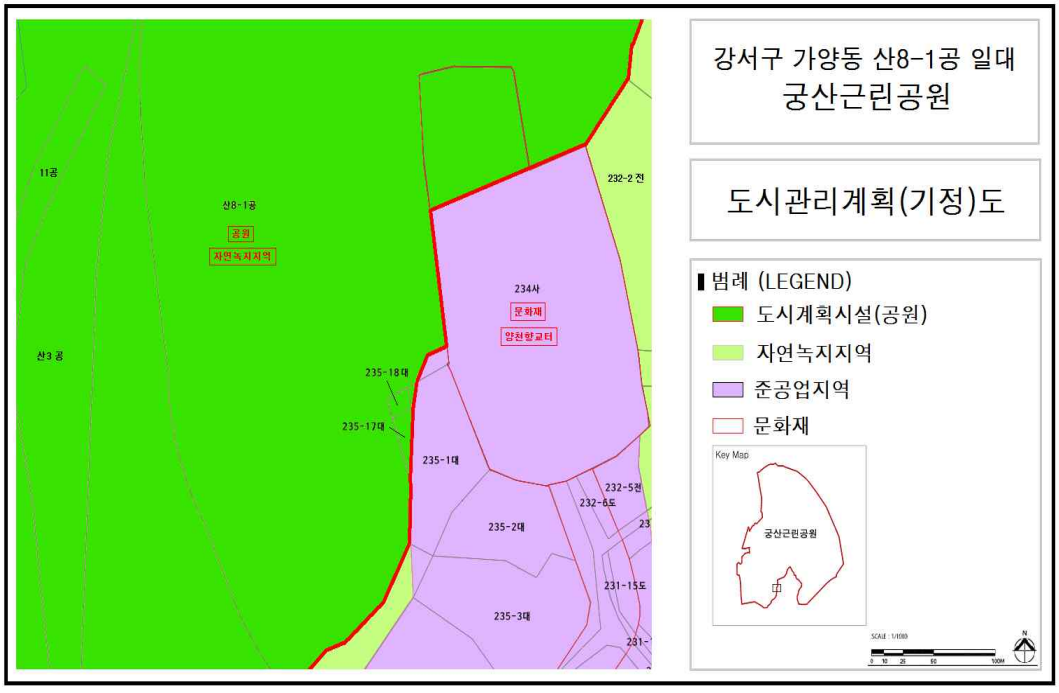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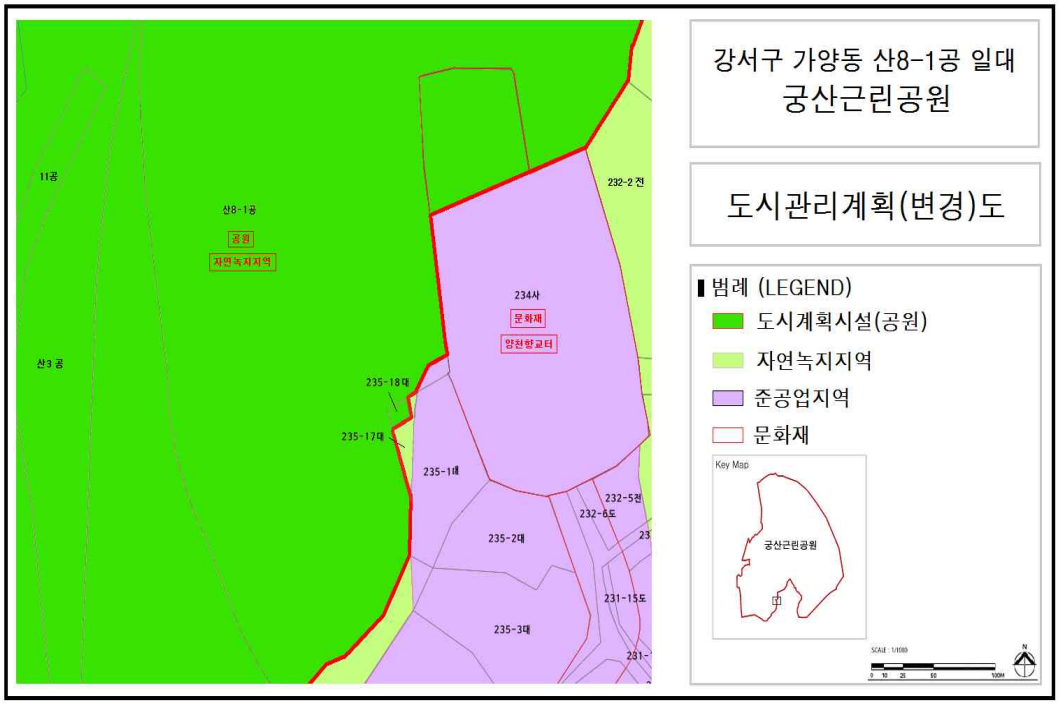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58),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67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7호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잠실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추진단계	비고 (최초결정고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120,354.0	조합설립인가 (인가일 : 2021.6.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01호 2015.12.17.

나. 해제기한 연장 : 2026.6.11.까지(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4)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02-2147-288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0-254호(2020.6.29.)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기재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지
   - ’20년 6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 20.6.29.)에 근린공원으로 착오 결정한 사항 정정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온수	근린공원	양천구 신월동 331-5일대	427,993.0	감)2,755.6	425,237.4	’71.08.07 (건고 제46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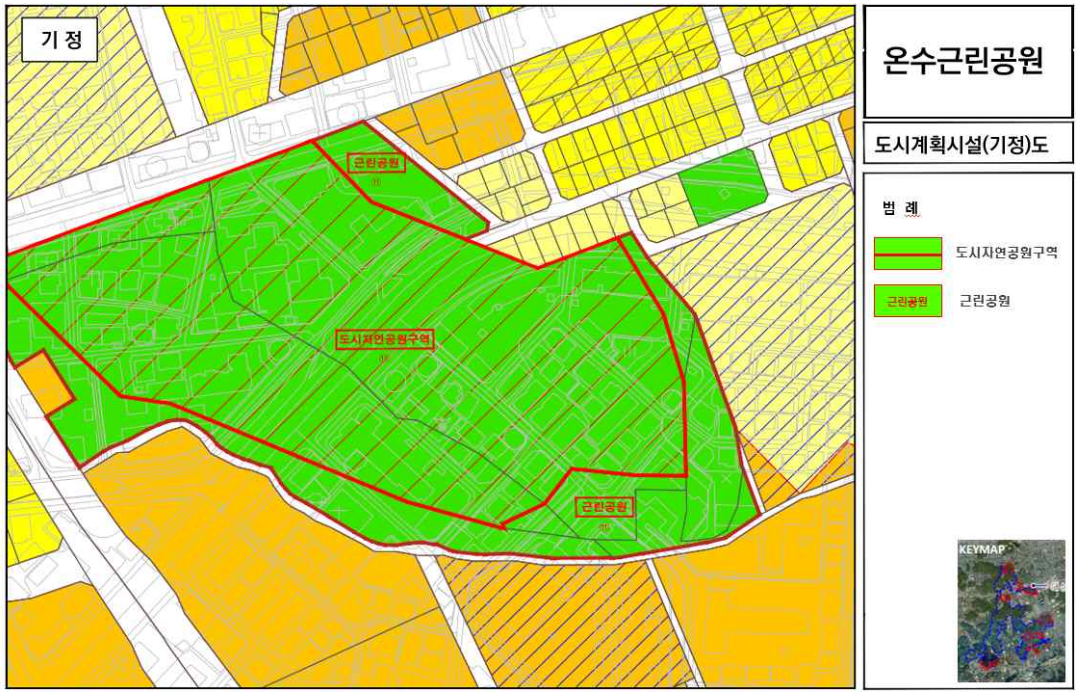
○ 공원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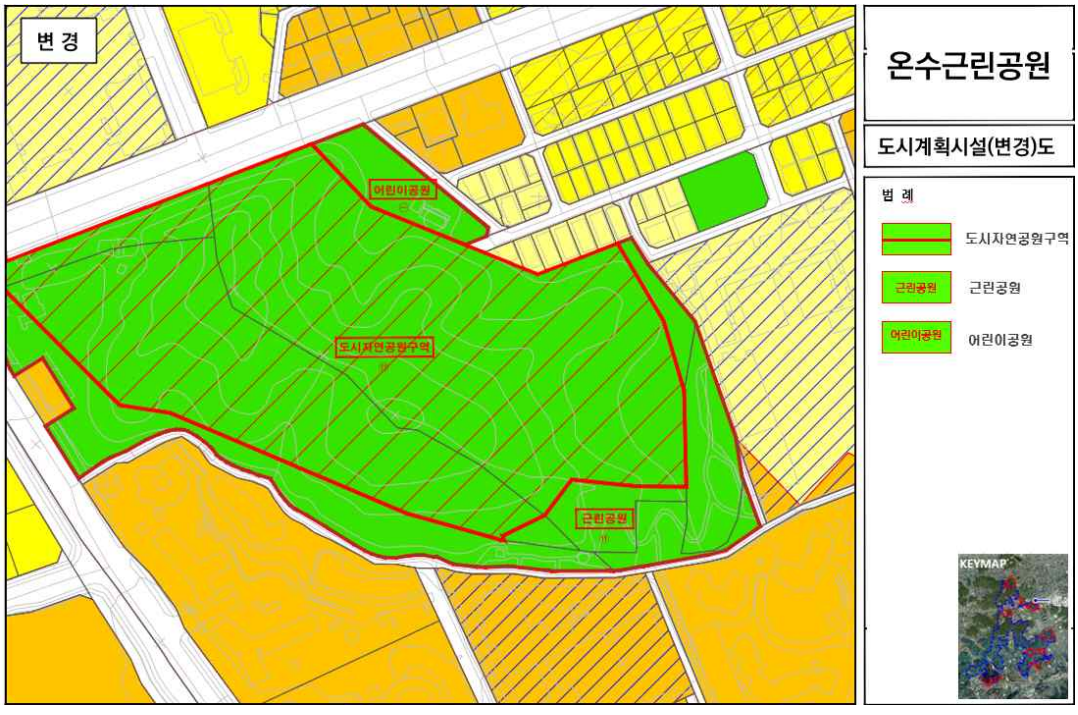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온수 근린공원	공원 면적 변경 (감2,755.6㎡)	- 20.06.29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 (2020.6.29.) 결정 내용 중 착오 사항 정정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58), 양천구 공원녹지과(☎02-2620-456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80호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16호」(2021.07.01.)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 명 칭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식회사
  - ○ 대표자 성명 : 이준성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신내동, 부영빌딩)
  -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7492286

- 변경
  - ○ 명 칭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식회사
  - ○ 대표자 성명 : 이준성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라길 15-2, C동 204호(상봉동, 대성쉐르빌)
  -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7492286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기정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상봉동 2동 (상봉동)	109-28	대	1,818.4	1818.4	[위탁자]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신내동, 부영빌딩)	100%			
2		109-29	대	705.5	705.5						
3		109-53	대	875.5	875.5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	–
4		109-62	대	669.6	669.6						
합계				4,069.0	4,069.0	–					

– 변경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상봉동 2동 (상봉동)	109-28	대	1,818.4	1818.4	[위탁자]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라길 15-2, C동 204호(상봉동, 대성쉐르빌)	100%	–	–	–
2		109-29	대	705.5	705.5				–	–	–
3		109-53	대	875.5	875.5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	–
4		109-62	대	669.6	669.6				–	–	–
합계				4,069.0	4,069.0	–					

2) 물건조서
- 대상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5개동은 2020.08.04. 멸실, 2020.09.10. 등기기록 폐쇄로 인한 잔존 건축물 및 지장물은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6층 주택공급과(02-2133-6293)와 중랑구청 2층 주거개선과(02-2094-28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 기정
○ 명 칭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이준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신내동, 부영빌딩)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7492286

- 변경
○ 명 칭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식회사
○ 대표자 성명 : 이준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라길 15-2, C동 204호(상봉동, 대성쉐르빌)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7492286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 기정

1) 수용인구 : 921인

2) 주택건설계획 : 782세대 (공공임대주택 232세대, SH선매입 63세대, 민간임대 487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9 Type	220	28.13%	220	23.90%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62 Type	12	1.53%	32	3.45%	
	소계	232	29.67%	252	27.35%	
SH공사선매입	29 Type	42	5.37%	42	4.56%	
	52 Type	21	2.69%	56	6.04%	
	소계	63	8.06%	98	10.6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9 Type	436	55.75%	436	47.36%	
	52 Type	21	2.69%	56	6.04%	
	62 Type	30	3.84%	80	8.64%	
	소계	487	62.28%	571	62.04%	
합 계		782	100.00%	921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 변경

1) 수용인구 : 921인

2) 주택건설계획 : 782세대 (공공임대주택 183세대, SH선매입 199세대, 민간임대 400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9 Type	181	23.15%	181	19.66%	청년안심주택 건설·공급
	62 Type	2	0.26%	5	0.58%	
	소계	183	23.40%	186	20.24%	
SH공사선매입	29 Type	157	20.08%	157	17.05%	
	52 Type	42	5.37%	111	12.09%	
	소계	199	25.45%	268	29.1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9 Type	360	46.04%	360	39.10%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62 Type	40	5.12%	106	11.51%	
	소계	400	51.15%	466	50.62%	
합 계		782	100.00%	921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다) 용적률 적용(의무사항)(변경)

– 기정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기정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 공공기여율 – 25%(1,017.25㎡)이상 • 추가 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31.38%(1,276.82㎡) • 공공시설 대지지분 – 5.27%(214.47㎡) • 총 공공기여 – 36.65%(1,491.29㎡)	기본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10% 이상	• 5,048.73㎡(12.93%) – 지상 연면적 기준		
		주거비율	• 90% 이하	• 34,011.22㎡(87.07%) – 지상 연면적 기준		
	주택 건설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8㎡ 이상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232세대) : SH선매입(63세대) : 민간임대(487세대) = 29.67% : 8.06% : 62.28% • 공공임대주택 – 전용 23㎡, 48㎡ • 민간임대주택 – 전용 23㎡, 39㎡, 48㎡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99)×2.5㎡×1.25 = 1,509.38㎡	•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 1,518.94㎡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변경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변경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 공공기여율 – 25%(1,017.25㎡)이상 • 추가 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20.08%(817.09㎡) • 패션봉제시설 – 13.86%(564.12㎡) • 주거안심센터 – 8.55%(347.79㎡) • 총 공공기여 – 42.49%(1,729.00㎡)	기본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10% 이상	• 5,048.73㎡(12.93%) – 지상 연면적 기준		
		주거비율	• 90% 이하	• 34,011.22㎡(87.07%) – 지상 연면적 기준		
	주택 건설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8㎡ 이상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183세대) : SH선매입(199세대) : 민간임대(400세대) = 23.4% : 25.4% : 51.2% • 공공임대주택 – 전용 23㎡, 48㎡ • 민간임대주택 – 전용 23㎡, 39㎡, 48㎡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세대수–299)×2.5㎡×1.25 = 1,509.38㎡	•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 1,515.78㎡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6) 공공기여계획(변경)

– 기정

구분	용적률계획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면적(㎡)	종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680% 이하	• 대지지분 기준 – 1,017.25㎡(25.00%)	1,019.58㎡ (25.06%)	– 공공임대주택 : 232세대 – 공공업무시설 : 1,881.44㎡	
	상한용적률 960% 이하	• 완화 받은 용적률의 대지지분 산정 – 완화 받은 용적률의 50% 이상	471.71㎡ (11.59%)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용적률계획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면적(㎡)	종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680% 이하	• 대지지분 기준 – 1,017.25㎡(25.00%)	1,019.23㎡ (25.05%)	– 공공임대주택 : 183세대 – 패션봉제시설 : 1,881.52㎡ – 주거안심센터 : 1,052.51㎡	
	상한용적률 960% 이하	• 완화 받은 용적률의 대지지분 산정 – 완화 받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시설의 공사비 환산면적	709.77㎡ (17.45%)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방재계획(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1) 토지세목조서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상봉동 2동 (상봉동)	109-28	대	1,818.4	1818.4	[위탁자]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신내동, 부영빌딩)	100%			
2		109-29	대	705.5	705.5						
3		109-53	대	875.5	875.5				–	–	–
4		109-62	대	669.6	669.6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합계				4,069.0	4,069.0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상봉동 2동 (상봉동)	109-28	대	1,818.4	1818.4	[위탁자]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라길 15-2, C동 204호(상봉동, 대성쉐르빌)	100%	–	–	–
2		109-29	대	705.5	705.5				–	–	–
3		109-53	대	875.5	875.5				–	–	–
4		109-62	대	669.6	669.6	[수탁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	–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합계				4,069.0	4,069.0	-					

2) 물건조서

- 대상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5개동은 2020.08.04. 멸실, 2020.09.10. 등기기록 폐쇄로 인한 잔존 건축물 및 지장물은 없음

3) 토지취득방법 : 사업대상지 시행자 및 수탁자 소유로 100% 확보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존치건축물, 공작물 등은 철거 예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내용	비 고
공공시설의 종류	• 공공업무시설(패션봉제직접센터)	-
위치	•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대	-
규모	• 연면적 : 1,881.44㎡	-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시설 부지가액 및 표준건축비(건축공사비)는 사업계획승인(통합심의)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그에 따라 공공기여량은 변경 가능	-
관리처분계획	•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 추후 측량성 및 감정평가 등에 의해 변경 가능

- 변경

구 분	내용	비 고
공공시설의 종류	• 공공업무시설(패션봉제시설,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
위치	•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대	-

구 분	내용	비 고
규모	• 패션봉제시설 연면적 : 1,881.52㎡ •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연면적 : 1,052.51㎡	-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 조성 후 관리청(서울시)에 기부채납 : SH서울주택공사 위탁운영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 · 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경미한 변경) 될 수 있음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
관리처분계획	•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 추후 측량성 및 감정평가 등에 의해 변경 가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81호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17호(2021.07.0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상봉동 109-2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중랑구 상봉동 109-28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구 분	명 칭	대 표 자	주 소
기정	상봉아이알디피 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준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신내동, 부영빌딩)
변경	상봉아이알디피 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준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라길 15-2, C동 204호 (상봉동, 대성쉐르빌)

※ 담보신탁: 위탁자(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수탁자(주식회사 무궁화신탁)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4년
- 변경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5년

5. 사업개요(변경)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9-28 일원
나. 대지면적 : 4,069.00㎡
다. 건폐율 : 59.85%(건축면적 : 2,435.4716㎡)
라. 용적률 : 959.94%(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39,059.9560㎡)
마. 용 도 :
- 기정 : 공동주택(공공임대 232세대/민간임대 550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
- 변경 : 공동주택(공공임대 183세대/SH선매입199세대/민간임대 400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

바. 규　모 : 2개동,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50,359.1233㎡
사. 의제처리사항 :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82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7호(202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0호(2021.1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81호(2022.4.2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1호(2022.12.29.)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1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680번지 일대	385,352.5	감)27.9	385,324.6	•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Ⅳ.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2.5	감)27.9	385,324.6	100.0	-
개발용지	소 계	244,042.5	감)26.9	244,015.6	63.3	-
	첨단업무복합	73,076.0 [5,684.0]	감)26.9	73,049.1 [5,684.0]	18.9	광진구 통합청사(복합화)
	첨단업무지원	38,591.0	-	38,591.0	10.0	-
	상업업무복합	94,995.0	-	94,995.0	24.7	-
	주 거 복 합	37,380.5	-	37,380.5	9.7	-
공공용지	소 계	141,310.0	감)1.0	141,309.0	36.7	-
	공공문화복합	14,411.0	-	14,411.0	3.7	現 광진구청
	공 원	13,436.7	감)1.0	13,435.7	3.5	-
	광 장	1,897.1	-	1,897.1	0.5	-
	공공공지	1,293.4	-	1,293.4	0.3	-
	주 차 장	1,037.0 (2,820)	-	1,037.0 (2,820)	0.3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입체공공시설	1,900.0	-	1,900.0	0.5	복합문화시설
	도 로	107,334.8	-	107,334.8	27.9	-

※ [ ]는 용지내 공공청사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
※ ( )는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면적임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27	-	4,327	10,422	-	10,422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64	-	2,664	7,032	-	7,032	세대당 : 2.64인
	60㎡ 이하	1,153	-	1,153	3,044	-	3,044	
	85㎡ 이하	1,160	-	1,160	3,062	-	3,062	
	85㎡ 초과	351	-	351	926	-	926	
존치 정비구역	소계	-	-	-	-	-	-	
	60㎡ 이하	-	-	-	-	-	-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85㎡ 이하	-	-	-	-	-	-	
	85㎡ 초과	-	-	-	-	-	-	
존치 관리구역	-	1,663	-	1,663	3,390	-	3,390	기존세대수용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1,310.0	감)1.0	141,309.0	36.7	
교통시설	소 계	108,371.8 (2,820.0)	-	108,371.8 (2,820.0)	28.2	
	도 로	107,334.8	-	107,334.8	27.9	
	주차장	1,037.0	-	1,037.0	0.3	
	(공원지하주차장)	(2,820.0)	-	(2,820.0)	(0.7)	
	(철 도)	(4,495.0)	-	(4,495.0)	(1.7)	
공간시설	소 계	16,627.2	-	16,627.2	4.3	
	공 원	13,436.7	감)1.0	13,435.7	3.5	
	광 장	1,897.1	-	1,897.1	0.5	
	공공공지	1,293.4	-	1,293.4	0.3	유치원 예비용지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 계	16,311.0 (5,684)	-	16,311.0 (5,684)	4.2	
	입체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1,900.0	-	1,900.0	0.5	
	광진구청	14,411.0	-	14,411.0	3.7	現 광진구청
	입체적공공시설 (공공청사)	(5,684)	-	(5,684)	(1.4)	

※ ( )는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면적, 대3-54와 중복결정되는 철도 면적 및 공공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공공공지(유치원 예비용지)는 사업시행 인가 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시 위치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할 것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	-	10	16,627.2	감)1.0	16,626.2	
공 원	소 계	5	-	5	13,436.7	감)1.0	13,436.7	
	소공원	2	-	2	1,118.0	감)1.0	1,117.0	
	주제공원	3	-	3	12,318.7	-	12,318.7	
광 장		2	-	2	1,897.1	-	1,897.1	
공공공지		3	-	3	1,293.4	-	1,293.4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2.5	감)27.9	385,324.6	100.0	
주거지역	소 계	314,128.5	감)26.9	314,128.5	81.5	
	제1종일반주거지역	50,284.0	-	50,284.0	13.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953.0	-	2,953.0	0.8	
	제2종일반주거지역	7,230.0	-	7,230.0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53,359.2	-	53,359.2	13.8	
	준 주 거 지 역	200,302.3	감)26.9	200,275.4	52.0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71,224.0	감)1.0	71,223.0	18.5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8,147.0	감)27.9	78,119.1	100.0	
주거지역	소 계	66,382.0	감)26.9	66,354.1	84.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299.0	-	1,299.0	1.7	
	제3종일반주거지역	2,129.0	-	2,129.0	2.7	
	준 주 거 지 역	62,954.0	감)26.9	62,927.1	80.5	
일반상업지역		11,765.0	감)1.0	11,764.0	15.1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자양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 고
				기준	최대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업무, 주거	60이하	173	493.6	- / -	150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업무	60이하	400이하		- / -	100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321	500 (444)	- / -	100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업무, 주거	60이하	164	399	- / -	100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250	400	- / -	100	

※ ( )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미 적용시 최대용적률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기정)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 계	도 로	공원 및 광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합 계		169,247.8	113,242.8	61,689.0	30,105.5	8,295.1	1,293.4	20,095.0 [5,646.0]	1,900.0 [5,900.0]	972.6 (18,550.6)	14,482.4 (57,291.4)	46,234.0 (-14,153)	27.3 (-8.4)
촉진 구역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0	58,443.0	25,388.0 {26,755.0}	15,609.0	4,095.0	-	5,684.0 [5,646.0] {7,051.0}	-	- (4,112.0)	- (12,394.0)	25,388.0 (8,882.0) {26,755.0}	32.5 (11.4) {34.2}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0	-	15,266.0	855.0	-		14,411.0	-	948.0	14,318.0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2.2	8,315.4	2,496.8	1,561.8	소공원 862.0	73.0	-	-	24.6	164.4	2,307.8	21.3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55,151.0	38,591.0	16,560.0 {20,406.0}	11,090.0	2,820.0 [5,640.0] {4,327.0}	750.0	-	1,900 [5,900] {4,239}	- (13,466)	- (30,415)	16,560 (-27,321) {20,406.0}	30.0 (-49.5) {37.0}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	1,978.2	20.04

주1) [ ]:입체공공시설, 공공청사, 지하주차장의 건축 연면적
주2) (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주3) { }:자양1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1,367㎡), 자양5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2,339㎡) 및 지하주차장(1,507㎡) 건립비용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환산 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2014.8)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 계	도 로	공원 및 광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합 계		169,219.9	113,215.9	61,688.0	30,105.5	8,294.1	1,293.4	20,095.0 [5,646.0]	1,900.0 [5,900.0]	972.6 (18,550.6)	14,482.4 (57,291.4)	46,233.0 (-14,153)	27.3 (-8.4)
촉진 구역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19.1	58,416.1	25,387.0 {26,754.0}	15,609.0	4,094.0	-	5,684.0 [5,646] {7,051}	-	- (4,112.0)	- (12,394.0)	25,387.0 (8,882.0) {26,755.0}	32.5 (11.4) {34.2}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0	-	15,266.0	855.0	-		14,411.0	-	948.0	14,318.0	-	-

구역명	구역면적(㎡)	획지면적(㎡)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합 계	도 로	공원 및 광장	공공공지	공공청사	입체공공시설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기반시설내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2.2	8,315.4	2,496.8	1,561.8	소공원 862.0	73.0	-	-	24.6	164.4	2,307.8	21.3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55,151.0	38,591.0	16,560.0 {20,406.0}	11,090.0	2,820.0 [5,640.0] {4,327.0}	750.0	-	1,900 [5,900] {4,239}	- (13,466)	- (30,415)	16,560 (-27,321) {20,406.0}	30.0 (-49.5) {37.0}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	1,978.2	20.04

주1) [ ]:입체공공시설, 공공청사, 지하주차장의 건축 연면적
주2) (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주3) { }:자양1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1,367㎡), 자양5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2,339㎡) 및 지하주차장(1,507㎡) 건립비용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환산 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2014.8)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구분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세대)	임대주택(세대)				행복주택(세대)
				소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합계		2,664	1,561	803	562	241	-	300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64	1,561	803	562	241	-	300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363	631	432	289	143	-	300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	-	-	-	-	-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64	215	49	40	9	-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840	538	302	233	69	-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97	177	20	-	20	-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방재계획 (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78,147.0	감)27.9	78,119.1	-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8,147.0	감)27.9	78,119.1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9,704.0	감)1.0	19,703.0	25.2	-
	도 로	15,609.0	-	15,609.0	20.0	
	공 원	4,095.0	감)1.0	4,094.0	5.2	
획지	소 계	58,443.0 [5,684.0]	감)26.9	58,416.1 [5,684.0]	74.8	-
	획 지 1-1	55,348.0 [5,684.0]	감)27.2	55,320.8 [5,684.0]	70.8	-
	획 지 1-2	3,095.0	증)0.3	3,095.3	4.0	행복주택

※ [ ]는 공공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 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도로	1,200 [264]	자양동216-26 [자양동781-4]	구의동244-6 [자양동245-12]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간선도로	575 [152]	자양동680-72 [자양동683-9]	구의동593-20 [구의동592-39]		
기정	중로	1	451	20	집산도로	423	구의동592-39	자양동781-1		아차산로58길 (새마을길)
기정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434 [157]	자양동716 [자양동680-81]	구의동591-29 [구의동591-29]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408 [332]	자양동683-6 [자양동680-81]	자양동781-4 [자양동781-4]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 ]는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철 도(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시청	잠실역	-	48.8㎞	-	건고 제203호 (1975.12.20.)	-
기정	②	구의동 정차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	210m	4,495㎡	건고 제232호 (1977.12.01.)	대3-54와 중복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폭(m)	연장	높이	면적	
기정	②	구의동 정거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5.6	29	19.0~31.9	157.4	-
세부사항	○ 입체적결정 범위 - 지상부 : A = 152.3㎡(증 152.3㎡) / H = 해수면기준(+)21.15m~31.9m - 지하부 : A = 119.1㎡(증 119.1㎡) / H = 해수면기준(+)19.0m~21.15m								

※ 기정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추가한 사항(최초결정일 : 1977.12.01.[건설부고시 제232호])

■ 공 원(변경)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	소공원	자양동 781-3 일대	256.0	감)1.2	254.8	서고제2009-225호 (2009.6.4)	
변경	③	-	소공원	자양동 680-83 일대	605.0	증)0.2	605.2	서고제2017-332호 (2017.9.14)	
기정	⑤	-	문화공원	자양동 680-63 일대	3,234.0	-	3,234.0	서고제2009-225호 (2009.6.4)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공공청사	자양동 680-63 일대	대지지분	5,684	-	5,684	서고 제2017-332호 (2017.9.14)	
				층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	지하1~7층, 지상25층 이 하		
				연면적	32,908	증)4,777.36	37,685.36		

※ 각 용도별 구분소유에 따른 면적 정리로 인해 공공청사 연면적 변경

(3)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78,147.3	-	58,443.3 [5,684]	자양동 680-63 번지 일대	15	-	-	15	-	
변경		78,119.1		58,416.1 [5,684]							

※ [ ]는 공공청사 복합화(광진구 종합청사)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78,147	1-1	55,348 [5,684]	자양동 680-63번지일대	510,000 이하	업무, 주거	60 이하	493.6 이하	150 이하
			1-2	3,095						

건축물 용도별 비율 (지상연면적 기준)	주거	상업			업무			교육·연구, 문화·집회등
		합계	판매	숙박	합계	일반업무 (오피스텔 5%)	공공업무	
	48.1%	11.7%	6.6%	5.1%	35.0%	25.4%	9.6%	5.2%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일반주택 : 631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270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361세대 · 임대주택 : 432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14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289세대 · 행복주택 : 300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300세대 ○ 건설비율 · 일반주택 : 46.3% · 임대주택 : 31.7% · 행복주택 : 22.0% ○ 건립예정세대수 : 1,363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는 공공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연면적은 지상·지하 연면적 포함 면적임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78,119.1	1-1	55,320.8 [5,684]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10,000 이하	업무, 주거	60 이하	493.6 이하	150 이하
			1-2	3,095.3						

건축물 용도별 비율 (지상연면적 기준)	주거	상업			업무			교육·연구, 문화·집회등
		합계	판매	숙박	합계	일반업무 (오피스텔 5%)	공공업무	
	48.1%	11.7%	6.6%	5.1%	35.0%	25.4%	9.6%	5.2%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일반주택 : 631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270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361세대 · 임대주택 : 432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14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289세대 · 행복주택 : 300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300세대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건설비율 · 일반주택 : 46.3% · 임대주택 : 31.7% · 행복주택 : 22.0% ○ 건립예정세대수 : 1,363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는 공공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연면적은 지상·지하 연면적 포함 면적임

(4)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18년	토지등소유자	1,258	이상없음	현황세대 (99)

나)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마)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2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52.5	감)27.9	385,324.6	2006.10.19 (서고제2006-357호)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2.5	감)27.9	385,324.6	100.0
주거지역	소 계	314,128.5	감)26.9	314,128.5	81.5
	제1종일반주거지역	50,284.0	-	50,284.0	13.0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53.0	-	2,953.0	0.8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7,230.0	-	7,230.0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53,359.2	-	53,359.2	13.8
	준주거지역	200,302.3	감)26.9	200,275.4	52.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1,224.0	감)1.0	71,223.0	18.5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 일대	181,187.9	-	181,187.9	서울시고시 제1996-154호 (1996.6.7)
기 정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 일대	47,824.7	-	47,824.7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 정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 일대	55,151	-	55,151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1	16	35~38	주간선 도로	5,910 (664)	성동교 (자양동219-18)	자양동 강변 (자양동680-72)	1972.9.1	아차산로 자양로
기정	대로	3	90	29~34	보조간선 도로	1,650 (310)	모진동 (자양동779-7)	능동 (자양동769-8)	1971.4.7	자양로
기정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 도로	1,200 (675)	구의동 (자양동216-26)	광장동 (구의동244-6)	1966.6.21	아차산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간선 도로	575 (435)	자양동680-72 (자양동680-72)	구의동593-20 (구의동592-39)	서고 제2009-225호 (2009.6.4)	뚝섬로
기정	중로	1	451	20	집산도로	423	구의동592-39	자양동781-1		아차산로 58길 (새마을길)
기정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434	자양동 716	구의동 591-29	서고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408	자양동 683-6	자양동 781-4	〃	
기정	중로	3	470	12	국지도로	270	자양동 680-86	자양동 680-83	〃	
기정	소로	2	구의1	8	국지도로	170	자양동 779-2	자양동 779-24	〃	
기정	소로	2	구의2	8	국지도로	70	구의동246-104	구의동 246-25	〃	
기정	소로	2	구의3	8	국지도로	70	구의동 246-63	구의동 246-25	〃	
기정	소로	2	구의4	8	국지도로	72	구의동 246-3	구의동 246-1	〃	
기정	소로	3	구의1	6~8	국지도로	346	자양동 778-18	자양동 777-1	〃	

※ (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노외 주차장	구의동 243-78 일대	1,037.4	-	1,037.4	서고제2002-162호 (2002.5.8)	-
기정	②	주차장	노외 주차장	자양동 680-81 일대	2,820	-	2,820	서고제2018-15호 (2018.1.18)	중복결정 •지상 : 문화공원 •지하 : 노외주차장 - 지하1층 ~ 지하2층

(3) 철도 (변경없음)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시청	잠실역	-	48.8㎞	-	건고 제203호 (1975.12.20.)	-
기정	②	구의동 정차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	210m	4,495㎡	건고 제232호 (1977.12.01.)	대3-54와 중복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폭(m)	연장	높이	면적	
기정	②	구의동 정거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5.6	29	19.0~31.9	157.4	-
세부사항	○ 입체적결정 범위 - 지상부 : A = 152.3㎡(증 152.3㎡) / H = 해수면기준(+)21.15m~31.9m - 지하부 : A = 119.1㎡(증 119.1㎡) / H = 해수면기준(+)19.0m~21.15m								

※ 기정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추가한 사항(최초결정일 : 1977.12.01.[건설부고시 제232호])

(4)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교통 광장	구의동 245-7 일대	518.1	-	518.1	서고제2009-225호 (2009.6.4)	-

(5) 공원 (변경)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	소공원	자양동 776-5 일대	862	-	862	서고제2009-225호 (2009.6.4.)	-
변경	②	-	소공원	자양동 781-3 일대	256	감)1.2	254.8	서고제2009-225호 (2009.6.4.)	
변경	③	-	소공원	자양동 680-83 일대	605	증)0.2	605.2	서고제2017-332호 (2017.9.14.)	-
기정	④	-	문화공원	자양동 680-81일대	2,820	-	2,820	서고제2009-225호 (2009.6.4.)	중복결정 •지상 : 문화공원 •지하 : 주차장 - 지하1 ~ 2층
기정	⑤	-	문화공원	자양동 680-63 일대	3,234	-	3,234	서고제2009-225호 (2009.6.4.)	

(6)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⑤	공공공지	구의동 244-4 일대	467	-	467	서고제2009-225호 (2009.6.4)	-
기정	⑥	공공공지	자양동 776-25 일대	73	-	73	서고제2012-143호 (2012.5.31)	-
기정	⑦	공공공지	자양동 680-81 일대	750	-	750	서고제2018-15호 (2018.1.18)	-

(7) 공공청사 (변경)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	자양동 680-65일대	44,728	-	44,728	서고제1985-847호 (1985.12.13)	우편집중국
기정	③	공공청사	-	자양동 777일대	14,318	-	14,318	2009.6.4	現광진구청

■ 건축물의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①	50%이하	150%이하	4층 이하	우편집중국
③	60%이하	400%이하	100m 이하	광진구청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공공청사	자양동 680-63 일대	대지 지분	5,684	-	5,684	서고 제2017-332호 (2017.9.14.)	
				층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	지하1~7층, 지상25층 이하		
				연면적	32,908	증)4,777.36	37,685.36		

※ 공공청사 대지지분 및 연면적은 향후 건축 인·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8) 문화시설 (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문화시설	자양동 680-81일대	1,900	-	1,900	서고제2009-225호 (2009.6.4)	-

■ 건축물의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②	60%이하	400%이하	30m 이하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78,147.0	감)27.9	78,119.1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8,147.0	감)27.9	78,119.1	100.0	
주거지역	소 계	66,382.0	감)26.9	66,354.1	84.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299.0	-	1,299.0	1.7	
	제3종일반주거지역	2,129.0	-	2,129.0	2.7	
	준 주 거 지 역	62,954.0	감)26.9	62,927.1	80.5	
일반상업지역		11,765.0	감)1.0	11,764.0	15.1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54	25~38	보조간선도로	1,200 [264]	자양동216-26 [자양동781-4]	구의동244-6 [자양동245-12]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간선도로	575 [152]	자양동680-72 [자양동683-9]	구의동593-20 [구의동592-39]		
기정	중로	1	451	20	집산도로	423	구의동592-39	자양동781-1		아차산로58길 (새마을길)
기정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434 [157]	자양동716 [자양동680-81]	구의동591-29 [구의동591-29]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408 [332]	자양동683-6 [자양동680-81]	자양동781-4 [자양동781-4]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 ]는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시청	잠실역	-	48.8㎞	-	건고 제203호 (1975.12.20.)	-
기정	②	구의동 정차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	210m	4,495㎡	건고 제232호 (1977.12.01.)	대3-54와 중복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폭(m)	연장	높이	면적	
기정	②	구의동 정거장	도시철도	성동지청 (현 동부지원) 앞	5.6	29	19.0~31.9	157.4	-
세부사항	○ 입체적결정 범위 - 지상부 : A = 152.3㎡(증 152.3㎡) / H = 해수면기준(+)21.15m~31.9m - 지하부 : A = 119.1㎡(증 119.1㎡) / H = 해수면기준(+)19.0m~21.15m								

※ 기정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추가한 사항(최초결정일 : 1977.12.01.[건설부고시 제232호])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	소공원	자양동 781-3 일대	256.0	감)1.2	254.8	서고제2009-225호 (2009.6.4)	
변경	③	-	소공원	자양동 680-83 일대	605.0	증)0.2	605.2	서고제2017-332호 (2017.9.14)	
기정	⑤	-	문화공원	자양동 680-63 일대	3,234.0	-	3,234.0	서고제2009-225호 (2009.6.4)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공공청사	자양동 680-63 일대	대지 지분	5,684	-	5,684	서고 제2017-332호 (2017.9.14.)	
				층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	지하1~7층, 지상25층 이하		
				연면적	32,908	증)4,777.36	37,685.36		

※ 각 용도별 구분소유에 따른 면적 정리로 인해 공공청사 연면적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	58,443.0	1-1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5,348.0	업무, 주거
			1-2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3,095.0	행복주택
변경	-	58,416.1	1-1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5,320.8	업무, 주거
			1-2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3,095.3	행복주택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치	권장용도	비고
기정	획지1,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더목, 러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바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의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지침' 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 준용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불허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 계획

구 분	위 치	건폐율(%)	비 고
기정	획지1, 획지2	60% 이하	

- 용적률 계획

구 분	위 치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최대용적률	
기정	획지1, 획지2	173% 이하	493.6% 이하	

※ 촉진계획에 따른 증가되는 용적률 및 완화 받을 수 있는 용적률(완화용적률)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증가되는 용적률	완화용적률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206%	114.6%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지침'

- 높이 계획

구 분	높이계획		비 고
	기준높이(m)	최고높이(m)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100	150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영향 최소화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비 고
건축한계선	○아차산로변 : 폭 10m ○중로 2-480, 중로 1-451, 중로 1-450 : 폭 5m ○중로 2-479 : 양측 폭 7m	
고층부 벽면한계선	○중로 2-480, 중로 2-479 북측 : 건축한계선에서부터 폭10m	

※ 구체적인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비 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지침 제15조 준용	
공개공지	○아차산로 및 중로2-480호선 교차 부분 위치 지정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지침 제16조 준용 ※ 구체적인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비 고
공공보행통로	○폭 8m - 사업지 동측면에서 구의역 및 공공청사로의 원활한 보행흐름을 위해 도면에 표시된 시종점 위치를 준수하여 조성 ※ 구체적인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차량출입불허구간	○원활한 차량흐름 확보를 위하여 대지에 면하는 교차부분에 지정 - 도면에 표기된 위치 준수 ※ 구체적인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마)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기정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58,443.0	-	39,983	432	60㎡ 이하 : 289 60㎡ 초과~85㎡ 이하 : 143 85㎡ 초과 : -	주동은 구분하되,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설치
변경		58,416.1					

Ⅳ.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 도서로 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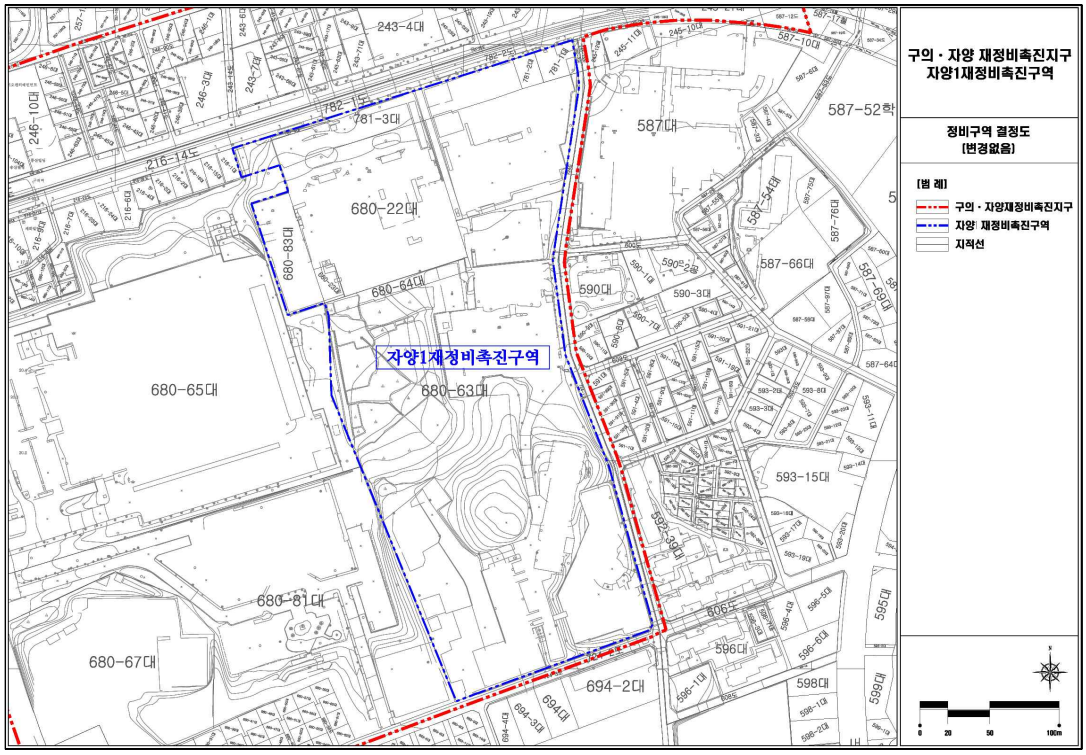
Ⅵ.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8)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87)에 관계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web/am/amMail.jsp)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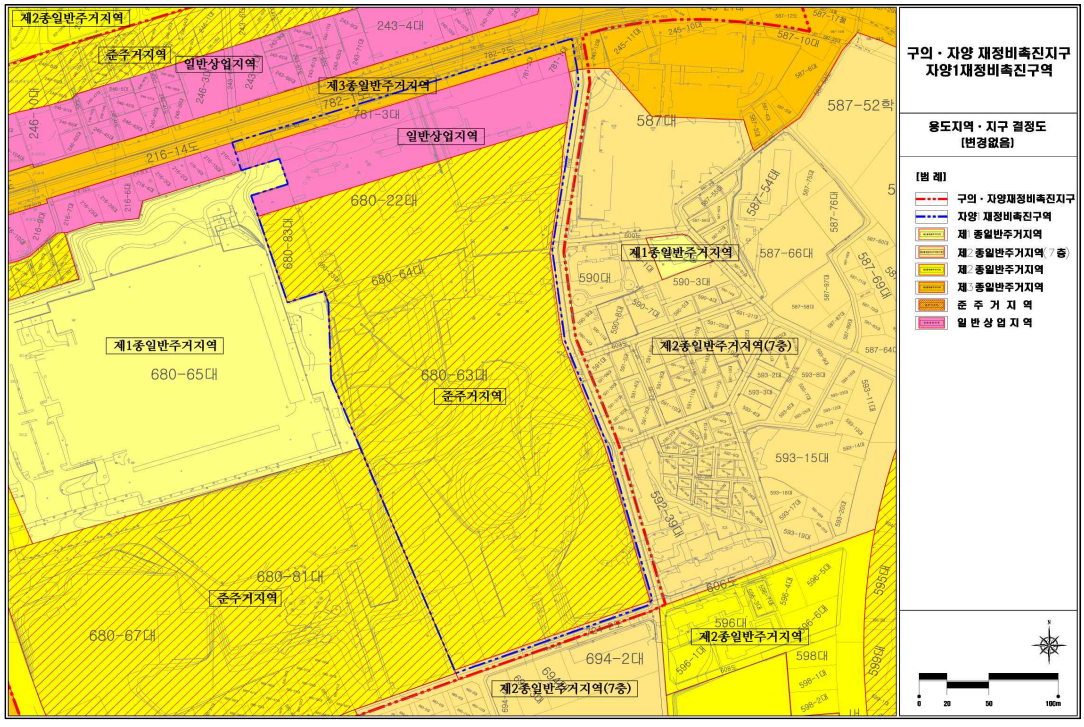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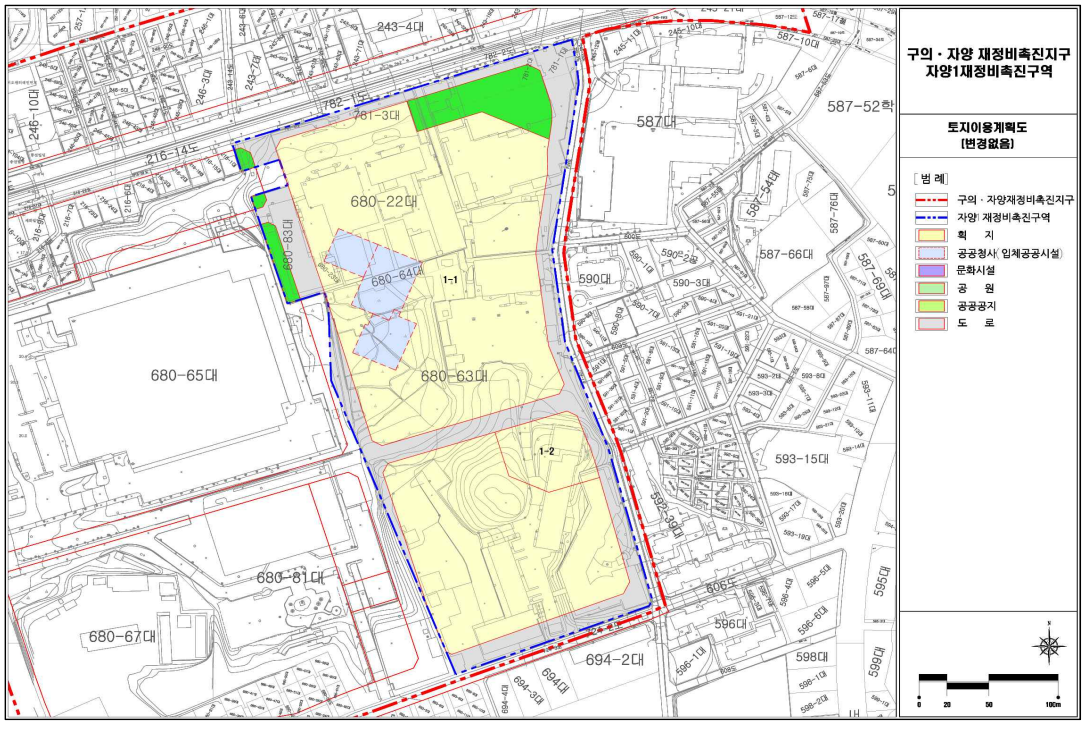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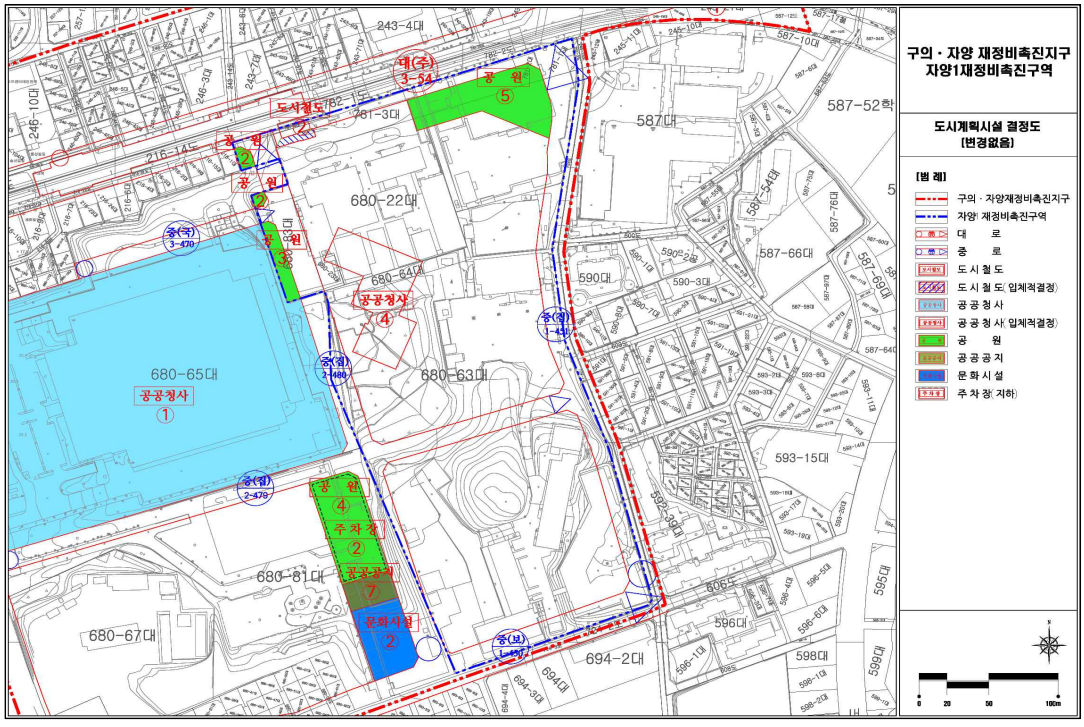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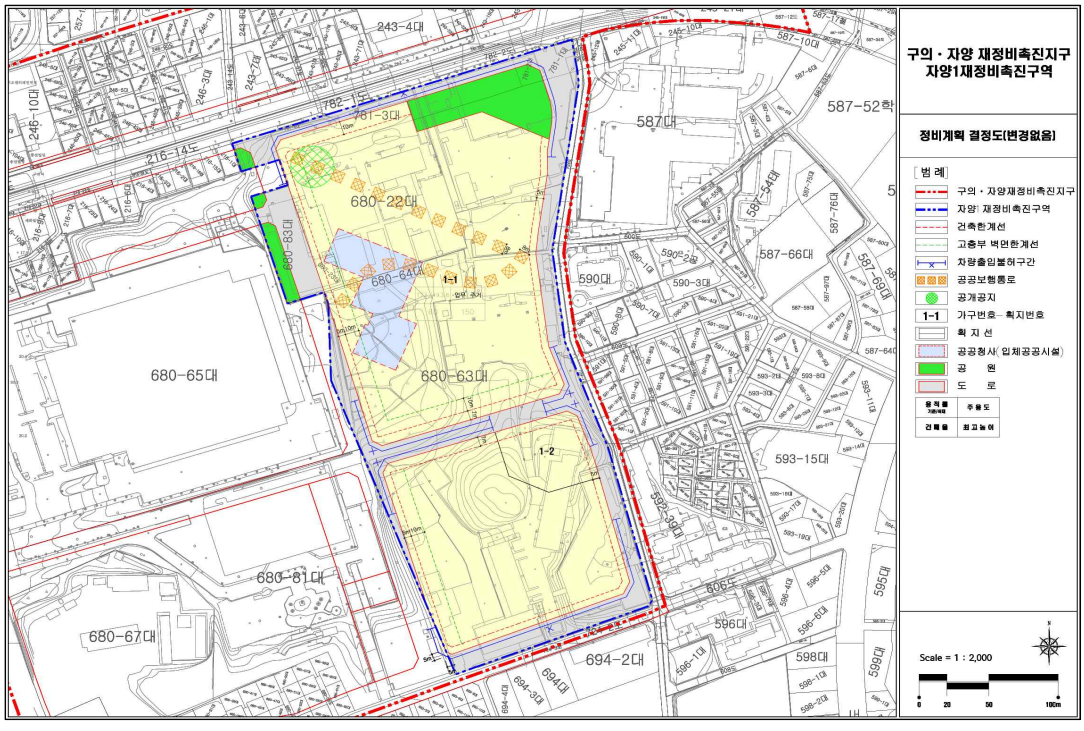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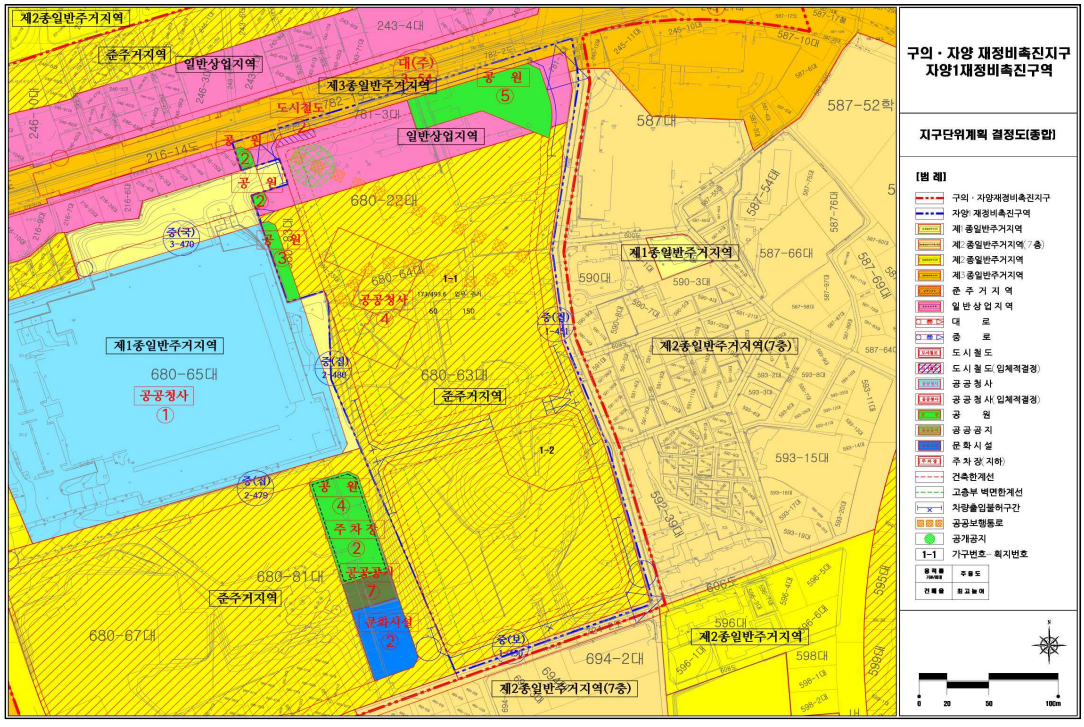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종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83호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고 시 일: 2024. 6. 7.(금)

2. 고시방법: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 부여 10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신청 또는 기초조사	▶	구청장	▶	시울시장	▶	의견수렴 공고	▶	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2-2133-2838(FAX: 02-768-8842)
   나. 주소: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공간정보담당관
   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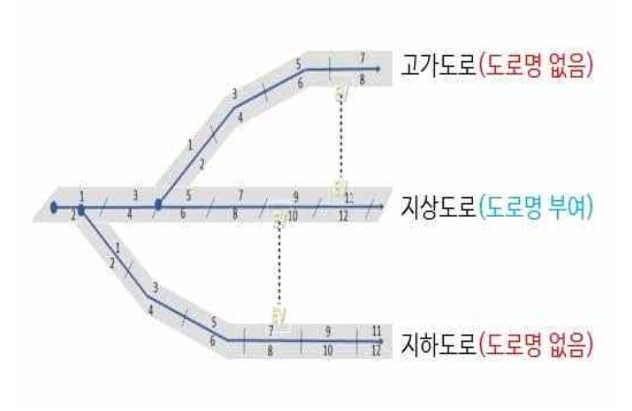
붙임1	도로명 부여 조서

입체도로란?

○ 250m 이상(진·출입용 1km 이상)인 고가·지하도로

○ 지상도로와 입체도로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전국 입체도로 구간을 도로구간 데이터*로 구축 중

* 도로구간 및 기초간격 설정, 기초번호 및 도로명 부여 등



1. 서소문고가차도(단방향)

◯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구

◯ 연장: 551m

◯ 도로명: 서소문고가도로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서소문 고가도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가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여 부여	고가도로	-	서울 서대문구 합동 31-16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6	551	15	서울시 서대문구, 중구	20	1~56

◯ 중심선



2. 서울둘레길6코스

◯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동구

◯ 연장: 9.2㎞

◯ 도로명: 서울둘레6코스길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서울둘레 6코스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 "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숲길)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50-11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7	9.2	1~8	서울시 광진구, 강동구	20	1~ 924

◯ 중심선



3. 서울둘레길8코스

○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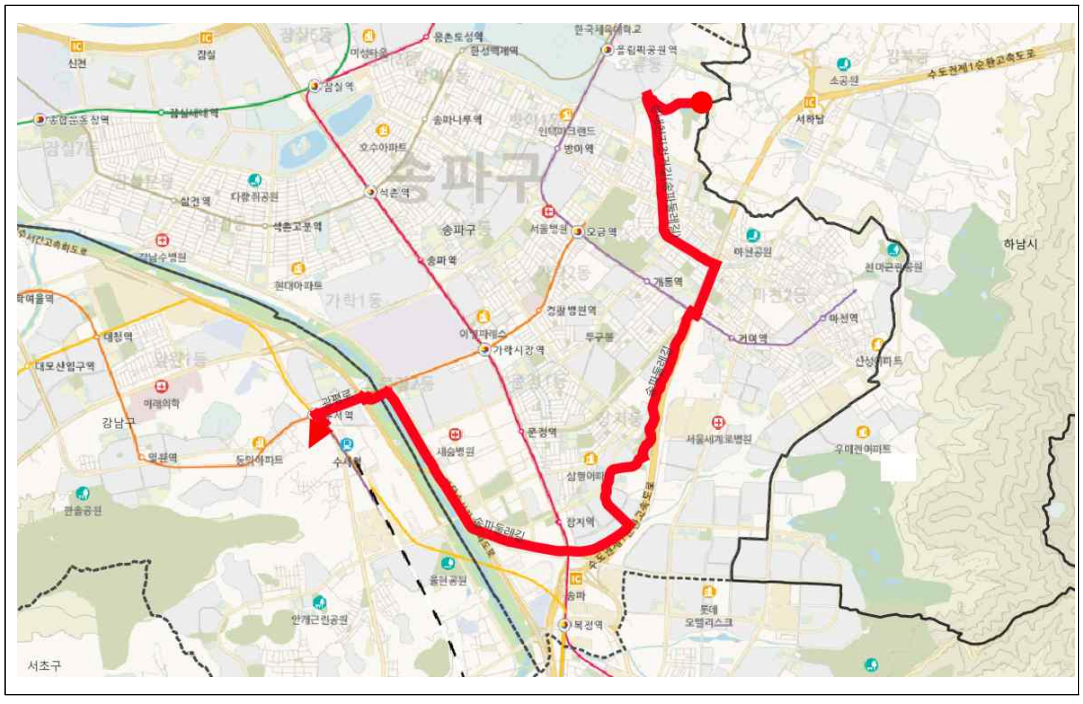
○ 연장: 9.1㎞

○ 도로명: 서울둘레8코스길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서울둘레 8코스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숲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43-15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8	9.1	2~8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20	1~ 908

○ 중심선



4. 서울둘레길9코스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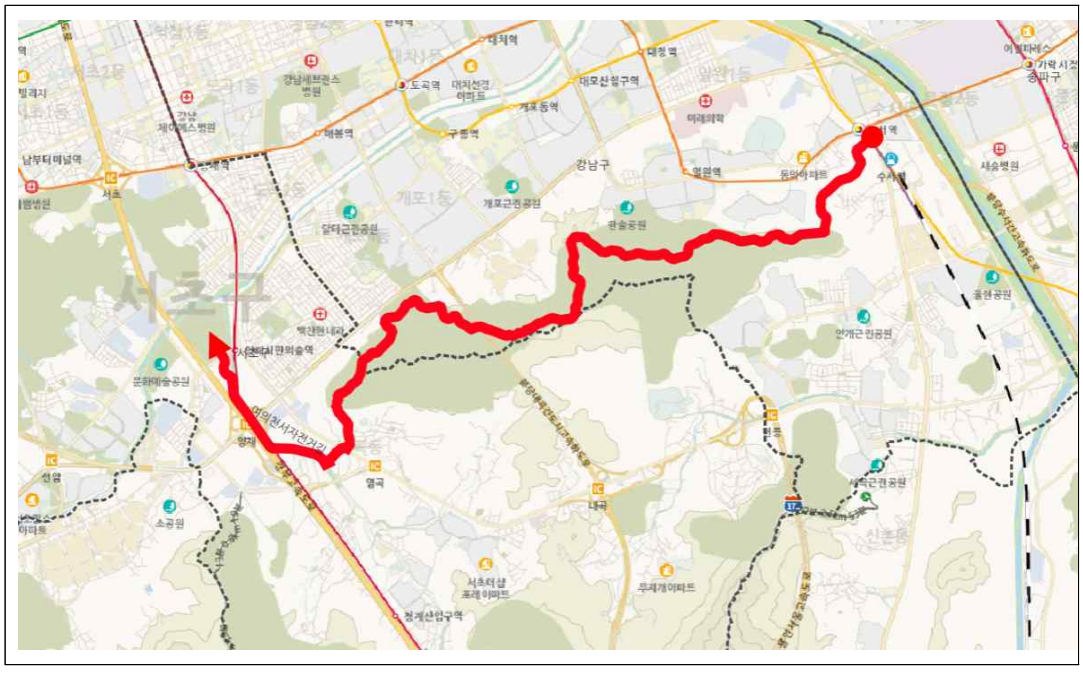
○ 연장: 9.9㎞

○ 도로명: 서울둘레9코스길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서울둘레 9코스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숲길)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5	9.9	1~6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20	1~ 994

○ 중심선



5. 서울둘레길11코스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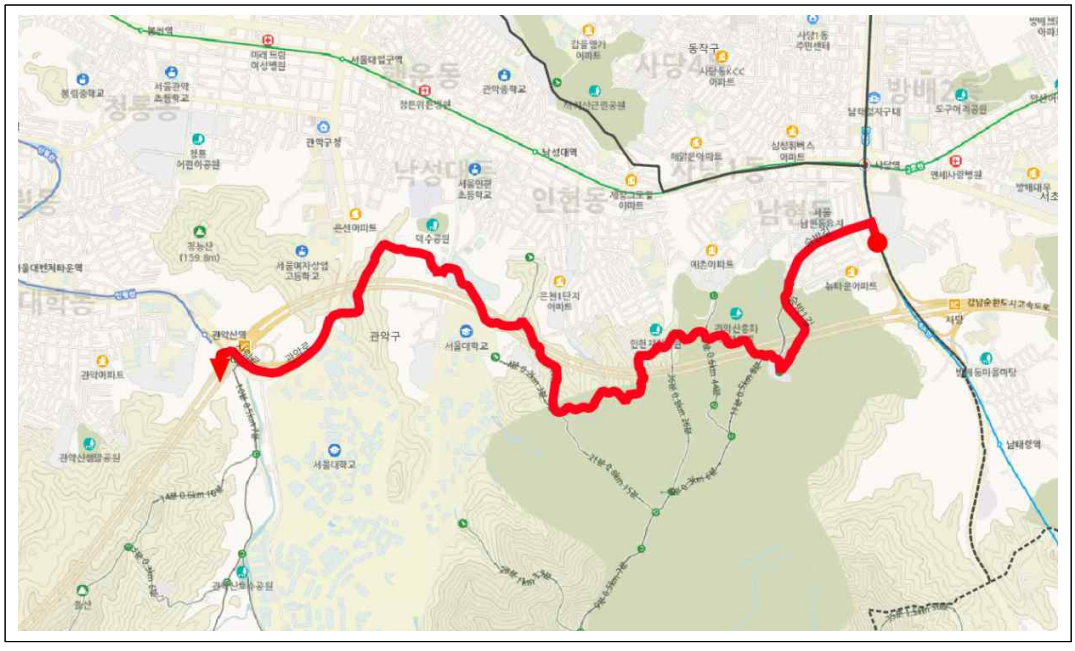
○ 연장: 5.5㎞

○ 도로명: 서울둘레11코스길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서울둘레 11코스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 "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숲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237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11-10	5.5	1~3	서울시 서초구, 관악구	20	1~ 554

○ 중심선



6. 서울둘레길14코스

○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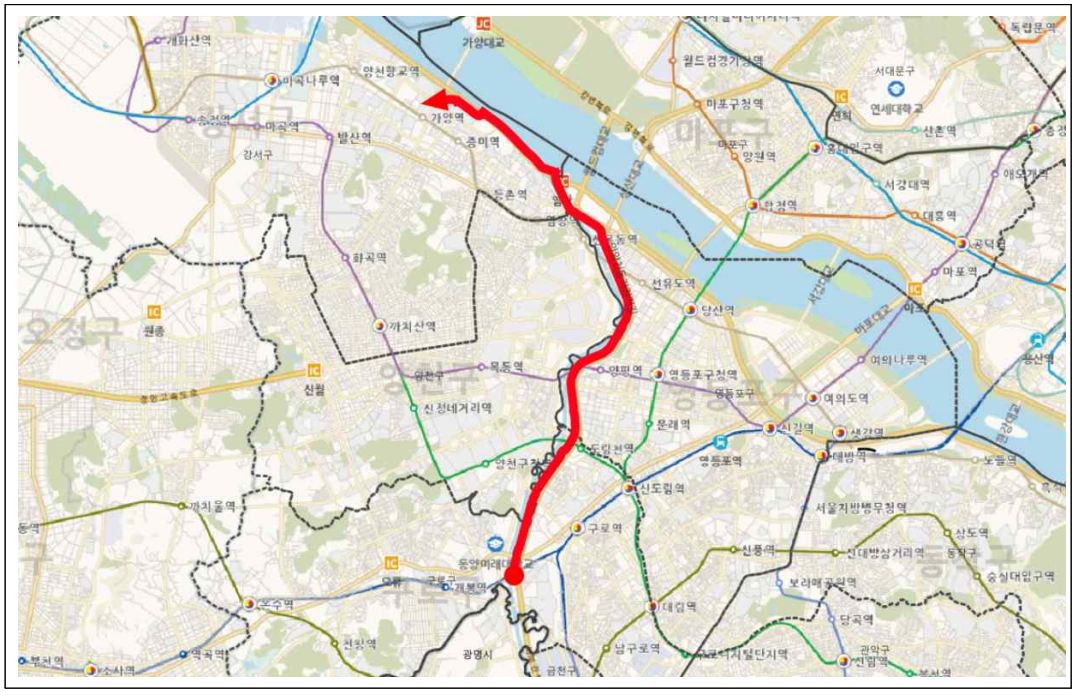
○ 연장: 9.9㎞

○ 도로명: 서울둘레14코스길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서울둘레 14코스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숲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42-71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59-11	9.9	2~5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20	1~ 992

○ 중심선



7. 서울둘레길15코스

○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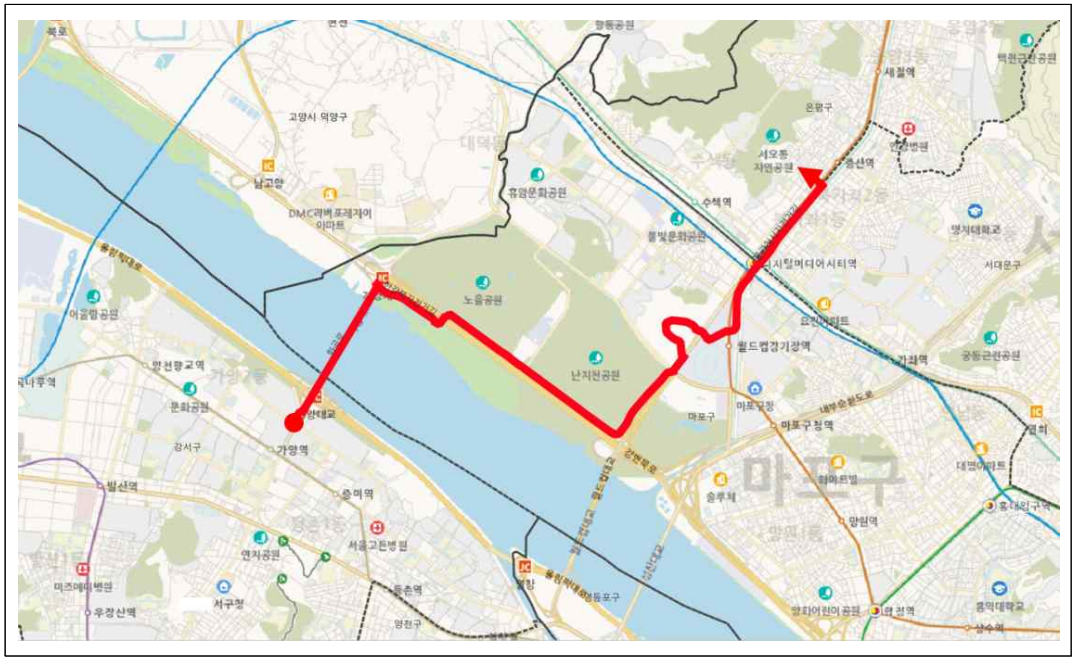
○ 연장: 7.6㎞

○ 도로명: 서울둘레15코스길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서울둘레 15코스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숲길)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59-11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99-9	7.6	2~9	서울시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0	1~ 758

○ 중심선



8. 서울둘레길18코스

○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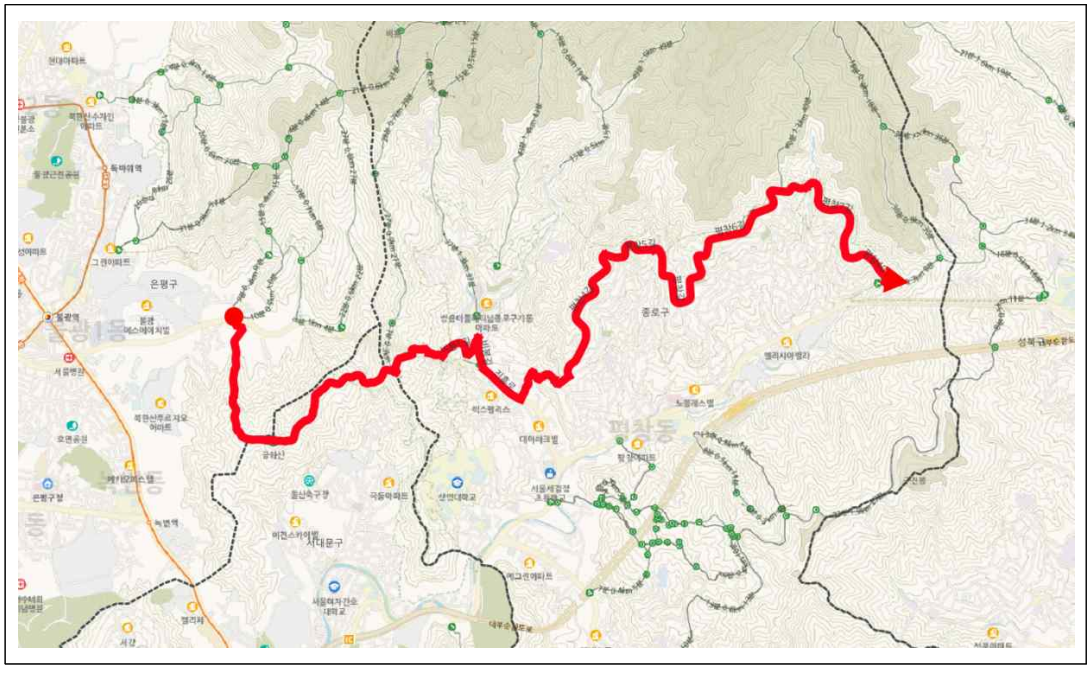
○ 연장: 7.3㎞

○ 도로명: 서울둘레18코스길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서울둘레 18코스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숲길)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25-3	7.3	1~4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20	1~734

○ 중심선



9. 서울둘레길19코스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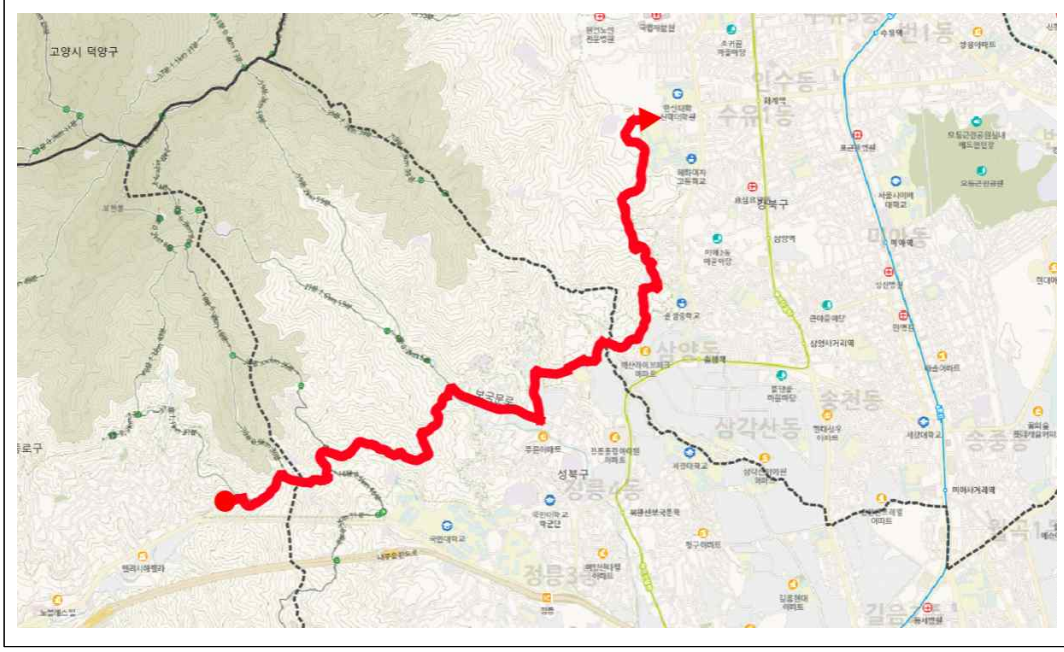
○ 연장: 5.8㎞

○ 도로명: 서울둘레19코스길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서울둘레 19코스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 “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숲길)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25-3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642-5	5.8	1~3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20	1~ 582

○ 중심선



10. 서울둘레길21코스

○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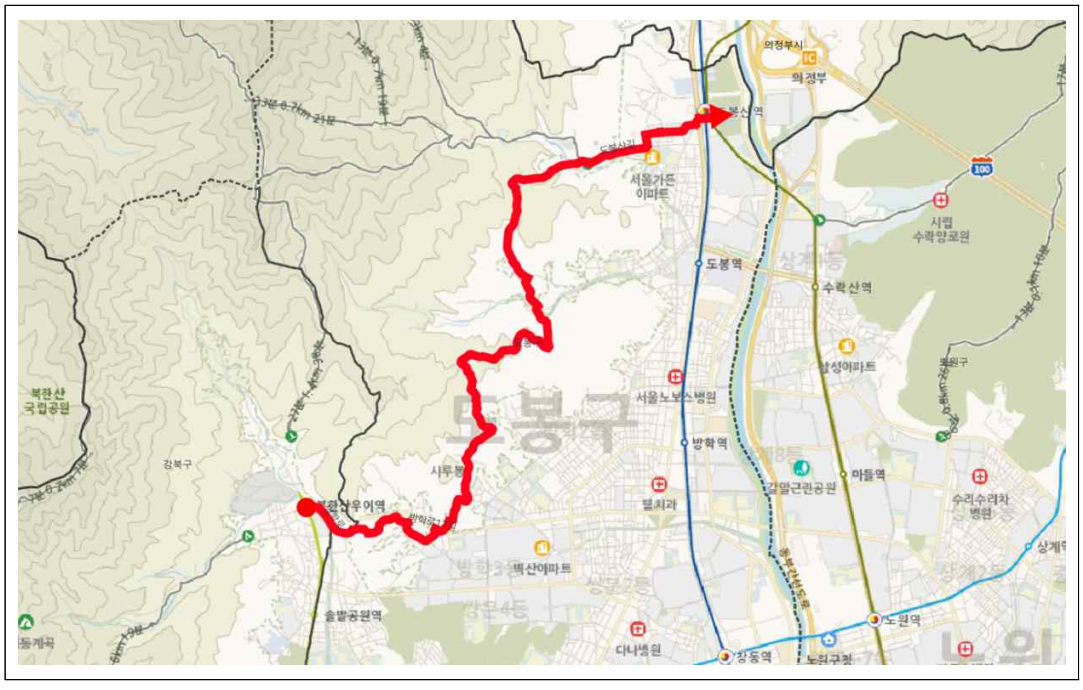
○ 연장: 7.3㎞

○ 도로명: 서울둘레21코스길

○ 도로구간 조서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	폭 (m)			
서울둘레 21코스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된 명사 뒤에 "길"을 붙여 부여	지상도로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4-42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9-3	7.3	1~4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20	1~728

○ 중심선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64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포에버 코리아(유)	서울 제41호	에이단쵸지 오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401호 (삼성동)	소재지 ('24.5.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901호 (서초동,서초크로바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401호 (삼성동)
2	영리빙 코리아(유)	서울 제899호	KEVIN MCMURR AY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17층 1호 영리빙코리아 (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소재지 ('24.5.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9층 (삼성동, 강남파이낸스플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17층 1호 영리빙코리아 (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3	정지행 코스메슈티컬	서울 후 제2827호	정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28동 208호(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소재지 ('24.5.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07, 4층(신사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28동 208호(압구정동, 미성아파트)
4	강서제일지사	서울 후 제578호	강미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6길 12, 201동 지층 3호 (당산동4가, 삼성ABC프라자 당산2차삼성아파트)	폐업 ('24.4.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65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위반 기관에 대하여 제24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2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11개소)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 의료기관	M-2021-01-07-6315	서초아이누리한의원 (황*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0(서초동, 희원빌딩) 2층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M-2021-01-08-6149	정석성형외과의원 (박*남)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04 (논현동, 1st Avenue) 11층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M-2022-01-08-6444	제일이비인후과의원 (김*식)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31길 23 (논현동, 홍재빌딩) 제일이비인후과, 2,3,4,5층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유치 사업자	A-2018-01-01-3482	주식회사 예미뷰티 (인*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당산동3가) 4층,4292호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A-2019-01-02-3622	보아스(BOAS) (l**l)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6길 92-14 (구의동) 제4층 제401호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A-2019-01-01-3637	주식회사 메디칼코리아센터 (김*호)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68길 7 (대치동) 지하1층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A-2019-01-01-3666	주식회사 여행버스 (최*완)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68, 215호(구로동, 신안타워)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A-2021-01-01-4320	주식회사 메디아 (박*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6(동교동, LC TOWER) 5층 520호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A-2021-01-01-4329	주식회사 카리스비즈 (조*래)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40길 22-24 (석관동) 1층 101호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A-2021-01-01-4336	주식회사 에드케어 (이*숙)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서초동, 강남효성해링턴타워) 비1층 107-38호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A-2021-01-01-4339	납세정의신문(주) (박*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9 (서초동, 이레오피스텔) 402호	등록요건 미준수	등록취소

4.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간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메일 제출 : hyunewh@seoul.go.kr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의약무팀)

라. 공시송달 대상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처분 전에 서면이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의견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의견제출인</td><td colspan="2">성명</td></tr>
<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
내용</td><td colspan="2">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r>
<tr><td>주소
(전화번호:)</td></tr>
<tr><td>의 견</td><td></td></tr>
<tr><td>기 타</td><td></td></tr>
</table>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72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7. ~ 2024. 6. 21. (14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4. 6. 26.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봉안	19931007-002	11-14-09300	김기환	김*환	2024-04-30 12: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0가길	100,000
2	봉안	19931012-003	12-20-13328	유상순	김*웅	2024-05-02 14: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아산시 북수로	100,000
3	봉안	19981002-002	11-25-11502	이숙자	이*준	2024-04-30 14:3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묵1동	100,000
4	봉안	19981002-003	12-22-13535	김실	김*훈	2024-04-30 11: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100,000
5	봉안	19981003-003	12-17-12707	최종구	최*영	2024-04-30 11: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0,000
6	봉안	19981004-008	12-22-13665	강경화	강*복	2024-04-30 10: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방화3동	100,000
7	봉안	19981007-001	12-17-12710	정모천	정*돈	2024-04-30 11: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길음로	100,000
8	봉안	19981008-017	12-22-13679	박종철	박*신	2024-04-29 11:5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북 괴산군 사담소매길	100,000
9	봉안	19981008-019	12-17-12765	윤만호	윤*현	2024-04-30 12:1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100,000
10	봉안	19981009-013	12-17-12816	이진희	이*복	2024-04-29 12:32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덕양구 향동동	100,000
11	봉안	19981009-022	12-17-12832	백옥명	장*창	2024-04-30 11:1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80,000
12	봉안	19981009-033	12-16-12619	이호수	이*호	2024-04-29 12:08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신림3동	100,000
13	봉안	19981010-036	12-19-13057	홍승준	홍*영	2024-04-29 12:4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	100,000
14	봉안	19981011-025	12-25-14225	장재훈	장*현	2024-04-30 11:4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28번길	100,000
15	봉안	19981014-023	12-17-12841	최길분	유*용	2024-04-30 12:4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0,000
16	봉안	19981015-012	12-17-12722	조태창	조*동	2024-04-30 09: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178번길	180,000
17	봉안	19981015-022	11-25-11527	최정호	최*환	2024-04-30 1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중구 운남서로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8	봉안	19981015-031	12-23-13821	곽한영	곽*경	2024-04-30 12:3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길	100,000
19	봉안	19981016-017	12-17-12844	김덕열	김*섭	2024-04-30 12: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상봉로16길	100,000
20	봉안	19981016-045	10-04-00670	김화엽	김*호	2024-04-30 15:3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80,000
21	봉안	19981019-001	11-03-02861	황용복	황*모	2024-04-30 11:5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왕시 능안길	100,000
22	봉안	19981019-002	11-03-02923	박정희	백*기	2024-04-29 11: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대골안길	180,000
23	봉안	19981020-012	12-05-05014	김인섭	김*희	2024-04-29 10:2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8길	180,000
24	봉안	19981021-005	12-07-05415	조영곤	최*선	2024-05-02 13: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승지로	180,000
25	봉안	19981021-012	11-11-08704	양명직	양*동	2024-04-30 09:1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180,000
26	봉안	19981022-004	11-12-08808	양점호	양*관	2024-04-30 15: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100,000
27	봉안	19981022-027	11-12-08866	권상각	권*수	2024-04-30 15:0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오금로	100,000
28	봉안	19981022-028	11-12-08868	김분득	권*수	2024-04-30 15: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오금로	180,000
29	봉안	19981023-012	12-19-13081	김판옥	김*우	2024-04-30 11:4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등촌로35가길	100,000
30	봉안	19981023-026	11-13-09081	박봉생	박*하	2024-04-30 09: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대전 동구 계족로443번길	100,000
31	봉안	19981024-015	11-14-09246	이옥인	허*	2024-04-29 19:51	도착	서울 도봉구	100,000
32	봉안	19981024-016	11-14-09247	선창용	선*준	2024-04-29 19:51	도착	서울 도봉구	100,000
33	봉안	19981024-021	11-14-09171	조상휘	조*환	2024-04-30 11:2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55길	180,000
34	봉안	19981028-033	41-01-02214	장석수	오*희	2024-04-30 11: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00,000
35	봉안	19981029-009	41-01-02242	이경복	정*영	2024-04-30 13: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신내로	180,000
36	봉안	19981029-016	41-01-02248	서상지	서*훈	2024-04-30 11: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길	100,000
37	봉안	19981030-016	41-01-02272	최덕순	서*돈	2024-04-30 13:2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대학7가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8	봉안	19981030-018	41-01-02274	박무순	한*	2024-04-29 10:5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8길	25,000
39	봉안	19981031-008	41-01-02292	정정순	우*민	2024-04-29 11: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봉서산로	100,000
40	봉안	19981031-009	41-01-02293	박영남	박*철	2024-04-29 08:11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중랑구 묵2동	100,000
41	봉안	19981031-010	41-01-02294	김옥빈	고*남	2024-04-30 13: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화성시 수노을1로	25,000
42	봉안	20031001-007	66-01-31119	박민복	박*호	2024-04-30 10: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동남로	200,000
43	봉안	20031004-012	66-01-31125	서기만	서*성	2024-04-30 09:5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5,000
44	봉안	20031008-004	66-01-31131	민봉식	민*익	2024-04-30 11:0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46번길	480,000
45	봉안	20031012-004	73-04-22895	이정순	김*경	2024-04-30 12:1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75,000
46	봉안	20031013-001	73-04-22897	조종식	조*숙	2024-04-29 12:5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	75,000
47	봉안	20031015-002	66-01-31142	김달손	김*자	2024-04-30 10: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303번길	480,000
48	봉안	20031017-005	66-01-31144	김순자	문*천	2024-04-30 11: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157번길	200,000
49	봉안	20031018-001	73-04-22916	송병문	송*규	2024-04-30 15:43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양주시 감악산로514번길	75,000
50	봉안	20031018-002	73-04-22917	이경오	이*규	2024-04-30 11: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북 포항시 남구 문덕로24번길	75,000
51	봉안	20031022-004	73-04-22928	김동범	김*비	2024-04-30 16:1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미래로	75,000
52	봉안	20031022-006	73-04-22930	서재규	조*례	2024-04-30 13: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길	75,000
53	봉안	20031023-005	73-04-22934	최영애	전*선	2024-04-30 12: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45길	75,000
54	봉안	20031029-005	73-04-22949	김명심	정*영	2024-04-30 09:4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중구 은하수로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55	봉안	20031029-008	73-04-22950	서장열	서*필	2024-04-30 10:4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신림동	75,000
56	봉안	20031030-012	66-01-31171	정권덕	정*명	2024-04-30 15:2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면목로7길	200,000
57	봉안	20081002-001	63-01-21152	엄경원	김*설	2024-04-30 15: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수기로	75,000
58	봉안	20081003-001	63-01-21168	조화례	김*범	2024-04-26 12:13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22길	75,000
59	봉안	20081017-003	63-01-21717	이영자	정*조	2024-04-29 12:0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남 계룡시 서금암5길	75,000
60	봉안	20081018-004	63-01-21813	이연순	김*분	2024-04-30 11: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	75,000
61	봉안	20081022-004	63-01-22165	주명자	이*원	2024-04-30 10:0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역곡로57번길	75,000
62	봉안	20081023-002	63-01-22183	김명호	김*한	2024-04-30 13:4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5,000
63	봉안	20081029-001	63-01-22415	최대익	최*호	2024-04-30 09: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6가길	75,000
64	봉안	20081031-002	63-01-22494	이교부	이*선	2024-04-30 12: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장위로45가길	75,000
65	봉안	20131021-006	41-01-05881	이소악	석*영	2024-04-30 13: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호암로26가길	25,000
66	봉안	20131022-003	41-01-05946	이묘순	차*곤	2024-04-30 13:5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새꽃로	25,000
67	봉안	20131028-011	41-01-06792	최상길	최*순	2024-04-30 11: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5길	25,000
68	봉안	20131031-022	41-01-07171	강정순	임*실	2024-04-30 12: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64길	25,000
69	봉안	20181002-011	41-01-03037	김옥순	최*원	2024-04-30 11: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25,000
70	봉안	20181003-006	41-01-04329	서정옥	류*아	2024-05-03 10:34	미배달 기타(반송함)(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000
71	봉안	20181004-003	41-01-04979	정한규	정*민	2024-04-29 14:0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2길	25,000
72	봉안	20181007-010	41-01-07851	박종윤	박*옥	2024-04-30 17: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허준로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73	봉안	20181009-005	51-01-00401	이경순	이*우	2024-04-29 12:2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7길	25,000
74	봉안	20181013-004	51-01-04595	김태흥	김*세	2024-04-30 12: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구 소파로	25,000
75	봉안	20181027-004	72-12-10313	오은우	오*영	2024-04-30 13:03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제주 서귀포시 검은여로	25,000
76	봉안	20210710-011	12-03-04735	김통운	김*환	2024-04-30 11: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75,000
77	봉안	19940203-003	11-17-09768	조규목	조*준	2024-04-30 15:4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00,000
78	봉안	19940217-004	11-17-09709	김태근	김*호	2024-04-29 13:27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6길	100,000
79	봉안	19940222-004	12-19-13127	김인자	김*철	2024-04-26 13:5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세종 양달말길	100,000
80	봉안	19940926-003	11-19-10108	홍순유	박*섭	2024-04-30 14:0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풍무로96번길	100,000
81	봉안	19961212-001	11-03-02711	최종희	천*성	2024-04-30 13: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93번길	180,000
82	봉안	19990201-001	41-01-04547	김성하	김*석	2024-04-30 10: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남영동	100,000
83	봉안	19990201-005	41-01-04551	한점수	임*문	2024-04-29 09:48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00,000
84	봉안	19990202-001	41-01-04570	정간난	안*균	2024-05-02 09:5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신장로205번길	25,000
85	봉안	19990203-009	41-01-04602	이영예	이*복	2024-04-30 12: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정음로	100,000
86	봉안	19990205-014	41-01-04662	윤기호	윤*호	2024-04-29 19:51	도착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8길	100,000
87	봉안	19990205-015	41-01-04663	양승수	구*호	2024-04-29 10: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100,000
88	봉안	19990206-022	41-01-04687	이봉선	최*묵	2024-04-29 18:18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포천시 무봉로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89	봉안	19990206-029	41-01-04694	배길랑	배*기	2024-04-30 12: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삼양로38나길	180,000
90	봉안	19990207-023	41-01-04717	오병복	오*형	2024-04-30 10: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불광3동	90,000
91	봉안	19990208-002	41-01-04719	남규복	박*석	2024-04-30 09: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0,000
92	봉안	19990208-013	41-01-04729	남상교	신*수	2024-04-30 13:3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천호3동	100,000
93	봉안	19990210-003	41-01-04751	신정수	신*영	2024-04-30 11: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상계9동	100,000
94	봉안	19990210-029	41-01-04774	조상형	조*형	2024-04-30 09: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성안로25길	100,000
95	봉안	19990212-001	41-01-04795	이명달	이*국	2024-04-30 11: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1길	100,000
96	봉안	19990212-011	41-01-03382	이종연	박*쾌	2024-04-30 11: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삼전로12길	100,000
97	봉안	19990212-016	41-01-04808	김순점	박*헌	2024-04-30 10:0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585번길	25,000
98	봉안	19990212-023	41-01-04815	GOLY	모**람	2024-04-26 09:25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80,000
99	봉안	19990213-011	41-01-04827	민흥식	민*수	2024-04-29 12:1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연천군 연천로	25,000
100	봉안	19990213-012	41-01-04828	권덕인	박*선	2024-04-30 11:0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34번길	100,000
101	봉안	19990213-034	41-01-04844	홍순조	이*하	2024-04-29 13:29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319번길	180,000
102	봉안	19990214-009	41-01-04852	정창록	정*철	2024-04-29 16:4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 동두천시 신천로	180,000
103	봉안	19990214-013	41-01-04856	민경민	경*경	2024-04-30 14:1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031번길	100,000
104	봉안	19990215-002	41-01-04864	이순옥	신*자	2024-04-30 10: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연서로41길	100,000
105	봉안	19990215-019	41-01-04881	장강길	장*홍	2024-04-29 19:51	도착	서울 강북구 삼양로102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06	봉안	19990215-020	41-01-04882	김경수	김*태	2024-04-29 11:29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북 구미시 거양길	100,000
107	봉안	19990215-027	41-01-04889	김처주	이*	2024-04-29 08:5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2가길	100,000
108	봉안	19990215-035	41-01-04897	함성수	함*호	2024-04-30 10: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평화로	100,000
109	봉안	19990215-039	41-01-04901	김옥실	오*숙	2024-04-29 11: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100,000
110	봉안	19990215-045	41-01-02788	정병국	정*우	2024-04-29 11: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검단로	100,000
111	봉안	19990218-008	41-01-04942	오용석	한*철	2024-04-29 12:10	미배달 수취거절(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양천구 은행정로19가길	25,000
112	봉안	19990218-009	41-01-04943	조충성	조*성	2024-04-30 09: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신곡로	180,000
113	봉안	19990218-020	41-01-04954	김경선	김*철	2024-04-30 11:4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100,000
114	봉안	19990218-025	41-01-04334	이달우	진*자	2024-04-29 12:22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봉천3동	100,000
115	봉안	19990219-005	41-01-04961	문쌍환	문*준	2024-04-30 12: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30길	100,000
116	봉안	19990220-004	41-01-04987	남분희	김*준	2024-04-30 10:5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123번길	180,000
117	봉안	19990221-001	41-01-04315	박규호	박*용	2024-04-29 09: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중앙로51가길	100,000
118	봉안	19990221-006	41-01-05010	박마산	정*만	2024-04-29 09:2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100,000
119	봉안	19990221-008	41-01-05012	박강민	박*경	2024-04-30 12: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평택시 특구로27번길	180,000
120	봉안	19990222-005	41-01-05019	이세진	이*준	2024-04-30 10: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100,000
121	봉안	19990222-006	41-01-05020	김형운	김*철	2024-04-30 09:5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봉수대로1440번길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22	봉안	19990222-019	41-01-05032	이만길	이*수	2024-04-30 13:4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증산서길	100,000
123	봉안	19990222-022	41-01-05026	이종훈	이*미	2024-04-29 08:26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100,000
124	봉안	19990223-014	41-01-05054	조용호	조*수	2024-04-30 14: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6길	100,000
125	봉안	19990224-013	41-01-05074	이섭섭	서*길	2024-04-29 08:5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193번길	100,000
126	봉안	19990224-014	41-01-05075	나영덕	나*수	2024-04-30 10:2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0,000
127	봉안	19990225-012	41-01-05100	이상원	김*순	2024-04-30 11: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송이로19길	100,000
128	봉안	19990225-019	41-01-05107	김병윤	김*만	2024-05-02 10: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180,000
129	봉안	19990227-011	41-01-05141	이귀엽	강*동	2024-05-02 10:4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대청로	180,000
130	봉안	19990227-020	41-01-05150	김인수	민*기	2024-04-30 12: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07번길	180,000
131	봉안	19990227-028	41-01-05158	구자성	김*순	2024-04-29 10:29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부평구 부평5동	100,000
132	봉안	19990228-001	41-01-05159	전희례	김*학	2024-04-30 12: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131번길	180,000
133	봉안	19990228-012	41-01-05170	유순희	안*훈	2024-04-30 10:2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옥산로	180,000
134	봉안	20000203-027	61-01-00868	박순열	이*노	2024-04-29 13:43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332번길	45,000
135	봉안	20021106-030	73-01-15096	안성근	안*환	2024-04-30 12: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200,000
136	봉안	20040201-004	73-04-23301	이채복	이*철	2024-04-29 13:32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서로9길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37	봉안	20040211-001	73-04-23330	장선옥	이*성	2024-04-29 12:17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김포시 율마로	75,000
138	봉안	20040213-010	66-01-31273	조창석	이*희	2024-04-30 13:3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0,000
139	봉안	20040216-003	73-04-23348	양금절	조*무	2024-04-30 12:3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75,000
140	봉안	20040217-004	73-04-23354	정정자	김*한	2024-04-30 15: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75,000
141	봉안	20040217-005	73-04-23355	권이태랑	권*철	2024-04-30 12: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삼양로38길	75,000
142	봉안	20040224-006	73-04-23371	서남배	서*석	2024-04-29 15:0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동구 천호3동	75,000
143	봉안	20040227-003	73-04-23379	강대옥	강*례	2024-04-30 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17나길	75,000
144	봉안	20040227-004	73-04-23380	김필례	조*아	2024-04-29 11:4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00길	75,000
145	봉안	20040228-003	73-04-23383	백수남	남*만	2024-04-30 11:3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7길	75,000
146	봉안	20040228-006	73-04-23385	이달인	최*섭	2024-04-30 10:1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39번길	75,000
147	봉안	20090201-012	61-01-00071	박우열	박*정	2024-04-30 12: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16가길	75,000
148	봉안	20090204-003	71-02-00601	구윤회	구*희	2024-04-30 09:26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서초구 효령로20마길	75,000
149	봉안	20090206-004	71-02-00635	박창수	박*태	2024-04-30 10:0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75,000
150	봉안	20090213-001	71-02-00857	안인숙	안*호	2024-04-30 10:5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가정로	75,000
151	봉안	20090215-003	71-02-00915	전명교	전*호	2024-04-29 12:3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75,000
152	봉안	20090218-009	71-02-01119	공수경	홍*희	2024-04-30 09:5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연서로11길	75,000
153	봉안	20090220-006	71-02-01164	강성덕	강*분	2024-04-30 10:5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93번길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54	봉안	20090221-001	71-03-01243	신애우	신*식	2024-04-30 11: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75,000
155	봉안	20090224-001	71-03-01350	유영준	유*수	2024-04-30 12: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75,000
156	봉안	20090225-001	71-03-01390	박동원	이*애	2024-04-30 10: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현충로6길	75,000
157	봉안	20090226-005	71-03-01505	김경술	김*기	2024-04-30 11:3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마석로109번길	75,000
158	봉안	20090228-002	71-03-01568	함연옥	이*연	2024-04-30 10:4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22길	75,000
159	봉안	20140201-004	61-01-03200	김영원	김*갑	2024-04-30 10:2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마들로	25,000
160	봉안	20140203-006	61-01-03462	이우철	이*영	2024-04-29 14:2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노원구 동일로178길	25,000
161	봉안	20140204-003	61-01-03505	이태윤	이*영	2024-05-02 14: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강원 철원군 도덕탄길	25,000
162	봉안	20140207-008	62-01-04328	곽진국	곽*록	2024-04-30 12:3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50,000
163	봉안	20140214-004	62-01-04844	은탁	은*봉	2024-04-30 12:1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25,000
164	봉안	20140217-004	62-01-05084	임호자	이*숙	2024-04-29 12:49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부평구 부남로	25,000
165	봉안	20140218-002	62-01-05275	박복동	박*준	2024-04-30 10:3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62가길	25,000
166	봉안	20140218-008	62-01-05387	정순례	서*주	2024-04-30 13: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145길	25,000
167	봉안	20140220-007	62-01-05968	이경희	이*희	2024-04-30 14: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군포시 산본로386번길	25,000
168	봉안	20140222-001	62-01-06228	이인한	이*학	2024-04-30 10:3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월새싹길	50,000
169	봉안	20140227-003	62-01-06832	홍성택	홍*택	2024-04-30 13: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000
170	봉안	20140227-004	62-01-06892	김창용	김*선	2024-04-30 11: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25,000
171	봉안	20140227-010	62-01-06900	문경님	정*임	2024-04-30 09:5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양곡3로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72	봉안	20190206-003	60-01-27479	허봉영	한*석	2024-04-30 11: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50,000
173	봉안	20190209-012	60-01-27632	최용호	최*환	2024-04-30 13:2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길	50,000
174	봉안	20190210-006	60-01-27657	김영숙	이*	2024-04-30 10:3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84길	25,000
175	봉안	20190214-005	60-01-27737	정태경	김*철	2024-04-30 12:3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길	25,000
176	봉안	20190215-002	60-01-27761	문성두	문*오	2024-04-30 11: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5,000
177	봉안	20190216-009	60-01-27813	김사순	김*태	2024-04-30 13: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50,000
178	봉안	20190217-006	60-01-27828	황길순	황*석	2024-04-30 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가정긴골길	25,000
179	봉안	20190219-007	60-01-27908	김용이	장*수	2024-04-30 09: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440번길	50,000
180	봉안	20190220-005	60-01-27923	김영옥	송*섭	2024-04-30 08: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다길	25,000
181	봉안	20190224-007	60-01-28011	송옥빈	송*용	2024-04-30 09:41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5,000
182	봉안	20190224-008	60-01-28016	양인묵	양*영	2024-04-30 10:41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25,000
183	봉안	20190225-008	60-01-28042	이미자	방*신	2024-04-30 11: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길	25,000
184	봉안	20190226-009	60-01-28071	박순기	심*진	2024-04-29 08:14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 요, 1개월 보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25,000
185	봉안	20190228-001	60-01-28092	문귀례	김*자	2024-04-30 09:2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	25,000
186	분묘	19981012-001	18170112	이희성	이*남	2024-04-30 10:4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18가길	137,500
187	분묘	19981012-003	18170114	강신예	지*만	2024-04-29 10:4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 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성북구 길음2동	137,500
188	분묘	19981026-004	18170136	윤영숙	김*길	2024-05-02 12:2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아리수로	137,5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89	분묘	19981026-006	18170138	박봉오	오*순	2024-04-29 08:18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남구 도곡로77길	137,500
190	분묘	19981028-002	18170141	김애순	김*	2024-04-30 09:1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남양주시 양지로240번길	137,500
191	분묘	19981029-003	18170145	조복남	남*우	2024-04-30 10:2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7,500
192	분묘	20081014-001	2002357	박종임	김*환	2024-04-30 11: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서곶로	228,250
193	분묘	19940202-003	16030119	조은례	강*주	2024-04-29 13:43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81,500
194	분묘	19940205-003	16030130	김수이	최*현	2024-04-29 12:42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응암로34나길	181,500
195	분묘	19940206-001	16030131	이덕례	김*현	2024-04-30 12: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417번길	181,500
196	분묘	19940207-002	16030138	박정순	심*강	2024-04-30 12:05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호암로	181,500
197	분묘	19940207-004	16030140	이정옥	김*일	2024-04-29 13:3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20길	181,500
198	분묘	19940209-002	16030144	김여례	윤*상	2024-04-30 14:19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방회2동	181,500
199	분묘	19940209-004	16030146	김성길	김*원	2024-04-30 13:3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1길	181,500
200	분묘	19940211-001	16030158	유숙희	정*환	2024-04-30 13: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청천1동	181,500
201	분묘	19940213-002	16030169	송태순	한*수	2024-04-30 12:0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81,500
202	분묘	19940214-001	16030172	김금화	맹*도	2024-04-29 10:1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1,500
203	분묘	19940214-005	16030176	박공순	이*준	2024-04-30 10:27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충렬로10번길	181,500
204	분묘	19940217-003	16030186	김광중	김*훈	2024-04-30 09:5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가정로	181,500
205	분묘	19940218-004	16030191	김숙열	지*운	2024-04-30 12:1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407번길	181,5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함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206	분묘	19940220-003	16030201	김복심	정*수	2024-04-29 11:54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81,500
207	분묘	19940223-001	16030206	신연애	지*경	2024-04-29 11:21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30번길	181,500
208	분묘	19940227-004	16030217	김창용	김*성	2024-04-29 14:33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81,500
209	분묘	19720831-007	103773	이이동	이*일	2024-04-30 11:4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난곡로	235,060
210	분묘	19800602-002	200127	우용환	우*식	2024-05-02 10:08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하남시 초이동	280,370
211	분묘	20081014-001	2002357	박종임	김*환	2024-04-30 11:12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서구 서곶로	1,535,500
212	분묘	19680403-015	403404	한영훈	한*길	2024-04-30 13:06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30길	4,686,960
213	분묘	19921026-004	302851	한선득	한*숙	2024-04-30 12:14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4로	280,370
214	분묘	19960315-006	2048051	윤병학	윤*택	2024-04-29 08:45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파주시 광탄면	610,5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7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991	24. 5. 24.	주식회사 엠아이에스피 최인성 110111-4705236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501호, 502호 (성수동1가, 서울숲에이타워)
2	203992	24. 5. 24.	주식회사 코드쓰리 박희찬 110111-31404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6, 601호-608호 (가산동, 에이스케이원타워)
3	203993	24. 5. 24.	힐탑 아이씨티 정강준 447-04-03029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C동 26층 21호 (가산동, 가산퍼블릭)
4	203994	24. 5. 29.	주식회사 다온이앤씨 김영철, 김진향 110111-61717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37, 401호(잠실동)
5	203995	24. 5. 29.	주식회사 이프정보시스템 송호섭, 신현민, 주준모 110111-233733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비동 801호, 802호, 803호, 804호, 821호, 822호, 823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타워)
6	203996	24. 5. 29.	에이아이테크 주식회사 (AI TECH Co., Ltd.) 김홍균 110111-8933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6길 5, 1302호(역삼동, 육성빌딩)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7	203997	24. 5. 29.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Besping Global Inc.) 장인수, 김써니 131111-042609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 13층, 14층, 15층, 16층(서초동, 대륭서초타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79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목동혁신허브(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1 목동CBS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목동혁신허브(CBS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410호(2024.2.15.)로 열람공고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재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1층 시설계획과(☎02-2133-8454)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02-2620-3504)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서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1	-	증) 6,730.0	6,730.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방송·통신시설	목동 917-1	6,730.0	감) 6,730.0	-	서고시 422호 (94.12.27.)	

3)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8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삼성홈이엔씨(주)]

소방시설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해당 소방시설업체로 통보하여야 하나 현재 영업소재지 불명 및 대표자 연락두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6. 7.(금) ~ 2024. 6. 21.(금)

2.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행정처분(3차 - 등록취소)</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 명</td><td colspan="5">대표 김학수 [삼성홈이엔씨(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6층 1603호(서초동, 강남빌딩)</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행정처분(3차 - 등록취소)</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3차
- 예방과-8673(2024.5.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청문 계획[(주)삼ㅇㅇ이엔씨-등록취소]”</td></tr>
<tr><td rowspan="4">청문실시</td><td>기관명</td><td>서초소방서</td><td>부서명</td><td>예방과</td><td>담당자</td><td>김보미</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td><td>전화 번호</td><td>02-6981-5904</td></tr>
<tr><td>일 시</td><td colspan="3">2024년 6월 26일(수) 14:00</td><td>장소</td><td>서초소방서 3층 창의실</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4">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장</td></tr>
<tr><td>성 명</td><td colspan="4">신성균</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섬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문회 미참석 또는 의견서 미제출시 예정된 처분인 (행정처분 3차 – 등록취소)가 청문실시일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서식 7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7.28>

증거조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증명할 사실		
	증거조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7. 11.>

문서 [ ] 열람 [ ] 복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① 처분 또는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서의 열람(복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위 처분 또는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사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06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03.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0호(2024. 4. 4.)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1호(2023. 11. 23.)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80호(2024. 4. 4.)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의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공고명: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열람도서 참조)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구역계 선형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구역계 선형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등

다.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서울시 도시공간전략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중구 도심정비과

마.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로 서면제출

○ 인터넷 의견제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바. 열람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서을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 등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07호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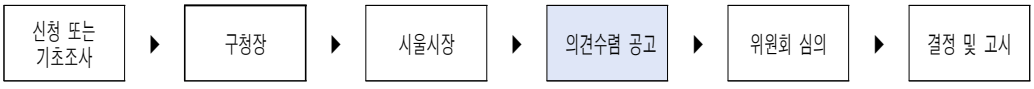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4. 6. 7. ~ 2024. 6. 21.

2. 의견제출 및 방법
○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붙임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6.21.까지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공간정보담당관
- 전자우편: sohee0523@seoul.go.kr / FAX: 02-768-8842
- 문의: 02-2133-2838

3. 도로명 부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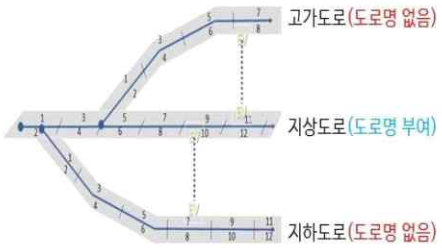


붙임1	도로명 부여 조서

입체도로란?

◦250m 이상(진 · 출입용 1km 이상)인 고가 · 지하도로
◦지상도로와 입체도로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전국 입체도로 구간을 도로구간 데이터*로 구축 중

* 도로구간 및 기초간격 설정, 기초번호 및 도로명 부여 등



□ 내부순환로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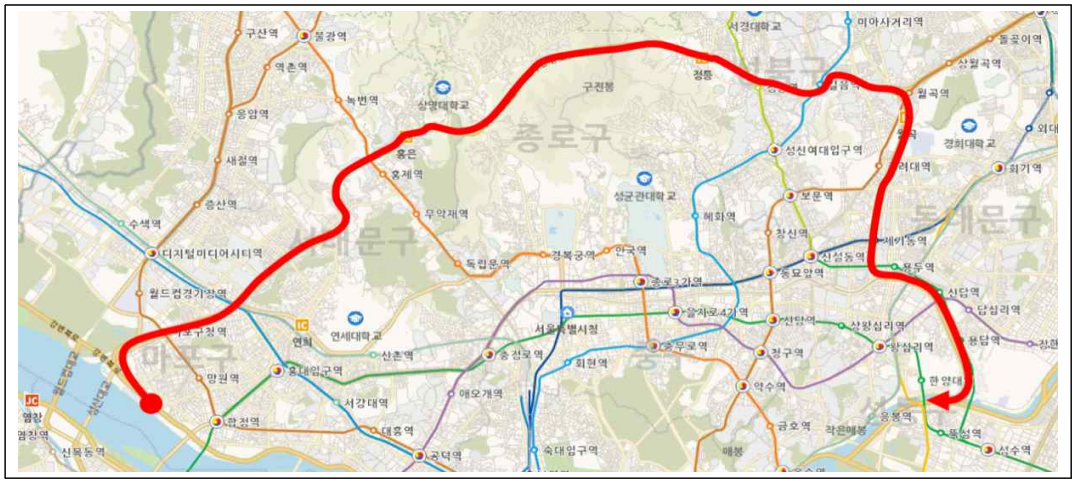
◯ 연장: (상행) 23,652m, (하행) 24,001m

◯ 예비도로명: 내부순환로

◯ 도로구간 조서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유형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구분	시작 지점	끝 지점	길이 (m)	폭 (m)			
내부 순환로	30년 이상 불려 온 명칭의 연속성과 도로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물 명칭으로 부여	고가도로 + 터널 (혼재)	상행	서울 마포구 망원동 224-3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74-1	23,652	13	서울시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20	1~ 2,366
			하행			24,001	13			

◯ 중심선



붙임2	의견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에 대한 의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 – 사유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정	→	통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08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 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을 미달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사전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6.7. ~ 2024.6.21.

2. 처분대상 및 내용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4-4-0400	㈜영평수산 박종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3개월 무실적 (2024.2월~2024.4월)	중도매업 허가취소

3. 처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4. 이의제기 안내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담당관 ☎02)2133-446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13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공공측량업 (03-001576)	㈜코세코 (117-81-12915)	이종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길 34 (신정동)	2024. 6. 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7914) 또는 토지관리과(☎02-2133-4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별표 5의2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 공고하여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5의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8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

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국가직과의 균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시달함에 따라 현행 규칙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제7조제3항, 별지 제1호)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추가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개선(별표 5의2)

- ‘고등학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 등)’로 수정
- 과장 직위 이상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경력채용 응시요건에 관리자 근무경력 요구 폐지

다.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별지 제1호)

-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4-66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09호(2008.11.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7호 (2009.05.21.)로 결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22-18호(2022.01.20.)로 결정(경미한 변경)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문화시설)의 실시계획인가(종로구 고시 제2023-74호)된 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종 로 구 청 장

가. 사업내용

1)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문화시설)사업
   나) 명 칭 : KT광화문 WEST 리모델링 사업 관련 연결통로 2개소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가) 광화문 지하공공보도 연결통로[지하도로]
      ㄱ. 규 모 : 폭원 8.1m, 길이 1.0m, 높이 6.1m
      ㄴ. 면 적 : 4.5㎡
   나) 세종이야기 연결통로[문화시설]
      ㄱ. 규 모 : 폭원 9.6m, 길이 3.1m, 높이 4.0m
      ㄴ. 면 적 : 3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케이티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불정로 90 (정자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3년 12월 7일	
준공예정일	2024년 6월 30일	2025년 2월 28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연번	소재지	지 목	지적 (㎡)	사용할 토지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종로구 세종로 100-1	도로	299.80	4.5	서울 특별시		-			지하도로
2	종로구 세종로 84-8	도로	2469.90	32	서울 특별시		-			문화시설 (세종이야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준공 후 무상귀속(관련기관)

나. 관계도서 : 생략(종로구청 건축과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고시 제2024-70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1-30번지일대 체육시설 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623호(2021.5.20.)로 주민의견청취하고,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12.1.)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호(2022.1.6.)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체육진흥과(☎3153-98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7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1-3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2) 명 칭: 마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

다.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 면적: 4,119㎡
  2)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7,613.87㎡, 건폐율 39.08%,
     용적률 140.58%, 높이 26.5m
  3) 용도/공사종별 : 체육시설/신축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2024.12.31.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마포구청 체육진흥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마포구 당인동	1-30	대	2,608.0	2,608.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				
2	마포구 상수동	349-19	대	1,011.0	1,01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				
3	마포구 상수동	349-20	잡종지	410.0	4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				
합 계				4,119.0	4,119.0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체육진흥과(☎02-3153-9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 제2024-105호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9-447(1989. 8. 4.)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 구로역에 대하여 『구로역 역사 증축공사 및 동·서측 출입구 신설공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585-3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 명 칭 : 구로역 역사 증축공사 및 동·서측 출입구 신설공사

다. 사업규모 : 53,41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한국철도공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27. 12.

바. 실시계획(변경)인가 개요
○ 실시계획인가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변경내용
대지면적(㎡)	39,903	53,413	증) 13,510
건축면적(㎡)	3,527.13	5,658.36	증) 2,131.23
연 면 적(㎡)	8,955.66	11,334.42	증) 2,378.76
지상층연면적(㎡)	7,874.36	10,253.12	증) 2,378.76
규모	A동 지하1층~지상3층 B동 지하1층~지상5층	A동 지하1층~지상3층 B동 지하1층~지상5층 서측동 지상 1층 동측동 지상 2층	서측동 지상 1층 74.52㎡ 동측동 지상 2층 284.46㎡ 역사증축(지상3~4층) : 2,296.19㎡

○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노후 철도역사 증축 및 동·서측 주거지역 출입구 신설을 통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기존 출입구 3개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보행접근성 향상

사.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1	구로동	584-1	철	81.0	81.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2	구로동	585-1	철	295.0	295.0	국토교통부		
3	구로동	585-3	철	444.0	444.0	국토교통부		
4	구로동	585-5	철	487.0	487.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5	구로동	585-11	철	24.0	24.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6	구로동	585-12	철	399.0	399.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7	구로동	586-1	철	793.0	793.0	국토교통부		
8	구로동	586-10	철	785.0	785.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9	구로동	586-11	철	1,425.0	1,425.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10	구로동	587-1	철	711.0	711.0	국토교통부		
11	구로동	589-7	철	5,875.0	5,875.0	국토교통부		
12	구로동	589-14	철	27,630.0	27,630.0	국토교통부		
13	구로동	589-26	철	368.0	368.0	국토교통부		
14	구로동	563-5	철	2,407.0	159.0	국토교통부		
15	구로동	567-15	철	136.0	136.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16	구로동	567-16	철	38.0	38.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17	구로동	567-17	철	1.0	1.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18	구로동	567-18	철	153.0	153.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19	구로동	587-3	철	99.0	99.0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	
20	신도림동	413-48	철	11,940.0	11,940.0	국토교통부		금회신청
21	구로동	563-3	철	1,570.0	1,570.0	국토교통부		
계				55,661.0	53,413.0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6)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초구고시 제2024-1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경관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원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경관녹지)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초 구 청 장

1. 실시계획인가 신청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65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경관녹지)사업
  - 명칭 :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도로 및 경관녹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
  - 성명 :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왕승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74-130번지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5) 사업시행지의 규모
  ① 도로

시설명	규 모			결 정		금회시행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폭원	연장(m)	
도로	중로	2	1	15	89	15	89	서초구 고시 제2023-89호 (23.07.06)
	중로	2	A	15~18	550	15~18	550	
	중로	3	1	12	579	12	579	
	중로	3	A	12~15	259	12~15	259	
	소로	2	A	8~10	305	8~10	305	
	소로	2	B	9	469	9	469	
	소로	2	C	9~12	353	9~12	353	
	소로	3	3	6	146	6	146	

② 경관녹지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경관녹지 A	서초구 내곡동 1-658번지 일대	5,707	서울시 고시 제2024-01호 (24.01.04)
경관녹지 B	서초구 내곡동 1-1383번지 일대	3,262	
경관녹지 C	서초구 내곡동 1-1384번지 일대	2,062	
경관녹지 D	서초구 내곡동 산12-557번지 일대	7,541	
경관녹지 E	서초구 내곡동 1-1073번지 일대	2,598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100	내곡동 374-88	내곡동 1-657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21-113호 (2021.3.4.)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변경	중로	2	1	15	국지도로	89	내곡동 374-88	내곡동 1-65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	12	국지도로	280	내곡동 산12-464	내곡동 산12-412	일반도로	-	서초구 고시 제1997-29호 (1997.6.25.)	헌인마을 서측 진입도로
변경	중로	2	A	15 ~18	국지도로	550	내곡동 산12-737	내곡동 산12-63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578	내곡동 산12-660	내곡동 산12-63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21-113호 (2021.3.4.)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579	내곡동 산12-660	내곡동 산12-67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	12	국지도로	274	내곡동 산12-410	내곡동 1-1075	일반도로	-	서초구 고시 제1997-29호 (1997.6.25.)	헌인마을 동측 진입도로
변경	중로	3	A	12 ~15	국지도로	259	내곡동 산12-738	내곡동 1-107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A	8	국지도로	595	내곡동 산12-633	내곡동 산12-654	일반도로	-	서초구 고시 제1997-29호 (1997.6.25.)	-
변경	소로	2	A	8~10	국지도로	305	내곡동 산12-516	내곡동 산12-654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B	8	국지도로	453	내곡동 1-2740	내곡동 산12-660	일반도로	-	서초구 고시 제1997-29호 (1997.6.25.)	-
변경	소로	2	B	9	국지도로	469	내곡동 1-2740	내곡동 산12-66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361	내곡동 1-1829	내곡동 산12-634	일반도로	-	서초구 고시 제1997-29호 (1997.6.25.)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변경	소로	2	C	9~12	국지도로	353	내곡동 1-1829	내곡동 산12-63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46	내곡동 1-1325	내곡동 1-1327	일반도로	-	서초구 고시 제1995-17호 (1995.4.6.)	다니엘 학교 진입도로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146	내곡동 1-1325	내곡동 1-1327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중로2-1	○ 도로연장 및 선형변경 - 연장 : 100m → 89m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도로연장 및 선형변경
중로3-	중로2-A	○ 도로연장 및 폭원, 선형, 기종점 변경 - 연장 : 280m → 550m - 폭원 : 12m → 15~18m - 기점 : 내곡동 산12-464 → 산12-737 - 종점 : 내곡동 산12-412 → 산12-637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도로연장 및 폭원변경 ○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3-1	중로3-1	○ 도로연장 및 선형, 종점 변경 - 연장 : 578m → 579m - 종점 : 내곡동 산12-634 → 산12-670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및 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도로연장, 선형변경
중로3-	중로3-A	○ 도로연장 및 폭원, 선형, 기점 변경 - 연장 : 274m → 259m - 폭원 : 12m → 12~15m - 기점 : 내곡동 산12-410 → 산12-738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도로폭원 및 선형변경 ○ 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도로연장 반영
소로2-A	소로2-A	○ 도로연장 및 폭원, 선형, 기점 변경 - 연장 : 595m → 305m - 폭원 : 8m → 8~10m - 기점 : 내곡동 산12-633 → 산12-516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도로연장·폭원 및 선형변경 ○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B	소로2-B	○ 도로연장 및 폭원, 선형변경 - 연장 : 453m → 469m - 폭원 : 8m → 9m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도로폭원 및 선형변경 ○ 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도로연장 반영
소로2-	소로2-C	○ 도로연장 및 폭원, 선형 변경 - 연장 : 361m → 353m - 폭원 : 8m → 9~12m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도로연장·폭원 및 선형변경
소로3-3	소로3-3	○ 도로시점부 선형 변경	○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선형변경

2) 경관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경관녹지	서초구 내곡동 1-658번지 일대	-	증)5,707	5,7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호 (2024.1.4.)	
	B	녹지	경관녹지	서초구 내곡동 1-1383번지 일대	-	증)3,262	3,262		
	C	녹지	경관녹지	서초구 내곡동 1-1384번지 일대	-	증)2,062	2,062		
	D	녹지	경관녹지	서초구 내곡동 산12-557번지 일대	-	증)7,541	7,541		
	E	녹지	경관녹지	서초구 내곡동 1-1073번지 일대	-	증)2,598	2,598		

■ 경관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5,707㎡	•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B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3,262㎡	•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C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2,062㎡	•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D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7,541㎡	•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E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2,598㎡	•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도면 : “게재생략”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5.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4-5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9호(2016.5.19.)로 최초 결정되고 중구 고시 제2023-49호(2023.9.14.)로 결정(변경)되고 중구 고시 제2023-60호(2023.10.2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 도심정비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심정비과(☎3396-5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7번지 일대(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서울로7017(보행자 전용도로) 연결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
3) 사업시행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 규모 : L=15.41m, B=4~8m 보행자 전용 도로 개설
- 면적 : 61.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신영부동산신탁(주) 대표이사 박순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8층(여의도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24.05.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4.08.31.
6) 설계 상세 사항 : 변경(관계도면 참고)
- 변경 사유 : 보행교 교각(P1) 기초부와 지하 매설물 간 간섭 및 교각(P2) 안전지대 표시선과의 간섭에 따른 위치와 규모 변경

7)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3396-5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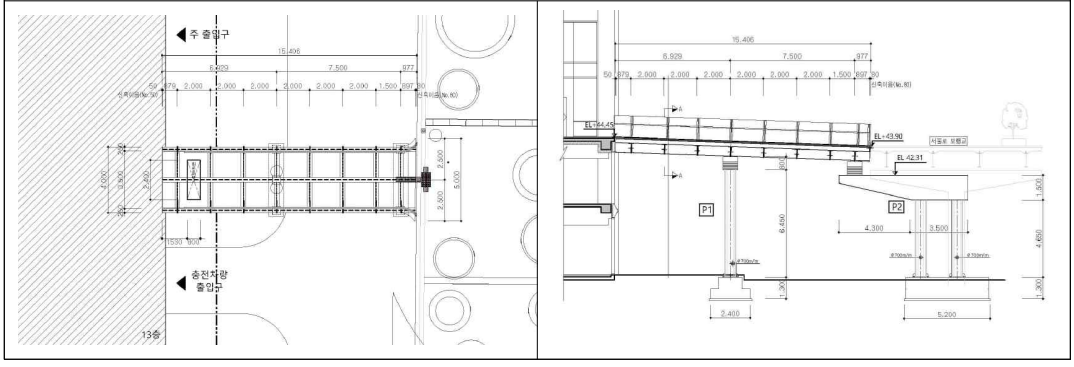
8) 열람기간 : 공고일(2024년 6월 7일)로부터 14일 간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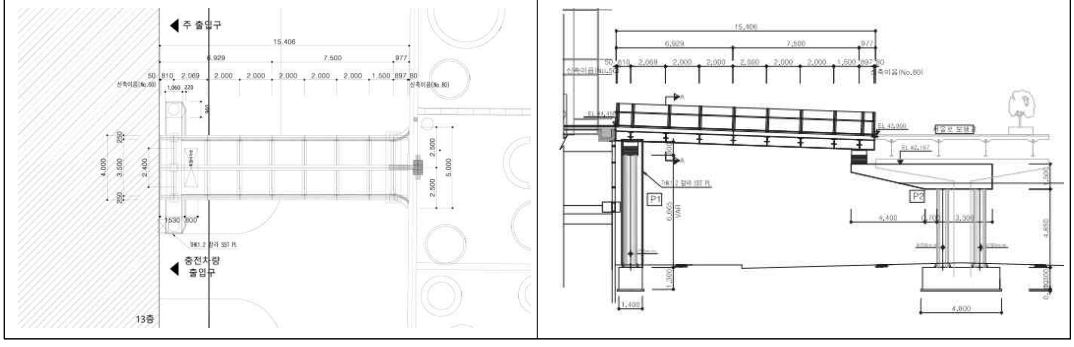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목	이용사항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남대문로5가 84-15	도	도로	15,607.4	48.4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2	남대문로5가 84-17	주	대지	953.1	13.19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8층	-	-	-
합계		-		16,560.5	61.60	-	-	-	-	-

다. 관계도면

도 면(기 정)



도 면(변 경)



◈ 광진구공고 제2024-645호

광장동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4-13(2024.05.23.)호로 도시관리계획(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광장동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공원조성계획(최초) 수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광 진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가) 광장동 공원(소공원)
   나) 광장동 공원(어린이공원)

2. 위　　치
   가) 광장동 공원(소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48-24 일원
   나) 광장동 공원(어린이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78번지

3. 면　　적
   가) 광장동 공원(소공원): 677㎡
   나) 광장동 공원(어린이공원): 2,026㎡

4. 공원조성계획
   가) 광장동 공원(소공원): 기반시설, 유희시설 등
   나) 광장동 공원(어린이공원):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

5.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3)

8. 안내사항: 본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소공원>

가. 총괄표(위치 : 광진구 광장동 248-24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677	134				8	
기반시설	소계	26	26				5	
	광장	26	26				5	
조경시설		-	-					
휴양시설		-	-					
유희시설		108	108				3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녹지 및 기타		543						
시설율		(134÷677)×100=19.79% (법정 20%이하)						
건폐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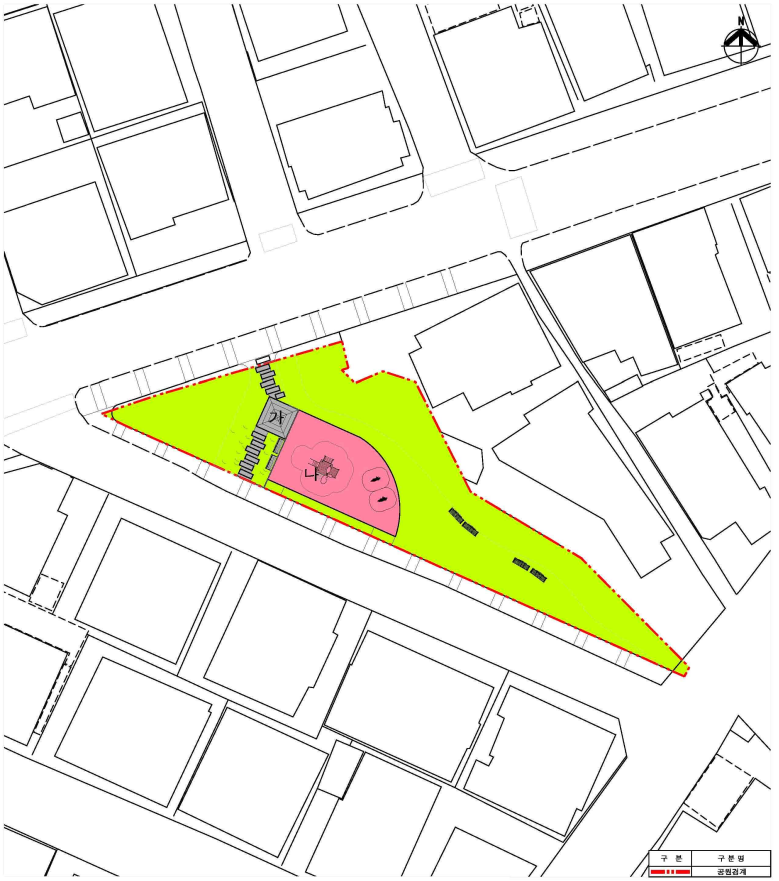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677	134					8	
기반시설	소계			26	26					5	
	진입광장	가		26	26					5	
유희시설	소계			108	108					3	
	어린이놀이터	나		108	108					3	
녹지 및 기타	소계			543							
	녹지			543							

조성계획도[최초]

도시계획시설

SCALE=1/20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677	134	8	
기반시설	소 계		26	26	5	
	진입광장	가	26	26	5	
유희시설	소 계		108	108	3	
	어린이놀이터	나	108	108	3	
녹지및기타	소 계		543			
	녹 지		543			

Scale : 1/200(A1)

N

0 2 5 10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어린이공원>

가. 총괄표(위치 : 광진구 광장동 378)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2,026	831				23	
기반시설	소계	396	396				7	
	도로	234	234					
	광장	162	162				7	
조경시설		80	80					
휴양시설		60	60				7	
유희시설		207	207				6	
운동시설		88	88				3	
교양시설		-	-					
편익시설		-	-					
관리시설		-	-					
녹지 및 기타		1,195	-					
시설율		(716÷2,026)×100=41.01% (법정 60%이하)						
건폐율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026	831					23	
기반시설	소계			396	396					7	
	도로			234	234						
	진입광장	가		162	162					7	
		가-1		64	64					(4)	
		가-2		98	98					(3)	
조경시설	소계			80	80						
	화계	나		80	80						
휴양시설	소계			60	60					7	
	휴게소	다		60	60					7	
		다-1		30	30					(3)	
		다-2		30	30					(4)	
유희시설	소계			207	207					6	
	모험놀이터	라		108	108					2	
	어린이놀이터	마		99	99					4	
운동시설	소계			88	88					3	
	체력단련장	바		88	88					3	
녹지 및 기타	소계			1,195							
	녹지			1,195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최초	합계				199	234				
최초	소로	소계			199	234				
신설		3	1	0.5~2.0	120	115	산책로	진입광장 (가-2)	진입광장 (가-1)	
신설		3	2	1.5	79	119	산책로	진입광장 (가-2)	진입광장 (가-1)	

조성계획도[최초]

도시계획시설

SCALE=1/300



■ 범 례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2,026	831	23	
기반시설	소 계		396	396	7	
	도 로	(중)	234	234		
	친림광장	가	162	162	7	
		가-1	64	64	(4)	
		가-2	98	98	(3)	
조경시설	소 계		80	80		
	화 계	나	80	80		
휴양시설	소 계		60	60	7	
	휴 게 소	다	60	60	7	
		다-1	30	30	(3)	
		다-2	30	30	(4)	
유희시설	소 계		207	207	6	
	모험놀이터	라	108	108	2	
	어린이놀이터	마	99	99	4	
운동시설	소 계		88	88	3	
	체력단련장	바	88	88	3	
녹지및기타	소 계		1,195			
	녹 지		1,195			

Scale : 1/300(A1)

N

0 2 5 10

◈ 중랑구공고 제2024-80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안)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23호(2021.01.06.)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7호(2021.06.30.)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 승인되고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아래 제2022-137호(2022.12.07.)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고시된 중랑구 신내동 810필지 서울중랑경찰서(본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건축과(☎2094-23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7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10 중랑경찰서 (신내동 267-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공공청사1)
  2) 사업의 명칭 : 중랑경찰서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1,654.4㎡
  2) 전체 건축물 규모 : 5개동, 연면적 합계 12,980.63㎡
  3) 용도/공사종별 : 공공업무시설 /증축
  4) 증축내용 : 본청사,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9,867.19㎡ (증축면적 48.50㎡)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중랑경찰서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중랑경찰서)
마. 사업의 허가, 착수 및 준공일
  1) 허가일 : 2022.12.07.
  2) 준공일 : 2024.04.24.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중랑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변경 없음 (생략)

◈ 성북구공고 제2024-89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54호(2024.3.28.)로 조성계획(변경) 및 성북구고시 제2019-117호(2019.7.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성북구고시 제2019-131호(2019.8.8.), 성북구고시 제2021-101호(2021.6.3.)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성북구 성북동 산23-12일대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변경]
- 기존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 변경 : 북악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3-12번지 일대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13,784㎡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사업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기간[변경]
- 기존 : 2019. 7. 18. ~ 2024. 7. 17.
- 변경 : 2019. 7. 18. ~ 2026. 7. 17.
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변경없음)
아.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자.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공고 제2024-91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4호(1994.04.07.)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151호(1998.05.06.), 제1999-23호(1999.02.05.),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9-66호(2019.04.18.)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된 「도시철도 6호선」 구간 중 '보문 정거장' 5번 · 6번 출입구 및 일부 환기구 시설과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호(2009.02.05.)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1호(2011.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9-66호(2019.04.18.)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된 「우이~신설 도시철도」 구간 중 'L012 정거장' 비상 출입구 및 일부 환기구 시설에 대하여
3. 출입구(5번 · 6번 · 비상) 및 환기구 이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2-2241-2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성 북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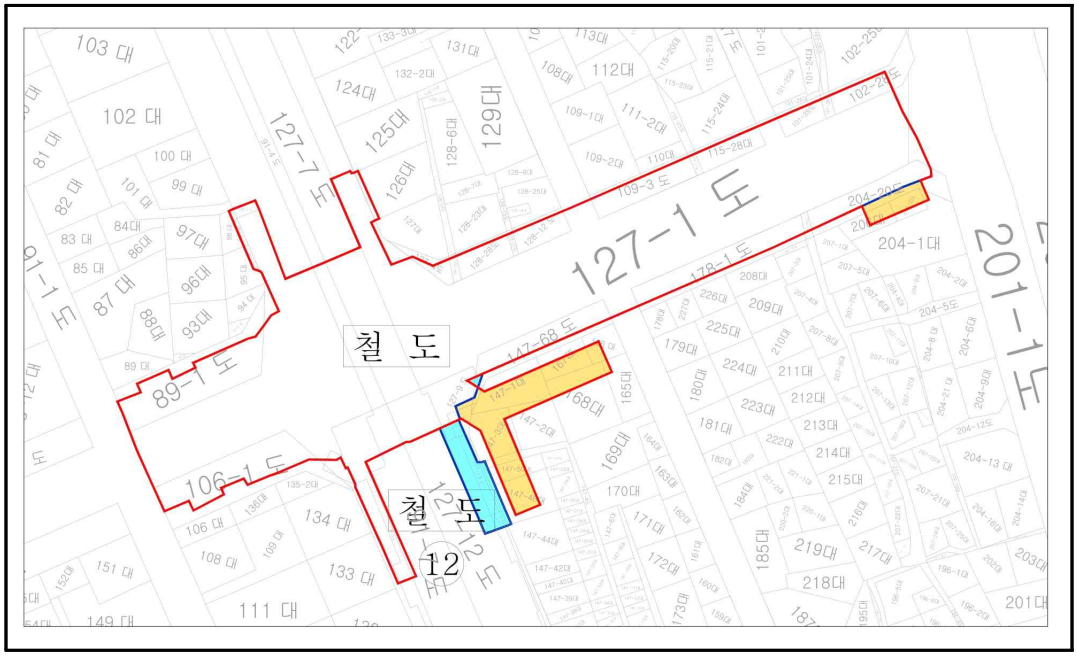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09번지 및 127-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2) 명칭: 도시철도 6호선 및 우이~신설선 보문역 출입구(5번 · 6번 · 비상) 및 환기구 이설공사
다. 사업 규모

연번	구 분	길이(m)	폭원(m)	높이(m)	이설면적(㎡)	비 고
1	6호선 5번 출입구	34.125	5.55	12.305	448.5	현 외부 계단 변경 에스컬레이터
2	6호선 6번 출입구	18.286	4.20	11.305		-
3	6호선 환기구(#6206, 급기)	4.962	11.40	5.262	53.7	-
4	우이~신설선 환기구(급기, 배기)	3.191	9.90	7.742	26.3	-
5	우이~신설선 비상출입구	10.228	2.40	5.590	24.0	-
6	우이~신설선 본선환기구 L12S1(급기)	3.274	5.0	7.742	22.8	-
	계				5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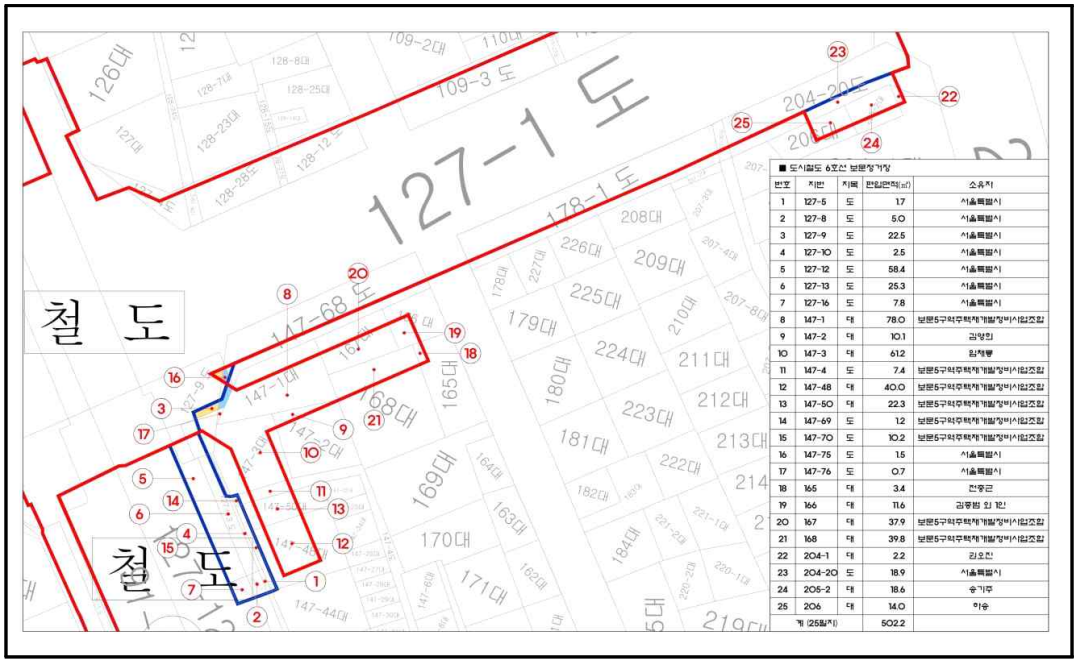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6. 8.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준공 후 무상귀속
아. 열람기간: 2024. 6. 7.(금) ~ 2024. 6. 21.(금)(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2241-2863)
차. 관계도서: 생략(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

【붙임】

– 지적도 (철도, 도시철도 6호선)



– 수용할 토지 지적도 (철도, 도시철도 6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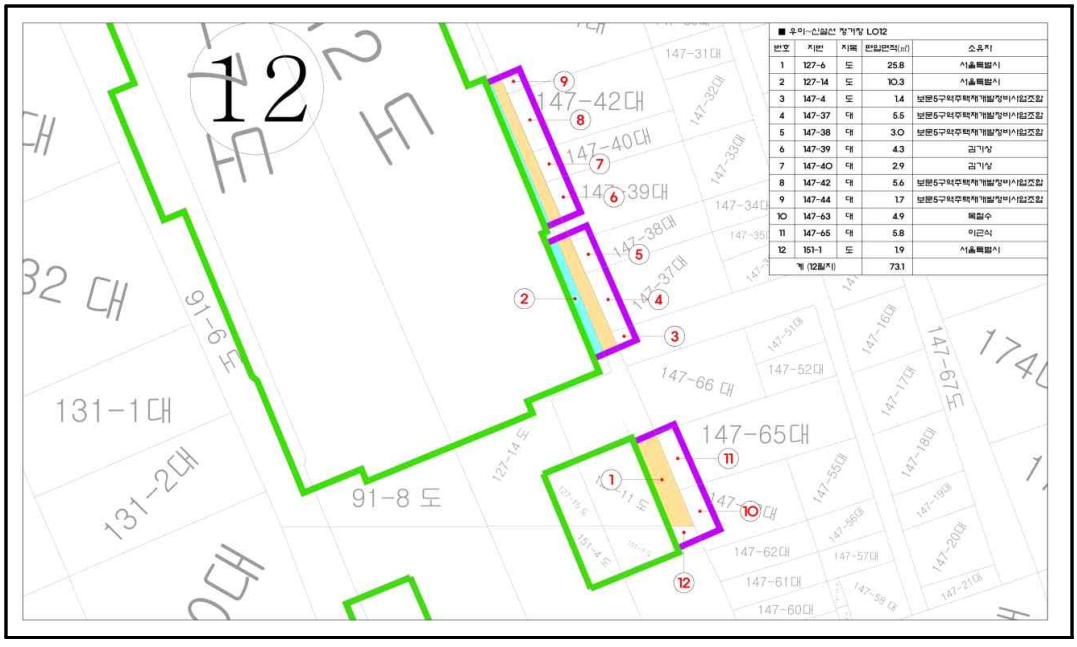
■ 도시철도 6호선 보분철거장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1	127-5	도	1.7	서울특별시
2	127-8	도	5.0	서울특별시
3	127-9	도	22.5	서울특별시
4	127-10	도	2.5	서울특별시
5	127-12	도	58.4	서울특별시
6	127-13	도	25.3	서울특별시
7	127-16	도	7.8	서울특별시
8	147-1	대	78.0	보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9	147-2	대	10.1	김양임
10	147-3	대	61.2	임채봉
11	147-4	도	7.4	보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2	147-48	대	40.0	보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3	147-50	대	22.3	보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4	147-69	도	1.2	보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5	147-70	도	10.2	보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	147-75	도	1.5	서울특별시
17	147-76	도	0.7	서울특별시
18	165	대	3.4	전우근
19	166	대	11.6	김동범 외 1인
20	167	대	37.9	보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1	168	대	39.8	보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2	204-1	대	2.2	김호진
23	204-20	도	18.9	서울특별시
24	205-2	대	18.6	송기주
25	206	대	14.0	하송
계 (25필지)			502.2	

– 지적도 (철도, 우이~신설선)



– 수용할 토지 지적도 (철도, 우이~신설선)



■ 우이~신설선 철거장 LO12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1	127-6	도	25.8	서울특별시
2	127-14	도	10.3	서울특별시
3	147-4	도	1.4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147-37	대	5.5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147-38	대	3.0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6	147-39	대	4.3	김기상
7	147-40	대	2.9	김기상
8	147-42	대	5.6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9	147-44	대	1.7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0	147-63	대	4.9	목철수
11	147-65	대	5.8	이근식
12	151-1	도	1.9	서울특별시
계 (12필지)			7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가. 철도사업(도시철도 6호선 보문정거장)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용	계			2,002.60	502.2													
	1	보문동1가 127-5	도	1.7	1.7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2	보문동1가 127-8	도	5.0	5.0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3	보문동1가 127-9	도	70.0	22.5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4	보문동1가 127-10	도	25.0	2.5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5	보문동1가 127-12	도	604.3	58.4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6	보문동1가 127-13	도	27.1	25.3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7	보문동1가 127-16	도	7.8	7.8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용	8	보문동1가 147-1	대	96.5	78.0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	-
	9	보문동1가 147-2	대	86.0	10.1	대지	준주거	김영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06-35(보문동1가)	-	-	-	-	-	-	-	-	-	-	-
	10	보문동1가 147-3	대	81.6	61.2	대지	준주거	임채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18-22	-	-	-	-	-	-	-	-	-	-	-
	11	보문동1가 147-4	도	107.9	7.4	도로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	-	-	-	-	-	-	-	-	-	-
	12	보문동1가 147-48	대	91.5	40.0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	-
	13	보문동1가 147-50	대	41.8	22.3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	-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4	보문동1가 147-69	도	1.2	1.2	도로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	-	-	-	-	-	-	-	-
	15	보문동1가 147-70	도	10.2	10.2	도로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	-	-	-	-	-	-	-	-
사용	16	보문동1가 147-75	도	6.0	1.5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17	보문동1가 147-76	도	0.7	0.7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18	보문동1가 165	대	70.7	3.4	대지	준주거	전충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07, 8동 1007호(오금동, 상아아파트)	-	-	-	-	-	-	-	-	-
	19	보문동1가 166	대	41.3	11.6	대지	준주거	김종범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21, 802호(성내동, 광남캐스빌아파트)	-	-	-	-	-	-	-	-	-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용	20	보문동1가 167	대	56.7	37.9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
	21	보문동1가 168	대	151.4	39.8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
	22	보문동1가 204-1	대	200.1	2.2	대지	준주거	권오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37, 102동 1108호(보문동4가, 보문하우스토리)		-	-	-	-	-				-	-	-	-	-
	23	보문동1가 204-20	도	148.0	18.9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
	24	보문동1가 205-2	대	28.1	18.6	대지	준주거	송기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112, 102동 301호(보문동6가, 아남아파트)		-	-	-	-	-				-	-	-	-	-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5	보문동1가 206	대	42.0	14.0	대지	준주거	하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2길 54, 지하01호(북가좌동, 반석빌라)	-	-	-	-	-	-	-	-	-

나. 철도사업(우이~신설선 정거장 L012)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용	계			1,070.8	73.1													
	1	보문동1가 127-6	도	56.2	25.8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2	보문동1가 127-14	도	63.5	10.3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용	3	보문동1가 147-4	도	107.9	1.4	도로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	-	-	-	-	-	-	-	-	-	-
	4	보문동1가 147-37	대	45.3	5.5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	-
	5	보문동1가 147-38	대	20.8	3.0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	-
	6	보문동1가 147-39	대	42.0	4.3	대지	준주거	김기상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1길 34, 910호(묵정동, 묵정아파트)		-	-	-	-	-	-	-	-	-	-	-
	7	보문동1가 147-40	대	19.8	2.9	대지	준주거	김기상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1길 34, 910호(묵정동, 묵정아파트)		-	-	-	-	-	-	-	-	-	-	-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보문동1가 147-42	대	45.0	5.6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2층(보문동2가)		-	-	-	-	-		-	-	-	-	-
	9	보문동1가 147-44	대	88.5	1.7	대지	준주거	보문제5구 역주택재 개발정비 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8-1, 2층(보문동1가)		-	-	-	-	-		-	-	-	-	-
	10	보문동1가 147-63	대	33.0	4.9	대지	준주거	목철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11 신봉마을자이2차아파트 220-1001		-	-	-	-	-		-	-	-	-	-
	11	보문동1가 147-65	대	56.5	5.8	대지	준주거	이근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116, 101동 903호(방학동, 거성학마을아파트)		-	-	-	-	-		-	-	-	-	-
	12	보문동1가 151-1	도	492.3	1.9	도로	준주거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	-	-	-

공 람 의 견 서

<table>
<tr><td>공람내용</td><td colspan="4">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td></tr>
<tr><td>공람기간</td><td colspan="4">2024. 6. 7. ~ 2024. 6. 21.</td></tr>
<tr><td rowspan="2">의 견
제 출 인</td><td>주소</td><td colspan="3">(전화 :)</td></tr>
<tr><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5">의 견 내 용</td></tr>
<tr><td colspan="5"></td></tr>
</table>

2024. . .

제 출 인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

◈ 영등포구공고 제2024-1051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청취-영등포구-해당 공고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

라. 공람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	증) 34,056.8	34,056.8	-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4,056.8	-	34,056.8	100.0	
일반주거지역	34,056.8	감) 27,389.9	6,666.9	19.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5,216.5	감) 18,549.6	6,666.9	19.6	도로, 공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8,840.3	감) 8,840.3	-	-	
준주거지역	-	증) 27,389.9	27,389.9	80.4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	4	국지도로	100 (100)	신길동 994	신길동 1079	일반도로	-	영등포구 1998-53호 (98.9.30)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40 (94)	신길동 994	신길동 1002	일반도로	-	영등포구 1998-53호 (98.9.30)	
변경	소로	3	-	6	국지도로	46	신길동 1027	신길동 100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	11	국지도로	235 (235)	신길동 935	신길동 457-1	일반도로	-		

※( )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장임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소공원	소공원	영등포구 신길동 457-4 일원	-	증) 3,850.5	3,850.5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신설)

가. 친환경

– 환경성검토 총괄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생태환경	1.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도 3등급, 4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등급	•사업시행후 녹지면적 확보 계획 •조경계획시 도시생태계의 복원, 광역적 녹지축 연계성 확보 등을 종합적 검토, 다양한 수종 선정	
	2.생태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 목표달성	○	•지구내 자연식생녹지 없음 •주거지내 소규모 화단이 있으나 규모나 환경은 열악한 편임	• “녹지평가지표1” 달성 가능 •공동주택 조성시 녹지공간 조성 및 생태기능 강화 계획수립	
생활환경	3.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 주변에 고층아파트와 접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곳임	•토지이용계획 -공동주택(80.4%) -도로(8.3%), 공원(11.3%)	
	4.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사업부지 대부분 포장면이 90%이상이고, 골프연습장부지는 포장면이 10%이상~30%미만임	•토양오염 발견시 토양오염 전문조사기관에 오염도 분석을 의뢰한 후,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히 처리	
	5.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사업대상지는 표고차가 약 15m이고, 동고서저 지형 •사업대상지는 선캠브리아기 호상 흑운모 편마암,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됨	•기존 지형에 순응, 지형변동 최소화를 위한 단지고 계획 •지하굴착시 지하수 유출저감 및 지반안정성 확보를 위해 흙막이 공법 및 차수공법 등을 선정	
	6.물순환	생태면적률 30% 확보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지표가 건축물과 도로로 포장되어 강우시 우수의 토양내 흡수 불량한 지역임	•투수성 포장재 및 침투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자연환원을 유도 •생태면적률 30.95% 확보	
	7.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사업대상지내 발생 강우는 공공하수관거로 배수되고 있음 •사업대상지가 속한 신길동 일원은 서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유역중 “한강01” 에 속함	•공사구역 경계로 우천시 가배수로와 침사지 설치(토사유출 최소화) •빗물머금기(녹지확보), 가두기(빗물저장시설), 침투시키기(투수성포장, 침투시설) 등을 계획	
	8.대기질 및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사업대상지 동측에 여의대방로, 남측에 신풍로, 북측에 노량진로와 국철, 경부선철도가 지나고 있어 도로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편임	•공사시 대기질 관리방안 수립(살수, 방진망, 세륜세치시설 등) •운영시 청정연료 및 저녹스버너 사용, 에너지 소비절약계획 수립 •운영시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기법 도입, 녹지조성계획수립	
	9.에너지 및 온실가스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과 2015년은 2010~2020년 평균 냉난방도일에 비해 각각 6.3%, 6.9%가 적어 온실가스 배출량감소에 큰 영향을 미침	•운영시 청정연료,,저녹스버너 사용 •녹색건축 인증 계획수립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친환경전기자 충전시설 설치계획	
	10.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분뇨 및 생활·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상주, 상근 및 이용인구에 의해 생활폐기물 및 분뇨가 발생	•공사시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 및 성상별 처리대책 마련 •운영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분뇨 처리방안 강구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1.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북측 창의나라어린이집은 공사시 주의가 필요 •토공사시 건설장비에 대한 합성소음도(78.8dB(A)), 합성진동도(63.4dB(V))로 예측	•공사시 부지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장비주변 이동식 방음벽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사용 •운반차량의 주행속도를 20㎞/hr 이내로 제한, 경적사용금지 등	
	12.경관	스카이라인 조화	-	-경관성검토 참조-		
	13.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사업대상지 주변은 (가칭)신길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과 역세권사업이 추진예정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관련법 준수 •일조 수인한도 불만족세대 대책 -공동협의체 구성과 주기적인 소통관리	

– 친환경 건축물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적용

•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적용항목 및 내용은 심의 및 인허가과정에서 변경 가능

■ 환경성능 부문

구분	규모	등급분류기준		적용등급	녹색건축인증
주거부문	1,260세대	등급	1,000세대 이상	㉮등급	그린2(우수)등급 → 그린1(최우수)등급/상향

■ 에너지 성능 부문

구분	규모	등급분류기준		적용등급	녹색건축인증
주거부문	1,260세대	등급	1,000세대 이상	㉮등급	1++등급 → ZEB5등급/상향

■ 에너지 성능 부문

구분	규모	등급분류기준		적용등급	녹색건축인증
주거부문	1,260세대	㉮등급	1,000세대 이상	㉮등급	①세대별에너지원별 모니터링 ②공용부분에너지원별 모니터링기능 ③데이터분석기능

■ 에너지 성능 부문

구분	규모	등급분류기준		적용등급	녹색건축인증
주거부문	1,260세대	㉮등급	1,000세대 이상	㉮등급	2024년 10.5%

나. 방재안전

– 재해 취약 지역 해당여부

① 재해지도 등 현황

•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침수취약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으나, 2022년 대상지 내부 소로를 따라 0.5m 이내의 침수 흔적 확인. 그러나, 그 이전에는 침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2년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일시적 상황으로 판단

② 방재관련 지역·지구 지정 없음

– 방재안전계획

① 기반시설 조성계획

• 보도 등은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나무와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도의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조성

② 대지조성계획

• 지형순응형 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자연환경 인자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부지 조성은 가능한 소량의 토공이 발생 되도록 하고 과도한 옹벽 설치 방지

③ 기타 방재안전계획

•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 사용 및 소방차 활동이 가능하도록 건축설계 및 시공계획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및 친환경 건축물의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준수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 건립

4. 공공기여계획 결정(신설)

구 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공공기여율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완화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 완화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준수 시 부여)		• 완화용적률(263.8%)의 1/2이상 -131.9% 이상 -부지면적 기준 7,528.3㎡이상
공공기여 시설 종류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시설등의 설치·제공 가능		• 장기전세주택 : 총 270세대 • 공공시설 : 공원, 도로
	공공주택	- 공공주택은 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획 - 공공주택 입주자에게 차별 또는 이용상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하여 계획	• 전용 84㎡, 59㎡, 52㎡ 계획 • 사회혼합 적용 -동일 배치 및 평면 적용 등
	공공시설	-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은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성이 없이 상한 용적률 적용만을 위한 기부채납은 지양	• 지역내 필요시설 해당

주1)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시, 개정된 내용을 따름
주2) 순부담 기준으로 공공시설등을 제공하여야 함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신설)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획지	①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원	27,389.9	

2. 건축물 용도 결정(신설)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포함)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A)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신설)

가.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2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상한용적률	• 480%이하	
높이		• 130m 이하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여의대방로47길, 여의대방로43라길, 여의대방로43나길 변	결정도 참조
대지 안의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보도부속형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여의대방로47길~신설도로로 이어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1개소, 폭 8m 이상	
건축물형태		•판상형, 탑상형 혼합배치 -가로변 통경축(시각통로) 확보	
외관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유채색 계통으로 주변과의 조화 유도	
	재료	•주변 경관과 조화된 재료 선택 유도	

5. 인센티브계획 관한 결정(신설)

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공공기여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 기준	기준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20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상한용적률	• 480%	
	완화용적률의 1/2	• 완화용적률(263.8%)의 1/2이상 -131.9% 이상	부지면적 환산 7,528.3㎡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 제공계획	총 공공기여 제공량		• 132.0% -장기전세주택 92.3% -공공시설 : 39.7%	부지면적 환산 7,533.0㎡
	공공기여 시설	장기전세주택	• 전용 84㎡이하 주택 - 총 270세대(84㎡, 59㎡, 52㎡) 계획	계획기준: 전용 85㎡ 이하
		공공시설	• 공원(소공원) : 3,850.5㎡ 계획 • 도로(소로, 폭11m) : 2,816.4㎡ 계획	토지면적 기준

▌비주거시설의 건축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주거 비율	• 준주거지역 계획시,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 지상층 건축 -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 지형 여건, 지하철 연결통로 및 지하상가 활성화 등이 가능할 경우 위치 변경 가능	• 가로변 보행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 지상 연면적의 8% 계획 -대지 고저차를 활용한 대면상가 조성으로 지하층을 활용하여 계획 (여의대방로43라길, 여의대방로43나길변)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table>
<tr><th>구분</th><th>계획기준</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3">필수</td><td>①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 으로 계획
- 적합여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td><td>• 장수명주택 계획</td></tr>
<tr><td>②친환경 건축물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부문 ㉡ 에너지성능부문 ㉢ 에너지관리부문 ㉣ 신·재생에너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 적용
<table>
<tr><th>구분</th><th>주 거</th><th>비 주 거</th></tr>
<tr><td>㉮</td><td>1,000세대 이상</td><td>연면적 합계 10만㎡ 이상</td></tr>
<tr><td>㉯</td><td>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td><td>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td></tr>
<tr><td>㉰</td><td>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td><td>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td></tr>
<tr><td>㉱</td><td>30세대 미만</td><td>연면적 합계 3천㎡ 미만</td></tr>
</table>
- 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적용대상의 구분이 최상일 경우(㉮)는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과 동일 고시의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5등급 추가 적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계획내용을 제출·확인하고 착공 전까지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시 인증</td><td>• 적용대상 부문별 ㉮등급 기준 적용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5등급 추가 적용</td></tr>
<tr><td>③역사문화 보전</td><td>• 해당없음</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계획기준</th><th>계획내용</th></tr>
<tr><td></td><td>-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에 반영</td><td>(*건축계획 반영 문화재 없음)</td></tr>
<tr><td>권장</td><td>④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table>
<tr><th>공동주택 세대수</th><th>설 치 규 모</th><th>비고</th></tr>
<tr><td>300세대 미만</td><td>공공임대주택 포함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300㎡) 이상</td><td rowspan="2">공급면적 기준</td></tr>
<tr><td>300세대 이상</td><td>공공임대주택 포함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2%(최소 450㎡) 이상</td></tr>
</table></td><td>-</td></tr>
</table>

※ 대상지내 시유형문화재 '조선 이흠례묘지(유물/기타종교조각/유교조각)' 는 개인이 집(신길동 458-6)에서 관리중으로 확인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신설)

구분	계획내용
차량출입불허구간	•여의대방로47길 및 도로가각부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3개소)
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위치 지정(2개소) -서측 : 여의대방로43라길(삼환아파트 출입구측) -남측 : 여의대방로43나길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동작구공고 제2024-1107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본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우리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동 작 구 청 장

○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2024. 6. 7. ~ 2024. 7. 7.)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동작구청 4층 핵심정책추진단(☎ 02-820-1984)
○ 공람내용: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1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동작구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	증)19,324.4㎡	19,324.4㎡	-

■ 지정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동작구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구역 신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2.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9,324.4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2,876.3	14.9	
	도로	1,486.8	7.7	기부채납
	공공공지	1,389.5	7.2	기부채납
획지		16,448.1	85.1	주상복합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324.4	-	19,324.4	100.0	
주거지역	소 계	19,324.4	감) 4,386.6	14,937.8	77.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2,131.8	감) 11,862.9	268.9	1.4	
	제3종일반주거지역	7,192.6	감) 4,585.2	2,607.4	13.5	
	준주거지역	-	증) 12,061.5	12,061.5	62.4	
상업지역	소 계	-	증) 4,386.6	4,386.6	22.7	
	근린상업지역	-	증) 4,386.6	4,386.6	22.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동작구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11,862.9	-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8.6	-	
			근린상업지역	4,386.6	-	

4.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81	25~41.5	보조간선도로	2,470 (20)	상도동 (숭실대)	사당동 1001-31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1971-198 (71.04.07.)	사당로
기정	중로	2	1	18	국지도로	390 (43)	사당동 708	사당동 263-6앞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길
변경	중로	2	1	18	국지도로	390 (-)	사당동 708	사당동 263-6앞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길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90	사당동 254-1	사당동 708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가길
변경	소로	2	A	9~11	국지도로	90	사당동 712-14	사당동 708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가길
기정	소로	3	42	6	국지도로	70	사당동 산35	사당동 24-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다길
변경	소로	2	B	8	국지도로	83	사당동 252-4	사당동 169-16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참조 (입체적 결정)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400 (111)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3길
변경	소로	3	-	6~10	국지도로	400 (111)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3길
신설	소로	3	C	2~6	국지도로	9	사당동 169-33	사당동 169-14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3	-	6	국지도로	70	사당동 1131-4	사당동 259-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라길

※ ( )는 정비계획구역 내 연장임

※ 정비계획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상부도로, 하부 공동주택용도로 계획되고 소유권은 주민에게 있으며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중로2-1	◦ 선형 변경	◦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획지 조성으로 도로 선형 변경
소로 3-41	소로 2-A	◦ 확폭 및 선형 변경 - 6m→ 9~11m, 증) 3m	◦ 보행 및 교통 편의를 위한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42	소로 2-B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 B=8m, L=68m	◦ 열린아파트단지 조성으로 공공성 확보
소로 3-	소로 3-	◦ 확폭 및 선형 변경 - 6m→ 6~10m, 증) 4m	◦ 소로2-B와 연계하여 보행 및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일부도로 확폭
-	소로 3-C	◦ 신설 - B=6~2m, L=9m	◦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관녹지(사당동 169-15)를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소로 3-	소로 3-	◦ 폐지	◦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획지 조성으로 도로 폐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소로 2-B	도로	사당동 252-4	길이	-	증) 68m	68m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폭	-	증) 8m	8m		
				높이	-	증) 지하2m ~ 지상9m	지하2m ~ 지상9m		
				면적	-	증) 584㎡	584㎡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의 기준은 지표면(도시계획지반고)으로 함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는 측량을 통해 지하매설물(도로측구의 빗물받이 등)의 높이를 확정하고, 사업준공 완료 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B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 B=8m, L=68m	◦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도로기능 유지가 필요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무상으로 공공에 구분지상권 양도

2) 철도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남성정거장(7호선)]	동작구 사당동 250번지 일대	5,579	서고 제1993-77호 (1993.03.24.)	-
변경	①	철도	도시철도 [남성정거장(7호선)]	동작구 사당동 250번지 일대	6,432 (377)	서고 제1993-77호 (1993.03.24.)	공공공지 지하부 지하철 출입구 신설 (중복결정)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7호선)	도봉구 도봉동 17일대~구로구 온수동 산2-1일대 (광명시 구간)	B=10~30m, L=43.76㎞ (136m)	서고 제1999-333호 (1999.10.25.)	

※ ( )는 정비계획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 정비계획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도시철도 [남성정거장(7호선)]	면적 증가 5,579㎡→ 6,432㎡, 증) 853㎡	남성역 지하철 출입구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하출입구 신설

3) 녹지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녹지	경관 녹지	동작구 사당동 169-15번지 외 2필지	253.4	감) 253.4	-	198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949호)	

※ ( )는 정비계획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경관녹지	◦ 폐지	◦ 기능을 상실한 경관녹지 폐지

4) 공공공지 중복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동작구 사당동 253-1번지 일대	-	증) 1,389.5	1,389.5	-	중복결정:도시철도 정거장(35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1,389.5㎡	남성역 지하출입구 등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지 조성

5)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문화시설	동작구 사당동 708-429	-	증) 1,187.0	1,187.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 결정)

※ 1,187.0㎡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문화 시설	동작구 사당동 708-429	층	-	증)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공간적범위 결정도)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187.0㎡	1,187.0㎡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 면적은 향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시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하1~지상4층, 수평투영면적 1,187.0㎡ -연면적 3,947.40㎡	◦ 동작구 일대 부족한 문화시설을 지원하고자 조성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법적기준	면적(㎡)	비고
관리사무소	획지	10㎡+(541세대-50)×0.05㎡ = 34.55㎡이상	130.0	
경비실/MDF실		-	25.0	2개소
용역원 휴게실		-	50.0	
주민공동시설		541세대 × 2.5㎡ × 1.25 = 1,690.63㎡이상	2,390.0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200㎡+(세대수) = 741㎡ 이상	850.0	옥외
경로당		50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330㎡ 이상	450.0	지상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330㎡ 이상	450.0	지상
작은도서관		50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158㎡ 이상	170.0	지상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의무	300.0	옥외
다함께돌봄센터		500세대 이상 의무, 68㎡ 이상(아동복지법 시행규칙)	70.0	지상
맘스스테이션		-	60.0	지상
주민공동시설		-	40.0	지상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19,324.4	획지	16,448.1	동작구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92	-	-	92	-	-

7.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상한		
신규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19,324.4	획지	16,448.1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60 이하	213.94 이하	453.34 이하	120m이하 /37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541세대(임대주택 포함)

- 공동주택 건립규모 및 비율(전용면적 기준)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541세대	100.0	-
85㎡ 이하	소 계	445세대	82.3	
	60㎡미만	223세대	41.2	임대주택 108세대 포함
	60~85㎡이하	222세대	41.0	임대주택 27세대 포함
85㎡초과		96세대	17.7	-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2.3%

- 공동주택 내 임대주택 건설계획(전용면적 기준)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135세대	100.0	-
85㎡ 이하	40~50㎡미만	81세대	60.0	재개발의무임대주택 69세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임대주택 12세대
	50~60㎡이하	27세대	20.0	역세권활성화사업 임대주택 27세대
	60~85㎡이하	27세대	20.0	역세권활성화사업 임대주택 27세대

◦ 오피스텔 건립규모 및 비율(전용면적 기준)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57세대	100.0	-
85㎡ 이하	소 계	57세대	100.0	-
	60~85㎡이하	57세대	100.0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사당로17길변: 5m(※사당중앙교회변 :3m)
- 사당로13길, 사당로17가길변: 3m
- 도로(입체적결정)변 : 2m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상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중복결정: 공공공지 지하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1번 출입구 신설 ◦ 공공보행통로[주1] : 사당로13길~사당로17길을 잇는 공공보행통로 6m 이상 조성 ◦ 공개공지 : 사당로17가길 변 1개소 위치 지정 ◦ 지정용도: 비주거시설 일부 업무기능 특화용도 지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자족기능 강화										

※주1)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며, 24시간 개방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용적률 계획

1)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의 용적률 기준 및 그에 따른 증가 용적률 산정

구분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증가용적률(%)
	종전	변경		용도지역별	가중평균	
기준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준주거지역	11,862.9	200	213.94	239.4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8.6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4,386.6	250		
상한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준주거지역	11,862.9	400	453.34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8.6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4,386.6	600		

2)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율

구분		용도지역 상향 면적	증가용적률의 50%	공공기여 면적	공공기여율
획지	기준	16,448.1㎡ (제2종(7층이하) 11,862.9㎡ + 제3종 4,585.2㎡)	119.70% (239.40×50%)	4,343.0㎡ (119.70%/453.34%×16,448.1㎡)	26.40% (4,343.0/16,448.1㎡)
	계획			**4,403.7㎡**	**26.77%** (4,403.7/16,448.1㎡)

※ 공공기여 면적은 용도지역 상향 면적(획지)에 대한 공공기여량을 말함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합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등 면적(A+B)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A.기반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포함)	B.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19,324.4	16,448.1	5,298.3	3,397.8	1,900.5	220.8	673.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면적(A+B)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3,397.8 + 1,900.5) -220.8 - 673.8 = 4,403.7㎡						
A	공공시설 토지면적	◦ 공공공지: 1,389.5㎡						
	건축물 대지지분	◦ 건축물 기부채납(임대주택) 대지지분 : 1,344.2㎡ = 주거대지지분×(임대주택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 대지면적×(주거연면적÷전체연면적)×(임대주택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 16,448.1×(92,773.7÷119,669.8)×(4,393.7÷41,679.2) = 1,344.2㎡ ◦ 건축물 기부채납(문화시설) 대지지분 : 664.0㎡ = 비주거대지지분×(문화시설전용면적÷비주거전용면적) = 대지면적×(비주거연면적÷전체연면적)×(문화시설전용면적÷비주거전용면적) = 16,448.1×(26,896.1÷119,669.8)×(2,110.0÷11,746.6) = 664.0㎡						
B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문화시설) 환산부지 면적 : 1,900.5㎡ (※건축연면적 3,947.40㎡)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1] = 3,947.40㎡ × 4,243,636원/㎡ = 16,751,330,182원 : ㉯ = 공시지가[주2] × 2 = 4,407,095 × 2 = 8,814,191(원/㎡) 주1) 2022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4,243,636원/㎡(면세424,364) (문화집회시설, 연면적 3,000㎡~4,000㎡ 이하) 주2) 토지지가평균(2023.01.기준)						

※ 도시계획시설(도로)은 본 사업을 위한 정비기반시설로서, 기부채납하되 순부담면적에서는 제외하였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가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간선도로변에 양호한 녹지 수림대를 설치함으로써 green ville 이미지 창출 ◦ 생태순환시스템 고려 ◦ 자원절약형 배치기법(풍향·경관 고려)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수해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 및 저류조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9.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재개발)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당동 252-15 일대 소유자 강인근 외 86명	현황) 266세대 증) 332세대 계획) 598세대 (오피스텔 57세대 포함)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반경 200m이내 대상지 남동측 남성초등학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협의 후 반영하겠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	16,448.1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16,448.1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지역필요시설(문화시설) 등

12.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공공임대주택(역세권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전용	공급	
신규	획지	16,448.1	-	66세대	소 계		
				12세대	39.98㎡	56.95㎡	
				27세대	59.98㎡	82.62㎡	
				27세대	84.98㎡	122.04㎡	

2) 공공임대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의무임대주택)

구분		확보기준		확보내용
세대수 기준		준주거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임대주택 건설	◦ 412세대 X 15% = 61.8세대(기준) ≦ **62세대(확보)**
		근린상업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 건설	◦ 129세대 X 5% = 6.5세대(기준) ≦ **7세대(확보)**
		합계		69세대
규모 기준	1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 135세대 X 30% = 40.5세대(기준) ≦ **69세대(확보)**
	2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 541세대 X 5% = 27.05세대(기준) ≦ **69세대(확보)**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92	66	26	92	81	11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173	90	83	432	232	200	
단독주택	73	68	43	25	170	108	62	
공동주택	12	105	47	58	262	118	144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 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173	113	53	40	20	60	-	-		-
60㎡ 이하	소계	119	59	4	-	-	60	-	-	60	-
	30㎡이하	-	-	-	-	-	-	-	-	-	-
	30㎡초과 ~ 50㎡이하	29	-	-	-	-	29	-	-	29	-
	50㎡초과 ~ 60㎡이하	57	45	-	40	5	12	-	-	12	-
60㎡초과 ~ 85㎡이하		33	14	4	-	10	19	-	-	19	-
85㎡ 초과	소계	54	54	49	-	5	-	-	-	-	-
	85㎡초과 ~ 135㎡이하	9	9	4	-	5		-	-		-
	135㎡초과	45	45	45	-	-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일반분양(조합원등)	공공주택			비고
				소계	재개발 의무	역세권 활성화사업	
합 계		541	406	135	69	66	-
60㎡ 이하	소 계	223	115	108	69	39	-
	40㎡ 이하	128	47	81	69	12	-
	40㎡~50㎡ 이하	-	-	-	-	-	-
	50㎡~60㎡ 이하	95	68	27	-	27	-
60㎡~85㎡ 이하		222	195	27	-	27	-
85㎡ 초과	소 계	96	96	-	-	-	-
	85㎡~115㎡ 이하	-	-	-	-	-	-
	115㎡ 초과	96	96	-	-	-	-

14.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도 5등급 및 도로 ◦ 개별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등급 및 도로	◦ 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네트워크 연결성 확보	○	◦ 대상지 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 대상지 내·외부 녹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녹지 확보	-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7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표고 20.00~35.72m, 평균 경사도 3.7° 의 평탄한 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 지형에 순응한 계획수립	-
8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30% 자연물순환유지	○	◦ 대지, 도로 등으로 일부 조경수 외 녹지 없음	◦ 생태면적률 30% 목표, 획지 내 조경녹지 확보 계획	-
9	수질 (지표·지하)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노량진) ◦ 공사 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
10	바람	바람길 확보	○	◦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시가지, 일부 수공간 및 나지로 분포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 녹지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이하 주거지 및 일부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기반시설 분포	◦ 투수포장과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
12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 대상지 내 환경정화수종 식재	-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16	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극대화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투입장비에의한 소음발생 ◦ 운영 시 교통소음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 녹지완충 공간조성	-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
19	휴가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필요	◦ 휴가 및 여가공간의 확보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하며, 주거 및 상업지역과 인접	◦ 일조 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고려	-
21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 갓길주차 및 인도 주차차량으로 인한 보행여건 개선 필요 ◦ 대상지 이면부 보차혼용도로 유출입차량 과도한 교통량 발생	◦ 대상지 내 공공공지에 보행 및 휴식공간 활용 ◦ 보도형전면공지 조성	-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해당사항 없음	-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수립	-	◦ 해당사항 없음	-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수립	-	◦ 해당사항 없음	-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수립	-	◦ 해당사항 없음	-	-

15.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차로 및 교차로	Ⓐ	◦ 소로 2-A(사당로17가길) 확폭 및 선형변경 - B= 6.0 → 9.0, L=90
	Ⓑ	◦ 소로3- 확폭 - B=6.0→10.0m, L=40m
	Ⓒ	◦ 소로2-B 신설(입체적 결정) - B=8.0m, L=68.0m
	Ⓓ	◦ 중로 2-1 : 원활한 차량주행을 위한 도로선형 변경
진·출입동선	- Ⓔ Ⓕ	◦ 사업지 차량진출입구 운영계획 수립 - 소로3- : 비신호교차로 운영(진입1차로, 진출1차로) - 소로2-B : 비신호교차로 운영(진입1차로, 진출1차로)
	-	◦ 차량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보행 및 대중교통	-	◦ 주변도로 보도 단절부 보도채움
	-	◦ 보행부속형 전면공지 설치(B=2.0~5.0m)
	Ⓖ	◦ 사당로17가길(소로2-A) -사업지 맞은편 무단차보도 설치(B=2.0m)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11개소)
	Ⓗ	◦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출입구 신설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	◦ 버스정류장 이설
	ⓙ	◦ 공공보행통로 추가설치
	-	◦ 자전거보관소 설치 - 법정주차대수의 20%(155대) 이상 확보
주차시설	-	◦ 법정주차대수 : 773대
	-	◦ 주차수요대수 : 844대(2029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대수 : 881대 -법정대비 114.0%, 수요대비 104.4% - 장애인주차면 법정주차대수의 3%(24대) 이상 확보 - 확장형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30%(265대) 이상 확보 - 가족배려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10%(89대) 이상 확보 - 전기차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5%(45대) 이상 확보
	ⓚ	◦ 사당로 13길 Drop-Zone 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	◦ 주차장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2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1개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2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	증) 19,324.4㎡	19,324.4㎡	-

■ 결정(안)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결정(변경)사유
신설	-	동작구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 사당동 252-15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지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324.4	-	19,324.4	100.0	
주거지역	소 계	19,324.4	감) 4,386.6	14,937.8	77.3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2,131.8	감) 11,862.9	268.9	1.4	
	제3종일반주거지역	7,192.6	감) 4,585.2	2,607.4	13.5	
	준주거지역	-	증) 12,061.5	12,061.5	62.4	
상업지역	소 계	-	증) 4,386.6	4,386.6	22.7	
	근린상업지역	-	증) 4,386.6	4,386.6	22.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동작구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11,862.9	-	◦ 사당동 252-1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8.6	-	
			근린상업지역	4,386.6	-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81	25~41.5	보조간선도로	2,470 (20)	상도동 (숭실대)	사당동 1001-31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1971-198 (71.04.07.)	사당로
기정	중로	2	1	18	국지도로	390 (43)	사당동 708	사당동 263-6앞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길
변경	중로	2	1	18	국지도로	390 (-)	사당동 708	사당동 263-6앞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길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90	사당동 254-1	사당동 708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가길
변경	소로	2	A	9~11	국지도로	90	사당동 712-14	사당동 708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가길
기정	소로	3	42	6	국지도로	70	사당동 산35	사당동 24-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다길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B	8	국지도로	83	사당동 252-4	사당동 169-16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 결정)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400 (111)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3길
변경	소로	3	-	6~10	국지도로	400 (111)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3길
신설	소로	3	C	2~6	국지도로	9	사당동 169-33	사당동 169-14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	6	국지도로	70	사당동 1131-4	사당동 259-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라길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상부도로, 하부 공동주택용도로 계획되고 소유권은 주민에게 있으며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중로2-1	◦ 선형 변경	◦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획지 조성으로 도로 선형 변경
소로 3-41	소로 2-A	◦ 확폭및 선형 변경 - 6m→ 9~11m, 증) 3m	◦ 보행 및 교통 편의를 위한 도로 확폭 및 선형 변경
소로 3-42	소로 2-B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 B=8m, L=68m	◦ 열린아파트단지 조성으로 공공성 확보
소로 3-	소로 3-	◦ 확폭 및 선형 변경 - 6m→ 6~10m, 증) 4m	◦ 소로2-B와 연계하여 보행 및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일부도로 확폭
-	소로 3-C	◦ 신설 - B=6~2m, L=9m	◦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관녹지(사당동 169-15)를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소로 3-	소로 3-	◦ 폐지	◦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획지 조성으로 도로 폐지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소로 2-B	도로	사당동 252-4	길이	-	증) 68m	68m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폭	-	증) 8m	8m		
				높이	-	증) 지하2m ~ 지상9m	지하2m ~ 지상9m		
				면적	-	증) 584㎡	584㎡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의 기준은 지표면(도시계획지반고)으로 함
※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는 측량을 통해 지하매설물(도로측구의 빗물받이 등)의 높이를 확정하고, 사업준공 완료 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B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 B=8m, L=68m	◦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도로기능 유지가 필요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무상으로 공공에 구분지상권 양도

2) 철도 중복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남성정거장(7호선)]	동작구 사당동 250번지 일대	5,579	서고 제1993-77호 (1993.03.24.)	-
변경	①	철도	도시철도 [남성정거장(7호선)]	동작구 사당동 250번지 일대	6,432 (377)	서고 제1993-77호 (1993.03.24.)	공공공지 지하부 지하철 출입구 신설 (중복결정)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7호선)	도봉구 도봉동 17일대~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광명시 구간)	B=10~30m,L=43.76㎞ (136m)	서고 제1999-333호 (1999.10.25.)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도시철도 [남성정거장(7호선)]	◦ 면적 증가 5,579㎡→ 6,432㎡, 증) 853㎡	◦ 남성역 지하철 출입구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하출입구 신설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녹지	경관녹지	동작구 사당동 169-15번지 외 2필지	253.4	감) 253.4	-	198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949호)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및 연장임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경관녹지	◦ 폐지	◦ 기능을 상실한 경관녹지 폐지

2) 공공공지 중복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동작구 사당동 253-1번지 일대	-	증) 1,389.5	1,389.5	-	중복결정:도시철도 정거장(35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1,389.5㎡	◦ 남성역 지하출입구 등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지 조성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문화시설	동작구 사당동 708-429	-	증) 1,187.0	1,187.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입체적 결정)

※ 1,187.0㎡는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문화시설	동작구 사당동 708-429	층	-	증)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공간적 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1,187.0㎡	1,187.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시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하1~지상4층, 수평투영면적 1,187.0㎡ -연면적 3,947.40㎡	◦ 동작구 일대 부족한 문화시설을 지원하고자 조성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	16,448.1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16,448.1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문화시설) 등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분	위치	용 도	비고
지정용도	지상2층 (연면적의 30%)	업무시설 (업무기능 특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무시설
권장용도	지하1층, 지상1,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의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체력단련장, 놀이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남성역 일대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2층의 연면적 30%를 업무기능 특화용도로 지정

나. 건축물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지구단위계획	60% 이하	453.34% 이하	37층 이하(120m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400% 이하	37층 이하(120m 이하)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600% 이하	37층 이하(120m 이하)
건축계획	60% 이하	453.21%	37층 이하(120m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399.88%	36층 이하(120m 이하)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599.83%	37층 이하(120m 이하)

다. 건축물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안) 조서

구분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보도부속형	◦ 사당로13길, 사당로17가길 변 3m 지정 ◦ 사당로17길 변 5m 지정(사당중앙교회 변 3m) ◦ 입체적 결정 도로 변 2m 지정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 사당로17가길 변 1개소 위치 지정	-

■ 대지내 통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사당로13길~사당로17길을 잇는 공공보행통로 6m 이상 조성	※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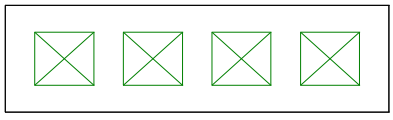
나. 공공기여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합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등 면적(A+B)			C.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D.획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A.기반시설 (건축물기부채납 대지지분 포함)	B.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19,324.4	16,448.1	5,298.3	3,397.8	1,900.5	220.8	673.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면적(A+B)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C)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D) = (3,397.8 + 1,900.5) -220.8 - 673.8 = 4,403.7㎡						
A	공공시설 토지면적	◦ 공공공지: 1,389.5㎡						
	건축물 대지지분	◦ 건축물 기부채납(임대주택) 대지지분 : 1,344.2㎡ = 주거대지지분×(임대주택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 대지면적×(주거연면적÷전체연면적)×(임대주택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 16,448.1×(92,773.7÷119,669.8)×(4,393.7÷41,679.2) = 1,344.2㎡ ◦ 건축물 기부채납(문화시설) 대지지분 : 664.0㎡ = 비주거대지지분×(문화시설전용면적÷비주거전용면적) = 대지면적×(비주거연면적÷전체연면적)×(문화시설전용면적÷비주거전용면적) = 16,448.1×(26,896.1÷119,669.8)×(2,110.0÷11,746.6) = 664.0㎡						
B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문화시설) 환산부지 면적 : 1,900.5㎡ (※건축연면적 3,947.40㎡)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1] = 3,947.40㎡ × 4,243,636원/㎡ = 16,751,330,182원 : ㉯ = 공시지가[주2] × 2 = 4,407,095 × 2 = 8,814,191(원/㎡) 주1) 2022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4,243,636원/㎡(면세424,364) (문화집회시설, 연면적 3,000㎡~4,000㎡ 이하) 주2) 토지지가평균(2023.01.기준)						

※도시계획시설(도로)는 본 사업을 위한 정비기반시설로서, 기부채납하되 공공기여에서는 제외하였음

다.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공공보행통로

변 경	비고
① 공공보행통로(이하 대지내 통로라 한다)가 지정된 대지는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속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일정시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③ 대지내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④ 대지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지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대지내 통로는 지상부가 오픈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⑦ 도면표시 공공보행통로 	-

3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사당동 223-1번지 일대	114,382.3	감)2,734.1	111,648.2	서울시고시 제2023-69호 (2023.03.0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사당동 223-1번지 일대	◦ 면적 : 114,382.3㎡ → 111,648.2㎡ 감) 2,734.1㎡	◦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위한 구역 경계 변경(제척)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382.3	감) 2,734.2	111,648.1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4,382.3	감) 2,734.2	111,648.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223.0	감) 19.3	8,203.7	7.3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159.3	감) 2,714.9	103,444.4	92.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변경사유
-	동작구 사당동 223-1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8,223.0㎡ → 8,203.7㎡ 감) 19.3㎡	◦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제척)으로 용도지역 면적 감소
		제3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8,223.0㎡ → 8,203.7㎡ 감) 2,714.9㎡	

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1) 도로(변경)(안)

■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7,336 (1,546)	141,969 (7,378)	-	-	-	7	3,822 (487)	45,276 (3,127)	5	3,514 (1,059)	96,793 (3,749)
대로	1	2,470 (725)	89,923 (1,794)	-	-	-	-	-	-	1	2,470 (725)	89,923 (1,794)
중로	2	1,430 (23)	25,905 (536)	-	-	-	2	1,430 (23)	26,005 (536)	-	-	-
소로	9	3,436 (798)	26,141 (5,048)	-	-	-	5	2,392 (464)	19,271 (3,093)	4	1,044 (334)	6,870 (1,955)

■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구분)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81	25~41.5	보조간선도로	2,470	상도동 (숭실대)	사당동 1001-31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1971-198 (71.04.07.)	사당로
기정	중로	2	ㄱ	8~25	집산도로	1,040	사당동 323-1	사당동 산22-2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23길
기정	중로	2	1	18	국지도로	390	사당동708	사당동 263-6앞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길
제척	소로	3	41	6	국지도로	90	사당동 254-1	사당동 708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길
제척	소로	3	42	6	국지도로	70	사당동 산35	사당동 24-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7길
기정	소로	3	61	6	국지도로	150	사당동 250-3	사당동 산32-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2길
기정	소로	3	62	6	국지도로	460	사당동 254-3	사당동 292-43	보행자 우선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4길
기정	소로	3	-	6~8	국지도로	34	사당동324	사당동 32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제171호 (79.04.25.)	-

구분	규 모				기능 (구분)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400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3길
변경	소로	3	-	6~10	국지도로	400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3길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16	사당동 267-28	사당동 250-4	보행자 우선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47길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760	사당동 266	사당동 204	보행자 우선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67길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46	사당동 246	사당동 23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0길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8-99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16길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640	사당동 318-1	사당동 43-5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54호 (73.04.25.)	사당로20길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41	소로 3-41	◦ 제척	◦ 구역 경계 변경(제척)에 따른 도로 제척
소로 3-42	소로 3-42	◦ 제척	◦ 구역 경계 변경(제척)에 따른 도로 제척
소로 3-	소로3-	◦ 확폭: 6m→ 10m, 증) 4m	◦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라 도로 일부 확폭

2) 철도(변경)(안)

■ 철도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남성정거장 (7호선)]	동작구 사당동 250번지 일대	5,579	-	
변경	①	철도	도시철도 [남성정거장 (7호선)]	동작구 사당동 250번지 일대	6,432 (6,055)	-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도봉구 도봉동 16 일대~ 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광명시 구간 제외)	B=10~30m L=43.76㎞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철도	◦ 기정 면적 정정 : 4,453㎡→ 5,579㎡ 증) 1,126㎡ ◦ 면적 변경: 5,579㎡→ 6,432㎡ 증) 853㎡	◦ 서고 제2023-69호(2023.03.09)로 도시관리계획(남성역세권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에 따른 오기사항이 있어 기정 면적 변경 ◦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남성정거장 출입구 신설로 남성정거장 면적(853㎡)증가

3)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공영주차장	동작구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	-	-	◦ 중복결정 -지상1층~지상7층: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주차장

4)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청사	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	-	-	◦ 중복결정 - 지상1층~지상7층: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주차장

■ 건축물의 규모 결정조서(공공청사)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공청사	60% 이하	400% 이하	40m 이하	-

5)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 복지 시설	치매안심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어르신종합복지관	사당동 318-99번지 일대	2,569	-	-	-	◦ 중복결정 -지상1층~지상7층: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지하1~2층: 주차장

※ 공간적범위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의 규모 결정조서(사회복지시설)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400% 이하	40m 이하	-

6) 시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시장	사당동 318-8, 318-18, 318-17	998	-	-	서고 제1972-65호 (' 72. 5. 26.)	시장시설 용지

■ 건축물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m)	최초 결정일	비고
-	50	250	25	서고 제1972-65호 (' 72. 5. 26.)	시장시설 용지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최대 개발 규모	간선부	1,000㎡ 이하	◦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 ※ 기존 필지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및 공동개발 지정·권장이 지정된 경우는 적용 제외	평균 필지 규모 약 5배 아하
	이면부	500㎡ 이하		평균 필지 규모 약 3배 이하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공동개발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도면표기	◦ 기 개발된 동일소유자 필지 및 맹지	18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23개소)
공동개발 (권장)		◦ 동일소유자 ◦ 간선부적정규모 개발 유도(과소필지, 부정형 필지 등 단독 개발 불가 필지)	27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30개소)
자율적 공동개발	전체구역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대지와 연접한 대지의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은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	-

※ 단, 맹지로 인한 공동개발(지정)의 경우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참조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관련도서: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 기타사항

가. 기타 관련사항은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에 따름

나. 관련 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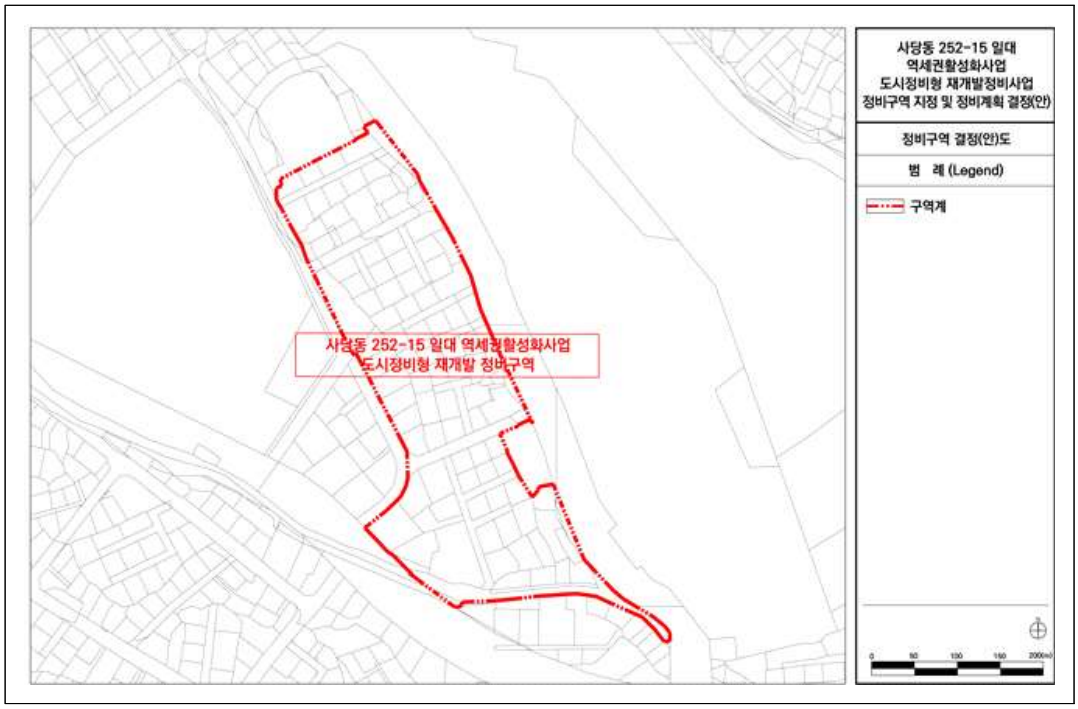
: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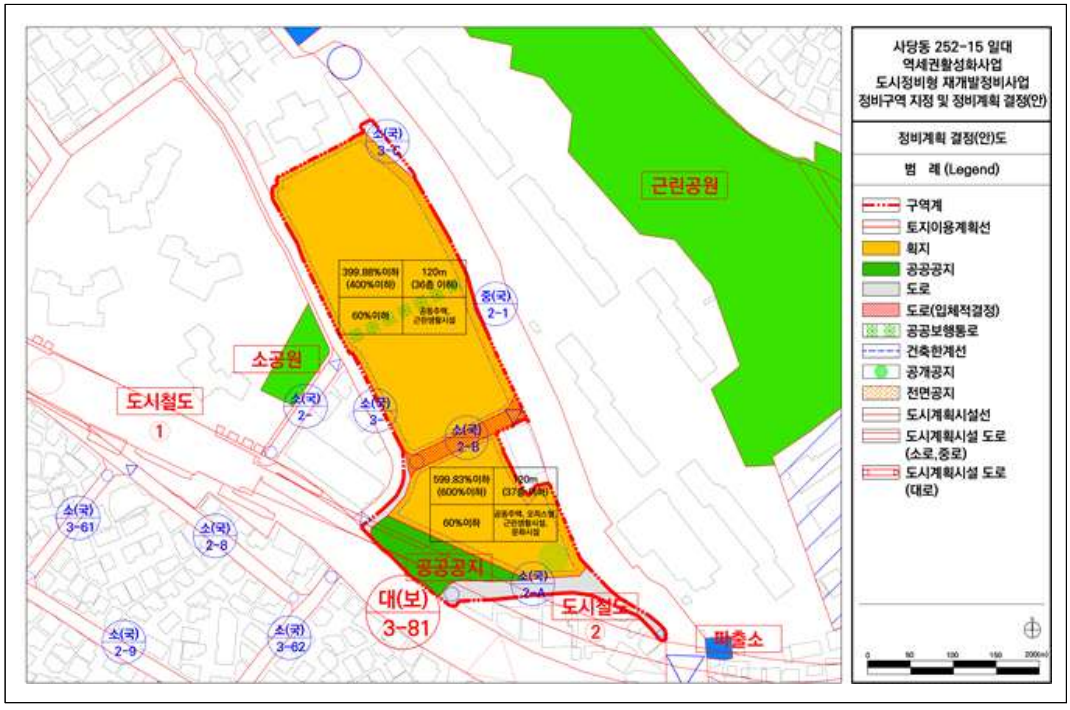
다. 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는 향후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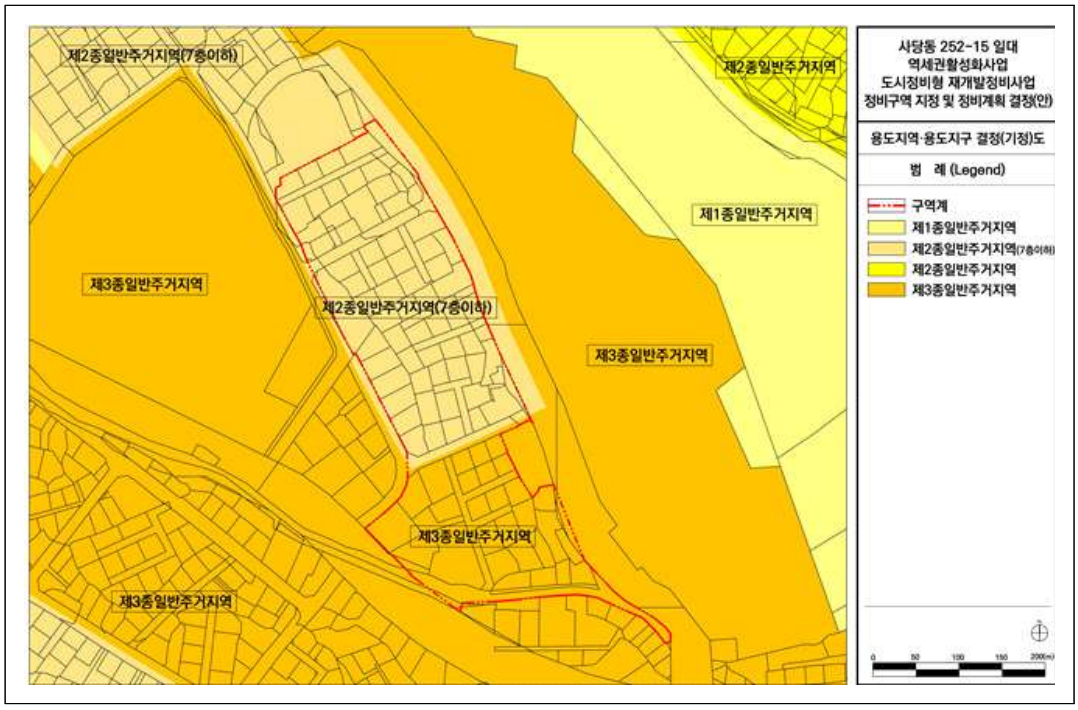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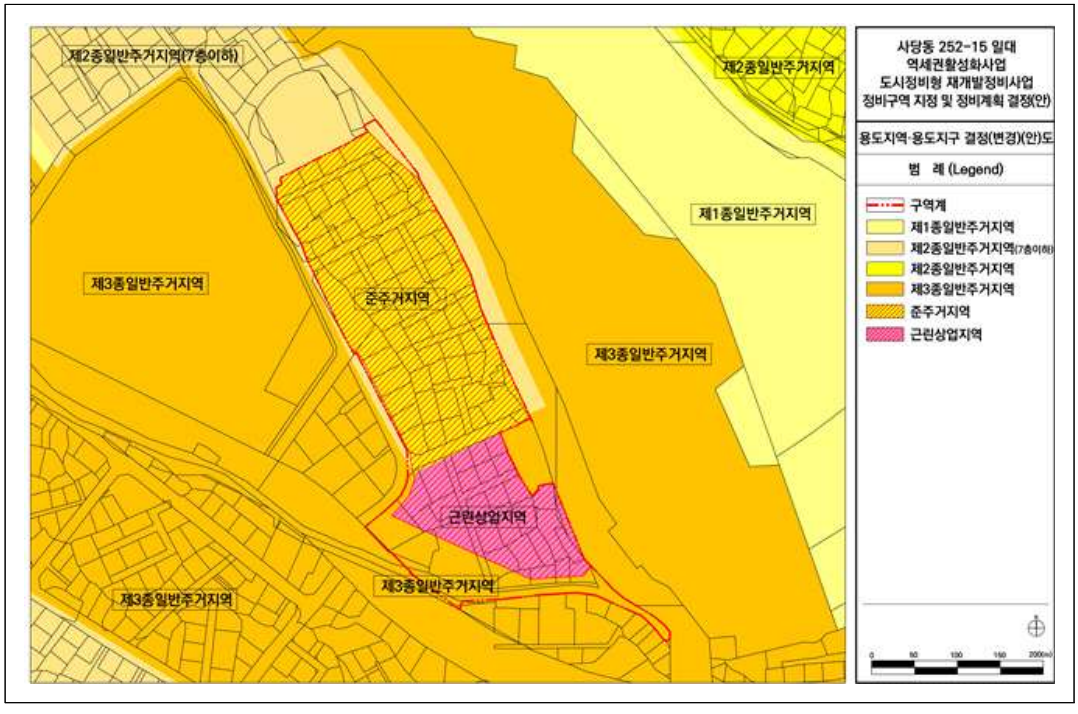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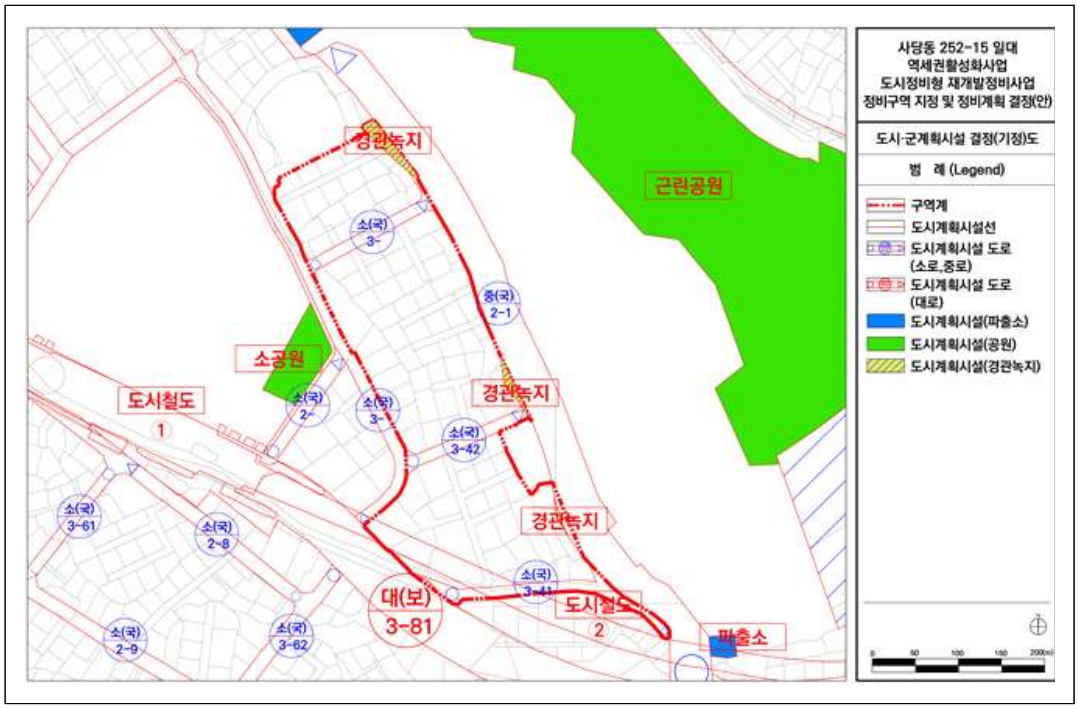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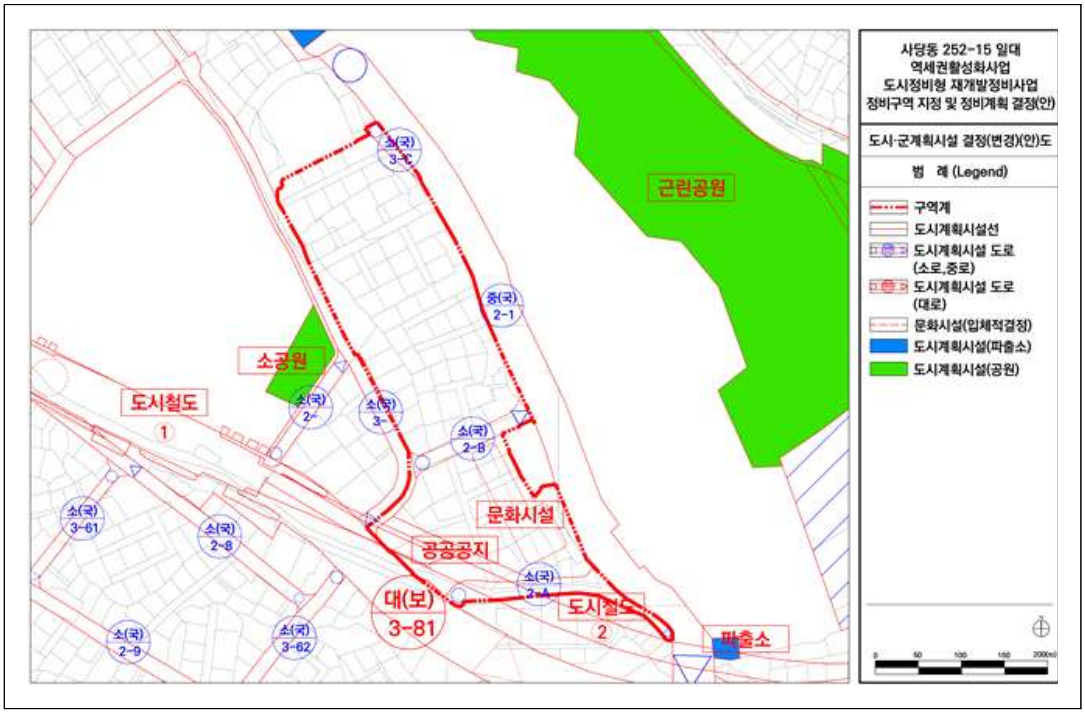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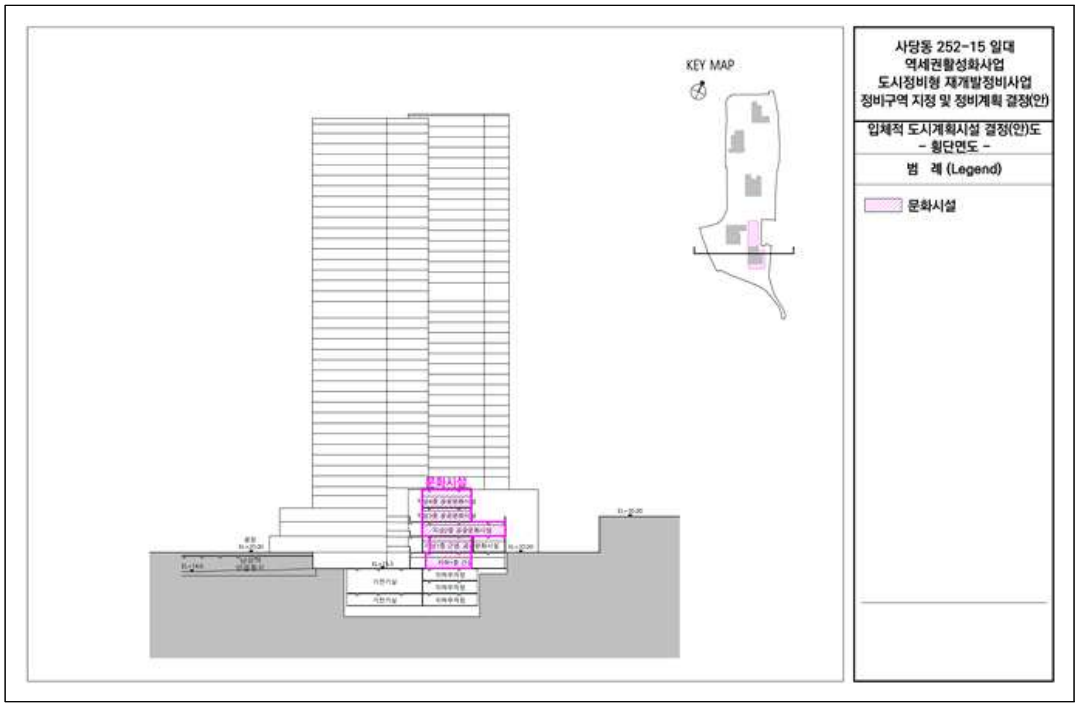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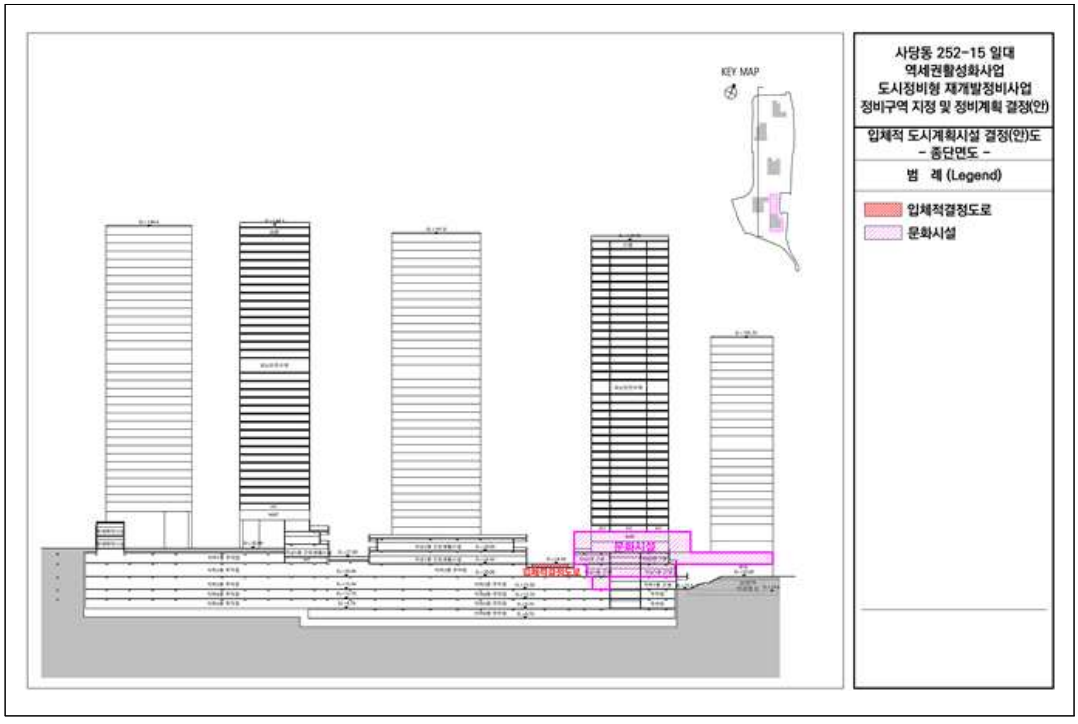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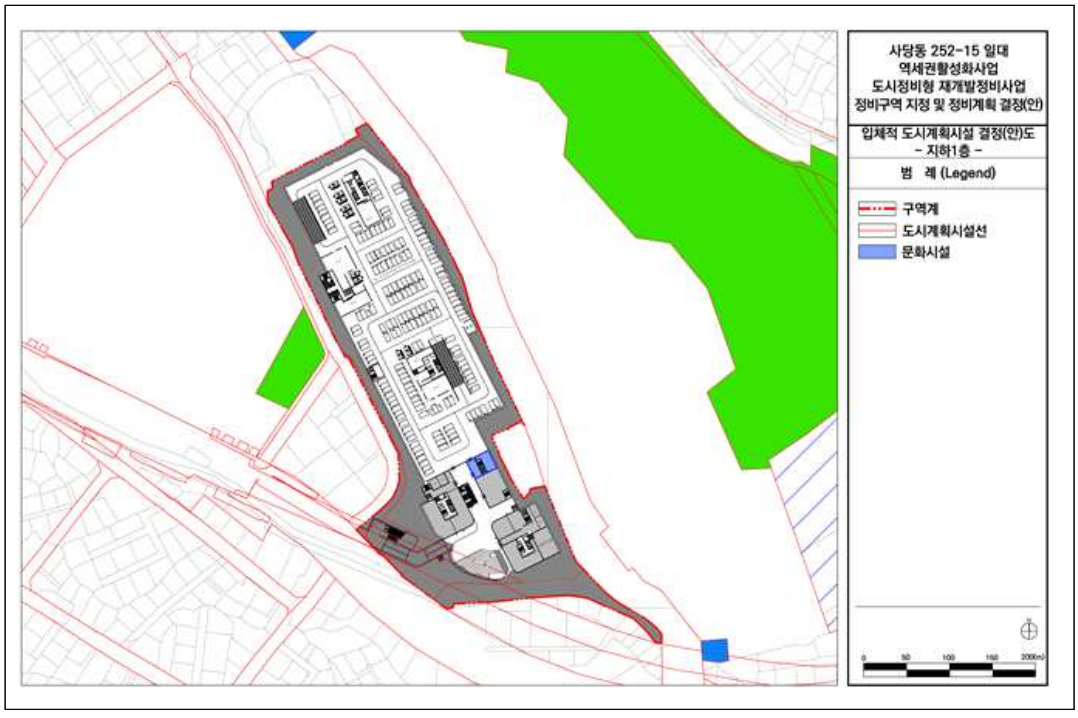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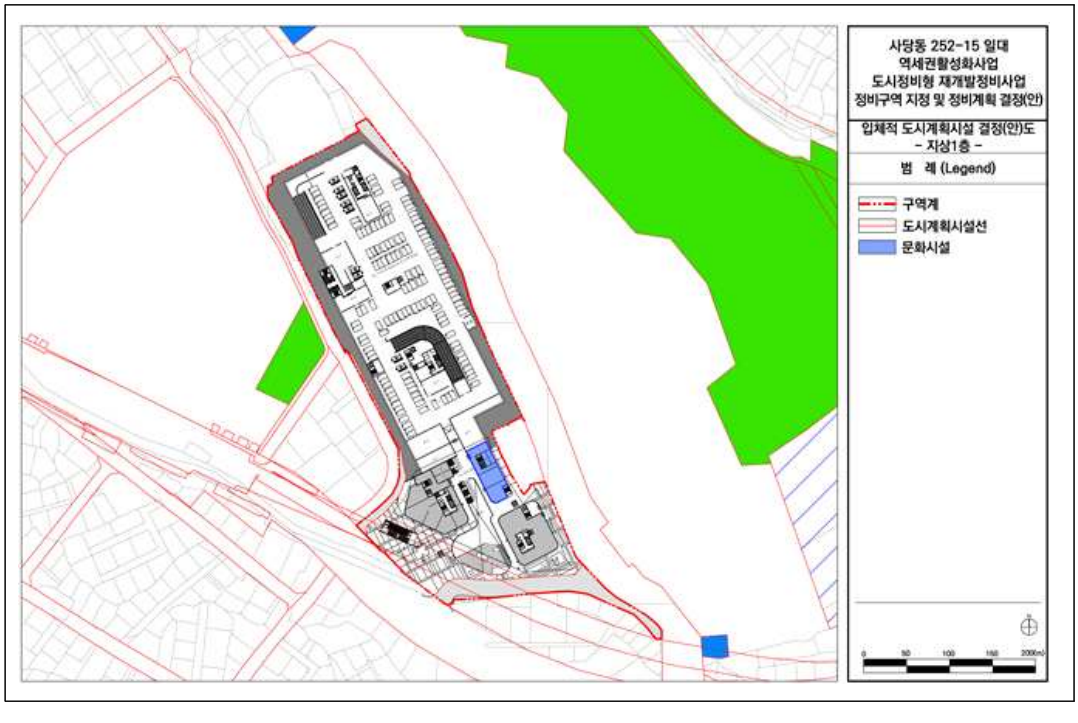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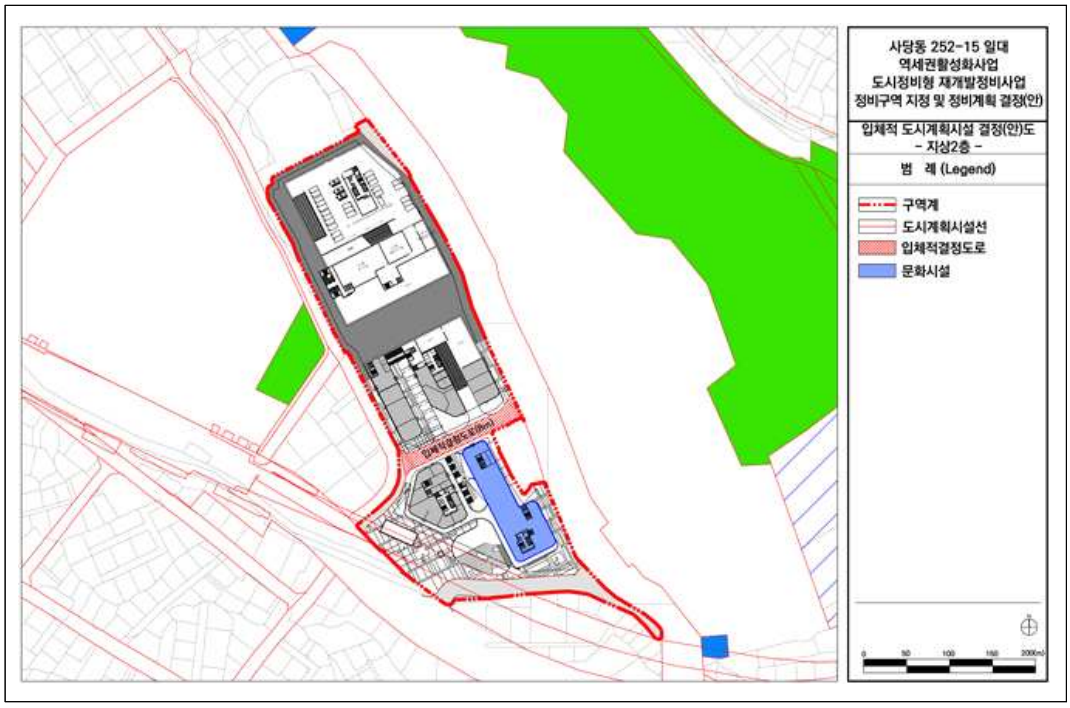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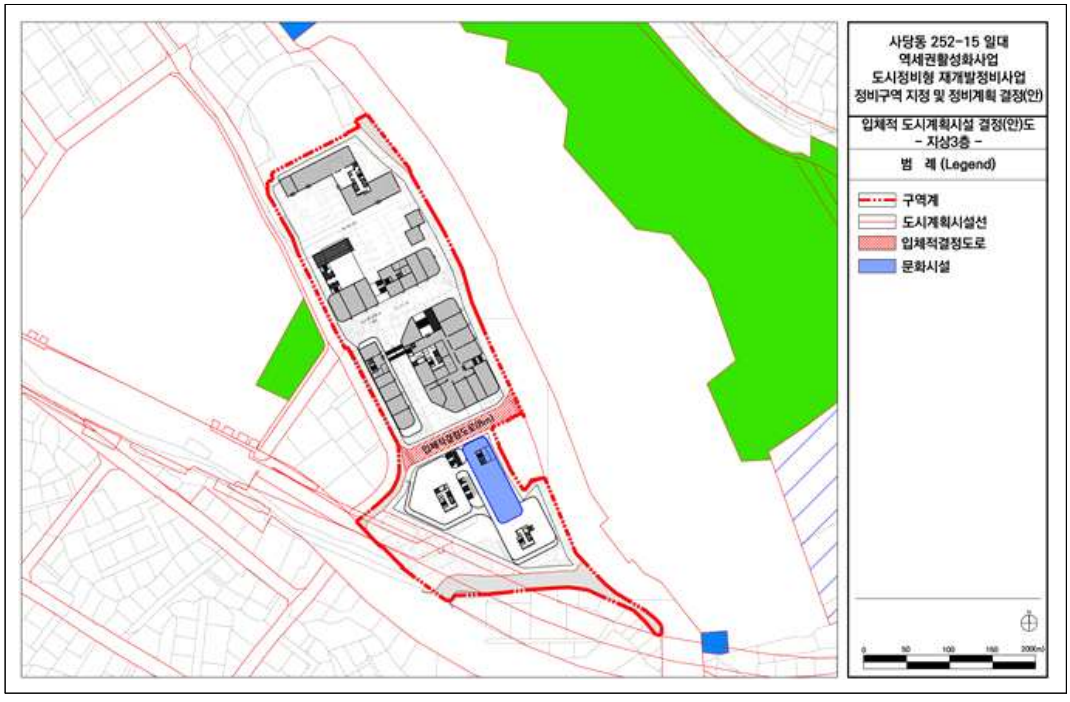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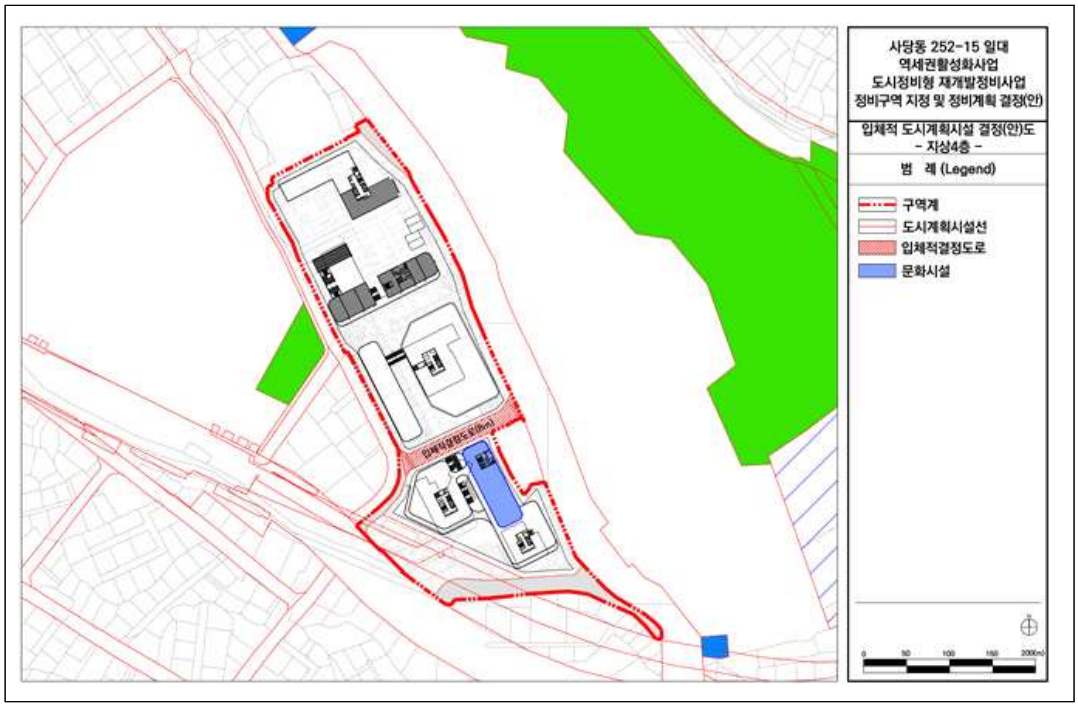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2층 평면도]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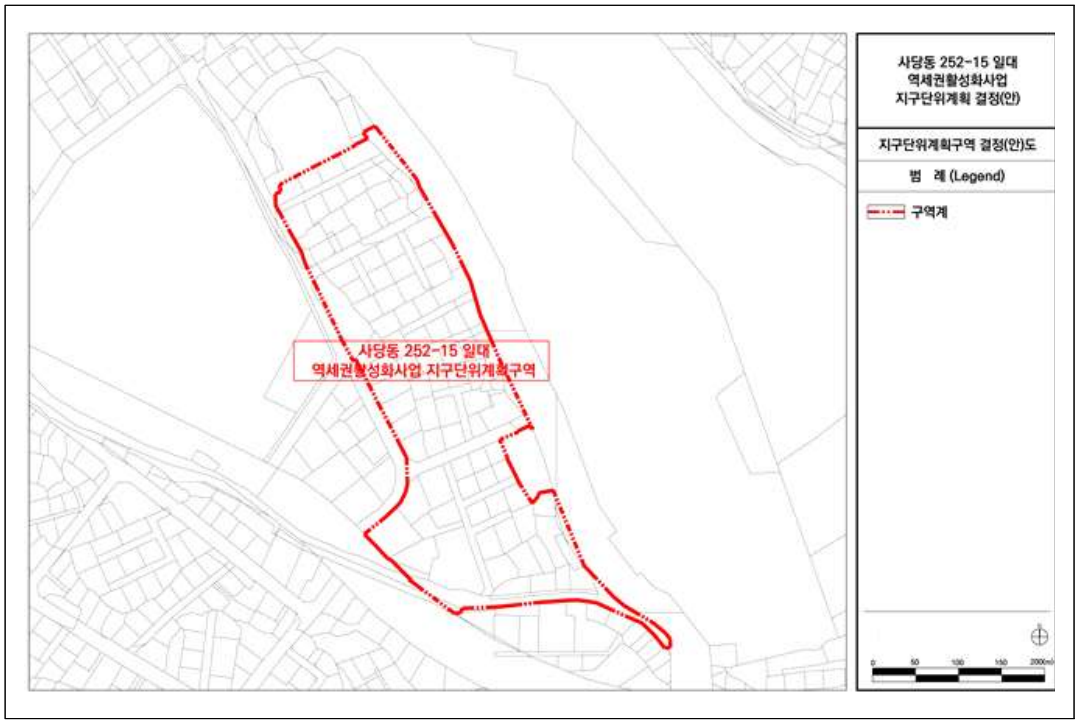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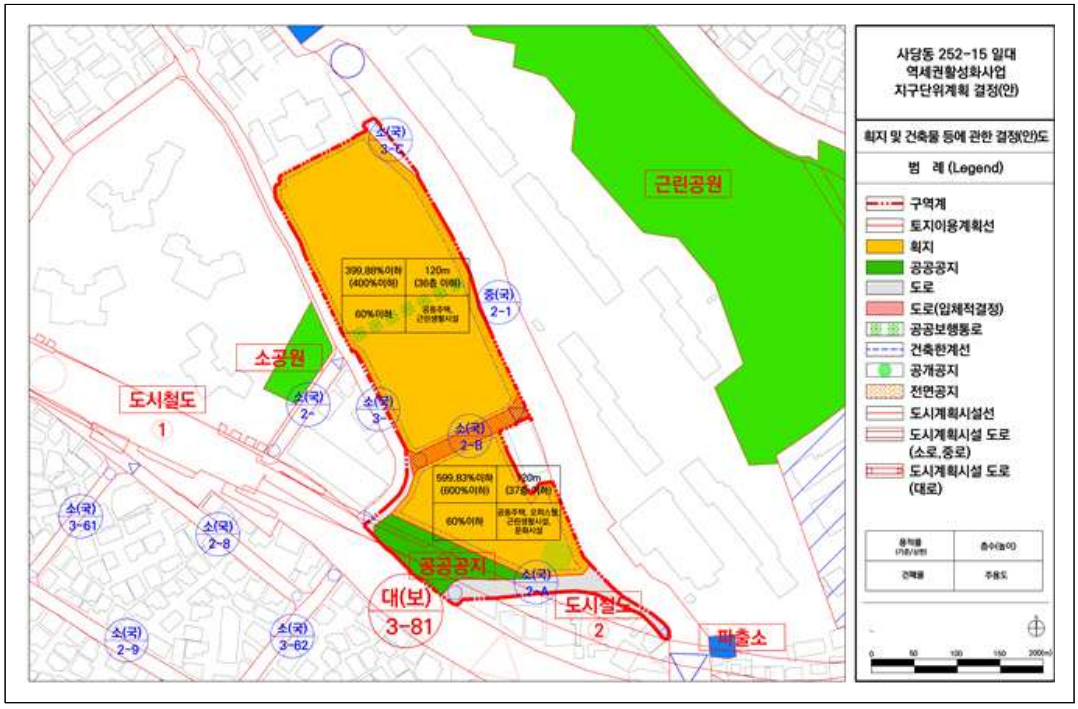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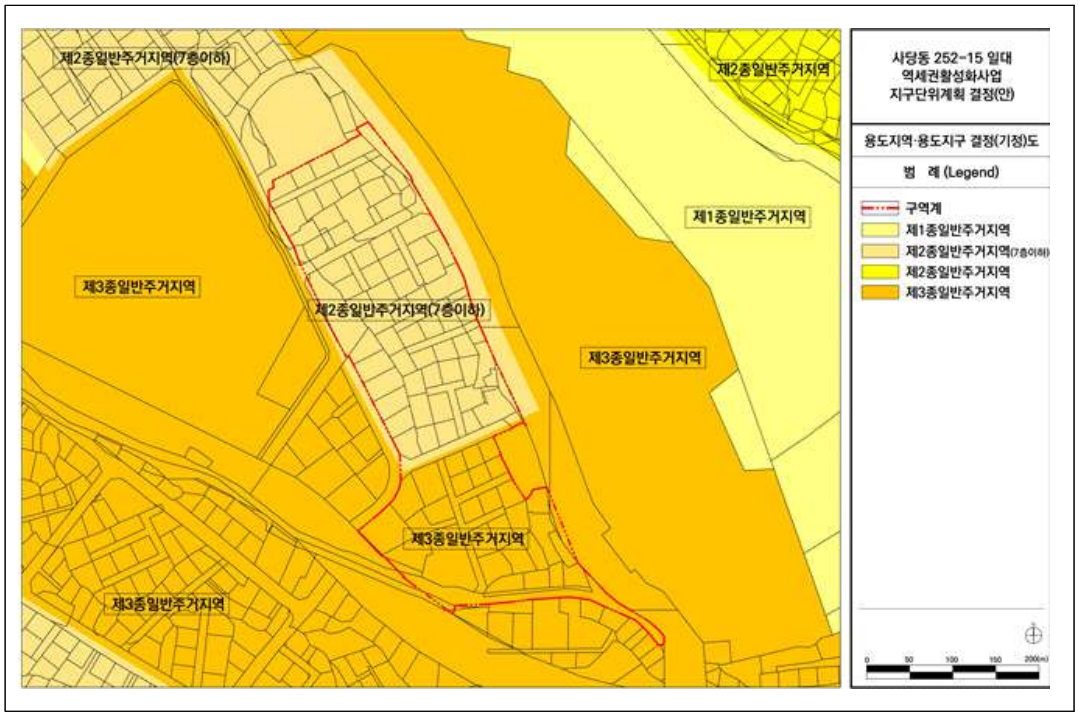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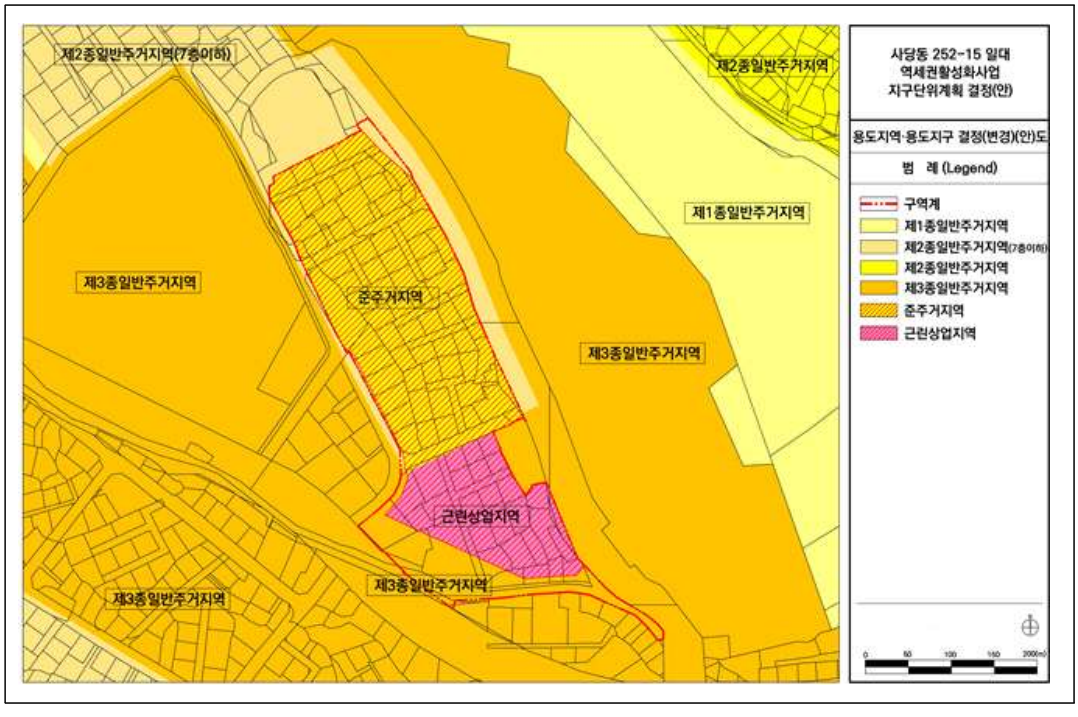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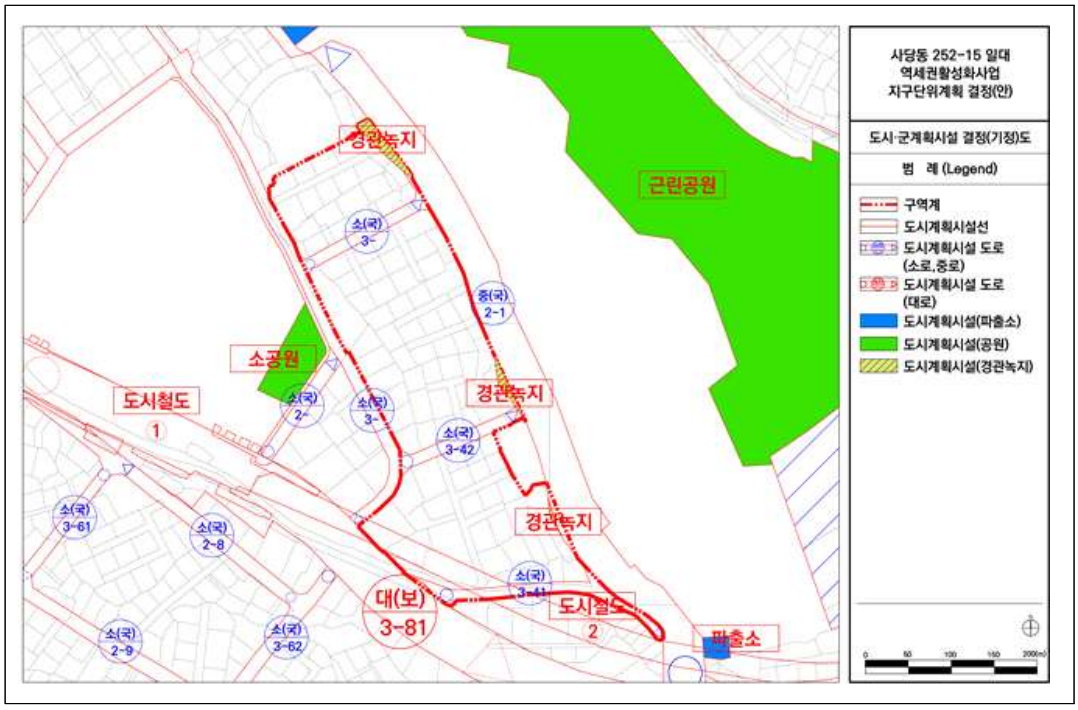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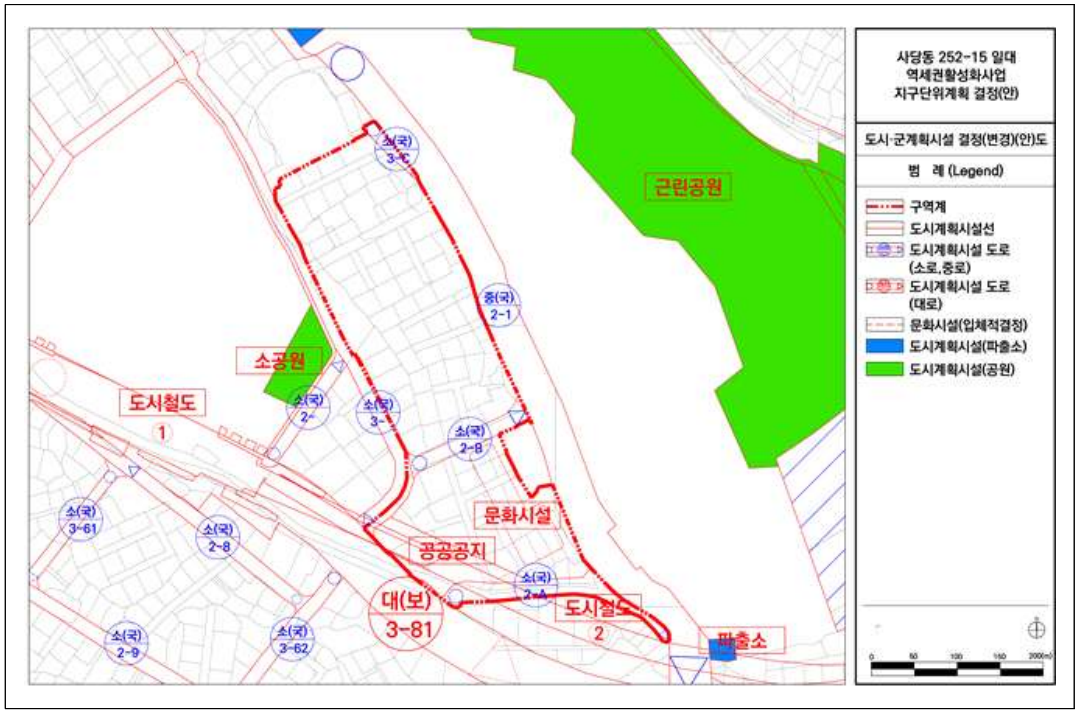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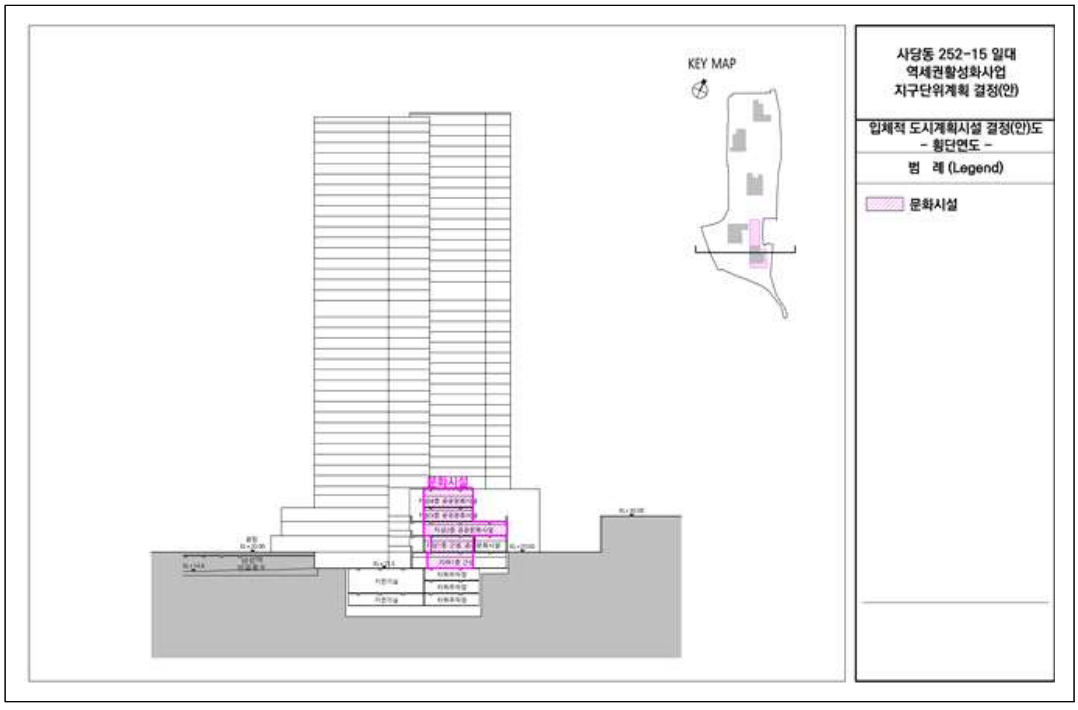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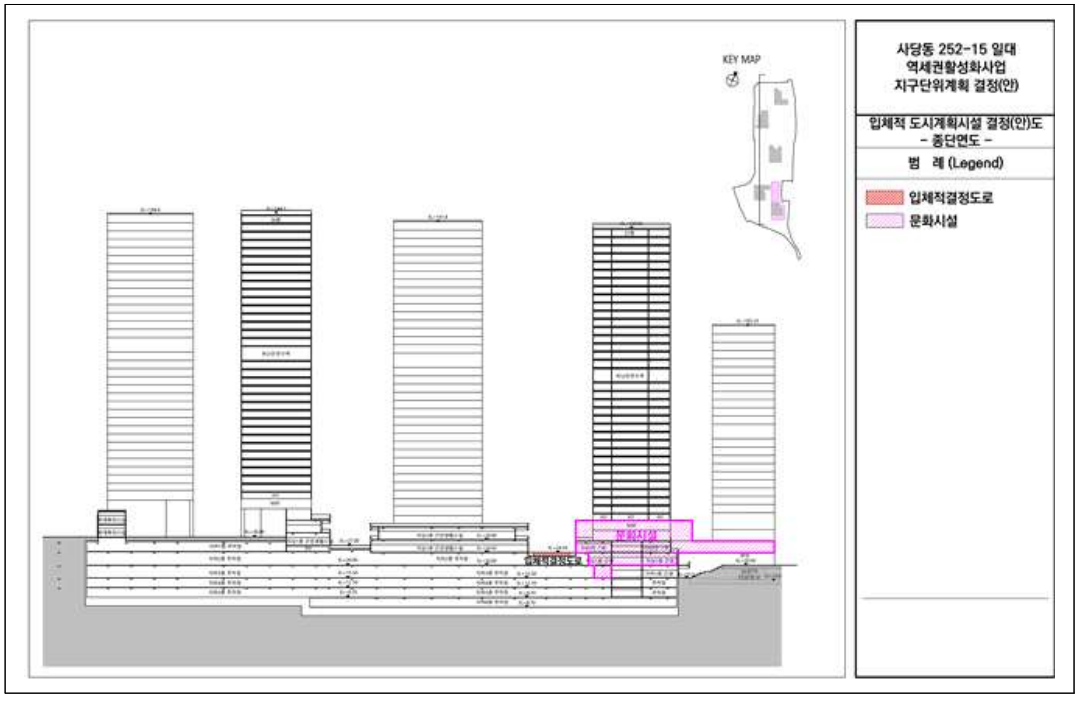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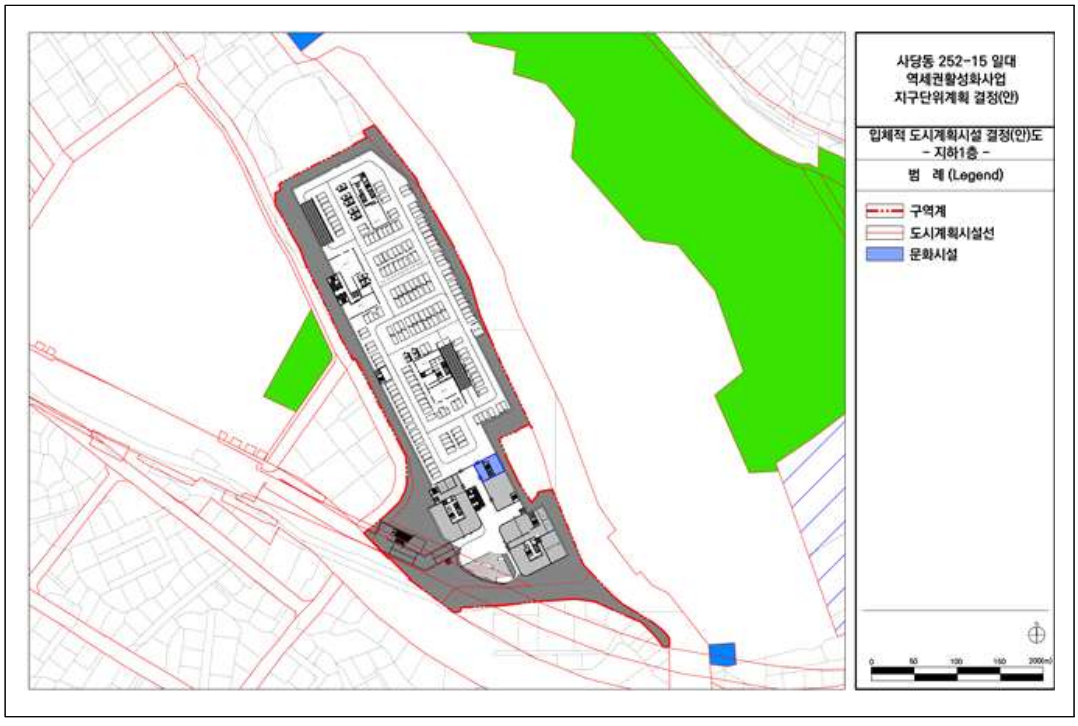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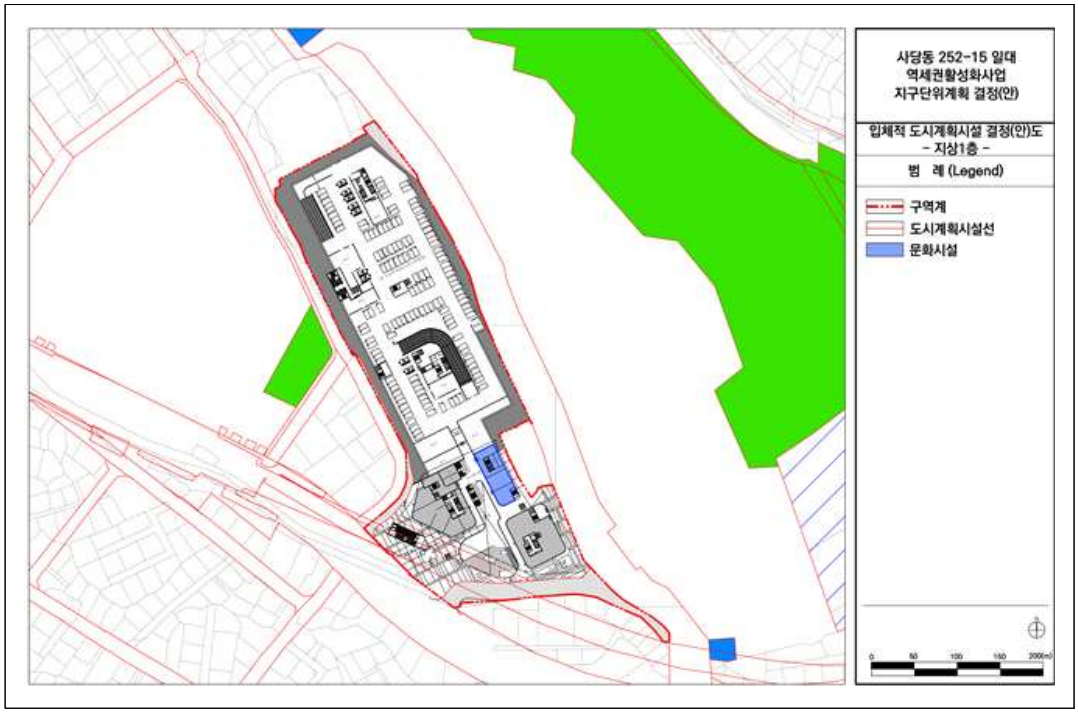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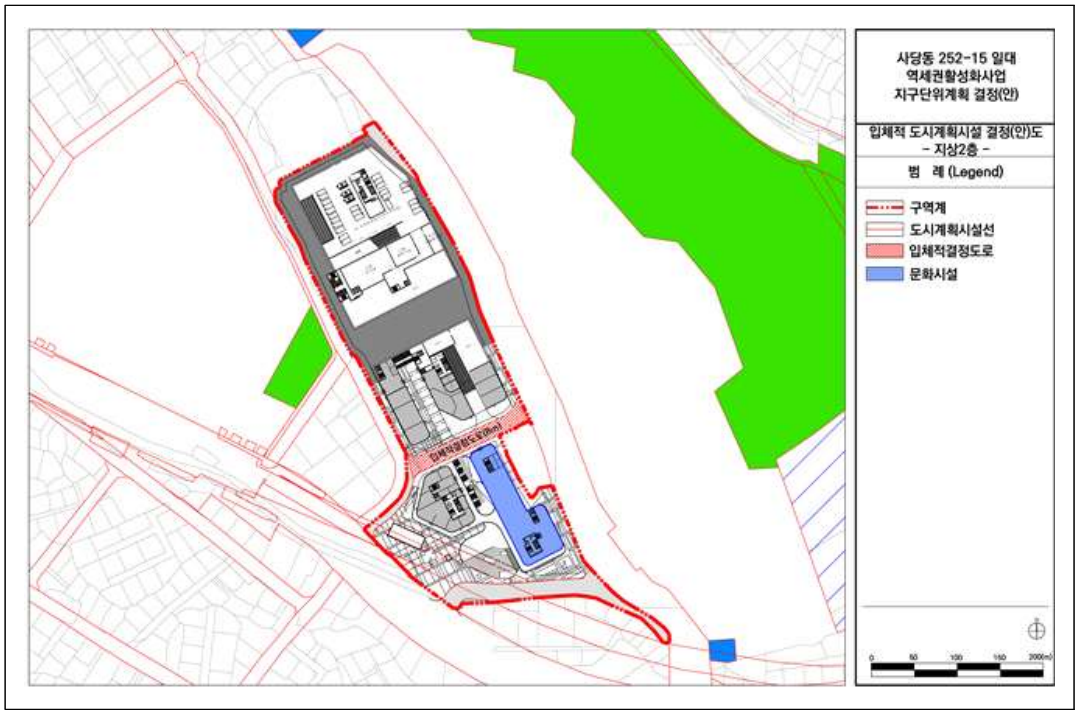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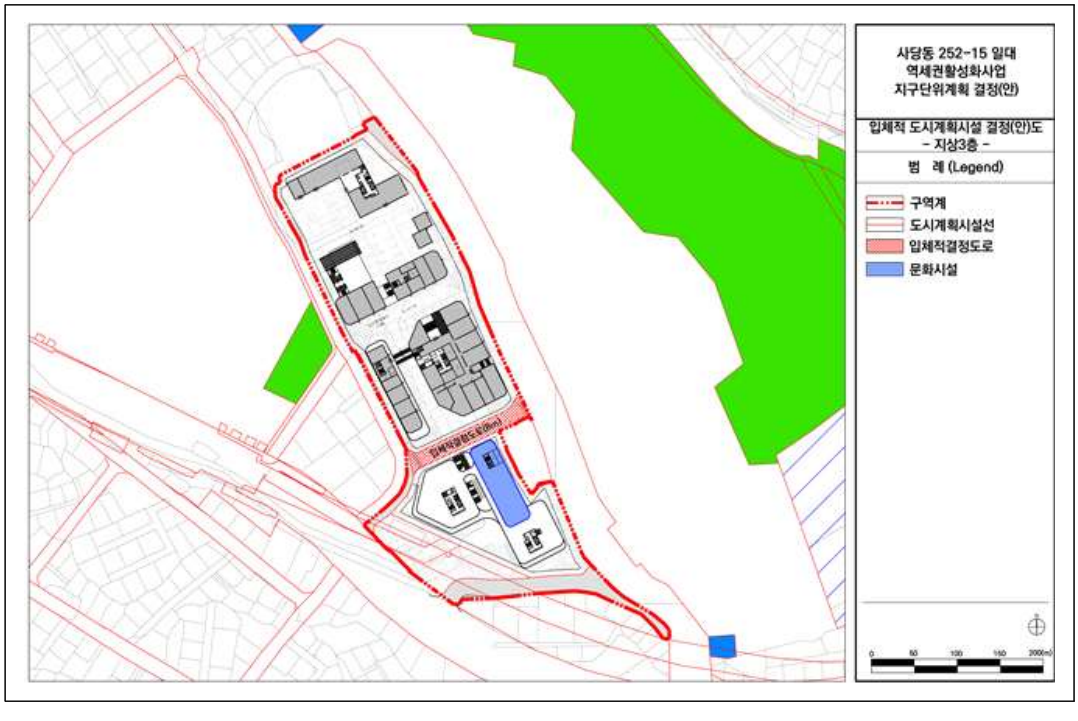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1층 평면도]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2층 평면도]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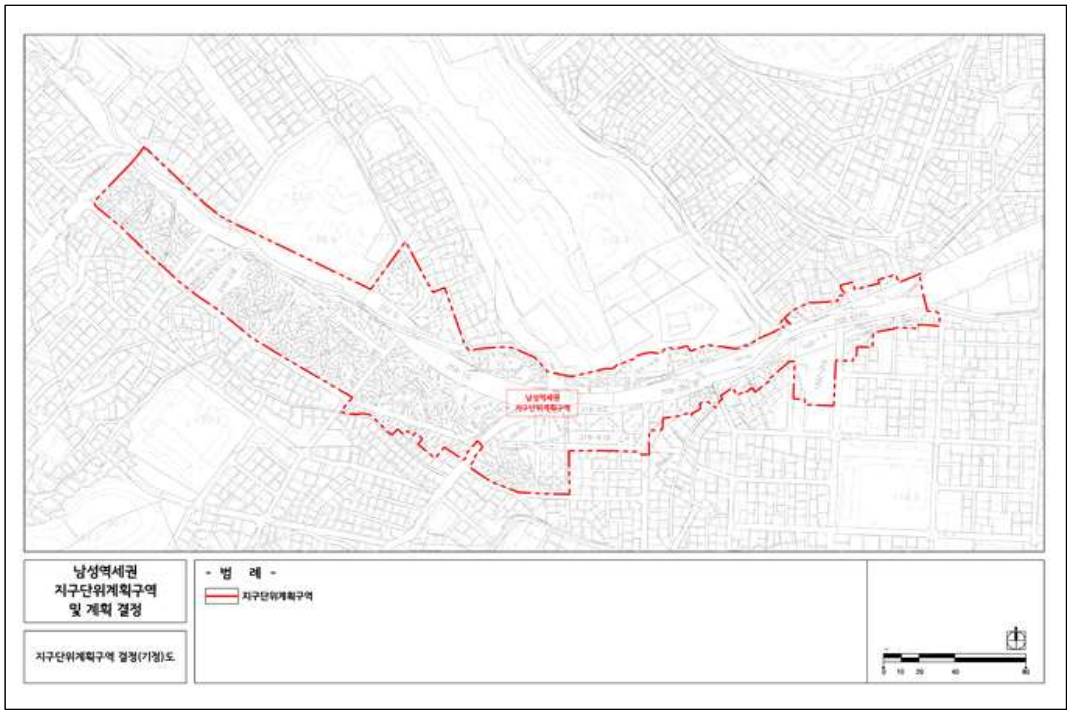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안)도 - 지상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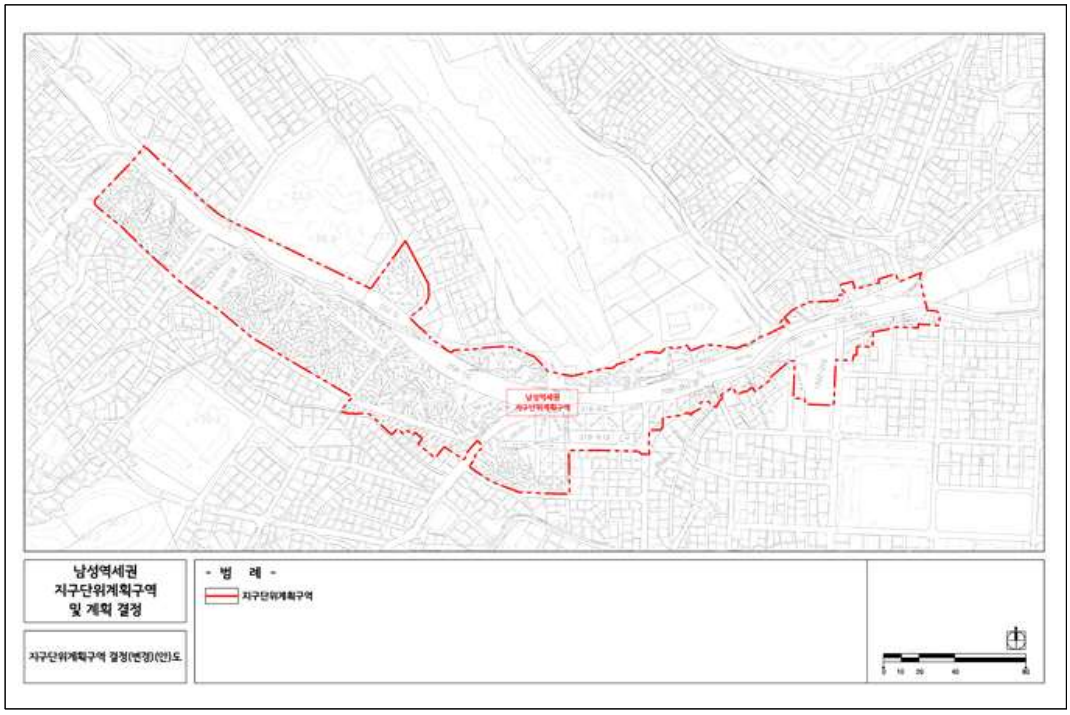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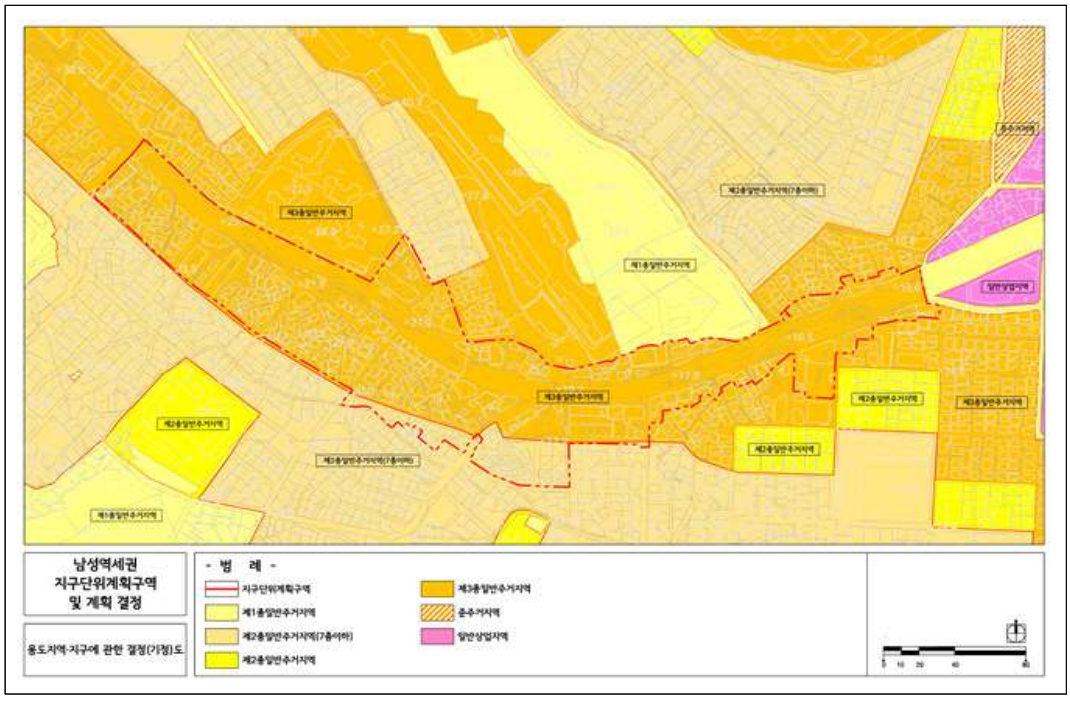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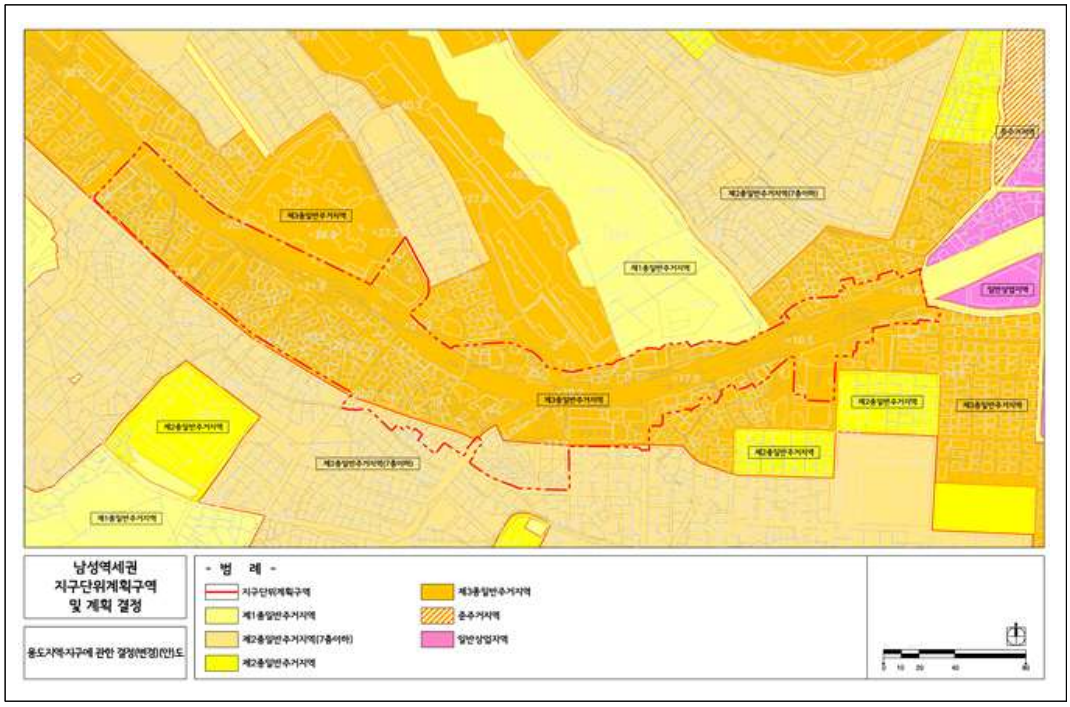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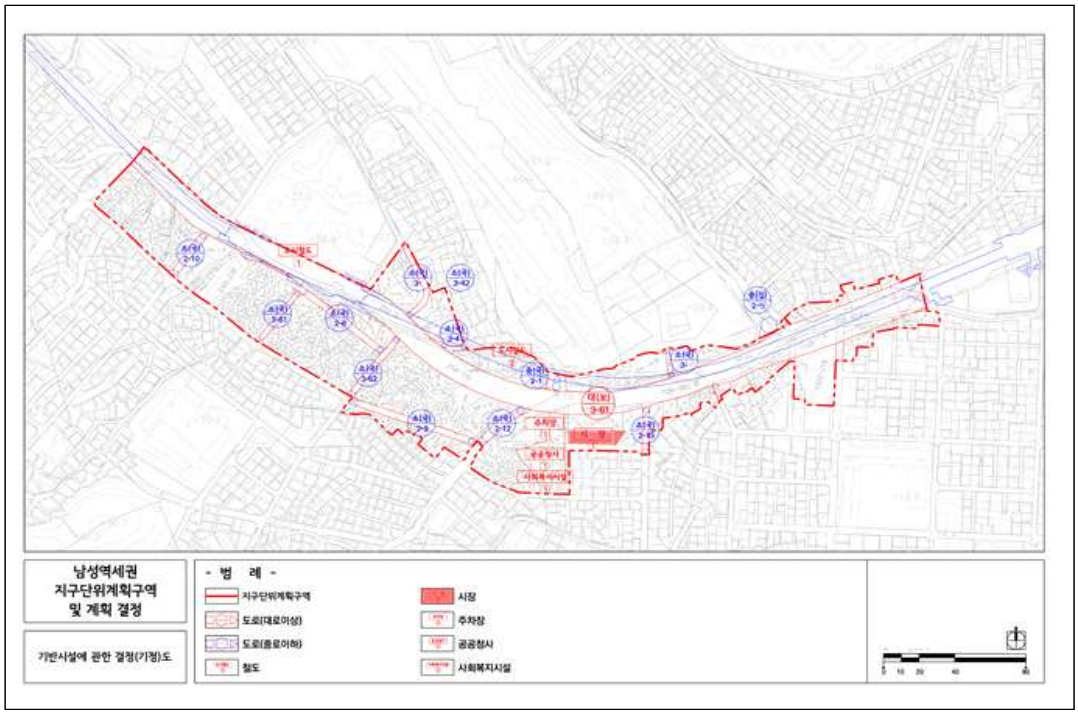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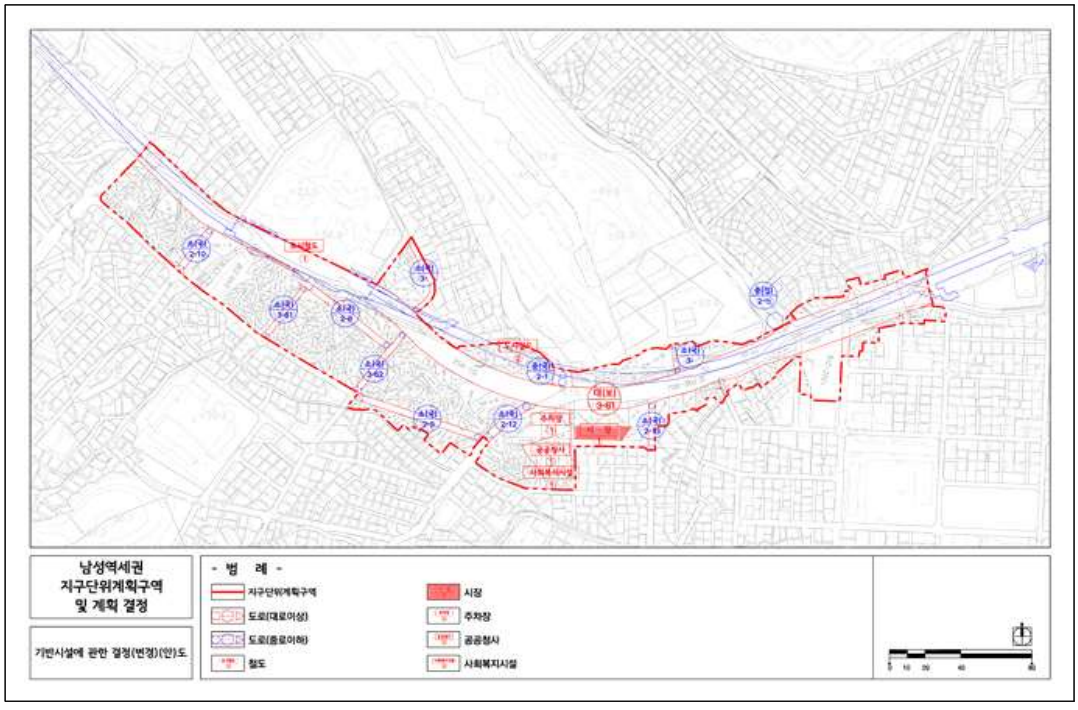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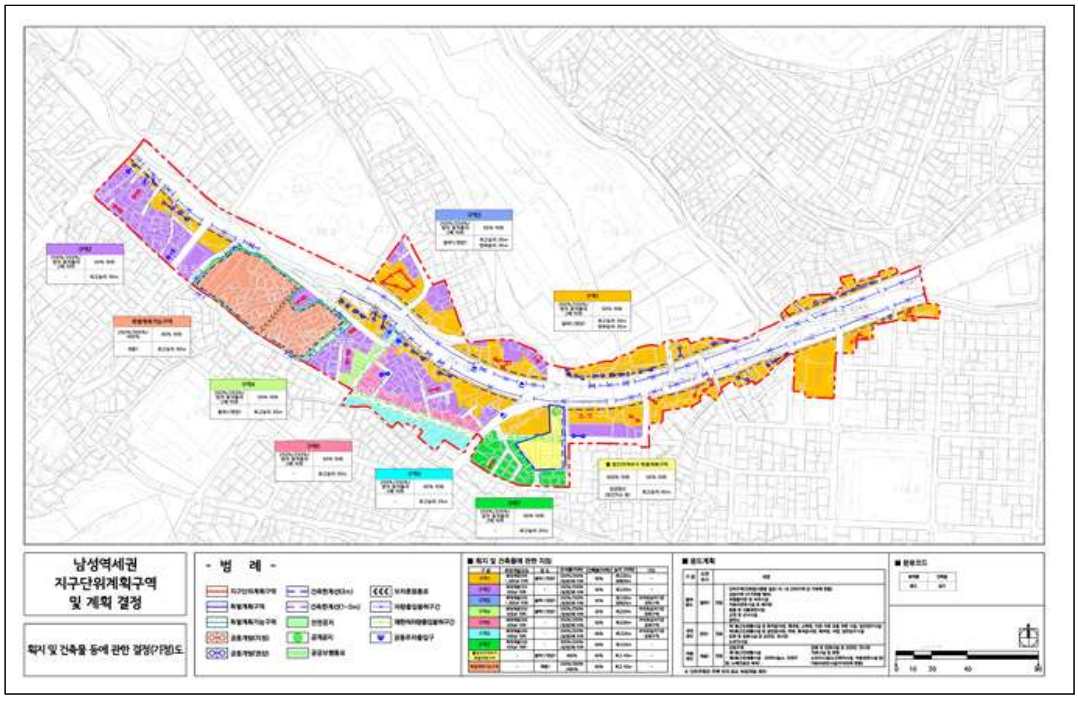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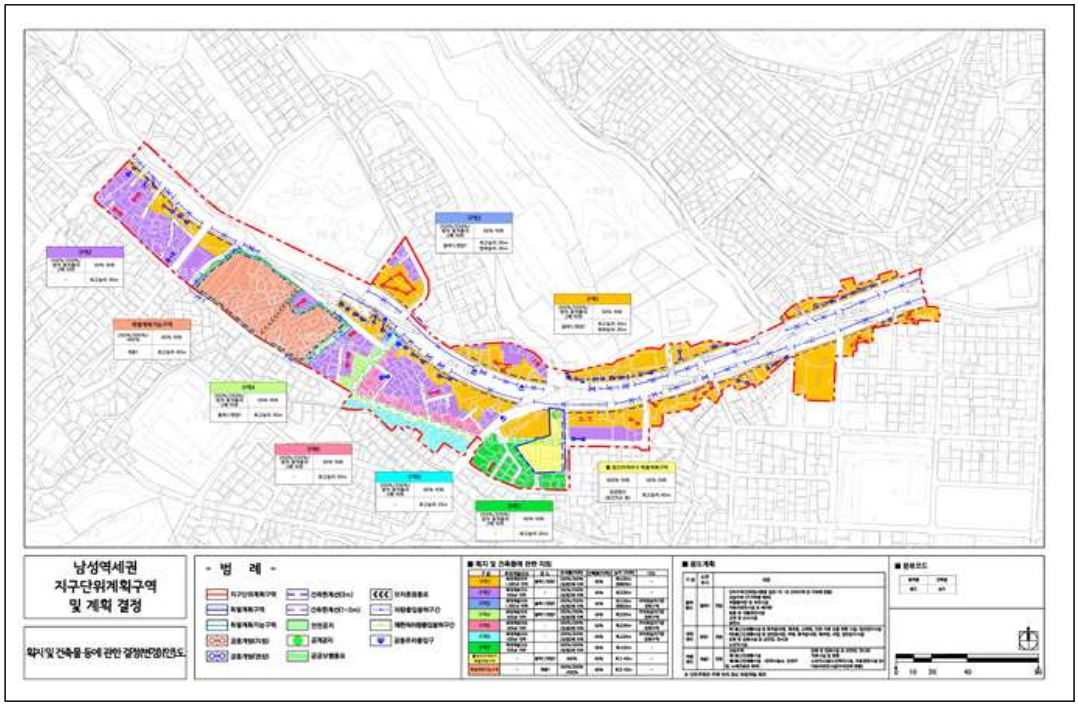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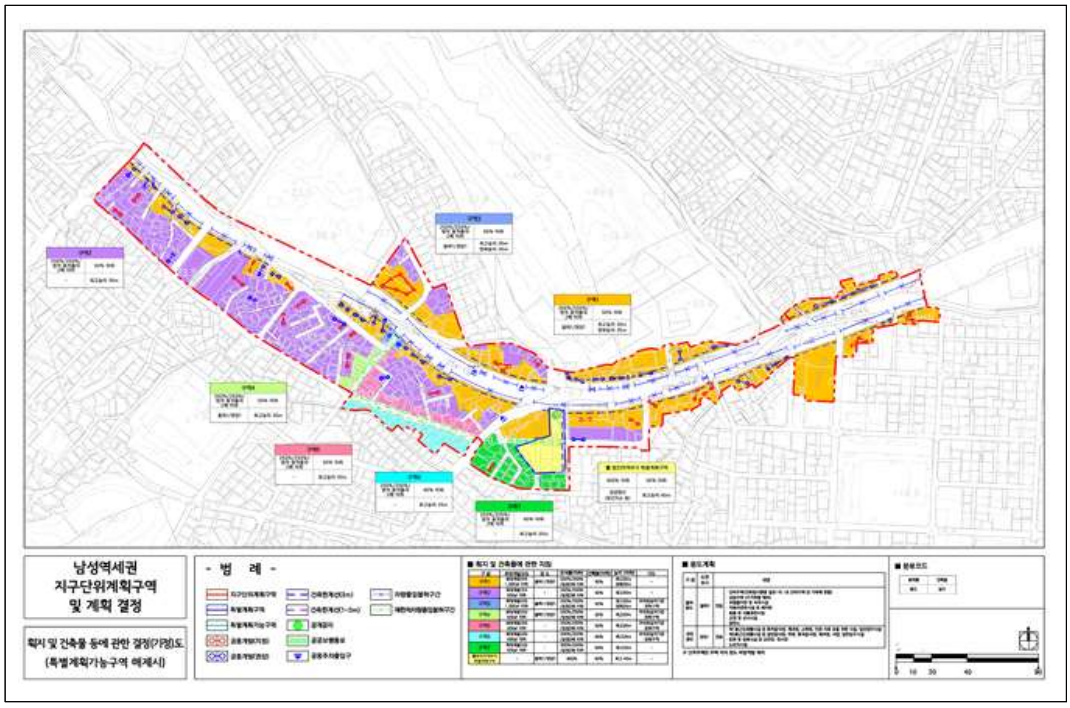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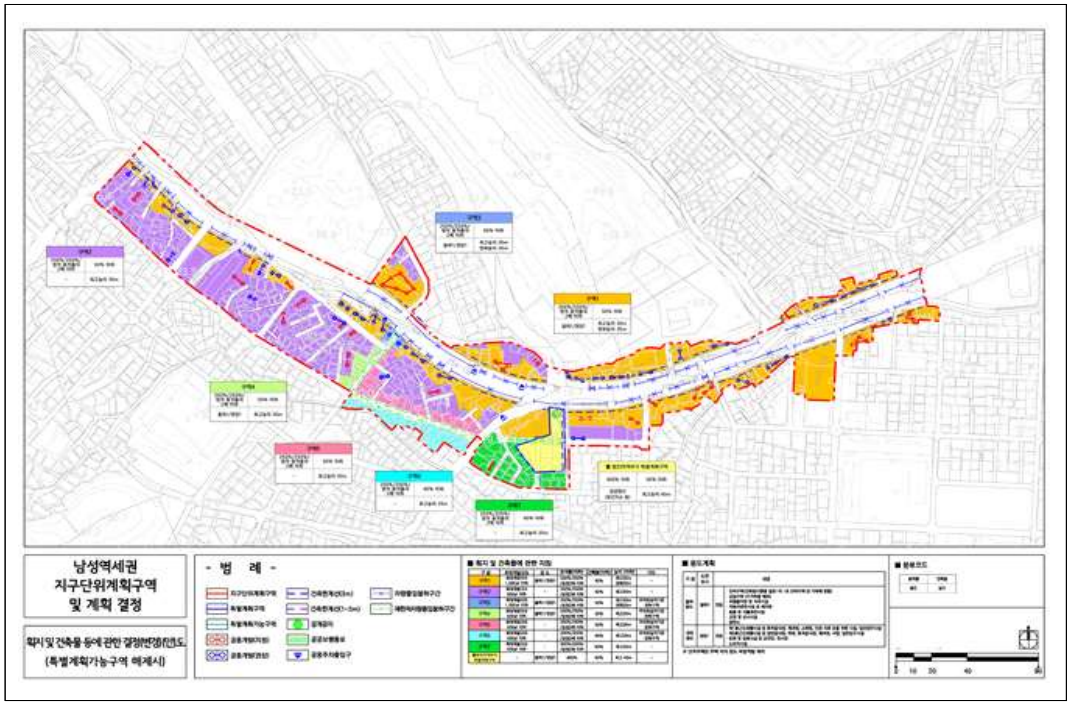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도(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원효대교 일원)	326㎡ - 기선1척 부산1척	서울시계 내 원효대교 정밀안전점검 중 선박운항	'24. 6. 3. ~ '24. 6. 28.	'24. 5. 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서강대교, 월드컵대교 일원	326㎡ - 기선1척 - 부산1척	서울시계 내 서강대교, 월드컵대교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점검 중 선박운항	'24. 6. 3. ~ '24. 6. 28.	'24. 5. 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교량안전과	서울시계내 한강 (반포대교 일원)	460㎡ - 기선1척 - 부산1척	서울시계 내 반포대교 정밀안전점검 중 선박운항	'24. 6. 3. ~ '24. 6. 21.	'24. 5. 2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37	서울시계내 한강 (선유교 일원)	380㎡ - 기선1척 - 부산1척	서울시계 내 선유교 정밀안전점검 중 선박운항	'24. 5. 30. ~ '24. 6. 1.	'24. 5. 2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4척) 499.2㎡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4. 6. 1. ~ '24. 6. 30.	'24. 5. 29.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37척) 9,442㎡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4. 6. 1. ~ '24. 6. 30.	'24. 5. 29.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2척) 384.66㎡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24. 6. 1. ~ '24. 6. 12.	'24. 5. 29.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4-16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06. 07 ~ 2024. 06. 20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4. 06. 07 ~ 2024. 07. 04 (14일)

6.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무인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등록내역-사전통지 (2024. 06. 03 274건)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	890504-*******	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인천서파6**) 이륜차	2024-04-14 20:4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81번길 49-1	반포한강공원내 회전교차로 주변
2	990718-*******	노*원윤*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42더56**) 자동차	2024-04-14 19:15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74길 82-8(신림동)	반포한강공원내 서래섬 나들목 주변
3	900423-*******	박*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0보02**) 자동차	2024-04-14 15:15	50,000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291번길 26	반포한강공원내 서래섬 나들목 주변
4	930408-*******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수원파**) 이륜차	2024-04-14 17:40	5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67번길 24	반포한강공원내 전기실 주변
5	751206-*******	손*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전북전주파**) 이륜차	2024-04-14 17:36	5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61길 34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6	910424-*******	김*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6고22**) 자동차	2024-04-13 22:4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432	반포한강공원내 달빛무지개사무실 도로
7	990622-*******	오*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5나45**) 자동차	2024-04-13 16:07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2길 7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슬로프 주변
8	971018-*******	백*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의정부**) 이륜차	2024-04-13 16:46	50,000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1886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9	740314-*******	강*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북가**) 이륜차	2024-04-13 20:51	5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51길 16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10	930309-*******	신*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마포타**) 이륜차	2024-04-13 20:50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68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 주변
11	850818-*******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8루44**) 자동차	2024-04-13 22:12	50,0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단봉길 39	반포한강공원내 달빛무지개분수 사무실 주변
12	970627-*******	한*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0우93**) 자동차	2024-04-13 22: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818	반포한강공원내 달빛무지개분수 사무실 주변
13	900409-*******	이*영이*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2부36**) 자동차	2024-04-13 22:10	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7	반포한강공원내 달빛무지개분수 사무실 주변
14	891022-*******	서*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작아**) 이륜차	2024-04-15 22:48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4길 68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주변
15	861007-*******	최*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16고7**) 자동차	2024-04-16 14:03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46번길 100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슬로프 주변
16	501105-*******	강*석신*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6오60**) 자동차	2024-04-17 21:06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길 62(답십리동)	반포한강공원내 더리버 슬로프 주변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7	880710-*******	이*기이*옥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8고38**) 자동차	2024-04-13 16:48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726	난지한강공원내 난지안내센터앞
18	891231-*******	김*욱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소081**) 자동차	2024-04-13 16:57	5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79	난지한강공원내 난지안내센터앞
19	911227-*******	김*남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6보45**) 자동차	2024-04-13 17:12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26	난지한강공원 제2주차장앞 보행로
20	840911-*******	박*화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91노93**) 자동차	2024-04-13 14:16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46-12	난지한강공원내 난지안내센터앞
21	901007-*******	차*준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2모38**) 자동차	2024-04-13 15:27	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4길 48-11	난지한강공원내 제1주차장부근
22	921203-*******	Q******NGMING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4부60**) 자동차	2024-04-13 15:28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4길 48	난지한강공원내 제1주차장부근
23	910824-*******	김*규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6러94**) 자동차	2024-04-13 14:22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3길 13	난지한강공원내 제2주차장부근
24	571013-*******	송*호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6부08**) 자동차	2024-04-14 16:18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46	난지한강공원내 난지안내센터주변
25	880418-*******	정*호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8더48**) 자동차	2024-04-14 16:23	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3길 7	난지한강공원내 제1주차장부근
26	921212-*******	김*규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0보170**) 자동차	2024-04-14 16:23	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7길 24-8(녹번동)	난지한강공원내 제1주차장부근
27	920805-*******	박*선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09부75**) 자동차	2024-04-14 16:27	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6길 29	난지한강공원내 제1주차장부근
28	861015-*******	최*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초차7**) 이륜차	2024-04-01 13:36	50,000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54	망원한강공원내망원GS1호편의점주변
29	930920-*******	문*필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마포파05**) 이륜차	2024-04-02 14:3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33번길 12	망원한강공원내트레일러주차장주변
30	870823-*******	박*미채*성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188러53)**) 자동차	2024-04-10 16:20	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18	망원한강공원내제4주차장주변
31	911120-*******	구*욱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경기고양타93**) 이륜차	2024-04-14 21:15	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74-1(녹번동)	망원한강공원내제4주차장주변
32	650827-*******	김*은*황*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5루27**) 자동차	2024-04-14 11:12	5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3길 28	이촌한강공원내 이촌안내센터 축구장 앞 (55루2746) 자동차
33	820418-*******	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3너06**) 자동차	2024-04-14 16:59	50,000	경기도 화성시 남여울1길 7	이촌한강공원내 그늘막 텐트존 옆 차도 (83너0647) 자동차
34	930603-*******	노*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5너04**) 자동차	2024-04-14 16:08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217	이촌한강공원내 이촌2호 편의점 옆 보행로 (35너0455) 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35	881030-*******	장*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3조48**) 자동차	2024-04-14 16:13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99	이촌한강공원내 거북축구장 옆 보행로 (43조4816) 자동차
36	941122-*******	김*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2보6**) 자동차	2024-04-14 16:18	5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65	이촌한강공원내 거북축구장 옆 보행로 (152보6146) 자동차
37	670112-*******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3저5**) 자동차	2024-04-14 16:47	50,000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44번길 47(감북동)	이촌한강공원내 자연학습장 옆 차도 (133저5469) 자동차
38	650215-*******	임*재(50%), 『신*경(5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1러55**) 자동차	2024-04-14 16:49	5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96	이촌한강공원내 자연학습장 옆 차도 (51러5568) 자동차
39	960906-*******	이*호(99%), 『손*숙(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7구9**) 자동차	2024-04-14 16:51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5길 43(상도1동)	이촌한강공원내 자연학습장 옆 차도 (157구9678) 자동차
40	971003-*******	윤*원(99%), 『윤*선(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5다91**) 자동차	2024-04-14 16:55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46번길 17-19	이촌한강공원내 텐트존 옆 차도 (55다9137) 자동차
41	891011-*******	손*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1라07**) 자동차	2024-04-14 17:00	50,000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93	이촌한강공원내 텐트존 옆 차도 (91라0701) 자동차
42	580108-*******	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4누53**) 자동차	2024-04-14 17:03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나길 11(이태원동)	이촌한강공원내 텐트존 옆 차도 (04누5373) 자동차
43	790503-*******	신*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5너7**) 자동차	2024-04-14 17:09	5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84번길 9-7	이촌한강공원내 텐트존 옆 차도 (325너7639) 자동차
44	780913-*******	황*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9수05**) 자동차	2024-04-14 12:43	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73	이촌한강공원내 3주차장-4주차장 우측 잔디밭 (69수0512) 자동차
45	881221-*******	진*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95조2**) 자동차	2024-04-14 16:08	50,00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81	이촌한강공원내 거북축구장 옆 (195조2813) 자동차
46	870630-*******	이*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1나55**) 자동차	2024-04-14 16:12	5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7길 34	이촌한강공원내 거북축구장 옆 (41나5504) 자동차
47	131311-*******	(*)해신**앤씨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0로60**) 자동차	2024-04-14 16:18	50,000	경기도 시흥시 매화산단로 95	이촌한강공원내 거북축구장 옆 (60로6062) 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48	810310-*******	문*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1조18**) 자동차	2024-04-14 16:17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4길 24	이촌한강공원내 거북축구장 옆 (41조1874) 자동차
49	920528-*******	채*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우50**) 자동차	2024-04-14 16:50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가길 10	이촌한강공원내 거북축구장 옆 (11우5043) 자동차
50	720929-*******	김*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7오93**) 자동차	2024-04-14 16:48	5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41	이촌한강공원내 자연학습장 옆 차도 (67오9390) 자동차
51	920219-*******	권*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저27**) 자동차	2024-04-14 16:4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57	이촌한강공원내 자연학습장 옆 차도 (32저2745) 자동차
52	880129-*******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2두05**) 자동차	2024-04-14 17:03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길 74	이촌한강공원내 텐트존 옆 차도 (62두0573) 자동차
53	860218-*******	이*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9머11**) 자동차	2024-04-14 17: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05번길 18-5	이촌한강공원내 텐트존 옆 차도 (29머1164) 자동차
54	660502-*******	박*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5저19**) 자동차	2024-04-14 17:05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02	이촌한강공원내 텐트존 옆 차도 (45저1919) 자동차
55	800907-*******	노*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의정부**) 이륜차	2024-04-14 16:23	50,000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96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56	810414-*******	제*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가**) 이륜차	2024-04-14 16:23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84	뚝섬한강공원 뚝섬나들목 주변
57	931128-*******	안*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동마**) 이륜차	2024-04-14 14:20	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2길 9-1(마장동)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58	910830-*******	김*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 이륜차	2024-04-14 14:27	5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0길 20	뚝섬한강공원 뚝섬나들목 주변
59	910629-*******	이*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동차**) 이륜차	2024-04-14 16:30	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길 16(성수동2가)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60	801205-*******	최*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4오94**) 자동차	2024-04-14 14:20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9길 33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61	520919-*******	심*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3구11**) 자동차	2024-04-14 20:00	50,000	경기도 화성시 장지안길 42(장지동)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62	960825-*******	Y***HUKURULLO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파**) 이륜차	2024-04-12 16:50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26길 24	뚝섬한강공원 제4주차장 주변
63	890408-*******	이*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67조18**) 자동차	2024-04-13 14:35	5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1길 51(수유동)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64	520706-*******	윤*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주97**) 자동차	2024-04-13 14:38	5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20번길 11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65	134811-*******	에****업주식회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8머48**) 자동차	2024-04-13 17:00	5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7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66	930805-*******	조*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송파파**) 이륜차	2024-04-14 14:15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1길 8-10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67	930805-*******	조*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송파파**) 이륜차	2024-04-14 14:15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1길 8-10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 주변
68	760217-*******	김*연(50%), 『이*주(5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2두52**) 자동차	2024-04-14 14:21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나길 12-11	뚝섬한강공원 원드서핑장 주변
69	700323-*******	박*덕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2하30**) 자동차	2024-04-13 19:15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잠실한강공원 내 6주차장옆 도로변(172하3011)자동차
70	691116-*******	송*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오979**) 자동차	2024-04-19 22:55	5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87길 50	반포한강공원내 슬로프주차장 주변
71	840427-*******	김*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작차**) 이륜차	2024-04-21 14:39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1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1 주변
72	960928-*******	M*****BEKABDU**GL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광주북바4**) 이륜차	2024-04-21 23:24	50,000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6번길 9-6	반포한강공원내 달?광장2 주변
73	284911-*******	(*)**물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99사**) 자동차	2024-04-22 08:52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40	반포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슬로프 주변
74	860418-*******	이*길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경기고양나48**) 이륜차	2024-04-02 20:23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9길 7-10	망원한강공원내제3주차장주변
75	840305-*******	나*원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경기고양다11**) 이륜차	2024-04-02 20:24	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2가길 31-1	망원한강공원내제3주차장주변
76	750221-*******	손*호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서울마포차18**) 이륜차	2024-04-21 12:29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3길 91	망원한강공원내망원나들목회전교차로주변
77	330406-*******	오*환(1%), 『김*임(9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8로33**) 자동차	2024-04-20 10:15	5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20번길 11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78	830811-*******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북가**) 이륜차	2024-04-21 14:30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1-1	뚝섬한강공원 제4주차장 주변
79	740714-*******	염*정(90%) 『장*석(1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 이륜차	2024-04-21 19:59	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19길 23	뚝섬한강공원 제4주차장 주변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80	950310-*******	정*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대문**) 이륜차	2024-04-22 16:57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2길 22-7(휘경동)	뚝섬한강공원 제4주차장 주변
81	800630-*******	인*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송파파**) 이륜차	2024-04-21 06:22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0길 39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82	900404-*******	박*홍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랑파**) 이륜차	2024-04-25 19:28	5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93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83	801228-*******	성*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0가728**) 자동차	2024-04-25 14:56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5바길 37(보광동)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84	810228-*******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0조07**) 자동차	2024-04-27 19:39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3길 15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주변
85	980417-*******	B****HU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동대문**) 이륜차	2024-04-27 19:19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2나길 2-5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주변
86	930620-*******	이*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 이륜차	2024-04-27 19:28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9길 15(자양동)	뚝섬한강공원 벽천나들목 주변
87	810915-*******	권*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1머84**) 자동차	2024-04-21 10:15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4길 9	이촌한강공원내 거북축구장 옆 보행로 (51머8428) 자동차
88	660910-*******	김*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5어4**) 자동차	2024-04-21 09:44	50,00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솔바람길 17-3(황지동)	이촌한강공원내 차범근 축구교실 옆 보행로 (135어4951) 자동차
89	660315-*******	공*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로02**) 자동차	2024-04-27 15:06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100	이촌한강공원내 2주차장에서 3주차장 가는 도로상 (25로0286) 자동차
90	960103-*******	김*환(99%) 『남*희(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하**) 이륜차	2024-04-27 10:05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2라길 22(상도동)	이촌한강공원내 한강대교 북단 하단부 (서울관악 하 6387) 이륜차
91	911008-*******	최*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카**) 이륜차	2024-04-07 10:0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부역로20번길 22	여의도한강공원 배달존2주변(서울용산카6429)이륜차
92	710124-*******	황*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파**) 이륜차	2024-04-07 14:15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여의도한강공원 안내센터주변(서울강남파0688)이륜차
93	891203-*******	류*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파**) 이륜차	2024-04-10 16:48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10길 5-6	여의도한강공원 제3주차장흡연부스옆통행로(서울관악파4176)이륜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94	740730-*******	P***JINZHE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인천부평자**) 이륜차	2024-04-11 17:14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9다길 24	여의도한강공원 배달존2주변(인천부평자3509)이륜차
95	000718-*******	박*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안산아**) 이륜차	2024-04-14 00:08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루지3길 18(월피동)	여의도한강공원 제2주차장볼라드앞주변(경기안산아3799) 이륜차
96	700315-*******	임*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2거09**) 자동차	2024-04-13 14:30	50,00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효덕새싹길 55	강서한강공원 내 개화나들목 회전교차로 주변(92거0932)자동차
97	841102-*******	김*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42마73**) 자동차	2024-04-13 14:57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33	강서한강공원 내 개화나들목 회전교차로 주변(342마7302)자동차
98	820105-*******	최*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6노61**) 자동차	2024-04-13 19:20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3로 74	강서한강공원 내 회전교차로주변(46노6146)자동차
99	940115-*******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9라29**) 자동차	2024-04-14 15:45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8	강서한강공원 원형교차로 부근(49라2915)자동차
100	820821-*******	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8주07**) 자동차	2024-04-14 15:50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3길 56	강서한강공원 원형교차로 부근(18주0772)자동차
101	900316-*******	이*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저59**) 자동차	2024-04-14 15:54	50,000	경기도 양주시 독바위로287번길 51	강서한강공원 원형교차로 부근(15저5959)자동차
102	790303-*******	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07서67**) 자동차	2024-04-14 15:55	50,000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134번길 53	강서한강공원 원형교차로 부근(207서6760)자동차
103	870929-*******	황*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3루27**) 자동차	2024-04-14 15:57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89	강서한강공원 원형교차로 부근(53루2762)자동차
104	920418-*******	김*헌(50%), 『김*환(5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누700**) 자동차	2024-04-14 18:34	50,000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134번길 24	강서한강공원 내 개화나들목 회전교차로주변(13누7009)자동차
105	930329-*******	고*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6로799**) 자동차	2024-04-14 18:46	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3나길 8	강서한강공원 원형교차로 부근(06로7999)자동차
106	931022-*******	이*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3러071**) 자동차	2024-04-14 18:47	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3길 32-18(증산동)	강서한강공원 원형교차로 부근(03러0717)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07	680721-*******	장*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0서15**) 자동차	2024-04-16 20:46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33	강서한강공원 원형교차로 안전지대주변(50서1589)자동차
108	840409-*******	신*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차**) 이륜차	2024-04-19 18:24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260	여의도한강공원 제1배달존주변(서울용산차4858)이륜차
109	930729-*******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3서90**) 자동차	2024-04-20 13:12	5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263번길 20(도당동)	여의도한강공원 제2주차장출입구주변(253서9042)자동차
110	110111-*******	㈜*래쉬버스터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6보77**) 자동차	2024-03-28 13:51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13길 14-8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입구보행로
111	960303-*******	신*인(99%) 『유*열(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안성가**) 이륜차	2024-04-25 22:05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7가길 49(화곡동)	강서한강공원 안내센터주차장과 유류창고사이주변(경기안성가5889)이륜차
112	680311-*******	서*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서차**) 이륜차	2024-04-27 16:57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1길 49(화곡동	강서한강공원 내 강서구 개화동 117-1부근(서울강서차3047)이륜차
113	640816-*******	정*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65조34**) 자동차	2024-04-28 22:57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3길 45(천호동	강서한강공원 내 원형교차로주변(365조3430)자동차
114	680105-*******	신*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7어37**) 자동차	2024-04-27 20:30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48번길 140	잠실한강공원 내 론볼링장 주변(107어3717)자동차
115	811010-*******	T****RANATOLEVICH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93노99**) 자동차	2024-04-27 20:23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29번길 2-6	잠실한강공원 내 헬기장 주변(293노9949)자동차
116	870714-*******	박*은박*준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4머96**) 자동차	2024-04-27 20:21	5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9로 14	잠실한강공원 내 헬기장 주변(234머9601)자동차
117	810224-*******	장*규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65보55**) 자동차	2024-04-27 16:32	50,000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499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주변(65보5576)자동차
118	220111-*******	주*회사*카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9허40**) 자동차	2024-04-27 20:12	50,000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69번지 4호	잠실한강공원 내 헬기장 주변(149허4087)자동차
119	781003-*******	김*동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63더72**) 자동차	2024-04-27 20:02	50,000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100	잠실한강공원 내 헬기장 주변(63더7294)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20	830821-*******	탁*현고*숙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6서86**) 자동차	2024-04-27 17:3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65	잠실한강공원 내 신천나들목 주변(36서8646)자동차
121	970814-*******	이*연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09마780**) 자동차	2024-04-27 17:23	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63	잠실한강공원 내 신천나들목 주변(09마7806)자동차
122	870528-*******	임*호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3마81**) 자동차	2024-04-27 16:43	50,000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43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주변(313마8190)자동차
123	950416-*******	원*서원*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8루84**) 자동차	2024-04-28 16:32	50,000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270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168루8446)자동차
124	770906-*******	김*영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다96**) 자동차	2024-04-28 16:42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39번길 20-14	잠실한강공원 내 녹지반 창고옆 주변(24다9673)자동차
125	910307-*******	이*범이*경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5누98**) 자동차	2024-04-28 19:28	50,000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681번길 11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335누9881)자동차
126	831022-*******	김*수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마95**) 자동차	2024-04-28 14:41	5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30번길 19-15(신흥동)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하부 주차금지구역(12마9508)자동차
127	030503-*******	A*****IDABDURA SULUGLI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파37**) 이륜차	2024-04-30 02:17	5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21길 15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주변(서울중파3712)이륜차
128	820505-*******	최*민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오07**) 자동차	2024-04-27 17:41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길 60-3	잠실한강공원 내 종합운동장나들목 주변(13오0769)자동차
129	820719-*******	김*연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무04**) 자동차	2024-04-27 17:37	50,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9	잠실한강공원 내 종합운동장나들목 주변(14무0489)자동차
130	850925-*******	박*태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8더98**) 자동차	2024-04-27 17:30	50,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410	잠실한강공원 내 종합운동장나들목 주변(28더9830)자동차
131	890210-*******	박*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라72**) 자동차	2024-04-27 16:43	50,0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33-1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32라7270)자동차
132	860107-*******	김*현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5버22**) 자동차	2024-04-27 16:28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31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35버2298)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33	900416-*******	서*원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57로07**) 자동차	2024-04-27 16:47	50,000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26-18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57로0760)자동차
134	930626-*******	이*규박*숙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77수15**) 자동차	2024-04-27 16:58	50,000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46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277수1591)자동차
135	831019-*******	김*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68로51**) 자동차	2024-04-27 20: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3	잠실한강공원 내 론볼링장 주변(268로5161)자동차
136	110111-*******	㈜*리테크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3호86**) 자동차	2024-04-14 16:52	50,00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단1로 64-10	난지한강공원내 제2주차장부근(153호8612)자동차
137	840221-*******	김*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7고35**) 자동차	2024-04-25 03:14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반포한강공원내 슬로프주변(57고3561)자동차
138	691217-*******	박*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아**) 이륜차	2024-04-25 23:07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2길 46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1주변(서울강남아0713)이륜차
139	550430-*******	박*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7나309**) 자동차	2024-04-26 15:07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8길 6	반포한강공원내 슬로프주변(27나3096)자동차
140	931205-*******	조*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관악가**) 이륜차	2024-04-26 17:31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44가길 31	반포한강공원내 제1수변무대주변(서울관악가7263)이륜차
141	490913-*******	고*자임*묵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저48**) 자동차	2024-04-28 13:22	50,000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가길 6-1	난지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앞 보행로(31저4804)자동차
142	811222-*******	문*현강*민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0너048**) 자동차	2024-04-28 14:28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0길 11	난지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앞 보행로(60너0481)자동차
143	890120-*******	김*기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8머815**) 자동차	2024-04-28 14:33	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67	난지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앞 보행로(28머8159)자동차
144	800203-*******	고*승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오72**) 자동차	2024-04-28 16:10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6나길 110	난지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주변화단(25오7248)자동차
145	820127-*******	최*주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무36**) 자동차	2024-04-28 16:14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16	난지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주변 화단(15무3663)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46	630505-*******	성*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2노02**) 자동차	2024-04-14 17:16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99	반포한강공원내 제1달빛광장 반포대교교각 주변(92노0218)자동차
147	660319-*******	신*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카**) 이륜차	2024-04-28 22:49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54길 6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 교각41번주변(서울용산카8036)이륜차
148	811221-*******	엄*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0라33**) 자동차	2024-04-28 20:0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15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60라3307)자동차
149	840516-*******	김*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7모850**) 자동차	2024-04-28 20:00	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93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07모8502)자동차
150	420303-*******	이*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9로25**) 자동차	2024-04-28 20:06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70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59로2563)자동차
151	760113-*******	서*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0고93**) 자동차	2024-04-28 20:11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4길 38-2(송파동)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90고9320)자동차
152	821112-*******	정*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더40**) 자동차	2024-04-28 20:10	5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66번길 21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33더4007)자동차
153	911108-*******	주*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4러43**) 자동차	2024-04-28 20:12	5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49번길 4(정자동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54러4332)자동차
154	880510-*******	C*****TACEY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러91**) 자동차	2024-04-28 19:56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길 17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21러9187)자동차
155	911226-*******	김*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5도825**) 자동차	2024-04-28 19:5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13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주변(05도8257)자동차
156	941121-*******	박*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3부67**) 자동차	2024-04-28 19:58	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94번길 4-7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 주변(253부6786)자동차
157	950603-*******	D*****NNINH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9고96**) 자동차	2024-04-28 19:53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2길 92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59고9675)자동차
158	911214-*******	안*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2러14**) 자동차	2024-04-28 19:46	5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24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62러1498)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59	880113-*******	전*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00부75**) 자동차	2024-04-28 16:20	50,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독정길 24-4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300부7544)자동차
160	840106-*******	박*웅정*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1가75**) 자동차	2024-04-28 16: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75번길 60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161가7561)자동차
161	600610-*******	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머522**) 자동차	2024-04-28 16:20	5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2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31머5222)자동차
162	571210-*******	홍*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4무38**) 자동차	2024-04-28 16:18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6길 31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124무3899)자동차
163	620228-*******	김*순홍*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8도89**) 자동차	2024-04-28 16:17	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50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128도8965)자동차
164	931023-*******	김*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은평타**) 이륜차	2024-04-28 09:34	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2길 12-22(응암동)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1 주변(서울은평타4375)이륜차
165	941001-*******	정*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6우43**) 자동차	2024-04-28 12:05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07	반포한강공원내 슬로프 주변(86우4326)자동차
166	850310-*******	정*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카**) 이륜차	2024-04-29 21:02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1길 41	반포한강공원내 반포3요금소주변(서울강남카9271)이륜차
167	550117-*******	윤*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91라73**) 자동차	2024-04-28 09:53	50,000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갈올길 41-24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주변(91라7371)자동차
168	800827-*******	황*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북타**) 이륜차	2024-04-28 09:57	5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13길 22	뚝섬한강공원 자양역주변(서울성북타0700)이륜차
169	801005-*******	정*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북차**) 이륜차	2024-04-28 14:36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주변(서울성북차0418)이륜차
170	540616-*******	전*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파**) 이륜차	2024-04-28 14:32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6가길 10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주변(서울광진파6957)이륜차
171	561005-*******	윤*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동카**) 이륜차	2024-04-28 20:02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107-3(자양동)	뚝섬한강공원 제2주차장 주변(서울성동카2120)이륜차
172	880211-*******	강*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북하**) 이륜차	2024-04-28 19:35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9	뚝섬한강공원 자양역 주변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73	840418-*******	심*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시흥마**) 이륜차	2024-04-28 19:51	50,000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20	뚝섬한강공원 자양역주변(경기시흥마5337)이륜차
174	990214-*******	윤*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랑하**) 이륜차	2024-04-28 19:53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7길 7-3	뚝섬한강공원 자양역주변(서울중랑하5161)이륜차
175	740207-*******	박*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3누90**) 자동차	2024-04-30 11:05	5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견훤로 100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주변(43누9082)자동차
176	110111-*******	(*)그린***연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1머42**) 자동차	2024-05-01 10:30	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6	뚝섬한강공원 음악분수주변(81머4267)자동차-의견제출안내합니다.
177	560814-*******	홍*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3무68**) 자동차	2024-05-01 10:38	50,000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28번길 49-52	뚝섬한강공원 음악분수주변(83무6887)자동차-의견제출안내합니다.
178	700417-*******	남*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71마97**) 자동차	2024-05-01 10:36	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29길 55	뚝섬한강공원 제2편의점주변(71마9713)자동차
179	960722-*******	이*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2모38**) 자동차	2024-05-01 19:31	5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4길 63	뚝섬한강공원 긴급차량출입소주변(312모3823)자동차
180	780225-*******	윤*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양천차**) 이륜차	2024-05-01 19:36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10길 23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주변(서울양천차7081)이륜차
181	970705-*******	성*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마포파**) 이륜차	2024-05-01 20:07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5	뚝섬한강공원 자양역주변(서울마포파0194)이륜차
182	820127-*******	임*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영등포**) 이륜차	2024-05-02 08:04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8길 12-4(양평동4가)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주변(서울영등포아8444)이륜차
183	880409-*******	조*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모77**) 자동차	2024-04-14 11:12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56길 11	이촌한강공원내 텐트존 옆 차도(21모7734)자동차
184	810813-*******	장*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23조43**) 자동차	2024-04-27 16:5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19	이촌한강공원내 텐트존 옆 차도(123조4332)자동차
185	770224-*******	임*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4소62**) 자동차	2024-04-28 12:39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1길 14	이촌한강공원내 청소년광장 어린이놀이터앞(64소6272)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86	830329-*******	우*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5루57**) 자동차	2024-04-28 16:14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34-3(이태원동)	이촌한강공원내 2주차장-3주차장가는 차로(45루5739)자동차
187	811226-*******	장*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9루84**) 자동차	2024-04-28 19:59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66	이촌한강공원내 2주차장-3주차장가는 차로(69루8494)자동차
188	900328-*******	최*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로44**) 자동차	2024-04-28 20:01	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14	이촌한강공원내 2주차장-3주차장가는 차로(15로4486)자동차
189	630111-*******	강*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구28**) 자동차	2024-04-28 20:04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57번길 22	이촌한강공원내 2주차장-3주차장가는 차로(14구2812)자동차
190	591204-*******	박*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8보37**) 자동차	2024-05-04 19:23	5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주변(58보3725)자동차
191	920324-*******	정*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7러43**) 자동차	2024-05-04 19:07	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206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주변(337러4389)자동차
192	870831-*******	이*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60저3**) 자동차	2024-05-04 19:11	50,0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24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주변(160저3747)자동차
193	680906-*******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8어22**) 자동차	2024-05-04 19:12	5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4	뚝섬한강공원 제1축구장주변(108어2281)자동차
194	650612-*******	김*열(50%), 『김*훈(5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1나71**) 자동차	2024-05-04 21:47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20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주변(111나7192)자동차
195	940121-*******	유*관(99%), 『유*근(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고421**) 자동차	2024-05-04 21:4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52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주변(21고4217)자동차
196	701023-*******	오*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4서82**) 자동차	2024-05-04 21:44	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19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주변(384서8260)자동차
197	940419-*******	정*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7고56**) 자동차	2024-05-04 21:38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6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주변(57고5686)자동차
198	870717-*******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49고64**) 자동차	2024-05-04 21:52	5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18번길 14(지동)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주변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199	590829-*******	김*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카**) 이륜차	2024-05-04 19:30	50,000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157번길 33-3	뚝섬한강공원 자양역주변(서울광진카5914)이륜차
200	131111-*******	주*회사**페이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7거68**) 자동차	2024-05-04 20:25	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뚝섬한강공원 윈드서핑장주변(57거6892)자동차
201	890707-*******	김*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1나20**) 자동차	2024-05-04 16:05	50,000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20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주변(381나2096)자동차
202	880502-*******	염*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0라76**) 자동차	2024-05-04 16:02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04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주변(20라7655)자동차
203	800103-*******	양*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부천사**) 이륜차	2024-05-04 15:10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6가길 28	뚝섬한강공원 장미원주변(경기부천사6454)이륜차
204	770726-*******	문*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차**) 이륜차	2024-05-04 16:25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4가길 13(한남동)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주변(서울용산차5225)이륜차
205	980522-*******	손*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 이륜차	2024-05-03 20:08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91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주변(서울광진하7247)이륜차
206	010731-*******	오*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 이륜차	2024-05-03 20:05	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3-12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주변(서울광진하7670)이륜차
207	010109-*******	고*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초차**) 이륜차	2024-05-03 21:51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4길 11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주변(서울서초차5889)이륜차
208	910105-*******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 이륜차	2024-05-02 20:24	5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72길 26	뚝섬한강공원 제1배달존주변(서울광진하7228)이륜차
209	560226-*******	김*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4호14**) 자동차	2024-03-27 16:31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0길81	여의도한강공원 제2주차장주변 보행로(104호1439)자동차
210	610517-*******	유*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2고02**) 자동차	2024-05-01 20:56	50,000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91번길 19	여의도한강공원 이랜드크루즈선착장주변(82고0255)자동차
211	590516-*******	장*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4호96**) 자동차	2024-04-27 09:28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8바길 21	양화한강공원내 제3주차장주변(34호9691)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212	511020-*******	김*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주205**) 자동차	2024-05-04 12:52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6	여의도한강공원 축구장녹지대주변 자전거도로옆(13주2056)자동차
213	161411-*******	(*)**건설산업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0고183**) 자동차	2024-04-27 14:02	50,000	충청남도 당진시 먹거리길 10-25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50고1836)자동차
214	861217-*******	류*훈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5마22**) 자동차	2024-04-28 17:17	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8길 14	잠원한강공원 내 한남대교하부 (45마2287)자동차
215	860901-*******	박*원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63거23**) 자동차	2024-04-28 19:06	50,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10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 앞 올림픽도로 진출입로(263거2360)자동차
216	820827-*******	김*건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64루80**) 자동차	2024-05-01 12:28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5길 11	광나루한강공원내 어린이공원옆주변(64루8007)자동차
217	110111-*******	(*)열심*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4버14**) 자동차	2024-04-10 16:27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72(이태원동)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114버1489)자동차
218	900130-*******	M***HEUSFARIAS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5무427**) 자동차	2024-04-13 16:44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20길 23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35무4273)자동차
219	880408-*******	강*학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8로501**) 자동차	2024-04-14 16:30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6길 9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58로5017)자동차
220	701011-*******	김*진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62보70**) 자동차	2024-04-10 16:24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2길 38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62보7090)자동차
221	570722-*******	김*덕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8어034**) 자동차	2024-04-10 16:32	50,000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476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68어0340)자동차
222	670707-*******	김*중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08머09**) 자동차	2024-04-14 17:04	5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3길 14-11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안내센타 보행로 주변(08머0938)자동차
223	860630-*******	남*미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45노01**) 자동차	2024-04-13 18:53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74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45노0155)자동차
224	920127-*******	박*규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6거27**) 자동차	2024-04-13 19:21	5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4	잠원한강공원 내 3주차장주변(46거2785)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225	990507-*******	박*박*혁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01우62**) 자동차	2024-04-13 18:49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5길 36-15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201우6207)자동차
226	980610-*******	박*상박*식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5모026**) 자동차	2024-03-31 16:39	5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111	잠원한강공원 내 잠원나들목주변(05모0269)자동차
227	880924-*******	심*서최*옥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두39**) 자동차	2024-04-13 19:36	50,000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102번길 12	잠실한강공원 내 4주차장옆 도로변(13두3900)자동차
228	931117-*******	윤*현정*석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62저35**) 자동차	2024-04-14 16:03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3번길 9-7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62저3504)자동차
229	830219-*******	이*석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1도34**) 자동차	2024-04-13 22:30	5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38-10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하부(31도3402)자동차
230	820810-*******	이*용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나39**) 이륜차	2024-04-13 16:20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잠실한강공원 내 2호매점1블럭건너편 잔디밭 (서울강남나3943)이륜차
231	800915-*******	이*나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8조484**) 자동차	2024-04-14 16:28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02-11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48조4842)자동차
232	760308-*******	이*규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46모60)**) 자동차	2024-04-13 18:51	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3길 79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46모6040)자동차
233	000119-*******	전*재강*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8노51**) 자동차	2024-04-13 19:24	50,000	경기도 여주시 현암3길 38-5	잠실한강공원 내 4주차장옆 도로변(398노5105)자동차
234	640905-*******	정*수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00마18**) 자동차	2024-04-14 16:14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0길 13-31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 회전교차로 주변(200마1862)자동차
235	580630-*******	정*자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40로05**) 자동차	2024-04-13 19:18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5길 88-21	잠실한강공원 내 4주차장 도로변 주변(40로0509)자동차
236	110111-*******	주*회사더**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9누84**) 자동차	2024-03-31 16:35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0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159누8442)자동차
237	630402-*******	최*석권*종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03라67**) 자동차	2024-04-13 19:24	5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79번길 39	잠실한강공원 내 4주차장옆 도로변(03라6721)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238	941014-*******	최*철김*숙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05구277**) 자동차	2024-04-13 19:15	50,000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8	잠원한강공원 내 3주차장주변(05구2778)자동차
239	850704-*******	홍*혜홍*선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8주90**) 자동차	2024-04-13 19:24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60	잠원한강공원 내 3주차장주변(108주9032)자동차
240	780204-*******	김*철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카4**) 이륜차	2024-05-02 21:00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26(잠원동)	잠원한강공원 내 꿀벌숲보행로주변(서울강남카4124)이륜차
241	731026-*******	박*희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99다73**) 자동차	2024-05-04 16:31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299다7312)자동차
242	931202-*******	장*명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03고79**) 자동차	2024-05-04 18:31	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2길 31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303고7976)자동차
243	820522-*******	U****OLKAN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6우808**) 자동차	2024-05-04 13:17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잠원한강공원 내 테니스장주변(46우8089)자동차
244	500918-*******	황*정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6고63**) 자동차	2024-05-04 17:10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27(석촌동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앞 주차구획선외의 장소(246고6368)자동차
245	861117-*******	윤*정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1도02**) 자동차	2024-05-04 16:25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43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대교하부 공중화장실앞(21도0247)자동차
246	770906-*******	김*영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다96**) 자동차	2024-05-04 17:10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39번길 20-14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앞 주차구획선외의 장소(24다9673)자동차
247	830816-*******	최*기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59누02**) 자동차	2024-05-04 18:32	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앞 주차구획선외의 장소(59누0277)자동차
248	740709-*******	장*애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8고55**) 자동차	2024-05-04 18:33	50,000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길 1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앞 주차구획선외의 장소(388고5573)자동차
249	931031-*******	홍*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아7**) 이륜차	2024-05-01 18:46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34-1(용산동2가)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주변(서울중아7638)이륜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250	110111-*******	(*)루이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7가40**) 자동차	2024-05-01 18:18	5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4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387가4069)자동차
251	900917-*******	정*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6소80**) 자동차	2024-05-01 18:31	5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514번길 53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46소8048)자동차
252	136810-0782	(*)***시스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8부80**) 자동차	2024-05-01 18:27	50,00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77번길 50	반포한강공원내 제2편의점주변(68부8088)자동차
253	731118-*******	김*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51다32**) 자동차	2024-05-01 17:50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13	반포한강공원내 제2주차장주변(251다3221)자동차
254	710402-*******	이*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타3**) 이륜차	2024-05-02 20:47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06-2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상류교각45번주변(서울중타3971) 이륜차
255	911104-*******	이*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성북파**) 이륜차	2024-05-02 14:50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37-4(자양동)	반포한강공원내 초생마루주변(서울성북파4864)이륜차
256	710315-*******	임*홍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0러43**) 자동차	2024-05-02 10:31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48	반포한강공원내 흑석초주변(100러4370)자동차
257	830818-*******	유*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초차**) 이륜차	2024-05-03 21:10	5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14길 38(방배동)	반포한강공원내 GS2호점주변(서울서초차8848)이륜차
258	861206-*******	송*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하**) 이륜차	2024-05-03 18:56	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43-19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주변(서울강남하5563)이륜차
259	840409-*******	S***INSTEPHE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자**) 이륜차	2024-05-04 17:24	5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20길 9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2주변(서울용산자5114)이륜차
260	950128-*******	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대문**) 이륜차	2024-05-04 15:31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6가길 61(한남동)	반포한강공원내 제3주차장 농구장주변(서울서대문차5870)이륜차
261	870609-*******	이*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카**) 이륜차	2024-05-04 08:37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2길 4-2(용산동2가)	반포한강공원내 잠수교회전교차로주변(서울용산카8070) 이륜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262	960605-*******	박*영박*현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96두23**) 자동차	2024-05-04 13:30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8	난지한강공원내 회전교차로주변도로(196두2324)자동차
263	010223-*******	박*운박*철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69우967**) 자동차	2024-05-04 13:30	50,000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945	난지한강공원내 회전교차로주변도로(69우9672)자동차
264	900921-*******	황*빈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3수686**) 자동차	2024-05-04 13:30	5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9바길 15	난지한강공원내 회전교차로주변 도로(53수6863)자동차
265	911027-*******	김*주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57가89**) 자동차	2024-05-04 13:30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08-12	난지한강공원내 회전교차로주변 도로(357가8978)자동차
266	631001-*******	김*갑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8우42**) 자동차	2024-05-04 16:41	50,000	경기도 광주시 청석로 288-37	난지한강공원내 제1주차장주변 보행로(28우4294)자동차
267	870330-*******	오*환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82두13**) 자동차	2024-05-04 19:00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25길 16	난지한강공원내 야구장주변(382두1334)자동차
268	740803-*******	김*란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8수88**) 자동차	2024-05-04 18:58	5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125	난지한강공원내 야구장주변(328수8857)자동차
269	880118-*******	박*희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0루42**) 자동차	2024-05-04 16:51	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5	난지한강공원내 월드컵대교밑 회전교차로(100루4273)자동차
270	850131-*******	정*석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1무77**) 자동차	2024-05-04 17:06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93	난지한강공원내 월드컵대교밑 회전교차로주변(51무7775)자동차
271	220111-*******	주*회사*카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95호48**) 자동차	2024-05-04 16:38	50,000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	난지한강공원내 난지안내센터주변(195호4838)자동차
272	710620-*******	금*수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97머15**) 자동차	2024-05-04 16:38	5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3길 34	난지한강공원내 난지안내센터주변(397머1542)자동차
273	970307-*******	정*철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0우93**) 자동차	2024-05-04 16:39	50,000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93(신곡동)	난지한강공원내 제1주차장주변(330우9393)자동차
274	940926-*******	서*찬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2더56**) 자동차	2024-05-04 17:04	5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96번길 25	난지한강공원내 월드컵대교밑 회전교차로(242더5682)자동차

순번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세자기본주소	위반장소
275	951119-*******	장*규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86저13**) 자동차	2024-05-04 16:59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72번길 10-1	난지한강공원내 월드컵대교밑 회전교차로(186저1314)자동차
276	921216-*******	천*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부천가**) 이륜차	2024-04-30 23:04	50,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140번길 9	망원한강공원내 제1주차장주변(경기부천가4234)이륜차
277	930226-*******	조*성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서울은평타73**) 이륜차	2024-05-02 02:48	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4가길 16-14	망원한강공원내 제1주차장주변(서울은평타7333)이륜차
278	650101-*******	장*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92허53**) 자동차	2024-04-23 09:05	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4길 5	이촌한강공원내 한남나들목 상류 200m 보행로주변(192허5301)자동차
279	921118-*******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종로자**) 이륜차	2024-05-03 22:41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2가길 4	이촌한강공원내 반포대교 북단하부 운동기구옆보도위주변(서울종로자1756) 이륜차
280	670210-*******	홍*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3머01**) 자동차	2024-05-04 18:39	5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1길 50-4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진출입로 (53머0197) 자동차
281	841023-*******	조*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3노19**) 자동차	2024-05-04 18:36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13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진출입로주변(53노1981)자동차
282	670208-*******	정*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6머96**) 자동차	2024-05-04 18:33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278번길 17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진출입로주변(336머9680)자동차
283	910929-*******	이*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라14**) 자동차	2024-05-04 18:27	5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진출입로 (10라1446) 자동차
284	630623-*******	조*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누07**) 자동차	2024-05-04 18:28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7길 7	이촌한강공원내 제4주차장 진출입로 (23누0720) 자동차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4-16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06. 07 ~ 2024. 06. 20 (14일)

5. 납부기한: 2024. 06. 30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등록내역-수시분 (20240603 50건)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장소	납기일자
2	900706-*******	노*형(50%),『노*호(5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141어16**)자동차	2024-06-30
1	911202-*******	최*웅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5저02**)자동차	2024-06-30
3	110111-*******	노**먼트주식회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7호62**)자동차	2024-06-30
4	660915-*******	양*진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5	660915-*******	양*진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6	460929-*******	김*원(99%),『김*연(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9누41**)자동차	2024-06-30
7	751105-*******	최*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2저24**)자동차	2024-06-30
8	891031-*******	김*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6가13**)자동차	2024-06-30
9	164711-*******	주식회사부릉**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86저58**)자동차	2024-06-30
10	940513-*******	이*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서울양천아6**) 이륜차	2024-06-30
11	800829-*******	김*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중랑파42**)이륜차	2024-06-30
12	771124-*******	최*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경기광주가21**)이륜차	2024-06-30
13	800320-*******	김*민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77소96**)자동차	2024-06-30
14	620501-*******	이*경조*진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46마99**)자동차	2024-06-30
15	880624-*******	진*구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63모04**)자동차	2024-06-30
16	460929-*******	김*원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17	460929-*******	김*원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18	460929-*******	김*원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19	460929-*******	김*원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20	610924-*******	이*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용산차6**) 이륜차	2024-06-30
21	951228-*******	백*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57모47**)자동차	2024-06-30
22	820322-*******	안*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85주82**)자동차	2024-06-30
23	600815-*******	정*숙(99%),『김*규(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6수59**)자동차	2024-06-30
24	900207-*******	최*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7어21**)자동차	2024-06-30
25	630410-*******	오*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8부52**)자동차	2024-06-30
26	741120-*******	구*훈(1%),『황*영(9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238너76**)자동차	2024-06-30
27	780926-*******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5고08**) 자동차	2024-06-30
28	991013-*******	박*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마포파04**)이륜차	2024-06-30
29	940521-*******	권*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아01**)이륜차	2024-06-30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장소	납기일자
30	940228-*******	김*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72**)이륜차	2024-06-30
31	690426-*******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3라19**)자동차	2024-06-30
32	790210-*******	권*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남아03**)이륜차	2024-06-30
33	710627-*******	원*식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1마42**)자동차	2024-06-30
34	970325-*******	박*석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1로92**)자동차	2024-06-30
35	940502-*******	홍*희홍*각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39버87**)자동차	2024-06-30
36	920504-*******	장*복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378루66**)자동차	2024-06-30
37	941219-*******	안*인안*길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59노27**)자동차	2024-06-30
38	850525-*******	M***KHSUKH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171저13**)자동차	2024-06-30
39	781016-*******	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서초카29**)이륜차	2024-06-30
40	990622-*******	이*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광진하56**)이륜차	2024-06-30
41	670618-*******	고*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서울강동타06**)이륜차	2024-06-30
42	560511-*******	김*호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43	630915-*******	김*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44	681224-*******	이*옥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45	720309-*******	김*완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46	750313-*******	신*수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47	681224-*******	이*옥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48	630915-*******	김*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49	750313-*******	신*수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4-06-30
50	881211-*******	김*호	지정장소 외 주차행위(41두62**)자동차	2024-06-30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08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갈현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5-3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영구 143.2㎡, 일시 355.6㎡ (변경) 영구 151.2㎡, 일시 35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도권광역상수도(1단계) 노후관개량사업(2차) 추진에 따른 비상연계관로 매설

5. 점용기간 : 2024.05.00.~ 영구(공사기간 2023.04.20.~2025.05.1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이촌동 361-1, 173-3

 - 면 적 : 4,2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체육시설 개선

5. 점용기간 : 2024.6.4.~2029.6.3.(5년)

6. 공사기간 : 2024.6.4.~2024.11.30.

정 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19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정정)

서울시보 제3977호(2024.5.16.)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919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중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포안을 정정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19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4. “부모 등 보호자”란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학교구성원”이란 제2조 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갈등”이란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8. “중재”란 학교구성원 간의 합의 또는 화해로 해결이 어려운 갈등에 대하여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학교구성원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은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학칙 및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규정 등(이하 “학칙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학칙 등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이 조례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학교구성원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 · 추진할 때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시책에 의거하여 학교단위에서의 실행방안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갈등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등 원만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단위에서 갈등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민원처리의 책임자로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 ·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학교의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거나 학칙 등의 제 · 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
4.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정위기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건강한 성장 · 발달을 위하여 상담,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5. 가족, 교우관계, 병력, 상담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학생의 권리

②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2. 학습자로서 학교의 시설 및 물건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소중히 다루며, 개인 및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학습자로서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 시간을 준수하고 수업 및 기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할 책임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을 이해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
5.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며,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8조(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 ①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다만, 권리와 권한의 행사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 등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2.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근무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서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5.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권리·권한

②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
2.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책임
3.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책임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임
5. 학생이 공정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9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①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학부모조직을 구성하거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칙 등의 제·개정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2.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학교 기록을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생활 및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분석, 대안 모색 등에 대한 상담을 교원이나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보호자의 권리
②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자녀 또는 아동이 학칙 등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
2.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자녀 또는 아동과의 이해·소통 증진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
4. 자녀 또는 아동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하여야 할 책임
5.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 등에 대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3장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제10조(상호 존중 학교문화) ① 교육감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와 관련한 학교구성원 대상 교육 및 연수
4. 학교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 참여형 컨설팅
5. 그 밖에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과 유사한 성격의 기념일에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참여 및 소통 강화)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학칙 등을 제 ·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보호자 간 소통시간을 확대하거나 전문기관 연계 또는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학교구성원 간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 및 갈등의 처리

제12조(민원의 처리 절차) ①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원대응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2.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 ·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3.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해당 민원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이 이관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민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3조(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학교의 장은 교육정보시스템, 학교누리집 또는 별도의 민원신청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민원을 접수 · 관리하거나 학교 내 민원 또는 상담이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①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교육활동 갈등관리) ① 교육활동에 있어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한 갈등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및 중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2. 학교구성원 갈등 예방 대책 수립
3. 학교구성원 갈등중재의 기준 마련
4.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이 학교구성원 갈등 중재를 위하여 위원회의 조정·중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 갈등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의 장, 교원,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및 보호자를 각각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2.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3.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갈등의 중재) ①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민원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학교구성원간의 권리가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갈등 중재를 요청(이하 “중재 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갈등 중재에 대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 및 중재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 요청 사항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고 종결한다.

1. 갈등관계가 교육활동과 무관한 경우
2. 교육활동의 침해 또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의 중재 요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4. 중재 요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제기) ① 제17조에 따른 갈등 중재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재심의결과를 당사자와 중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중재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0조(포상)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1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 생활에 있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구성원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제3조)

나. 교육활동에서의 교육감,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활동에서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제7조)

라. 교육활동에서의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제8조)

마. 교육활동에서의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제9조)

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10조)

사. 학교구성원간 발생하는 민원 및 갈등의 중재를 위해 갈등관리와 해소 절차를 규정함(제12조~제19조)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